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86호

2025. 8. 14.(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2398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제2025-2424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7
제2025-2427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
제2025-2439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8

◈ 고 시

제2025-439호 대기환경측정망 이전 설치 계획 고시 ····· 37
제2025-44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교육대학교) ····· 39
제2025-44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46
제2025-442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48
제2025-443호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 50
제2025-4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 58
제2025-445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고시 ····· 62
제2025-446호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66
제2025-447호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96
제2025-448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 ····· 124
제2025-44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대학교) ····· 150
제2025-451호 상도동 356-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71
제2025-452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고시 ····· 186
제2025-453호 도시관리계획(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94

◈ 공 고

제2025-2372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23
제2025-2373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29
제2025-2374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37
제2025-2385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244
제2025-2386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47
제2025-2400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250
제2025-240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251
제2025-240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252
제2025-240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253
제2025-2405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54
제2025-2408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58
제2025-2409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 260
제2025-2412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62
제2025-2415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 268
제2025-241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289
제2025-2418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변경)계획(안) 열람 공고 ····· 290
제2025-242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한국체육대학교) ····· 334
제2025-2430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예고 ····· 336
제2025-2432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60
제2025-2433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376
제2025-2441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 378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5-3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395
제2025-324호 서울특별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98

◈ 구 고 시

제2025-114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 401
제2025-7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은평구) ····· 404

제2025-8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 410
제2025-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 413
제2025-6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강남구) ····· 416
제2025-75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 429

◈ 구 공 고

제2025-8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공사완료 공고 (중구) ····· 433
제2025-14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열람공고(성북구) ····· 434
제2025-11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봉구) ····· 436
제2025-1333호 도시계획시설(영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노원구) ····· 437
제2025-14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금천구) ····· 456
제2025-1469호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동작구) ····· 458
제2025-1593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 459
제2025-1870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강남구) ····· 463
제2025-1881호 대모산근린공원(개포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강남구) ····· 466
제2025-1887호 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강남구) ····· 493

◈ 사업소고시

제2025-3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04
제2025-3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04
제2025-3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05
제2025-3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05

◈ 사업소공고

제2025-34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506
제2025-5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마포소방서) ····· 517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98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관리체계 강화 및 보상금 지급 절차 명확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상심의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지휘관의 요구를 위반한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보상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사실조사 중복 서식(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및 정비(안 제4조)
다.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자원 활용 적절성’ 신설 및 위원회 구성 · 의결요건 변경(안 제5조, 제6조)
라. 물가상승 반영으로 보상심의 미개최 기준 상향 및 동일 재난현장 3건 이상 활용 시, 심의 의무화 신설 (안 제6조)
마. 민간자원 관리대장(안 별지 제7호서식) 및 위원별 심의서(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의결서(안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현장대응단(전화: 02-3706-17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02)3706-1719

(2) E-mail: wg95091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대 도착 후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반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민간자원”을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원”으로, “보상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보상청구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부담 확인서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
5.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
6.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 자료
7.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원 관리대장

제5조의 제목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서에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소방서에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명 이내”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무과장”을 각각 “주무과장 및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및 민간자원 활용의 적절성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제6조제1항 중 “의결로”를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을 “총 보상신청 금액이 200만원”으로,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동일 재난현장에서 3건 이상의 민간자원이 활용된 경우 보상신청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간자원 관리대장

20 . . .

연번	소속	동원장비	자원운용자			활동시각			활동사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도착	투입	철수		

작성자: (서명)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서(위원별)

<table>
<tr><td rowspan="4">신청자</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청구금액</td><td colspan="2">금 원</td></tr>
<tr><td>심의내용</td><td colspan="4"></td></tr>
<tr><td>심의결과</td><td colspan="4">☐ 가결 ☐ 부결 ☐ 추가 심의 필요</td></tr>
<tr><td>의견
및
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위 와 같 이 심 의 함 .

년 월 일

심 의 위 원 (장): (서 명)</td></tr>
</table>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일 시	. . .( ) 00:00 ~
장 소	
심의안건	
의결사항	
위 와 같 이 의 결 함 . . .	

심 의 위 원

	직 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비 고
심의위원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본인 소유 건물이나 대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본인 소유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 <단서 신설>	2. ---------- ---------- ---------- -----. 다만, 소방대 도착 후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반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보상신청) ① (생 략)	제3조(보상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원 -- 보상청구서

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부담 확인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 ---------- ---------- ------.
1.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5호 서식)	1.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	5.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
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7호 서식)	6.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 자료
7.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별지 제8호 서식)	7.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원 관리대장
8. 현장 조사	<삭 제>
9.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삭 제>
제5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각 소방서에는 「서울	제5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소방서에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심의·의결한다.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및 민간자원 활용의 적절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5명 이상 7명 이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할구청 재난안전관련 주무과장	1. ---------- 주무과장 및 팀장
2. 관할경찰서 주무과장	2. -------- 주무과장 및 팀장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제6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 ---------- 의결을 거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총 보상신청 금액이 200만원 ---------- ---- 서울특별시장---------- ----------. 단, 동일 재난현장에서 3건 이상의 민간자원이 활용된 경우 보상신청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서식]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자 현황(구조,복구,봉사)

20 . . .

연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소속단체	전화번호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간자원 관리대장

연번	소속	활동일시	구분(중복)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신청	자진출동	전화	오전	오후	철야		

작성자: (서명)

[별지 제8호서식]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

연번	성 명	배치장소	배치시간	철수시간	활동임무	비고

[별지 제8호서식]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서(위원별)

신청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청구금액	금 원	
심의내용			
심의결과	□ 적절 □ 부적 □ 추가 심의 필요		
의견 및 사유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신 설>

[별지 제9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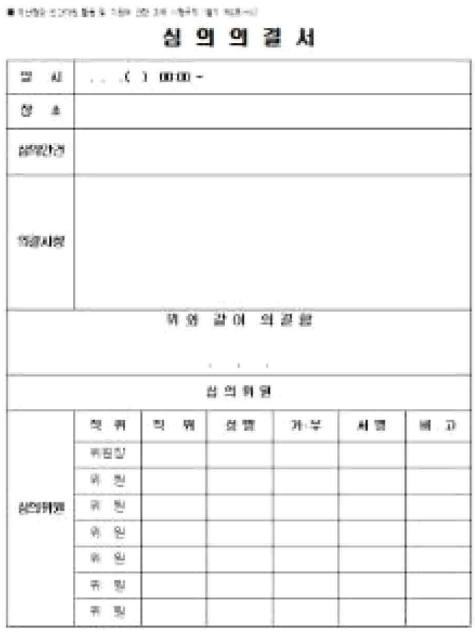

심 의 의 결 서

일 시	. . ( ) 00:00 ~
장 소	
심의안건	
안건내용	
위와 같이 의결함	
. . .	
심의위원	

심의위원	직 위	직 책	성 명	가·부	서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24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채 신고시장가격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이자를 인하하여 신고시장가격 안정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의 이자를 연2.5퍼센트에서 연2.0퍼센트로 인하함(안 제15조제2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철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전화: 02-2133-4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02)2133-1076
(2) E-mail: sylee42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02-2133-4342)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채의 이자는 연 2.5퍼센트의 이율로”를 “공채의 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율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및 제2호서식 뒷면 중 “연 2.5퍼센트”를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신청서

(앞면) (입금표 지점보관용)

공채 매입금액	금 원정 (₩)				
성명(업체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징 구 기 관		매 입 용 도			
공채보유여부 (해당란에 ○표)	1. 즉시매도( ) 증권시장가격으로 대표증권사에 매도		2. 공채 개인보유(지급방법 선택 가능) 가.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공채매입자의 증권계좌로 납입( ) 나. 매출대행기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공채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납입( ) (계좌번호 :)		

1. 위와 같이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공채를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공채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 또는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위의 공채를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공채 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 지 점	수 수 료	매도가격		결 재
입 금	수입제세	선급이자		
본입보유여부	공제합계			실명확인
매입금액	용도기관	지 급 액		

180mm×112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공지사항

1. 공채 관련사항

1) 발행근거 :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의거 발행

2) 발행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하여 발행

3) 상환조건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 상환일에 일시상환

4) 이 율 : **연 2.0퍼센트**(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

5) 소멸시효 :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및 이자 각각 5년**

6) 원리금 상환일 이후의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2. 공채 매입용도

1) 자동차등록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3)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4) 건설기계등록

5) 식품영업 허가 6) 관광숙박업 등록

7)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

8) 사행행위영업 허가 9) 체육시설업 등록

10) 엽총 소지 허가 11) 수렵면허

12) 주류판매업 면허 13) 주류제조업 면허

1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15) 토지형질 변경허가

16) 카지노업 허가

3. 즉시매도 시 처리절차

매입신청서 작성·제출(즉시매도선택) → 공채 매입금액과 공채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매입확인증교부 → 매입확인증 징구기관에 제출

4. 공채 개인보유 시 처리절차

매입신청서 작성·제출(공채보유선택) → 공채 매입금액을 납부 →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교부 → 매입증서 보유, 매입확인증 징구기관에 제출

보유도중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 당월 및 전월 발행분에 한정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계좌납입 미선택 시 원리금 상환일 이후 매출대행기관에서 상환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No. 가 0,000,00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증서

발 행 번 호 :

성명(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 입 금 액 :

매 출 일 :

발 행 일 :

원리금상환일 :

입고증권회사 :

계 좌 번 호 :

소멸시효 완성일 :

위와 같이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함.

매출대행기관 : ○○은행 ○○지점장 (인)

(문 의 처 : ☎)

서 울 특 별 시 장

190mm×130mm[보존용지(1종)70g/㎡]

〈뒷 면〉

1. 이 증서는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한 자에게 교부한다.

〈공채 발행조건〉

○ 공채의 발행일 : 매월말일
(실제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 선급함)

○ 공채의 상환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 일시상환
- 이율 : **연2.0퍼센트**, 최초 5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 공채의 원리금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채의 원리금은 원리금 상환일 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공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2. 이 증서는 권리증서가 아니므로 타인에 양도 시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 입고증권회사가 공채매입자의 실명확인 시 참고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위 공채를 중도매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거나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도장(또는 서명)과 주민등록증(가족의 경우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 중도매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한 공채에 대하여는 공채매입자가 앞면의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만기 상환 전 신청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 포함)에는 공채매출은행에 만기상환 원리금 지급을 청구한다.

4. 위 공채는 매도주문 대행계약과 증권거래소의 제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중도 매도할 수 있다.

5. 증권계좌나 은행계좌 납입을 통해 이미 원리금 상환을 받은 고객은 공채매출은행에 원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주)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것은 무효임
2) 이 증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3)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4) 중도 매도시 당월 및 전월 발행분에 한정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원리금상환) ① (생 략) ② 공채의 이자는 연 2.5퍼센트의 이율로 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로 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③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5조(원리금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채의 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율로 ---------- ----------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뒷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공지사항 1. 1)~3) (생략) 4)이 율 : 연 2.5퍼센트(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 5)~6) (생략) 2~4. (생략)	(뒷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공지사항 1. 1)~3) (현행과 같음) 4)이 율 : 연 2.0퍼센트(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 5)~6)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뒷 면〉 1. <공채 발행조건> ○ 공채의 상환 - 이율: 연2.5퍼센트, 최초 5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이하 생략 2~4. (생략)	〈뒷 면〉 1. <공채 발행조건> ○ 공채의 상환 - 이율: 연2.0퍼센트, 최초 5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이하 생략 2~4.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27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일반직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됨에 따라, 연구·지도직 부장직위(4급 상당)에 대해서도 일반직과 동일한 보직부여 기준으로 정비하고, 연구·지도직 보직관리 세부기준상 직위명을 '부장·소장·관장' 등으로 현행화하며, 보임 가능 직렬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자 인사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4급상당 직위에 보임가능한 직렬 및 경력요건 완화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일반직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가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연구·지도직 부장·소장·관장 직위(4급 상당)의 보직부여 기준(현행 5년 경력)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세부기준의 직위명 등 간소화

-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보직관리 세부기준상 직위명을 '부장·소장·관장' 등으로 현행화하고, 보임 가능 직렬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2133-5711, FAX : 2133-0773, E-mail : smallji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smalljin@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3) FAX :2133-0773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보직관리 세부기준(제32조제2항 관련)

직 위 명	요 건				
	경 력	학력 및 전공	자격증	근무성적	기타
원 장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각 직렬에 해당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서 부장·소장·관장급 경력 6년이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각 직렬에 해당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서 연구경력 1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	대학원졸 이상			
부장·소장·관장 (4급상당)	○부장·소장·관장 등 각 직위별 정원에 해당하는 직렬의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서 3년이상 근무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이상 ○동일직군의 5급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3년이상 근무	대학원졸 이상			

주 : 위 직위별 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을 소유한 사람이나 담당직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8]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 세부기준(제32조제2항 관련)

직위명	요건				
	경력	학력 및 전공	자격증	근무성적	기타
원 장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가축위생연구관으로 부장급 경력 6년이상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연구경력이 1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	대학원 졸 이상			
부 장 (식의약품 : 미생물분야, 검사소)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5년이상 근무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이상 ◦동일직군의 5급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5년이상	대학원 졸 이상			
부 장 (대기·수질분야)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5년이상 근무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이상 ◦동일직군의 5급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5년이상	대학원 졸 이상			
부 장 (축산물)	◦지방수의서기관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5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축산물관련분야 연구경력 5년이상 ◦동일직군의 5급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5년이상	대학원 졸 이상			

주 : 위 직위별 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을 소유한 자나 담당직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해당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1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보직관리 세부기준(제32조제2항 관련)

직위명	요건				
	경력	학력 및 전공	자격증	근무성적	기타
원 장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각 직렬에 해당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서 부장·소장·관장급 경력 6년이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각 직렬에 해당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서 연구경력 1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	대학원 졸 이상			
부장 : 소장 : 관장 (4급상당)	◦부장·소장·관장 등 각 직위별 정원에 해당하는 직렬의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서 3년이상 근무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이상 ◦동일직군의 5급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3년이상 근무	대학원졸 이상			
	< 삭 제>				
	< 삭 제>				

주 : 위 직위별 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을 소유한 사람이나 담당직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39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노후화된 ‘시민청’을 서울의 미래 비전 홍보, 시민 소통,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개편하고, 명칭을 ‘서울갤러리’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변경을 조례 제명과 전체 조문에 일괄 반영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제4조, 제6조, 제9조: 대관허가신청서 등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로 정비
- (현행) 제9조에서 대관허가신청서, 변경신청서, 연장신청서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 (개정) 제9조 삭제, 제4조 및 제6조의 관련 내용 정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신설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및 행정의 명확성 제고

다. 제5조 : 대관허가 신청 경합 시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조항 삭제
- 기존 시민청은 동일 시간대 1건 우선 접수 방식 운영에 따라 경합 미발생
-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는 비상설 운영 예정

라. 제8조제2항 : 조례 개정에 따라 수탁자 관련 인용 조항을 ‘조례 제18조’에서 ‘조례 제17조’로 변경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진행중)]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7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5.29.~06.18.)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전화: 02-2133-6419, FAX: 02-2133-0787, E-mail: srse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홍보담당관

2) 이메일 : srseo@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2439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서울시보 또는 서울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이하 “서울갤러리”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09:00 ~ 21:00
2. 11월 ~ 다음 해 2월: 09:00 ~ 20: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울갤러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일 10일 전까지 서울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의 대관허가에 따른 사용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대관허가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갤러리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매달 대관 가능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울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관공간 및 일정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시, 대관장소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행사계획서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등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허가 기준)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대관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일정의 수용 가능성·행사내용의 예술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기간 연장)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관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료 반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관자가 대관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 15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액
2. 사용일 14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80
3. 사용일 6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60
4. 사용기간 중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대관료의 100분의 50

제8조(대관료 감면범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대관료 전액
2.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신청서

서울갤러리 대관허가신청서

1. 대관개요

신청 단체	단체명	
	주소	
	대표자명	
신 청 인	직위	
	성명	
	연락처	▶ 전화번호 : ▶ 이메일 :
행사 개요	행사명	
	주관/주최/후원	
	주요 일정	
	세부 내용	
대관 내용	일시 (준비/철수 시간 포함)	
	장소	
	참석인원	
	장비 반입 및 시설 설치	▶ 장비규모, 운반계획, 일정 등
	요청 사항	▶ 사용 요청품목(서울갤러리 홈페이지 대관안내 참고) - ▶ 기타 협조요청 사항 -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관허가서

서울갤러리 대관허가서

대관신청인	단 체 명 (성 명)	
	주 소	
행 사 명		
대 관 장 소		
대 관 일시		
대 관 료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관계약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3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서울갤러리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1. 신청자

소속(대표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2. 변경신청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행 사 명		
대관공간		
대관일시		
행사내용		
대 관 료		
추가 변경사항		

3. 변경신청 사유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관허가 취소신청서

서울갤러리 대관허가 취소신청서

1. 신청자

대관주체	소속(대표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2. 취소신청

행 사 명	
대관공간	
대관일시	
행사내용	

3. 취소사유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대관허가 연장신청서

서울갤러리 대관허가 연장신청서

※ 연장신청의 경우, 공간사용 현황에 따라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대관주체	소속(대표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2. 연장신청

행 사 명	
대관공간	
대관일시	▶ 기존 : ▶ 연장 :
행사내용	
추가사항	

3. 연장신청 사유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시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39호

대기환경측정망 이전 설치 계획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이전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측정소명 : 화랑로 도로변대기측정소
2. 대기환경측정망 종류 : 도로변대기측정망
3. 측정소 이전 설치시기 : 2025년 11월 이후(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내 용	소 재 지		면 적
		변경 전	변경 후	
화랑로 도로변대기측정소	이전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7-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7-6	11㎡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관리팀(02-570-34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측정망 배치도

측정망 배치도

설치예정 장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4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교육대학교)

건설부고시 제1973-76호(1973.2.2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13호(2001.6.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97호(2021.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5호(2024.12.19.)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0 일대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하여 2025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5.6.18.)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 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취지

○ 서울교육대학교에 내 기존 실외테니스장 철거 후 실내테니스장 신축계획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학교	대학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	86,349.9	-	86,349.9	건설부고시 제1973-76호 (1973.2.28)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변경없음)

구역	구분	면적(㎡)
일반관리구역	①	10,484.3
	②	27,846.7
	③	18,124.7
	소 계	56,455.7

구역	구분	면적(㎡)
상징경관구역	④	5,447.6
	소 계	5,447.6
외부활동구역	⑤	21,867.6
	⑥	2,579.0
	소 계	24,446.6
합 계		86,349.9

(2) 밀도계획(건폐율)(변경)

구분	밀도 산정기준 면적(㎡)	법정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	83,349.9	60.0	26.0	증) 2.1	28.1	28.0	증) 3.0	31.0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없음 - 비오톱1등급지 없음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 높이)(변경)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200.0	96.2	96.2	96.2	-	112.0	112.0	지표로부터 20m 이하	부설초등학교
②	200.0	100.3	100.3	100.3	-	103.0	103.0	지표로부터 32m 이하	인문관, 대학본부, 종합연구강의동, 에듀웰센터, 음악교육관
③	200.0	144.5	173.1	173.1	-	150.0	176.0	지표로부터 20m~32m 이하	학생회관, 도서관, 전산교육관, 서록1관, 서록2관, 실내테니스장(금회 신축)
④	200.0	90.5	90.5	90.5	-	93.0	93.0	지표로부터 13m 이하	상징경관구역 (미술관, 가사관, 제2미술관, 학군단, 과학관)
⑤	200.0	39.4	39.4	39.4	-	46.0	46.0	지표로부터 5m~3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사용)	외부활동구역 `융복합스포츠센터)
⑥	200.0	0.0	0.0	0.0	-	3.0	3.0	지표로부터 5m 이하 (외부공간 부대시설 한하여 허용)	외부활동구역 (부설초운동장)
합계	200.0	90.0	96.0	96.0	-	95.0	100.0	-	-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③구역	실내테니스장	-	1,738.04	-	5,184.94	-	5,184.94	-	지상4	금회 신축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상세내용은 결정도면(건축물조서 포함)에 의함

3. 2025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25.6.18, 조건부 동의)

▸ 조건사항

◯ 부분 철거 예정인 사임당로 방음벽 및 옹벽 구간의 전부 철거 및 전면부 공지와 연계한 보행 친화공간 조성

▸ 자문의견

◯ 일조영향 등 사업계획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거쳐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 건축물 높이, 코트 면 수 등은 현 계획(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에서 검토할 것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관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02-2133-8412)

– 서초구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4층 (☏02-2155-6787)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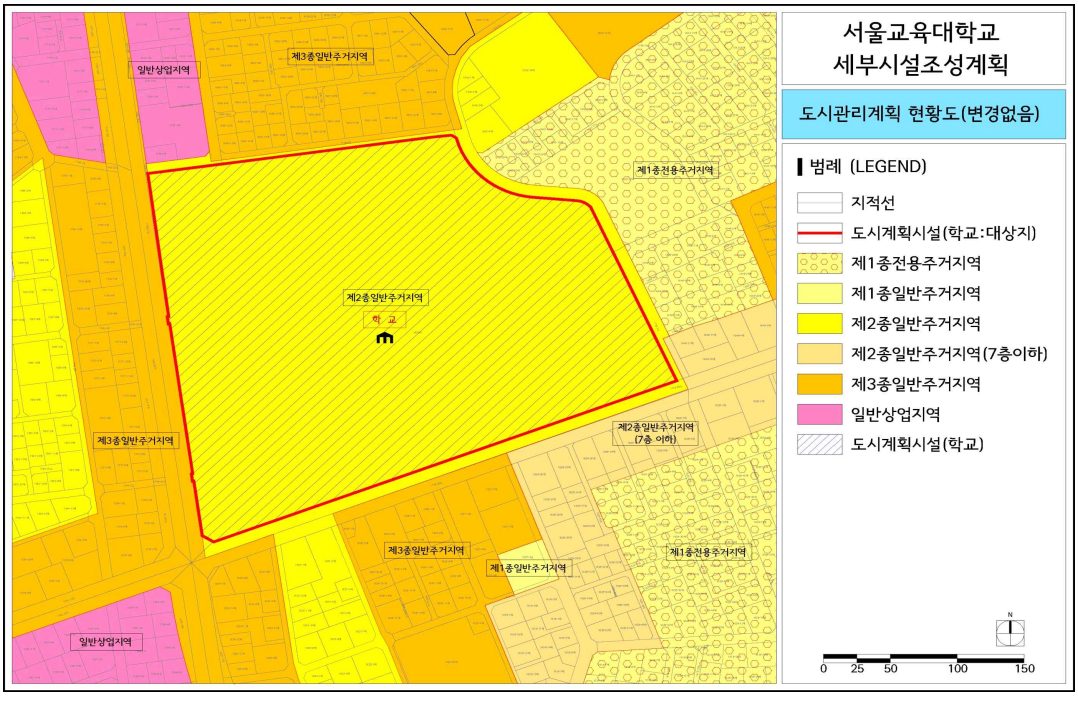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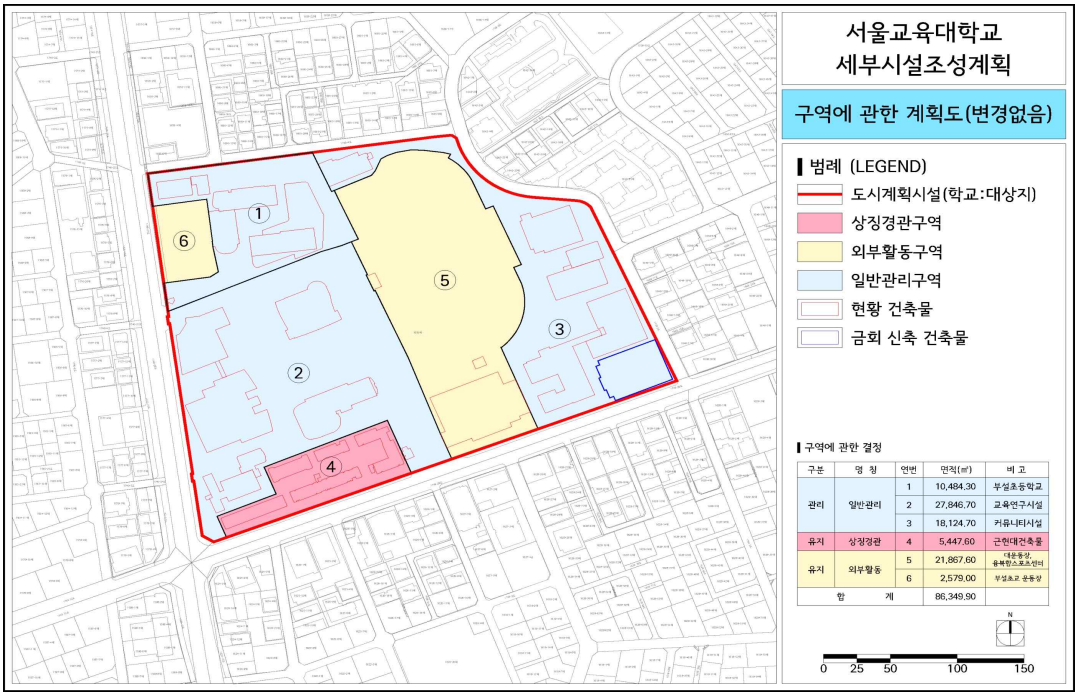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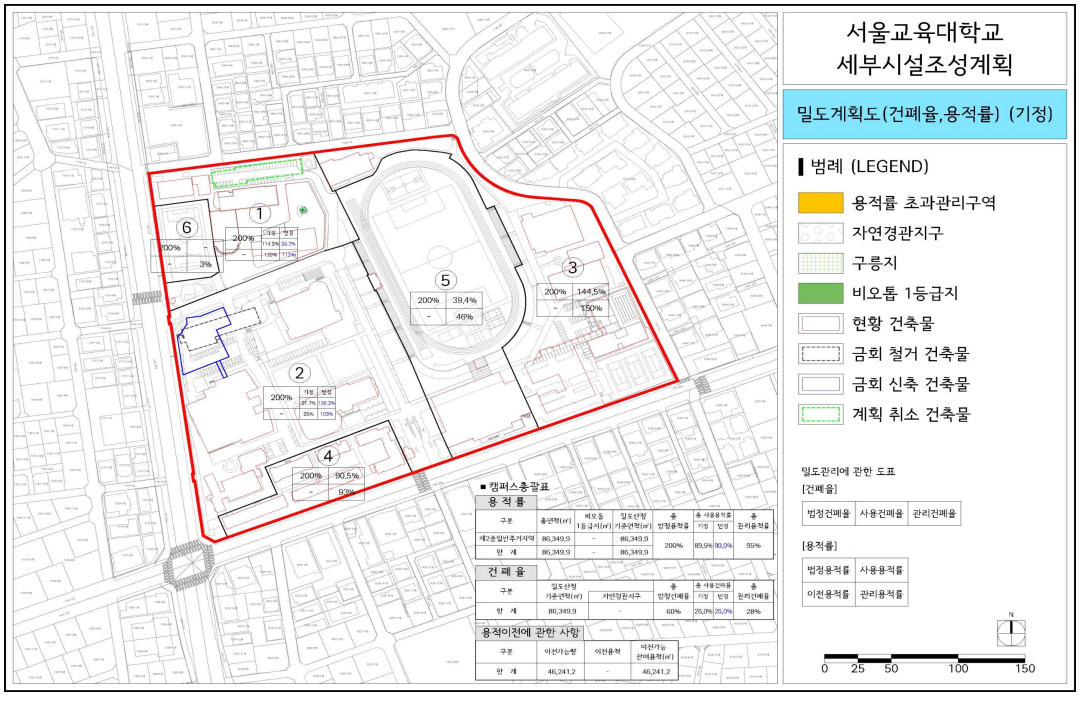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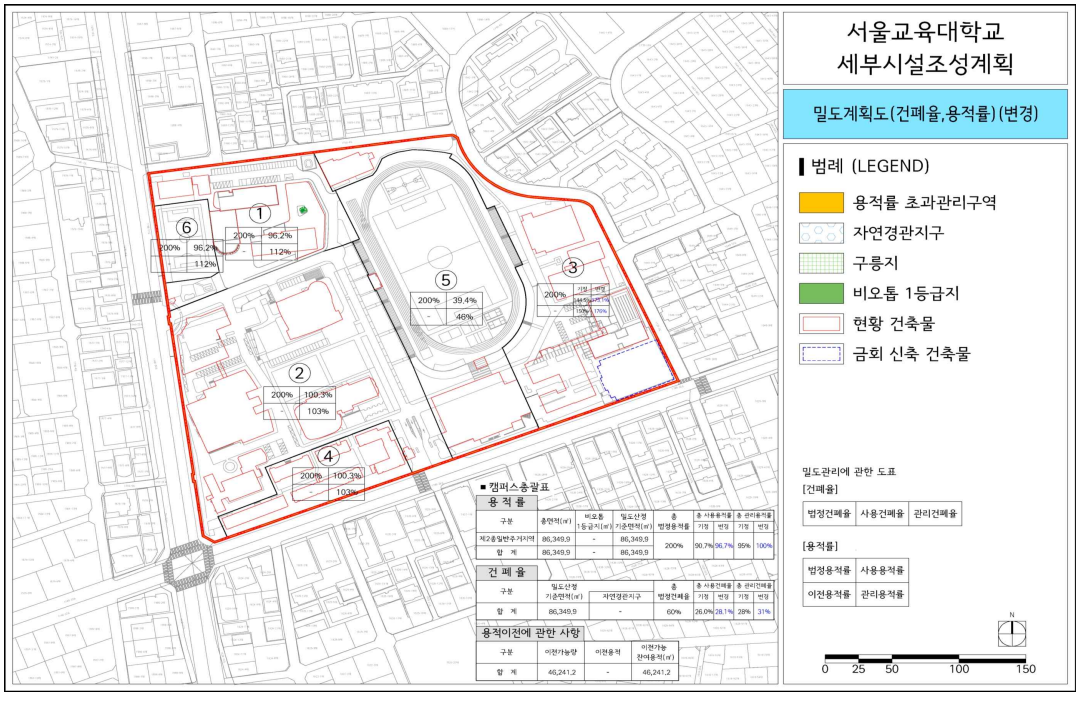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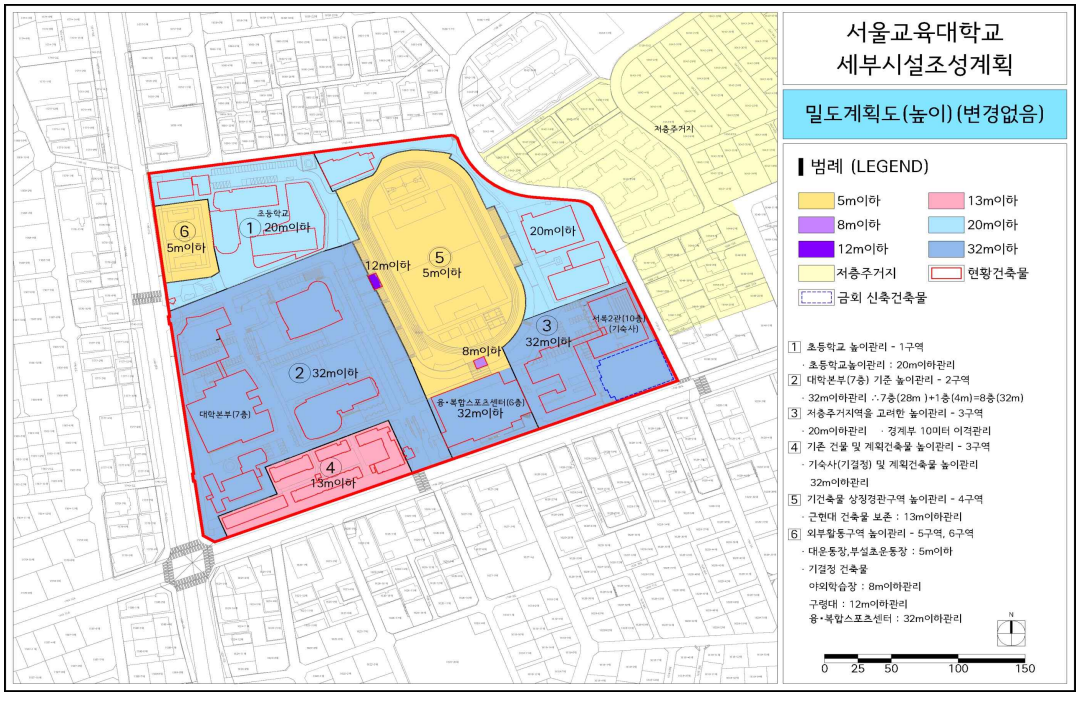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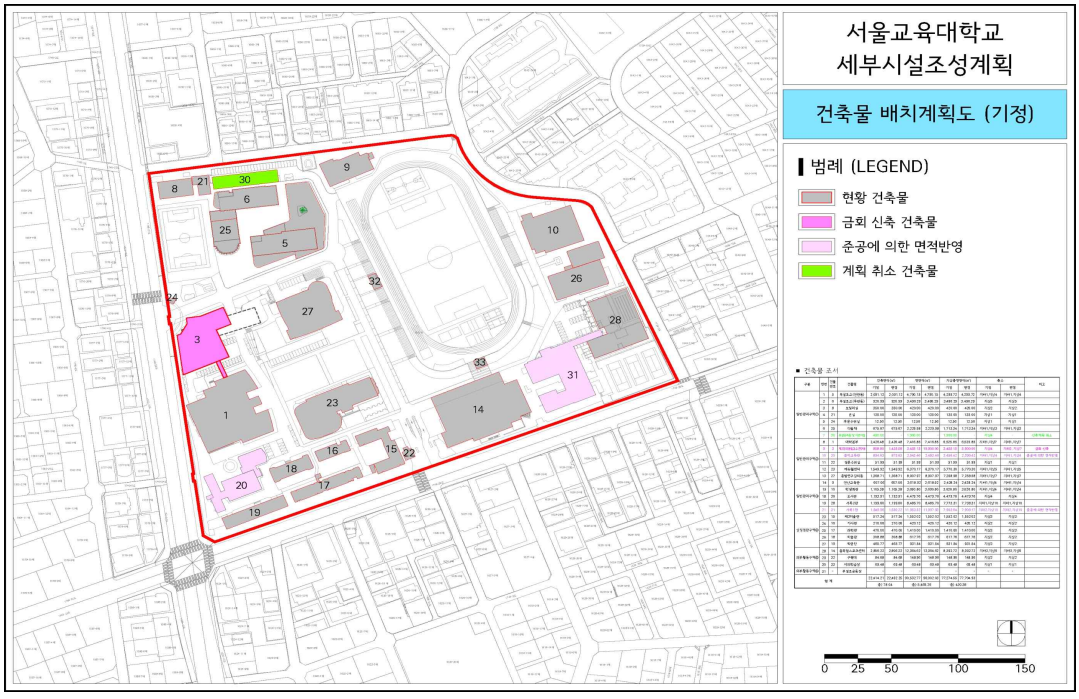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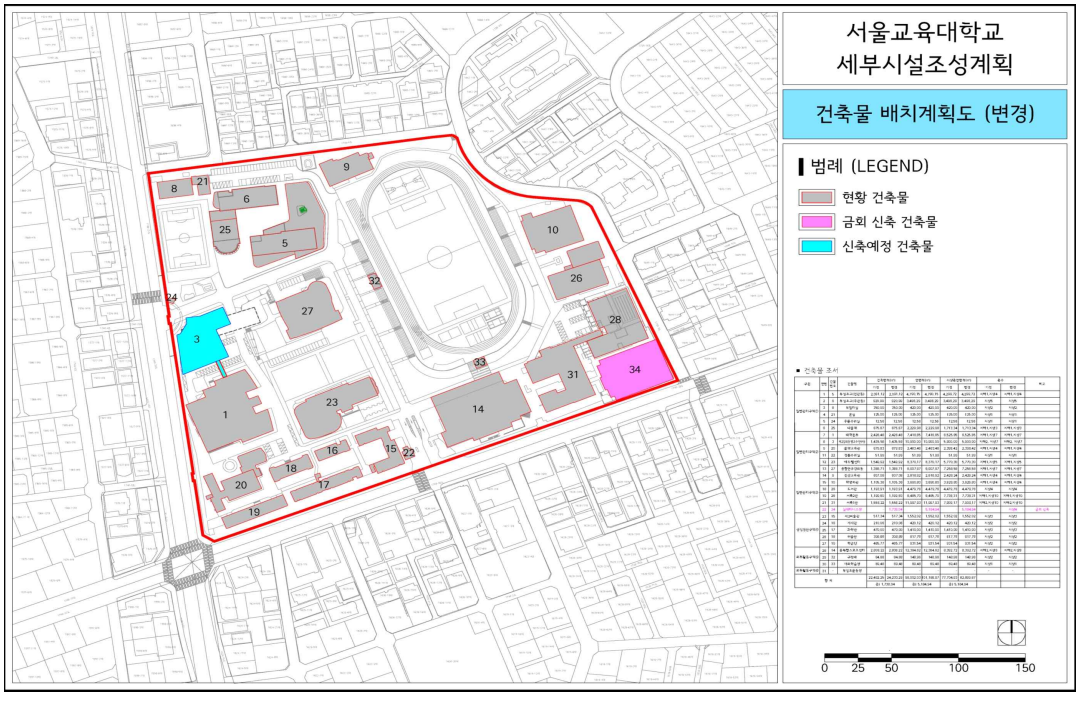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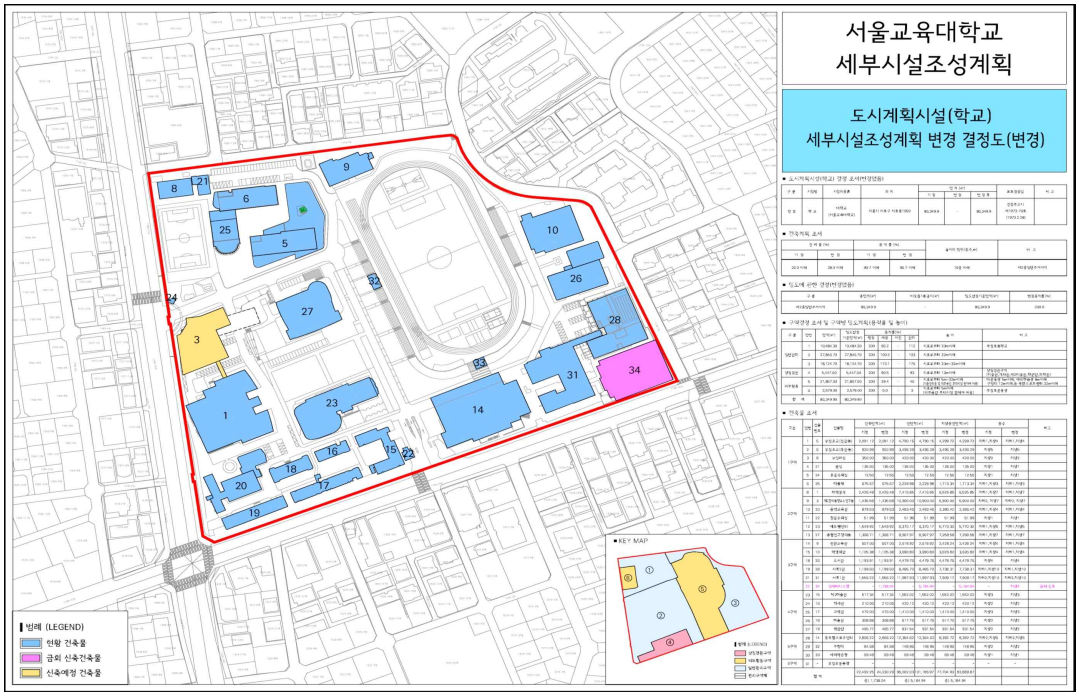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4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자치구	역세권	위치	면적(㎡)	비고
동대문구	청량리역	전농동 127-61 일대	13,287.6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5. 8. 14.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6) 및 해당 자치구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열람부서	전화번호	주소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939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관계도면

○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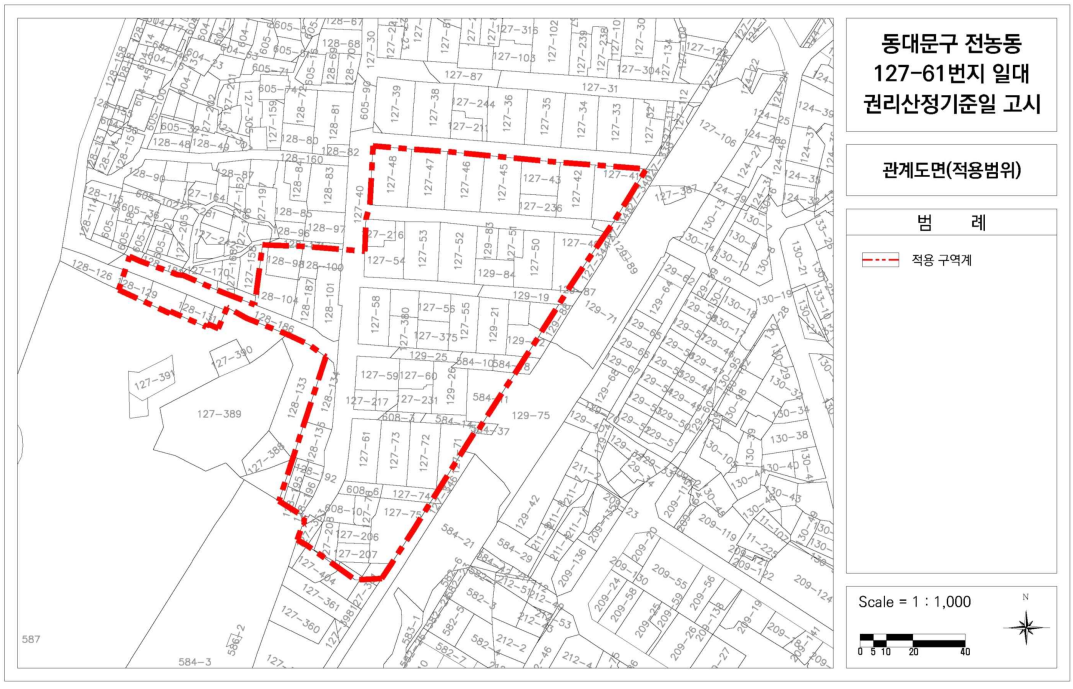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42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자치구	역세권	위치	면적(㎡)	비고
서대문구	아현역	북아현동 156-1 일대	3,465.9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5. 8. 14.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6) 및 해당 자치구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열람부서	전화번호	주소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02)330-1640	서대문구 연희로 247(연희동)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관계도면

○ 서대문구 아현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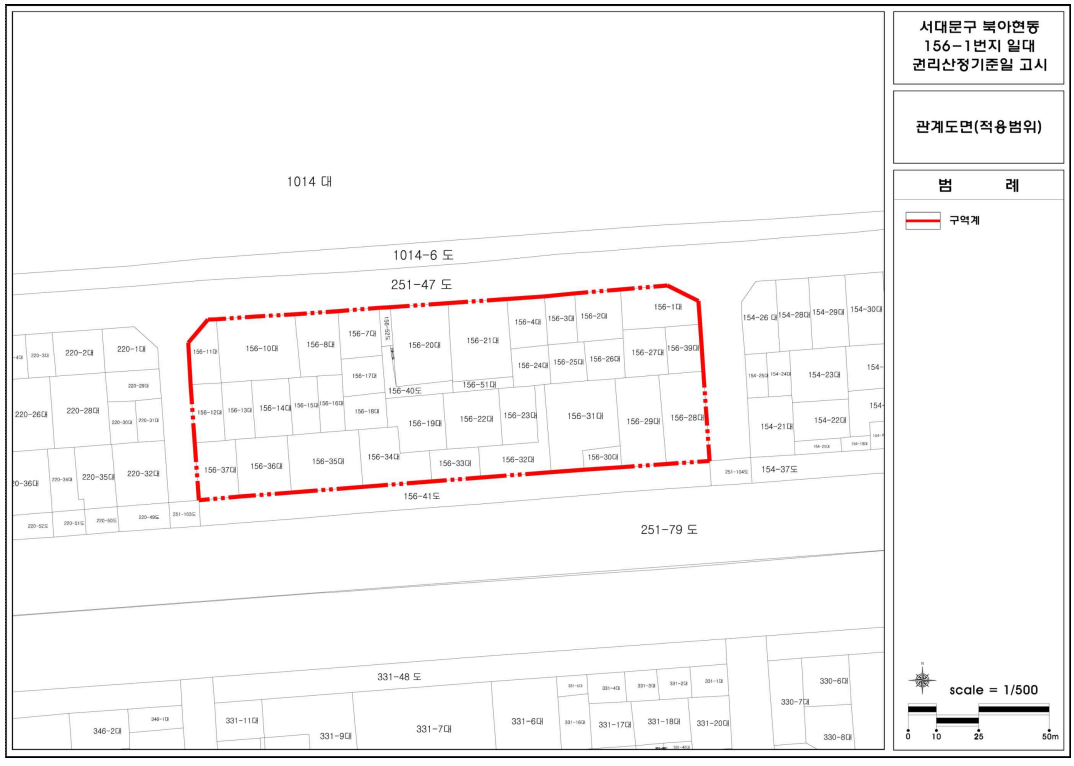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43호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근거 및 대상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시 대상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108개소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연번	담당 부서	시설명	시설유형	위치		주요기능
1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장애인거주시설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중증장애인 입소보호
2	장애인복지과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 다솜센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3	장애인복지과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누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61길 81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4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 뇌성마비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6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7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 상이군경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8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9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연번	담당 부서	시설명	시설유형	위치		주요기능
10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40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11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39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12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13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체육시설)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7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활프로그램 등 제공
14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3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서비스 용역에 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등 지원
15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2길 14	장애인의 직업 적응능력 배양 및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직업재활 지원
16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장애인의 직업 적응능력 배양 및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직업재활 지원
17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장애인의 직업 적응능력 배양 및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직업재활 지원
18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장애인의 직업 적응능력 배양 및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직업재활 지원
19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립번동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장애인의 직업 적응능력 배양 및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직업재활 지원
20	자활지원과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21	자활지원과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22	자활지원과	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연번	담당 부서	시설명	시설유형	위치		주요기능
23	자활지원과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노숙인자활시설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25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노동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24	자활지원과	시립양평쉼터	노숙인자활시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노동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25	자활지원과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노숙인재활시설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및 알코올의존증, 정신질환 노숙인 대상 자립기반 조성 지원
26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노숙인요양시설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단기간 가정,사회 복귀 어려운 노숙인에게 상담,치료,요양 서비스 제공
27	자활지원과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28	자활지원과	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4길 29-3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29	자활지원과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0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30	자활지원과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31	자활지원과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32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03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33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34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35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69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36	어르신복지과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37	어르신복지과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38	어르신복지과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1길 85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39	어르신복지과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35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연번	담당 부서	시설명	시설유형	위치		주요기능
40	어르신복지과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88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41	어르신복지과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16길 7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42	어르신복지과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43	어르신복지과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16길 15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44	어르신복지과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45	어르신복지과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33길25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46	어르신복지과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11길 7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47	어르신복지과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68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48	어르신복지과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49	어르신복지과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50	어르신복지과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77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51	어르신복지과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52	어르신복지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53	어르신복지과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415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54	어르신복지과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9길 45	어르신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55	고독대응과	시립고덕양로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	저소득 어르신 보호
56	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 5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기능 제공
57	돌봄복지과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23길 12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연번	담당 부서	시설명	시설유형	위치		주요기능
58	돌봄복지과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59	돌봄복지과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313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60	돌봄복지과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61	돌봄복지과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62	돌봄복지과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7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63	돌봄복지과	시립영보노인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664	돌봄복지과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 12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65	돌봄복지과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66	돌봄복지과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85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67	돌봄복지과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54-10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요양 보호
68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노숙인요양시설(여성)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여성 노숙인 보호 및 자립지원
69	양성평등담당관	시립영보자애원	노숙인요양시설(여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여성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연번	담당 부서	시설명	시설유형	위치		주요기능
70	양성평등담당관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71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전용시설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31다길 10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72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전용시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스페이스살림 內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73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전용시설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74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전용시설	서울시	구로구 서해안로 2329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75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전용시설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3길 17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76	아이돌봄담당관	시립양천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아동전용시설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1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77	아이돌봄담당관	시립서울형 강서늘봄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시립화곡점	아동전용시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27-29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78	아이돌봄담당관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아동전용시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79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보라매점	아동전용시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23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80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아동양육시설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81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아동양육시설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82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 및 향후 양육대책수립 조치
83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보호대상아동 보호 및 치료 지원

연번	담당 부서	시설명	시설유형	위치		주요기능
84	아동담당관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별관 104호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85	아동담당관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46 4층 401호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86	아동담당관	서울서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87	아동담당관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54길 84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88	아동담당관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12, 에이스테크노타워 407호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89	아동담당관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헌 201호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90	아동담당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4층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91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아동학대예방업무
92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93	가족담당관	서울시가족센터(1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소파로4길 6	건강가정 교육·상담, 프로그램 지원
94	다문화담당관	서울시가족센터(2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10 서울가족플라자B2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지원
95	다문화담당관	서울이주여성디딤터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0길 23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96	정신건강과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정신요양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지원, 정신건강치료 및 상담, 사회적응을 돕는 기능
97	정신건강과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정신요양시설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지원, 정신건강치료 및 상담, 사회적응을 돕는 기능
98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한강사업총괄부 한강문화관광과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아동전용시설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2202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99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쉼터	서울시	비공개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연번	담당 부서	시설명	시설유형	위치		주요기능
100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쉼터	서울시	비공개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101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남아)	피해장애아동쉼터	서울시	비공개	피해장애아동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치료, 학업활동 지원
102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여아)	피해장애아동쉼터	서울시	비공개	피해장애아동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치료, 학업활동 지원
103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전용쉼터	서울시	비공개	학대피해 어르신 보호 및 숙식 제공, 치유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104	아동담당관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울시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105	아동담당관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울시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106	아동담당관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울시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107	아동담당관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울시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108	다문화담당관	**공동체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서울시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3.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2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2호(2006.5.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245호(2025.7.24.)로 열람 공고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작성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송파구 광평교사거리 ~ 동남로삼거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1구간)
3. 사업의 규모 : 폭 6차로, 연장 0.6㎞(지하차도 40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9년 5월 9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7.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6438-2422),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 토지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1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송파구 가락동	214-15	도로	25,462	104	공유지	서울특별시				
2	송파구 가락동	632-1	제방	7,479	242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3	송파구 가락동	632-2	제방	1,114	1,114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4	송파구 가락동	616-2	하천	1,074	1,074	공유지	서울특별시				
5	송파구 가락동	616-1	하천	32,849	86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6	송파구 가락동	705-1	제방	1,802	519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7	송파구 가락동	705-2	제방	1,084	1,084	공유지	서울특별시				
8	송파구 가락동	718-1	하천	492	92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9	송파구 가락동	718-2	도로	58	58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0	송파구 가락동	737	제방	1,541	99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11	송파구 가락동	735-1	잡종지	4	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12	송파구 가락동	729-3	제방	4,348	4,229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13	송파구 가락동	729-2	제방	4,867	1,758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14	송파구 가락동	901-1	하천	7	7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5	송파구 가락동	899-1	하천	242	242	공유지	서울특별시				
16	송파구 가락동	898-2	하천	926	899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17	송파구 가락동	897-1	제방	12	11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18	송파구 가락동	902-1	하천	14	7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19	송파구 가락동	906-1	도로	22	22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20	송파구 문정동	420-4	하천	969	184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21	송파구 문정동	417	잡종지	260	25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미분할
22	송파구 문정동	150-42	도로	12,827	12,787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3	송파구 문정동	150-14	도로	29,878	2,035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24	송파구 문정동	461	전	26	26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25	송파구 문정동	462-1	잡종지	218	218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26	송파구 문정동	464	잡종지	282	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27	송파구 문정동	462	잡종지	375	375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28	송파구 문정동	463	잡종지	399	342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29	송파구 문정동	466	잡종지	840	10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미분할
30	송파구 문정동	467-1	잡종지	433	433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31	송파구 문정동	467	잡종지	2,060	446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32	송파구 문정동	467-2	잡종지	147	119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33	송파구 문정동	469-1	잡종지	242	242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34	송파구 문정동	469-2	잡종지	87	7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미분할
35	송파구 문정동	469	잡종지	1,446	2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미분할
36	송파구 문정동	470-1	잡종지	734	73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37	송파구 문정동	470-2	잡종지	179	179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38	송파구 문정동	470	잡종지	3,908	3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39	송파구 문정동	471	잡종지	2,463	3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40	송파구 문정동	471-1	잡종지	30	19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41	송파구 문정동	472-1	전	943	938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42	송파구 문정동	473	전	33	33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43	송파구 문정동	474	전	69	69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44	송파구 문정동	472-3	전	157	92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45	송파구 문정동	426-3	제방	87	75	공유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70/87), 서울주택도시공사(17/87)				미분할
46	송파구 문정동	475-1	도로	33	32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7	송파구 문정동	472-2	전	592	17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48	송파구 문정동	419-9	제방	3,283	343	공유지	서울특별시				미분할
49	송파구 문정동	472	전	7	5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50	송파구 문정동	417-3	잡종지	565	373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미분할
51	송파구 문정동	420-5	하천	692	5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미분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45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시지정유산)·제10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개요
 가. 지정 대상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20호	주해천자문 목판 (註解千字文 木板)	1건 21점	33.0×53.7×4.0	19세기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21호	곽장양문록 (郭張兩門錄)	10책	27.9×18.5	18세기 후반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22호	법장사 석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法藏寺 石造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1건5점	높이 41.0cm, 너비 27.7cm	조선후기 1682년	중랑구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23호	십장생도 병풍 (十長生圖 屛風)	1건1점	218.6×481.6	19세기 중반	종로구 ((주)○○○○옥션)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24호	이경철 관련 고문서 (李景喆 關聯 古文書)	1건 21점	93.0×4100.0	조선후기	영등포구 (이○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25호	자치통감 권118~120 (資治通鑑 卷118~120)	3권 1책	36.5×24.3	세종 18년 (1436)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26호	자치통감강목 권13 (資治通鑑綱目 卷13)	1권 1책	30.5×19.0	세종 10년 (1428)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자료 제96호	보현정사 석조여래좌상 (普賢精寺 石造菩薩坐像)	1軀	높이 35cm, 대좌 2cm 등	19세기	중랑구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정사)

나. 지정 사유

■ 유형문화유산

【 주해천자문 목판(註解千字文 木板) 】

『주해천자문 목판』은 『천자문』의 각 글자에 뜻과 음을 달고 주해를 덧붙인 책이다. 『주해천자문』을 간행하기 위해 제작한 목판으로 21장이 온전하게 남아있으며, 글자 해석에서 각 한자에 대해 새김과 음을 2~3개로 달았으며 간략한 주석과 함께 250구 매 구를 한문으로 풀이한 통해(通解)를 갖춘 형식이다. 1804년에 홍태운의 글씨를 바탕으로 광통방에서 발행한 계통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목판 실물이 개인소장 1건만 알려질 정도로 매우 드물게 남아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선후기 상업출판, 교육사, 서예사, 국어사의 영역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곽장양문록(郭張兩門錄) 】

조사대상본 『곽장양문록(郭張兩門錄)』은 당나라 덕종~헌종 연간(年間) 곽씨와 장씨 두 가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글 고전소설이다. 『몽옥쌍봉연록(夢玉雙鳳緣錄)』, 『차천기합(釵釧奇合)』과 함께 3부 연작형 작품으로 확인된다. 해당 문화유산은 18세기 후반 궁궐 내에서 필사되

고 유통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책으로 표지 이면의 기록과 첨지를 통해 의빈성씨를 비롯해 정조의 두 여동생인 청연군주(淸衍郡主)와 청선군주(淸璿郡主) 그리고 여러 궁녀 등이 필사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현재까지 실물이 현 소장처 외에 개인소장 1건만 알려질 정도로 드물게 남아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선후기 궁궐문화, 한글소설사, 서예사, 국어사의 영역에서 주목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 법장사 석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法藏寺 石造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

조사대상 <법장사 석조보살좌상>은 경주불석(Zeolite, 泥岩)으로 제작된 중소형 크기의 보살상이다.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강희 21년(1682) 전남 순천 동화사에서 조성하여 봉안된 상임을 알 수 있다. 복장발원문에는 조각승을 밝히는 화원질이 없으나 동화사의 본사인 화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 동화사 석불좌상들의 복장발원문에서 같은 해 4월 도헌(道憲), 색난(色難) 등 10명의 조각승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불사의 규모를 통해 볼 때 동화사에서 과거칠불, 53불과 같은 대규모 불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법장사 소장 석조보살좌상은 이 불상들의 협시보살로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현재 도금 상태는 좋지 않으나 색난·도헌이 함께 작업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1680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84년)과 조형적 유사성을 가지는 뛰어난 작품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십장생도 병풍(十長生圖屛風) 】

㈜마이아트옥션 소장 <십장생도 병풍(十長生圖 屛風)>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기타 박물관, 개인 소장 등 수십 점의 <십장생도 병풍> 가운데 현존 최대의 세로 크기를 가진 작품에 속한다. 제작시기는 1880년에 제작된 미국 오리건대 소장 <십장생도10폭병풍>의 화풍과 비교할 때, 더 고식(古式)을 유지하고 있어서 대략 19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화풍도 치밀, 정교하여 궁중화원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조선시대 궁중장식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기지정된 이화여대박물관 <해학반도도 병풍>보다 선행하는 양식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경철 관련 고문서(李景喆 關聯 古文書) 】

조선 후기 무신 이경철(李景喆, 1702~1758)의 후손가에 전래된 이경철 관련 고문서 36점이다. 이 고문서는 이경철이 무반 관료로서 활동하던 시기에 발급받은 공문서가 대부분이고, 이경철 집안의 묘소가 자리한 충남 서천 지역의 산도(山圖) 1점 및 이경철의 증손 이신영이 발급받은 한성부 준호구가 2점 포함되어 있다. 삼도(수군)통제사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순신 장군을 초대 통제사로 임명한 이래 직제가 지속되었고, 이경철은 1755년(영조 31)에 삼도통제사에 임명되었다. 무반 관료라는 인물의 역사성, 이경철이 한성부를 비롯한 경외 각지에서 두루 역임한 조선 후기 무반관료로서의 이력 등 역사적, 문화유산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이경철 관련 고문서>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치통감 권118~120(資治通鑑 卷118~120) 】

조사대상본『자치통감 권118~120』은 세종 때 사정전훈의를 더하여 1343년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1436년에 294권 100책을 인출한 거질의 통사(通史)이다. 진(晉)나라 <안황제(安皇帝)>, <공황제(恭皇帝)>편과 송(宋)나라 <무황제(武皇帝)>, <영양왕(營陽王)>, <문황제(文皇帝)> 편이 수록된 권118부터 120까지 3권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0여 군데의 소장본 16책이 보물과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바, 동일한 권차가 없으며, 일부 낙장된 장수가 있으나 자료적 및 초주갑인자라는 서지적인 사료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에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자치통감강목 권13(資治通鑑綱目 卷13) 】

조사대상본『자치통감강목 권13(資治通鑑綱目 卷13)』은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간행된 강목 중 하나로서 경자자본으로 국내에 인본의 전래가 드문 귀중본이다. 특히 완질본은 국내에는 현존하지 않고, 국외의 상해도서관에서만 59권의 완질본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세종 당시 경연에서 사용한 소장본으로 확인되는 '경연(經筵)' 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그 가치를 더한다. 따라서 송파책박물관 소장 『자치통감강목』은 역사학, 정치학, 행정학, 서지학 등 자료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전하는 판본이 매우 드물어 조선전기 금속활자 인쇄술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 인쇄문화와 경연 소장 장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충분히 서울시 지정문화유산으로서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보현정사 석조여래좌상(普賢精寺 石造菩薩坐像) 】

<보현정사 석조여래좌상>은 둥근 머리형에 납작한 얼굴, 짧은 목, 좁은 어깨, 넓은 무릎 폭을 하고 있으며 두부가 큰 편이다. 양손을 앉아 있는 무릎 위에 붙여 내린 모양으로 새겼는데, 수인으로는 석가여래인지 아미타여래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불석 재질로 만든 <부산시 석조여래좌상(1892)>, <포항 천곡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의 수인과 평면적이고 간략화된 옷 주름의 표현과 유사하다. 또한 <강북 삼성암 석조여래좌상>, <안동 일출암 석조여래좌상>, <청도 적천사 도솔암 석조여래상> 등에서 보이는 19~20세기 초 조성 50cm 이하의 작은 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식과 일치하므로, 19세기에 조성된 상으로 추정된다. 보현정사 석조여래상은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불교조각사에서 좋은 자료가 되는 불상이나 복장유물이 전하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와 작가를 알 수 없으므로 서울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2. 문화유산 지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 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46호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4.2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응암동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57,929.7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총계		57,929.7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13,600.0	23.5	-
	도로	5,668.0	9.8	-
	공원	5,099.0	8.8	2개소(1개소 주차장 복합화)
	공공공지	2,033.0	3.5	3개소
	공공청사	800.0	1.4	주민센터
획지	소계	44,329.7	76.5	-
	획지1	42,817.6	73.9	공동주택
	획지2	376.6	0.6	종교용지
	획지3	1,135.5	2.0	병원용지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57,929.7	-	57,929.7	100.0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지역	54,863.7	감) 42,639.6	12,224.1	21.1	-
제2종일반주거지역	178.0	감) 178.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888.0	증) 42,817.6	45,705.6	78.9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응암동 700번지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2,817.6	주변지역과의 정합성 및 향후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1.7	스팟조닝(spot-zoning)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 변경

4.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5.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분	내용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사업비) ÷ 종전자산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4.02% → (953,855,219천원 - 635,171,449천원) ÷ 306,341,313천원 X 100% ≒ 104.02% - 총수입 추정 : 953,855,219천원 - 총지출 추정 : 635,171,449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306,341,313천원
개별종전 자산추정액	• 일반건축물(단독주택, 구분건물 등) -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2023) X 보정률(실거래가, 평가전례 등 검토) X 면적 - 건물가액 = 건물재조달원가 X 잔존가치율 X 면적 - 구분건물가액 = 공동주택공시가격(2023) X 보정률(실거래가, 인근 유사물건 실거래가 등 검토) X 면적
추정분담금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구분	내용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천원)		추정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39㎡형	437,200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4.02%)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분담 / -:환급)
	전용59㎡형	694,200		
	전용84㎡형	887,900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 자산 감정 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A	18	보조간선	304 (194)	응암로	응암동 730-1	일반 도로	-	-	-
	소로	2	A	9	국지도로	50	응암동 603-49	응암동 603-103	일반 도로	-	-	-
	소로	2	B	8	국지도로	19 (3)	응암동 732-1	응암동 732-3	일반 도로	-	-	-
	소로	3	A	6	국지도로	184	응암동 744-7	응암동 741-1	일반 도로	-	-	-
	소로	3	B	6	국지도로	47	응암동 697-19	응암동 697-21	일반 도로	-	-	-
	소로	3	C	6	국지도로	23	응암동 741-4	응암동 742-8	일반 도로	-	-	-

( ) : 구역 내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2-A	• 도로 신설 - L=304(194)m, B=18m	•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 2-A	• 도로 신설 - L=50m, B=9m	• 정비사업 통행량 증가를 고려한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 2-B	• 도로 신설 - L=19(3)m, B=8m	• 존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진출입구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A	• 도로 신설 - L=184m, B=6m	• 기존 통행로의 대체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B	• 도로 신설 - L=47m, B=6m	• 기존 통행로의 대체 도로 신설
-	소로 3-C	• 도로 신설 - L=23m, B=6m	• 기존 통행로의 대체 도로 신설

( ) : 구역 내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주차장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1,892.0	1,892.0	-	공원① 중복결정 규모 : 지하1층 연면적 : 1,850㎡

▣ 공간적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층수	연면적		
신설	①	주차장	응암동 700번지 일대	지하 1층	1,850.0㎡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주차장 신설 - 증) 1,892.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대림시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시장이용객의 주차이용 편의 제공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1,892.0	1,892.0	-	주차장 중복결정 (1,892.0㎡)
	②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3,207.0	3,207.0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소공원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소공원 신설 - 증) 1,892.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저층주거지 및 전통시장 이용객을 고려한 공원 조성
②	공원	어린이 공원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어린이공원 신설 - 증) 3,207.0㎡	• 대상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연접한 오래뜰어린이공원과 연계한 공원 조성

라.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165.0	165.0	-	-
	②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1,281.0	1,281.0	-	-
	③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587.0	587.0	-	-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공공공지 신설 - 증) 165.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전통시장 이용객을 고려한 공공공지 조성
②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공공공지 신설 - 증) 1,281.0㎡	• 대상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공지 조성
③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공공공지 신설 - 증) 587.0㎡	• 대상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공지 조성

마.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공청사 (복합청사)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800.0	800.0	-	• 응암3동주민센터 • 규모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 2,400㎡

▣ 공간적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층수	연면적		
신설	①	공공청사 (복합청사)	응암동 700번지 일대	지하2층~지상4층	2,400.0㎡	-	응암3동 주민센터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복합청사)	응암동 700번지 일대	• 공공청사 신설 - 증) 800.0㎡	• 공공청사(복합청사) 신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면적 기준(㎡)		계획면적(㎡)
			기준	면적	
합계		-	-	-	76,763.0
주민 공동 시설	소계	-	1,000세대 이상 = (500㎡ + 세대수 × 2.0㎡) × 1.25	4,265.0㎡ 이상	4,450.0
	경로당	획지1	1,000~1,500세대 미만	580㎡ 이상	600.0
	어린이집		1,000~1,500세대 미만	580㎡ 이상	600.0
	작은도서관		1,000~1,500세대 미만	203㎡ 이상	250.0
	어린이놀이터		-	-	1,000.0
	다함께돌봄센터		500세대 이상	66㎡ 이상	320.0
	주민운동시설		-	-	300.0
	재가노인복지시설		-	-	250.0
	기타커뮤니티		-	-	1,130.0
근린생활시설			-	-	775.0
부대 시설	소계	-	-	-	71,538.0
	관리사무소	획지1	50세대 이상: 10+(세대수-50) x 0.05㎡	80.30㎡이상	100.0
	경비실 등		-	-	50.0
	기계·전기실		-	-	1,500.0
	지하주차장		-	-	69,888.0

※ 공동이용시설 면적 기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름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설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7,929.7	응암동 700번지 일대	276	-	-	276	-	-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설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57,929.7	획지1	42,817.6	응암동 70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50% 이하	270%이하	299.69% 이하	140m이하 (35층 이하)	-
			획지2	376.6	응암동 700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3	1,135.5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1,456세대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100% 85㎡이하 규모 주택 계획

건립규모		기준	세대수	
			세대수(세대)	비율(%)
합계		-	1,456	100.0
85㎡이하	60㎡이하	총 건립 세대수의 80% 이상	994	68.3
	60㎡초과~85㎡이하		462	31.7
85㎡초과		총 건립 세대수의 20% 미만	-	-

- 공공주택(의무)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총 연면적 10% 이상

→ 총 연면적의 10% 이상 계획 : 10.08% (11,643.81㎡/115,570.78㎡)

※국민주택규모 주택 증가분 제외
- 전체 공공주택(의무)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건설

→ 전용면적40㎡ 이하 세대수 30% 이상 계획 : 38.7% (63세대/163세대)

건립규모	기준	세대수(세대)	연면적(㎡)
합계	-	163(100.0%)	11,643.81
40㎡이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63(38.7%)	3,456.81
40㎡~50㎡이하	-	-	-
50㎡~60㎡이하	-	100(61.3%)	8,187.00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정비계획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초과용적률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공급계획
270.00%	299.69%	29.69%	14.845% (6,356.27㎡)	14.888% (6,374.66㎡)

심의완화 사항

■ 기준용적률 상향 : 20% (소형주택 추가 확보)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
- 공공보행통로,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친환경, BF, 보정계수 적용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초과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99.69%이하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지정 - 가좌로7길, 응암로4길 변 : 2m - 가좌로7나길 변 : 3m										
기타계획	▪공공보행통로 폭원 6m 이상 설치 ▪가좌로7길 변 근린생활시설 배치 권장										

■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토지 (대지지분 포함)	건축물 환산면적		
	57,929.7㎡	42,817.6㎡	14,604.31㎡	3,253.24㎡	3,889.30㎡	9,667.7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률 : 10.04% (4,300.55㎡)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4,604.31㎡ + 3,253.24㎡ - 3,889.30㎡ - 9,667.70㎡ = 4,300.55㎡ ※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 면적 : 14,604.31㎡ = 5,668.00㎡(도로) + 5,099.00㎡(공원) + 2,033.00㎡(공공공지) + 800.00㎡(공공청사) + 1,004.31㎡(임대주택) = 14,604.31㎡ ※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3,253.24㎡ = 982.54㎡(공공청사) + 757.00㎡(주차장) + 1,513.70㎡(임대주택)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00% = 190.00% +20% = 210.00% (소형주택공급으로 기준용적률 20% 가산 적용)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허용용적률 : 250.00%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보정계수) = 210% + (20% × 2.00) = 250.00% ▪인센티브 = 20% [공공보행통로(8.61%, 돌봄시설(1.25%), 고령서비스시설(1.23%), 친환경(ZEB)(5.5%), BF인증(4.0%)) ▪보정계수 = 2.00 [서울시평균(5,969,319원) ÷ 대상지평균(2,565,316원)] ※2024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적용					

구분	산정내용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 270.00%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0.7 X α건축물 + 1 X α임대주택} = 250.00% + 210% X (1.3 X 1.0225 x 0.0432 + 0.7 X 0.0235 + 1 X 0.0362) = 270.00%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용적률 = 공공시설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14.72% / 210.00% = 1.0225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804.31㎡ / 41,813.29㎡ = 0.0432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982.54㎡ / 41,813.29㎡ = 0.0235 α임대주택 = 임대주택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임대주택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513.70㎡ / 41,813.29㎡ = 0.0362
법적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99.69% 이하 = 정비계획용적률 270.00% + 초과용적률 29.69%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비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시, 초과 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 전체 세대 수 : 1,286세대(115,570.78㎡) = 1,456세대 - 170세대(법적상한증가분 제외)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163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초과용적률 증가분 제외)의 연면적 10%이상 : 11,643.81㎡ ∴ 11,643.81㎡ 〉 11,557.078㎡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계획 - 163세대의 30% 이상 : 163세대 x 30% = 48.90세대 ∴ 63세대 〉 48.9세대

건립 규모	세대수	세대수 비율	연면적	연면적 비율
합 계	163세대	11.9%	11,643.81㎡	10.08%
40㎡이하	63세대	4.6%	3,456.81㎡	2.99%
40㎡초과~50㎡이하	-	-	-	-
50㎡초과~60㎡이하	100세대	7.3%	8,187.00㎡	7.09%

나)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299.69%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270.00%</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299.69% - 270.00% = 29.69%</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29.69% X 0.5 = 14.845%
42,817.6㎡ X 14.845% = 6,356.273㎡</td></tr>
<tr><td>연면적</td><td colspan="5">6,356.273㎡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39.98㎡</td><td>54.87㎡</td><td>56</td><td>3,072.72㎡</td><td rowspan="3">소셜믹스</td></tr>
<tr><td>59.98㎡</td><td>81.87㎡</td><td>-</td><td>-</td></tr>
<tr><td>84.98㎡</td><td>113.86㎡</td><td>29</td><td>3,301.94㎡</td></tr>
<tr><td colspan="2">합 계</td><td>85</td><td>6,374.66㎡</td><td>기준충족</td></tr>
</table>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응암로와 가좌로변에서 대상지를 바라보는 도시통경축 계획 • 백련산 일대 주거지의 높이 등 경관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계획	-
환경보전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재난방지	•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유지관리 •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함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1-1. 비오톱	-	○	• 비오톱유형평가 4,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지역	• 비오톱 분석결과 대상지는 대부분 지역이 보호가치가 낮은 비오톱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강화 도모
1-2.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시가화지역으로 산림식생 등 미분포	• 계획대상지 내부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 계획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1-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해당 사항 없음	-
1-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보전	X	• 주변 보호지역 없음	-
2-1.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2-2.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우려 기준 만족 •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없음 •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 계획 수립
2-3.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남고북저의 지형 • 경사 5° ~15° 미만의 완경사지로 전체의 60%이상 차지	• 공사시 과도한 정지계획 지양 • 토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2-4. 수질,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0% ,수질오염 최소화	○	• 수질현황 BOD Ia~Ⅲ등급 • 공사시 토사 및 우수유출 발생	• 생태면적률 40.01% 계획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2-5. 바람	바람길 확보	○	• 기상현황 분석	•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및 녹지계획
2-6. 열	열환경 최소화	○	• 계획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바람길 확보
2-7.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 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계획 수립
2-8.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2-9.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 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2-10.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은평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2-11.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영향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예상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및 운영시 방음벽 설치
2-12. 경관	조망권 확보	○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 주변지역과 연계된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계획 수립
2-13.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계획대상지 내에 공원, 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2-14.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대상지 북동측~북측~북서측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영향 예상	•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준수를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2-15. 보행친화공간	보행환경개선	○	•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보행환경 열악	• 현 교통체계 정비 및 주민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3-1.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은평구 인구 현황 조사	-
3-2.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은평구 주거 현황 조사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가칭)	885	1,456	571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동측 충암초, 중, 고등학교 입지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불허 • 충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유효 보도폭 20m 이상 확보 및 차량 속도 저감설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 마련 • 공사 시 가설방음시설 설치,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저감 등 공사시 안전 대책 마련 • 추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예정	-

13. 세입자 주거대책

• 조합설립인가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주민의 이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등을 논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음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방범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소에 방범등, CCTV 등 설치 • 방범등, CCTV 등의 설치 위치는 주민 요청 및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선정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응암동 700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57,929.7	57,929.7	100.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57,929.7	-	57,929.7	100.0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지역	54,863.7	감) 42,639.6	12,224.1	21.1	-
제2종일반주거지역	178.0	감) 178.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888.0	증) 42,817.6	45,705.6	78.9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응암동 700번지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2,817.6	주변지역과의 정합성 및 향후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1.7	스팟조닝(spot-zoning)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 변경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A	18	보조 간선	304 (194)	응암로	응암동 730-1	일반 도로	-	-	-
	소로	2	A	9	국지 도로	50	응암동 603-49	응암동 603-103	일반 도로	-	-	-
	소로	2	B	8	국지 도로	19 (3)	응암동 732-1	응암동 732-3	일반 도로	-	-	-
	소로	3	A	6	국지 도로	184	응암동 744-7	응암동 741-1	일반 도로	-	-	-
	소로	3	B	6	국지 도로	47	응암동 697-19	응암동 697-21	일반 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C	6	국지도로	23	응암동 741-4	응암동 742-8	일반도로	-	-	-

※( ) : 구역 내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2-A	• 도로 신설 - L=304(194)m, B=18m	•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 2-A	• 도로 신설 - L=50m, B=9m	• 정비사업 통행량 증가를 고려한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 2-B	• 도로 신설 - L=19(3)m, B=8m	• 존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진출입구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A	• 도로 신설 - L=184m, B=6m	• 기존 통행로의 대체 도로 신설
-	소로 3-B	• 도로 신설 - L=47m, B=6m	• 기존 통행로의 대체 도로 신설
-	소로 3-C	• 도로 신설 - L=23m, B=6m	• 기존 통행로의 대체 도로 신설

( ) : 구역 내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주차장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1,892.0	1,892.0	-	• 공원① 중복결정 • 규모 : 지하1층 • 연면적 : 1,850㎡

▣ 공간적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 결정범위		최초결정일	비고
				층수	연면적		
신설	①	주차장	응암동 700번지 일대	지하 1층	1,850.0㎡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주차장 신설 - 증) 1,892.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대림시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시장이용객의 주차이용 편의 제공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1,892.0	1,892.0	-	주차장 중복결정 (1,892.0㎡)
	②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3,207.0	3,207.0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소공원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소공원 신설 - 증) 1,892.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저층주거지 및 전통시장 이용객을 고려한 공원 조성
②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어린이공원 신설 - 증) 3,207.0㎡	• 대상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연접한 오래뜰어린이공원과 연계한 공원 조성

4)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165.0	165.0	-	-
	②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1,281.0	1,281.0	-	-
	③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587.0	587.0	-	-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공공공지 신설 - 증) 165.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전통시장 이용객을 고려한 공공공지 조성
②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공공공지 신설 - 증) 1,281.0㎡	• 대상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공지 조성
③	공공공지	응암동 700번지 일대	• 공공공지 신설 - 증) 587.0㎡	• 대상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공지 조성

5)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공청사	응암동 700번지 일대	-	증) 800.0	800.0	-	• 응암3동주민센터 • 규모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 2,400㎡

▣ 공간적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층수	연면적		
신설	①	공공청사 (복합청사)	응암동 700번지 일대	지하2층~지상4층	2,400.0㎡	-	응암3동 주민센터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복합청사)	응암동 700번지 일대	• 공공청사 신설 - 증) 800.0㎡	• 공공청사(복합청사) 신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획지	소계	-	증) 44,329.7	44,329.7	100.0	-
	획지1	-	증) 42,817.6	42,817.6	9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증) 376.6	376.6	0.8	종교용지
	획지3	-	증) 1,135.5	1,135.5	2.6	병원용지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허용용도	비고
신설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부대시설 및 제2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획지번호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60% 이하	종교용지
	획지3	50% 이하	병원용지

나) 용적률 계획

구분	획지번호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210% 이하	250% 이하	270% 이하	299.69% 이하	-
	획지2	200% 이하				종교용지
	획지3	250% 이하				병원용지

※ 획지2, 획지3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름

■ 기준용적률 완화 사항

획지번호	완화 항목	완화 사항	비고
획지1	소형주택 확보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6,200.31㎡ ÷ 42,817.60㎡) ÷ 100 = 14.48% = 10%	최대 10%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0%	최대 15%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46,174.68㎡ ÷ 42,817.60㎡) ÷ 100 = 107.84% = 10%	최대 10%
완화적용		20% 완화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획지번호	완화 항목	완화 사항	비고
획지1	공공 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a = 210% X (1,755㎡ ÷ 42,817.6㎡) X 1= 8.61%	최대 10%
	BF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4.00% (우수등급)	최대 5%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 ÷ 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a = 210% X (254㎡ ÷ 4,275㎡) X 0.1 = 1.25%	최대 5%
	고령서비스시설	•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공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 ÷ 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a = 210% X (250㎡ ÷ 4,275㎡) X 0.1 = 1.23%	최대10%

획지번호	완화 항목	완화 사항	비고
	친환경 건축물	• ZEB 인증 = 5.5% (ZEB 5등급)	최대 7.5% (보정계수 적용 시 최대 15%)
	사업성 보정계수	•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등으로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 5,969,319원 ÷ 2,565,316원 = 2.00	1.0~2.0 이내
완화적용		40% 완화	-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획지번호	완화 항목	완화 사항	비고
획지1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 20.00%	-
	법적상한용적률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 29.69%	-
완화 적용		49.69% 완화	-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	비고
신설	획지1	해발고도 140m이하 (35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 가좌로7길 변 ▪ 응암로4길 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 가좌로7나길 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라.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 가좌로7길 변	▪ 기존 상권 위치 및 가로활성화를 고려하여 가좌로7길변 배치 (권장)

마.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주동배치	▪ 공동주택	▪ 주요 근린생활가로변에 접한 저층부는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커뮤니티시설 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지형, 길 마당 등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응암로, 가좌로 등 간선도로에서 통경을 고려한 공간계획
입면계획	▪ 공동주택	▪ 건축물 저층부와 고층부를 구분하여 변화감 있는 입면계획 및 주변 단지와 연계된 디자인 계획
스카이라인	▪ 공동주택	▪ 백련산 변 완료된 대규모 단지 높이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연접한 두 구역간의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바.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 가좌로8길 변 ▪ 가좌로7나길 변 ▪ 응암로4길 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 획지1(공동주택 용지)	▪ 대상지 남측 공원과 대림시장 일대와 연계하여 폭원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사업지 주변	▪ 사업지 서측 응암로상 진출입 신호 교차로 설치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
진출입동선	-	▪ 사업지 진출입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이상 확보)
	-	▪ 공동주택용지 등 적정 차량 출입구 설치 권장지점 제시
	Ⓐ Ⓑ	▪ 사업지 주변 도로 확폭계획 및 차로운영계획 제시 - 사업지 북측 가좌로7길 도로확폭계획 : B=3.7~11.5m → 18.0m, L=약 285.0m - 사업지 동측으로 접한도로 확폭계획 : B=7~8m → 10~12.0m, L=약 180.0m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	- 사업지 중앙 가좌로7나길 도로확폭계획 : B=9.5~10.0m → 12~13.0m, L=약 267.0m
보행	-	▪ 사업지 주변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 사업지 주변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도 설치 : B=2.0m ▪ 사업지내 건축계획 수립시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 B=2.0m 이상
주차	▪ 사업지	▪ 법정주차대수 : 1,342대 ▪ 주차수요대수 : 1,660대 (2031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대수 : 1,752대 (법정대비 130.6%, 수요대비 105.6%)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 내·외부 인접도로상 속도저감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 도로 확폭 계획에 따른 기존 교통안전표지판 및 단속카메라 이동설치 ▪ 사업지 북측 가좌로7길 일부 유색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3) 환경관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응암로와 가좌로변에서 대상지를 바라보는 도시통경축 계획 • 백련산 일대 주거지의 높이 등 경관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계획	-
환경보전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재난방지	•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유지관리 •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함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1-1. 비오톱	-	○	• 비오톱유형평가 4,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지역	• 비오톱 분석결과 대상지는 대부분 지역이 보호가치가 낮은 비오톱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강화 도모
1-2.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시가화지역으로 산림식생 등 미분포	• 계획대상지 내부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계획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1-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해당 사항 없음	-
1-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보전	X	• 주변 보호지역 없음	-
2-1.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2-2.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우려 기준 만족 •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없음 •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 발생 우려	• 공사 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토양오염발생 시 신고 및 적법처리 계획 수립
2-3.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남고북저의 지형 • 경사 5° ~15° 미만의 완경사지로 전체의 60%이상 차지	• 공사 시 과도한 정지계획 지양 • 토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2-4. 수질,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0% ,수질오염 최소화	○	• 수질현황 BOD Ia~Ⅲ등급 • 공사 시 토사 및 우수유출 발생	• 생태면적률 40.01% 계획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2-5. 바람	바람길 확보	○	• 기상현황 분석	•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및 녹지계획
2-6. 열	열환경 최소화	○	• 계획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바람길 확보
2-7.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 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계획 수립
2-8.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2-9.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 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2-10.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은평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2-11. 소음·진동	소음·진동영향	○	• 공사 시 소음진동 영향 • 운영 시 도로교통소음 예상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2-12. 경관	조망권 확보	○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 주변지역과 연계된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2-13.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계획대상지 내에 공원, 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2-14.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대상지 북동측~북측~북서측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영향 예상	•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준수를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2-15. 보행친화공간	보행환경개선	○	•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보행환경 열악	• 현 교통체계 정비 및 주민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3-1.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은평구 인구 현황 조사	-
3-2.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은평구 주거 현황 조사	-

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비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시, 초과 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 전체 세대 수 : 1,286세대(115,570.78㎡) = 1,456세대 - 170세대(법적상한증가분 제외)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163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초과용적률 증가분 제외)의 연면적 10%이상 : 11,643.81㎡ ∴ 11,643.81㎡ 〉 11,557.078㎡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계획 - 163세대의 30% 이상 : 163세대 x 30% = 48.90세대 ∴ 63세대 〉 48.9세대

건립 규모	세대수	세대수 비율	연면적	연면적 비율
합 계	163세대	11.9%	11,643.81㎡	10.08%
40㎡이하	63세대	4.6%	3,456.81㎡	2.99%

40㎡초과~50㎡이하	-	-	-	-
50㎡초과~60㎡이하	100세대	7.3%	8,187.00㎡	7.09%

나)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299.69% 이하				
상한용적률		270.00%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99.69% - 270.00% = 29.69%				
	증가된 용적률의 50%	29.69% × 0.5 = 14.845% 42,817.6㎡ × 14.845% = 6,356.273㎡				
	연면적	6,356.273㎡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39.98㎡	54.87㎡	56	3,072.72㎡	소셜믹스
		59.98㎡	81.87㎡	-	-	
		84.98㎡	113.86㎡	29	3,301.94㎡	
		합 계		85	6,374.66㎡	기준충족

□ 2025년 제6차(‘25.04.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수정사항 - 구역면적, 용적률 계획,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면적, 주택공급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	○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하였음 - 응암동 741-1외 3개필지 구역 포함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 57,204.0㎡ → 57,929.7㎡ - 구역 포함되는 필지는 향후 지역여건, 주거형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공공지로 계획 - 획지면적 변경 : 42,272.2㎡ → 42,817.6㎡ - 순부담률 변경 : 4,254.92㎡(10.07%) → 4,300.55㎡(10.04%) - 총 세대수 변경 : 1,436 → 1,456세대(분양18, 임대2 증가)	-
		○조건사항 -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주요 시설 간 연계 동선, 지형 현황 및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 정비구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시종점 위치 및 선형 조정 검토	- 보행동선 및 공공보행통로 재조정함 • 공통 : 700 ~ 755번지 보행동선 연결 • 700번지 : 소로 3-C 보행동선연결 • 755번지 : 공공보행통로 선형 조정 (응암정보도서관, 대림시장~ 충암학교 후문 연결)	
		- 가좌로7나길 변 차량진출입구는 차량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 정비구역 차량진출입구와 이격 배치 등 교통처리계획 검토	- 차량 진출입구 이격 배치함	
		- 향후, 건축위원회(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심의 전 위원회 보고 할 것	- 건축위원회(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심의 전 위원회 보고 하겠음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2), 은평구 주택과(☎02-351-735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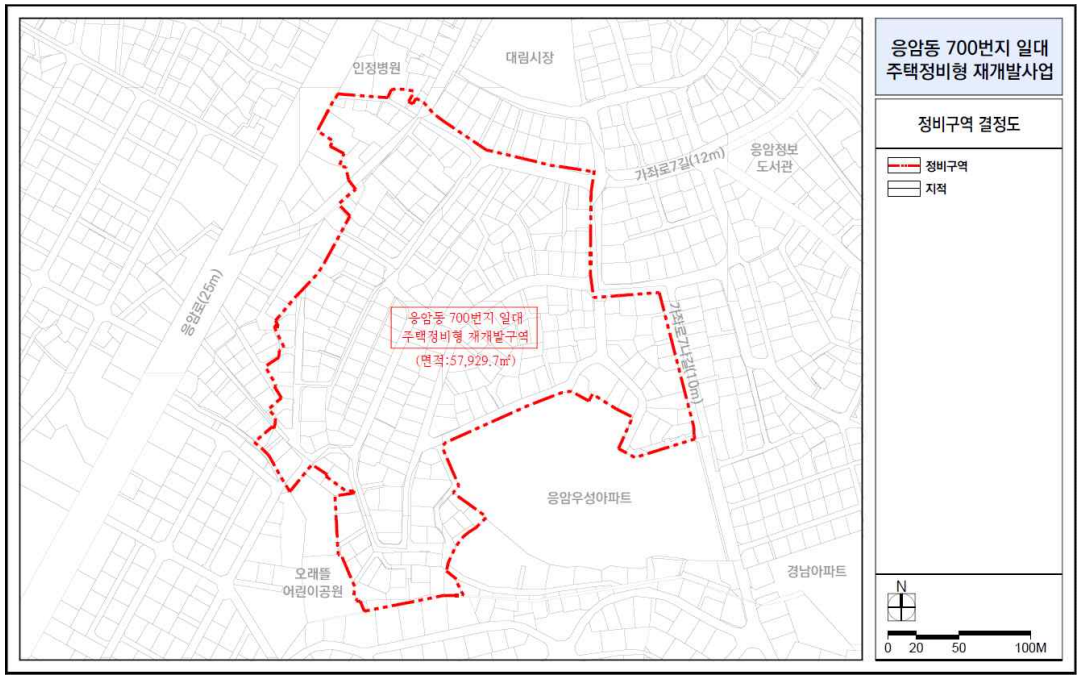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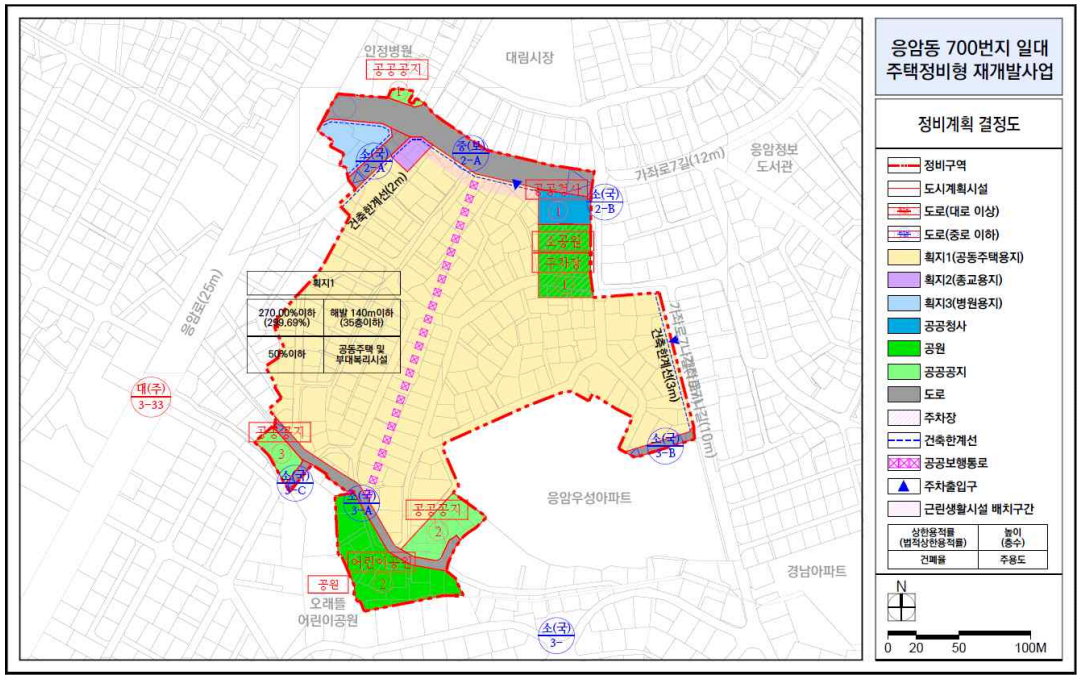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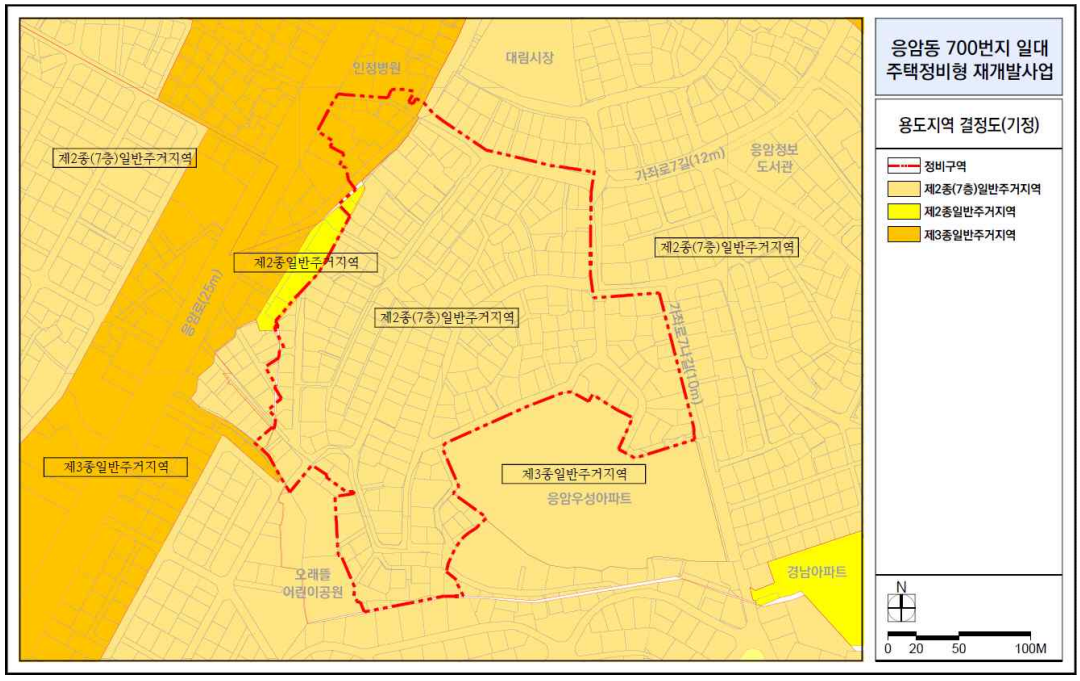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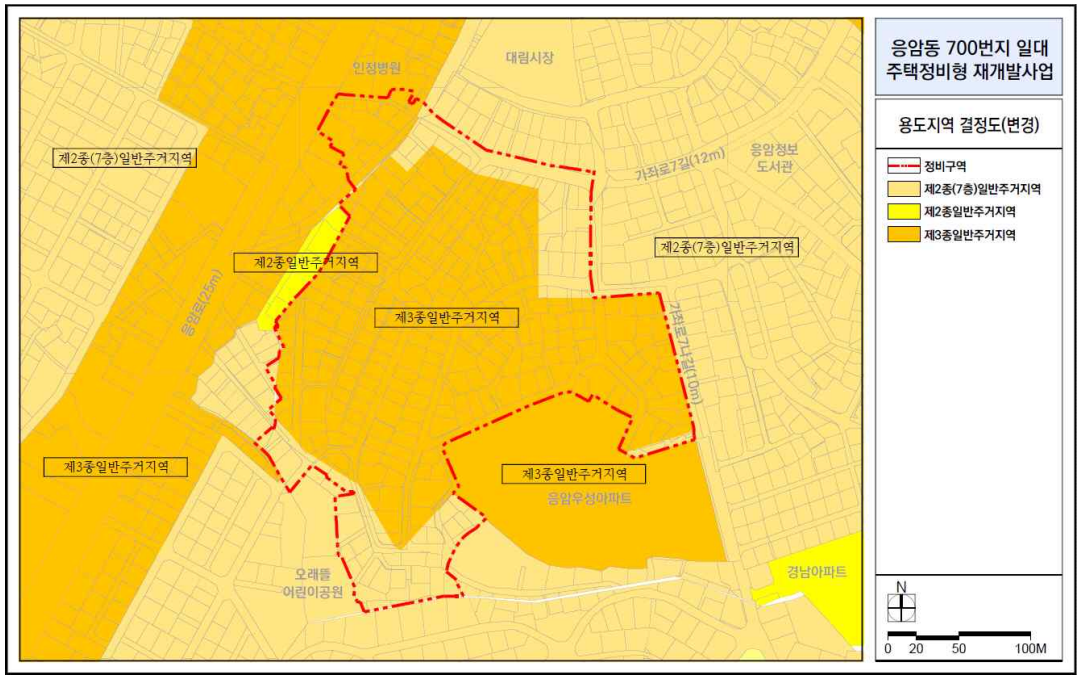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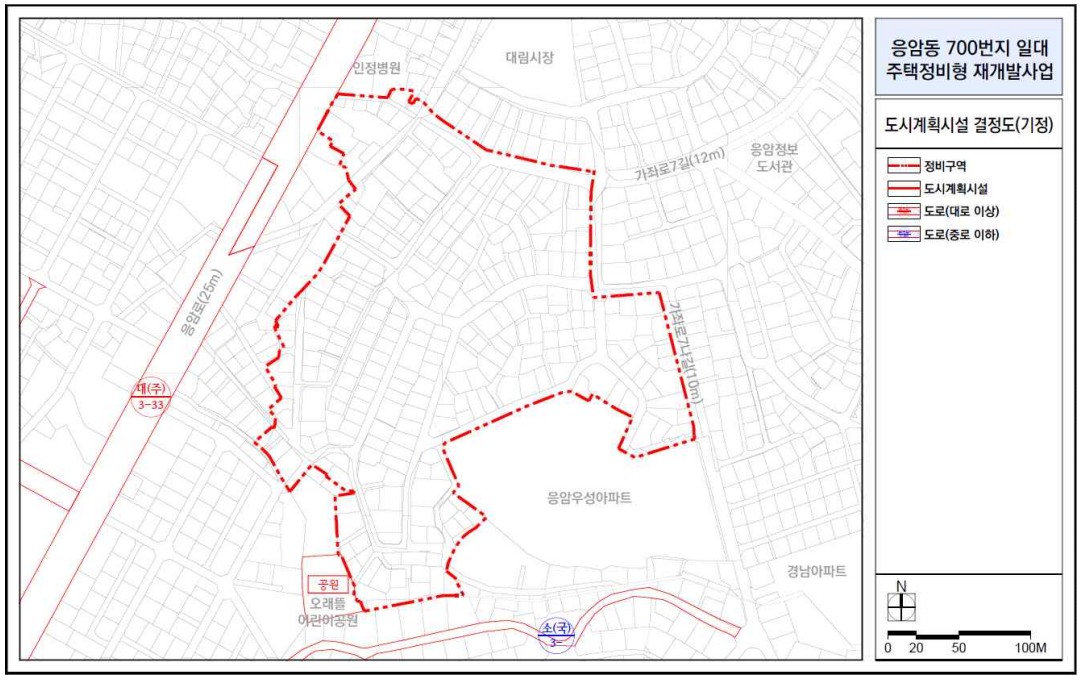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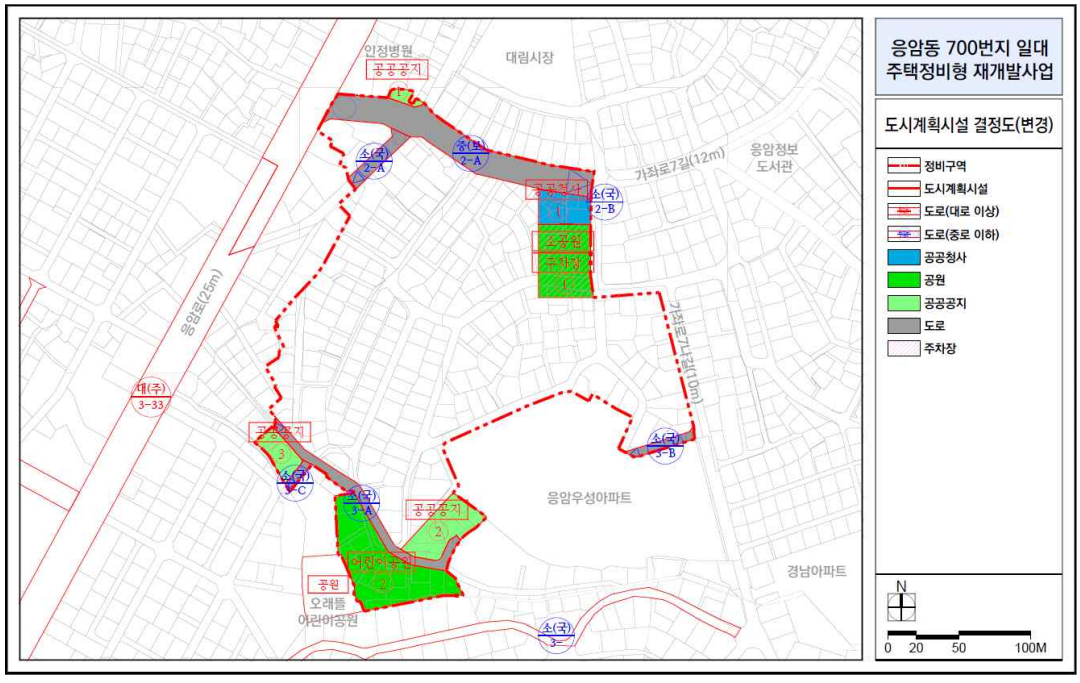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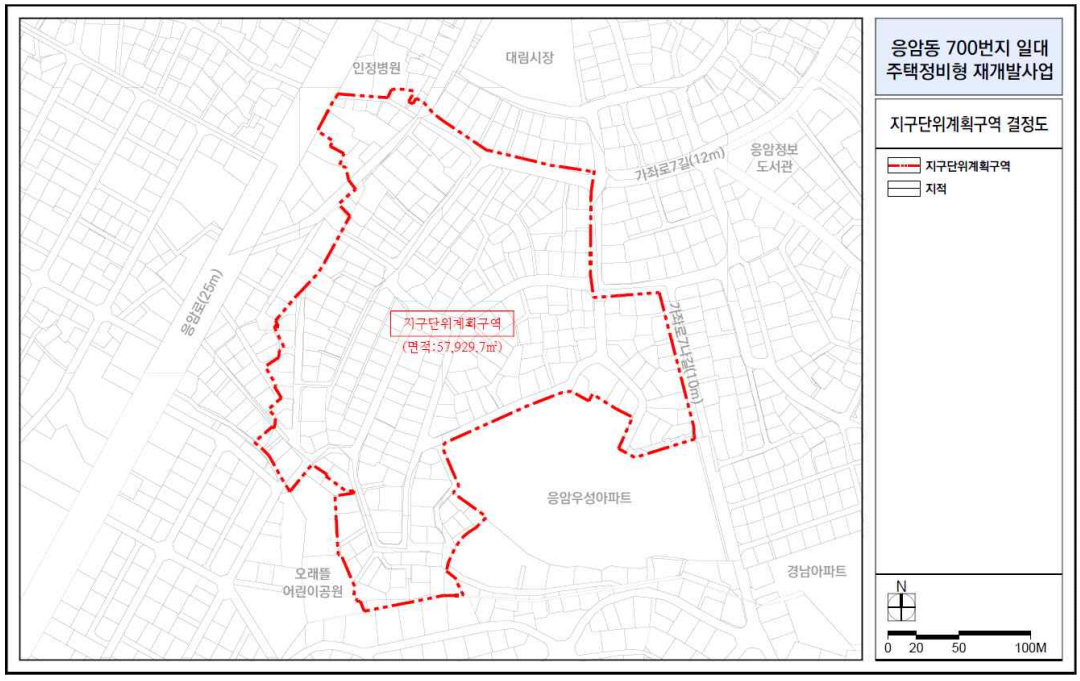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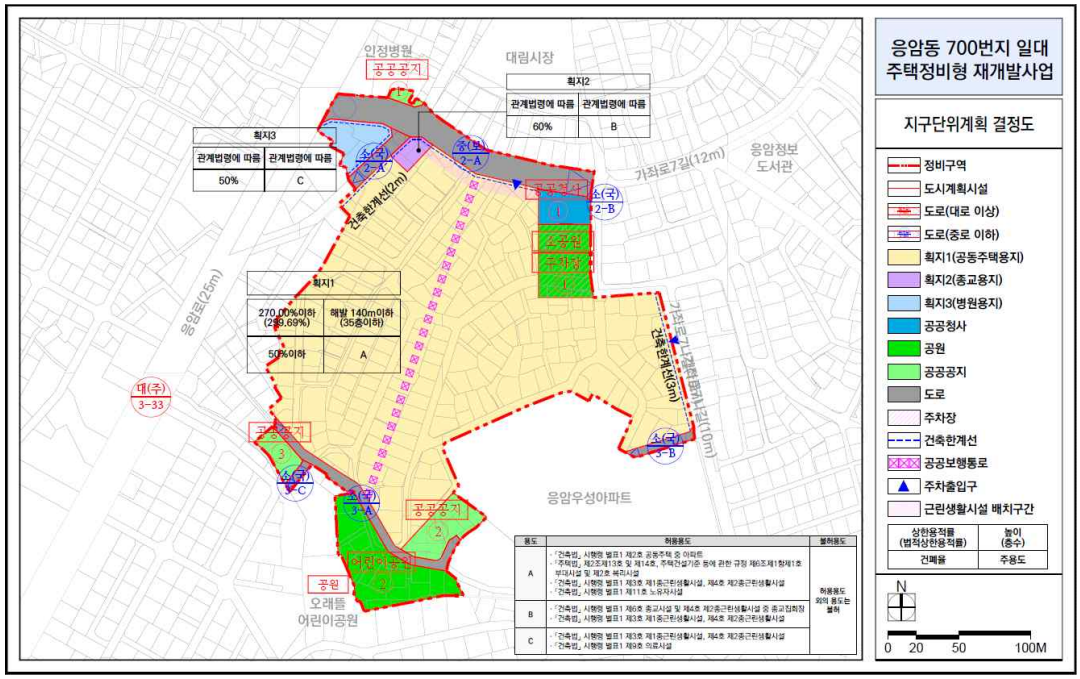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47호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4.2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응암동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59,407.0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총계		59,407.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2,867.2	21.7	-
	도로	7,836.0	13.2	-
	공원	5,031.2	8.5	2개소(1개소 주차장 복합화)
획 지	소계	46,539.8	78.3	-
	획지1	45,056.0	75.8	공동주택
	획지2	721.8	1.2	종교용지
	획지3	329.0	0.6	학교용지
	획지4	433.0	0.7	어린이집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407.0	-	59,407.0	100.0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지역	59,407.0	감) 45,056.0	14,351.0	24.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45,056.0	45,056.0	75.8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획지1	응암동 755번지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5,056.0	주변지역과의 정합성 및 향후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4.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5.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추정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사업비) ÷ 종전자산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5.85%
→ (956,614,088천원 - 644,032,994천원) ÷ 295,289,813천원 X 100% ≒ 105.85%
- 총수입 추정 : 956,614,088천원
- 총지출 추정 : 644,032,994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295,289,813천원</td></tr>
<tr><td>개별종전자산추정액</td><td>• 일반건축물(단독주택, 구분건물 등)
-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2023) X 보정률(실거래가, 평가전례 등 검토) X 면적
- 건물가액 = 건물재조달원가 X 잔존가치율 X 면적
- 구분건물가액 = 공동주택공시가격(2023) X 보정률(실거래가, 인근 유사물건 실거래가 등 검토) X 면적</td></tr>
<tr><td>추정분담금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천원)</th><th>추정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용39㎡형</td><td>437,200</td><td rowspan="3">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5.85%)</td><td rowspan="3">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분담 / -:환급)</td></tr>
<tr><td>전용59㎡형</td><td>694,200</td></tr>
<tr><td>전용84㎡형</td><td>887,900</td></tr>
</table></td></tr>
</table>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 자산 감정 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	6	국지도로	24	응암동 733-67	응암동 247-104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A	18	보조 간선도로	304 (110)	응암로	응암동 730-1	일반 도로	-	-	-
	중로	3	A	12	보조 간선도로	266	응암동 732-3	응암동 694-1	일반 도로	-	-	-
	중로	3	B	12	집산도로	107	응암동 730-1	응암동 730-30	일반 도로	-	-	-
	소로	1	A	10	집산도로	73	응암동 730-30	응암동 730-28	일반 도로	-	-	-
	소로	2	B	8	국지도로	19	응암동 732-1	응암동 732-3	일반 도로	-	-	-
	소로	2	C	9	집산도로	8	응암동 694-1	응암동 250-4	일반 도로	-	-	-
	소로	3	D	6	국지도로	108	응암동 714	남가좌동 3-56	일반 도로	-	-	-

( ) : 구역 내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	중로 2-A	• 도로 신설 - L=304(110)m, B=18m	•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중로 3-A	• 도로 신설 - L=266m, B=12m	•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중로 3-B	• 도로 신설 - L=107m, B=12m	• 정비사업 통행량 증가를 고려한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 1-A	• 도로 신설 - L=73m, B=10m	• 정비사업 통행량 증가를 고려한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 2-B	• 도로 신설 - L=19m, B=8m	• 존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진출입구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 2-C	• 도로 신설 - L=8m, B=9m	• 기존 통행로의 대체 도로 신설
-	소로 3-D	• 도로 신설 - L=108m, B=6m	• 기존 통행로의 대체 도로 신설

( ) : 구역 내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증) 2,141.0	2,141.0	-	공원① 중복결정 규모 : 지하1층 연면적 : 2,000㎡

▣ 공간적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층수	연면적		
신설	①	주차장	응암동 755번지 일대	지하 1층	2,000.0㎡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주차장 신설 - 증) 2,141.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대림시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시장이용객의 주차이용 편의 제공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증) 2,141.0	2,141.0	-	주차장 중복결정 (2,141.0㎡)
	②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증) 2,890.2	2,890.2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어린이공원 신설 - 증) 2,141.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저층주거지 주민 이용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고려한 공원 조성
②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어린이공원 신설 - 증) 2,890.2㎡	• 연접한 충암학교 및 응암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공원 조성

라.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응암동 272-113일대	27,920.0	-	27,920.0	75.12.29.	충암초·중·고교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	30% 이하	120% 이하	지상5층	충암초·중·고교

■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응암동 272-113일대	선형조정(면적변경 없음)	정비구역 신설로 인한 학교시설 선형조정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면적 기준(㎡)		계획면적(㎡)
			기준	면적	
합계		-	-	-	78,103.0
주민공동시설	소계	-	1,000세대 이상 = (500㎡ + 세대수 × 2.0㎡) × 1.25	4,340.0㎡ 이상	4,450.0
	경로당	획지	1,000~1,500세대 미만	580㎡ 이상	600.0
	어린이집	획지	1,000~1,500세대 미만	580㎡ 이상	600.0
	작은도서관	획지	1,000~1,500세대 미만	203㎡ 이상	250.0
	어린이놀이터	획지	-	-	1,000.0
	다함께돌봄센터	획지	500세대 이상	66㎡ 이상	320.0
	주민운동시설	획지	-	-	300.0
	재가노인복지시설	획지	-		250.0
	기타커뮤니티	획지	-		1,130.0
근린생활시설		획지	-	-	775.0
부대시설	소계	-	-	-	72,878.0
	관리사무소	획지	50세대 이상: 10+(세대수-50) x 0.05㎡	81.80㎡이상	100.0
	경비실 등	획지	-	-	50.0
	기계·전기실	획지	-	-	1,400.0
	지하주차장	획지	-	-	71,328.0

※ 공동이용시설 면적 기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름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설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9,407.0	응암동 755번지 일대	281	-	-	281	-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설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59,407.0	획지1	45,056.0	응암동 755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50% 이하	269.66%이하	299.69%이하	140m이하 (35층 이하)	-
			획지2	721.8	응암동 755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3	329.0	응암동 755번지 일대						
			획지4	433.0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1,486세대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100% 85㎡이하 규모 주택 계획

건립규모		기준	세대수	
			세대수(세대)	비율(%)
합 계		-	1,486	100.0
85㎡이하	60㎡이하	총 건립 세대수의 80% 이상	940	63.3
	60㎡초과~85㎡이하		546	36.7
85㎡초과		총 건립 세대수의 20% 미만	-	-

- 공공주택(의무)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총 연면적 10% 이상

→ 총 연면적의 10% 이상 계획 : 10.22% (12,409.38㎡/121,412.98㎡)

※국민주택규모 주택 증가분 제외

- 전체 공공주택(의무)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건설

→ 전용면적40㎡ 이하 세대수 30% 이상 계획 : 39.1% (68세대/174세대)

건립규모	기준	세대수(세대)	연면적(㎡)
합계	-	174(100.0%)	12,409.38
40㎡이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68(39.1%)	3,731.16
40㎡~50㎡이하	-	-	-
50㎡~60㎡이하	-	106(60.9%)	8,678.22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정비계획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초과용적률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공급계획						
	269.66%	299.69%	30.03%	15.015% (6,765.16㎡)	15.110% (6,808.19㎡)						
심의완화 사항	▪기준용적률 상향 : 20% (소형주택 추가 확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 - 공공보행통로,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친환경, BF, 보정계수 적용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초과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99.69%이하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지정 - 가좌로7길 변 : 2m - 가좌로7가길, 나길 변 : 3m										
기타계획	▪공공보행통로 폭원 6m 이상 설치 ▪가좌로7길, 7나길 변 근린생활시설 배치 권장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토지 (대지지분 포함)	건축물 환산면적		
	59,407.0㎡	45,056.0㎡	14,819.12㎡	3,278.23㎡	6,532.00㎡	7,046.2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률 : 10.03% (4,519.15㎡)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4,819.12㎡ + 3,278.23㎡ - 6,532.00㎡ - 7,046.20㎡ = 4,519.15㎡ ※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 면적 : 14,819.12㎡ = 7,836.00㎡(도로) + 5,031.20㎡(공원) + 1,951.92㎡(임대주택) = 14,819.12㎡ ※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3,278.23㎡ = 711.00㎡(주차장) + 2,567.23㎡(임대주택) = 3,278.23㎡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00% = 190.00% +20% = 210.00% (소형주택공급으로 기준용적률 20% 가산 적용)					

구 분	산정내용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허용용적률 : 244.78%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보정계수) = 210% + (17.39% × 2.00) = 244.78% ▪인센티브 = 17.39% [공공보행통로(5.44%, 돌봄시설(1.23%), 고령서비스시설(1.22%), 친환경(ZEB)(5.5%), BF인증(4.0%)) ▪보정계수 = 2.00 [서울시평균(5,969,319원) ÷ 대상지평균(2,964,075원)] ※2024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적용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 269.66%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 × α임대주택} = 244.78% + 210% × {(1.3 × 1.0000 x 0.0453 + 1 × 0.0596) = 269.66%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용적률 = 공공시설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10.00% / 210.00% = 1.0000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951.92㎡ / 43,104.08㎡ = 0.0453 α임대주택 = 임대주택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임대주택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2,567.23㎡ / 43,104.08㎡ = 0.0596
법적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99.69% 이하 = 정비계획용적률 269.66% + 초과용적률 30.03%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비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시, 초과 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 전체 세대 수 : 1,326세대 = 1,486세대 - 160세대(법적상한증가분 제외)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174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초과용적률 증가분 제외)의 연면적 10%이상 : 12,409.38㎡ ∴ 12,409.38㎡ 〉 12,141.298㎡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계획 - 174세대의 30% 이상 : 174 x 30% = 52.20세대 ∴ 68세대 〉 52.2세대

건립 규모	세대수	세대수 비율	연면적	연면적 비율
합 계	174세대	12.4%	12,409.38㎡	100.0%
40㎡이하	68세대	4.8%	3,731.16㎡	39.1%
40㎡초과~50㎡이하	-	-	-	-
50㎡초과~60㎡이하	106세대	7.6%	8,678.22㎡	60.9%

나)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299.69%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269.66%</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299.69% - 269.66% = 30.03%</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30.03% X 0.5 = 15.015%
45,056.0㎡ X 15.015% = 6,765.158㎡</td></tr>
<tr><td>연면적</td><td colspan="5">6,765.158㎡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39.98㎡</td><td>54.87㎡</td><td>39</td><td>2,139.93㎡</td><td rowspan="3">소셜믹스</td></tr>
<tr><td>59.98㎡</td><td>81.87㎡</td><td>-</td><td>-</td></tr>
<tr><td>84.98㎡</td><td>113.86㎡</td><td>41</td><td>4,668.26㎡</td></tr>
<tr><td colspan="2">합 계</td><td>80</td><td>6,808.19㎡</td><td>기준충족</td></tr>
</table>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응암로와 가좌로변에서 대상지를 바라보는 도시통경축 계획 • 백련산 일대 주거지의 높이 등 경관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계획	-
환경보전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재난방지	•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유지관리 •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함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1-1. 비오톱	-	○	• 비오톱유형평가 4,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지역	• 비오톱 분석결과 대상지는 대부분 지역이 보호가치가 낮은 비오톱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강화 도모
1-2.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시가화지역으로 산림식생 등 미분포	• 계획대상지 내부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 계획을 통한 녹지 공간 확보
1-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해당 사항 없음	-
1-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보전	X	• 주변 보호지역 없음	-
2-1.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2-2.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우려 기준 만족 •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없음 •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 계획 수립
2-3.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남고북저의 지형 • 경사 5° ~15° 미만의 완경사지로 전체의 60%이상 차지	• 공사시 과도한 정지계획 지양 • 토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2-4. 수질,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0% ,수질오염 최소화	○	• 수질현황 BOD Ia~III등급 • 공사시 토사 및 우수유출 발생	• 생태면적률 42.44% 계획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2-5. 바람	바람길 확보	○	• 기상현황 분석	•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및 녹지계획
2-6. 열	열환경 최소화	○	• 계획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바람길 확보
2-7.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 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계획 수립
2-8.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2-9.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 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2-10.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은평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2-11. 소음·진동	소음·진동영향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예상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및 운영시 방음벽 설치
2-12. 경관	조망권 확보	○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 주변지역과 연계된 조화롭고통일감 있는 계획 수립
2-13.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계획대상지 내에 공원, 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2-14.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대상지 북동측~북측~북서측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영향 예상	•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준수를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2-15. 보행친화공간	보행환경개선	○	•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보행환경 열악	• 현 교통체계 정비 및 주민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3-1.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은평구 인구 현황 조사	-
3-2.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은평구 주거 현황 조사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가칭)	996	1,486	490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동측 충암초, 중, 고등학교 입지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불허 • 충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유효 보도폭 20m 이상 확보 및 차량 속도 저감설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 마련 • 공사 시 가설방음시설 설치,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저감 등 공사시 안전 대책 마련 • 추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예정	-

13. 세입자 주거대책

● 조합설립인가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주민의 이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등을 논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음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방범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소에 방범등, CCTV 등 설치 • 방범등, CCTV 등의 설치 위치는 주민 요청 및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선정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응암동 755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증) 59,407.0	59,407.0	100.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407.0	-	59,407.0	100.0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지역	59,407.0	감) 45,056.0	14,351.0	24.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45,056.0	45,056.0	75.8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획지1	응암동 755번지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5,056.0	주변지역과의 정합성 및 향후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	6	국지도로	24	응암동 733-67	응암동 247-104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A	18	보조 간선도로	304 (110)	응암로	응암동 730-1	일반 도로	-	-	-
	중로	3	A	12	보조 간선도로	266	응암동 732-3	응암동 694-1	일반 도로	-	-	-
	중로	3	B	12	집산도로	107	응암동 730-1	응암동 730-30	일반 도로	-	-	-
	소로	1	A	10	집산도로	73	응암동 730-30	응암동 730-28	일반 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2	B	8	국지도로	19	응암동 732-1	응암동 732-3	일반도로	-	-	-
	소로	2	C	9	집산도로	8	응암동 694-1	응암동 250-4	일반도로	-	-	-
	소로	3	D	6	국지도로	108	응암동 714	남가좌동 3-56	일반도로	-	-	-

( ) : 구역 내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	중로 2-A	• 도로 신설 - L=604(110)m, B=18m	•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중로 3-A	• 도로 신설 - L=266m, B=12m	•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중로 3-B	• 도로 신설 - L=107m, B=12m	• 정비사업 통행량 증가를 고려한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 1-A	• 도로 신설 - L=73m, B=10m	• 정비사업 통행량 증가를 고려한 현황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 2-B	• 도로 신설 - L=19m, B=8m	• 존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진출입구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소로 2-C	• 도로 신설 - L=8m, B=9m	• 기존 통행로의 대체 도로 신설
-	소로 3-D	• 도로 신설 - L=108m, B=6m	• 기존 통행로의 대체 도로 신설

( ) : 구역 내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증) 2,141.0	2,141.0	-	• 공원① 중복결정 • 규모 : 지하1층 • 연면적 : 2,000㎡

▣ 공간적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층수	연면적		
신설	①	주차장	응암동 755번지 일대	지하 1층	2,000.0㎡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주차장 신설 - 증) 2,141.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대림시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시장이용객의 주차이용 편의 제공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증) 2,141.0	2,141.0	-	주차장 중복결정 (2,141.0㎡)
	②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증) 2,890.2	2,890.2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어린이공원 신설 - 증) 1,892.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저층주거지 주민 이용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고려한 공원 조성
②	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동 755번지 일대	• 어린이공원 신설 - 증) 2,890.2㎡	• 연접한 충암학교 및 응암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공원 조성

4)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응암동 272-113일대	27,920.0	-	27,920.0	75.12.29.	충암초·중·고교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	30% 이하	120% 이하	지상5층	충암초·중·고교

■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응암동 272-113일대	• 선형조정(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신설로 인한 학교시설 선형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소계	-	증) 46,539.8	46,539.8	100.0	-
	획지1	-	증) 45,056.0	45,056.0	96.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증) 721.8	721.8	1.6	종교용지
	획지3	-	증) 329.0	329.0	0.7	학교용지
	획지4	-	증) 433.0	433.0	0.9	국공립 어린이집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허용용도	비고
신설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부대시설 및 제2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획지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획지번호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60% 이하	종교용지
	획지3	60% 이하	학교용지
	획지4	60%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나) 용적률 계획

구분	획지번호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210% 이하	244.78% 이하	269.66% 이하	299.69% 이하	-
	획지2	200% 이하				종교용지
	획지3	200% 이하				학교용지
	획지4	200%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 획지2, 획지3, 획지4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름

■ 기준용적률 완화 사항

획지번호	완화 항목	완화 사항	비 고
획지1	소형주택 확보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5,322.39㎡ / 45,056.00㎡) ÷ 100 = 11.81% = 10%	최대 10%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0%	최대 15%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42,408.66㎡ / 45,056.00㎡) ÷ 100 = 94.12% = 10%	최대 10%
완화적용		20% 완화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획지번호	완화 항목	완화 사항	비 고
획지1	공공 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a = 210% X (1,460㎡ ÷ 45,056.0㎡) X 0.8 = 5.44%	최대 10%
	BF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4.00% (우수등급)	최대 5%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 ÷ 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a	최대 5%

획지번호	완화 항목	완화 사항	비 고
		= 210% × (254㎡ ÷ 4,320㎡) × 0.1 = 1.23%	
	고령서비스시설	•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공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 ÷ 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 a = 210% × (250㎡ ÷ 4,320㎡) × 0.1 = 1.22%	최대10%
	친환경 건축물	• ZEB 인증 = 5.5% (ZEB 5등급)	최대 7.5% (보정계수 적용 시 최대 15%)
	사업성 보정계수	•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등으로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 5,969,319원 ÷ 2,964,075원 = 2.00	1.0~2.0 이내
완화적용		34.78% 완화	-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획지번호	완화 항목	완화 사항	비 고
획지1	상한용적률	• 임대주택 기부채납 = 24.88%	-
	법적상한용적률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 30.03%	-
완화 적용		54.91% 완화	-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	비 고
신설	획지1	해발고도 140m이하 (35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 가좌로7길 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 가좌로7가길 변 ▮ 가좌로7나길 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라.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 가좌로7길 변 ▮ 가좌로7나길 변	▮ 기존 상권 위치 및 가로활성화를 고려하여 가좌로7길, 7나길변 배치 (권장)

마.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주동배치	▮ 공동주택	▮ 주요 근린생활가로변에 접한 저층부는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커뮤니티시설 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지형, 길 마당 등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응암로, 가좌로 등 간선도로에서 통경을 고려한 공간계획
입면계획	▮ 공동주택	▮ 건축물 저층부와 고층부를 구분하여 변화감 있는 입면계획 및 주변 단지와 연계된 디자인 계획
스카이라인	▮ 공동주택	▮ 백련산 변 완료된 대규모 단지 높이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연접한 두 구역간의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바.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 가좌로7길 ▮ 가좌로7가길 ▮ 가좌로7나길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 획지1(공동주택 용지)	▮ 응암정보도서관, 대림시장 일대와 충암학교 후문일대를 연결하는 폭원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이 하 여 백)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사업지 주변	▮ 사업지 서측 응암로상 진출입 신호 교차로 설치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
진출입동선	-	▮ 사업지 진출입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이상 확보)
	-	▮ 공동주택용지 등 적정 차량 출입구 설치 권장지점 제시
		▮ 사업지 주변 도로 확폭계획 및 차로운영계획 제시
	Ⓐ	- 사업지 북측 가좌로7길 도로확폭계획 : B=3.7~11.5m → 18.0m, L=약 285.0m
	Ⓑ	- 사업지 동측으로 접한도로 확폭계획 : B=7~8m → 10~12.0m, L=약 180.0m
	Ⓒ	- 사업지 중앙 가좌로7나길 도로확폭계획 : B=9.5~10.0m → 12~13.0m, L=약 267.0m
보행	-	▮ 사업지 주변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 사업지 주변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도 설치 : B=2.0m ▮ 사업지내 건축계획 수립시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 B=2.0m 이상
주차	▮ 사업지	▮ 법정주차대수 : 1,395대 ▮ 주차수요대수 : 1,706대 (2031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대수 : 1,788대 (법정대비 128.2%, 수요대비 104.8%)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 내·외부 인접도로상 속도저감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 도로 확폭 계획에 따른 기존 교통안전표지판 및 단속카메라 이동설치 ▮ 사업지 북측 가좌로7길 일부 유색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3) 환경관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응암로와 가좌로변에서 대상지를 바라보는 도시통경축 계획 • 백련산 일대 주거지의 높이 등 경관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계획	-
환경보전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재난방지	•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유지관리 •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함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1-1. 비오톱	-	○	• 비오톱유형평가 4,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지역	• 비오톱 분석결과 대상지는 대부분 지역이 보호가치가 낮은 비오톱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강화 도모
1-2.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시가화지역으로 산림식생 등 미분포	• 계획대상지 내부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계획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1-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해당 사항 없음	-
1-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보전	X	• 주변 보호지역 없음	-
2-1.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2-2.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우려 기준 만족 •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없음 •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 발생 우려	• 공사 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토양오염발생 시 신고 및 적법처리 계획 수립
2-3.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남고북저의 지형 • 경사 5° ~15° 미만의 완경사지로 전체의 60%이상 차지	• 공사 시 과도한 정지계획 지양 • 토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2-4. 수질,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0% ,수질오염 최소화	○	• 수질현황 BOD Ia~Ⅲ등급 • 공사 시 토사 및 우수유출 발생	• 생태면적률 42.44% 계획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2-5. 바람	바람길 확보	○	• 기상현황 분석	•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및 녹지계획
2-6. 열	열환경 최소화	○	• 계획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바람길 확보
2-7.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 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계획 수립
2-8.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2-9.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 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2-10.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은평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2-11. 소음·진동	소음·진동영향	○	• 공사 시 소음진동 영향 • 운영 시 도로교통소음 예상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2-12. 경관	조망권 확보	○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 주변지역과 연계된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계획 수립
2-13.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계획대상지 내에 공원, 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2-14.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대상지 북동측~북측~북서측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영향 예상	•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준수를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2-15. 보행친화공간	보행환경개선	○	•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보행환경 열악	• 현 교통체계 정비 및 주민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3-1.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은평구 인구 현황 조사	-
3-2.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은평구 주거 현황 조사	-

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비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시, 초과 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 전체 세대 수 : 1,326세대 = 1,486세대 - 160세대(법적상한증가분 제외)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174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초과용적률 증가분 제외)의 연면적 10%이상 : 12,409.38㎡ ∴ 12,409.38㎡ 〉 12,141.298㎡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계획 - 174세대의 30% 이상 : 174 x 30% = 52.20세대 ∴ 68세대 〉 52.2세대

건립 규모	세대수	세대수 비율	연면적	연면적 비율
합 계	174세대	12.4%	12,409.38㎡	100.0%
40㎡이하	68세대	4.8%	3,731.16㎡	39.1%
40㎡초과~50㎡이하	-	-	-	-
50㎡초과~60㎡이하	106세대	7.6%	8,678.22㎡	60.9%

나)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299.69%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269.66%</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299.69% - 269.66% = 30.03%</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30.03% × 0.5 = 15.015%
45,056.0㎡ × 15.015% = 6,765.158㎡</td></tr>
<tr><td>연면적</td><td colspan="5">6,765.158㎡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39.98㎡</td><td>54.87㎡</td><td>39</td><td>2,139.93㎡</td><td rowspan="3">소셜믹스</td></tr>
<tr><td>59.98㎡</td><td>81.87㎡</td><td>-</td><td>-</td></tr>
<tr><td>84.98㎡</td><td>113.86㎡</td><td>41</td><td>4,668.26㎡</td></tr>
<tr><td colspan="2">합 계</td><td>80</td><td>6,808.19㎡</td><td>기준충족</td></tr>
</table>

▢ 2025년 제6차(‘25.04.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수정사항 - 금회상정(안)으로 수정가결 요청	○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하였음	-
		○조건사항 -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주요 시설 간 연계 동선, 지형 현황 및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 정비구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시종점 위치 및 선형 조정 검토	- 보행동선 및 공공보행통로 재조정함 • 공통 : 700 ~ 755번지 보행동선 연결 • 700번지 : 소로 3-C 보행동선연결 • 755번지 : 공공보행통로 선형 조정 (응암정보도서관, 대림시장~ 충암학교 후문 연결)	
		- 가좌로7나길 변 차량진출입구는 차량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 정비구역 차량진출입구와 이격 배치 등 교통처리계획 검토	- 차량 진출입구 이격 배치함	
		- 향후, 건축위원회(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심의 전 위원회 보고 할 것	- 건축위원회(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심의 전 위원회 보고 하겠음	
		- 학교변 공원위치는 접근성 및 공원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 조정 검토	- 학교변 공원위치는 인접한 학교는 물론, 인근 응암정보도서관(생활문화센터), 충암 경로당 등 주요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원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심의(안) 위치로 계획한 사항임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2), 은평구 주택과(☎02-351-735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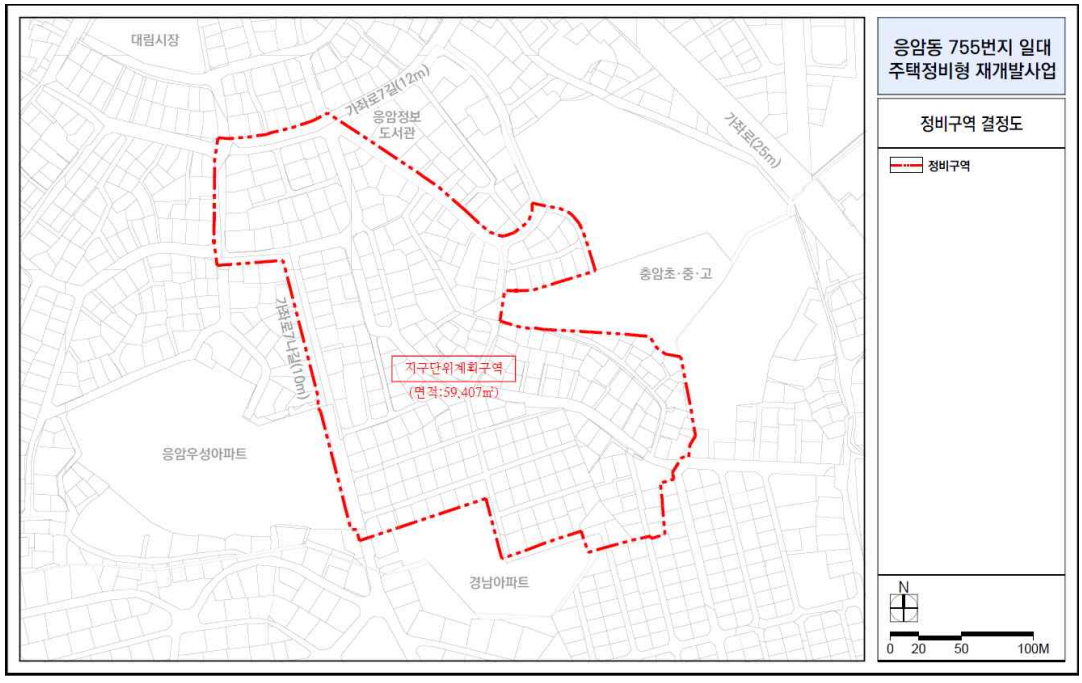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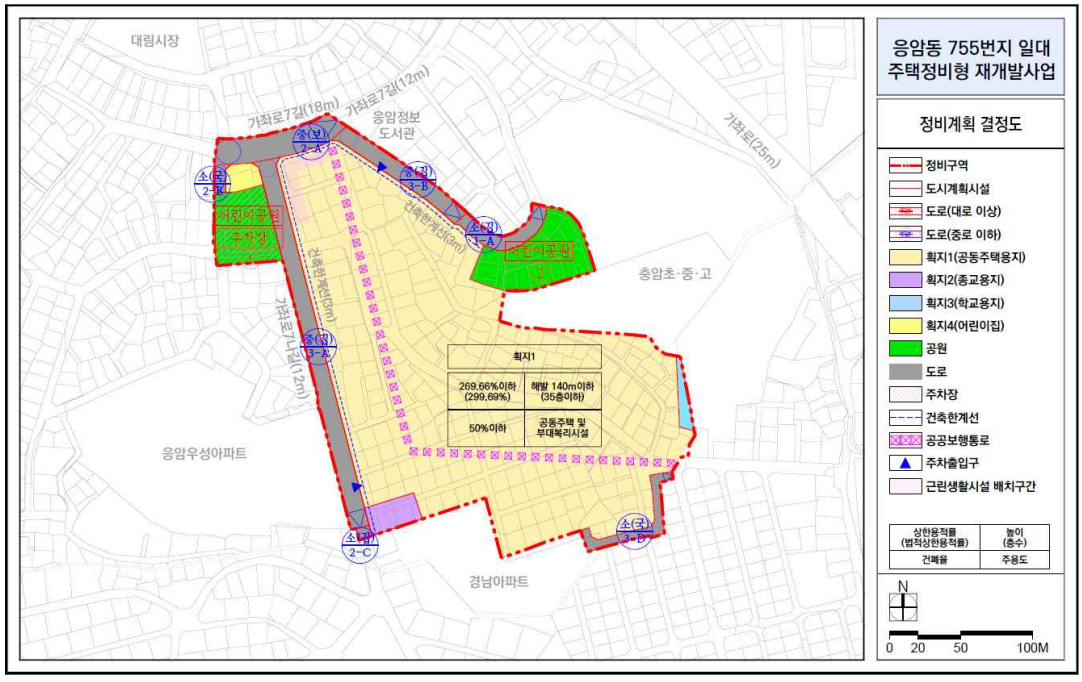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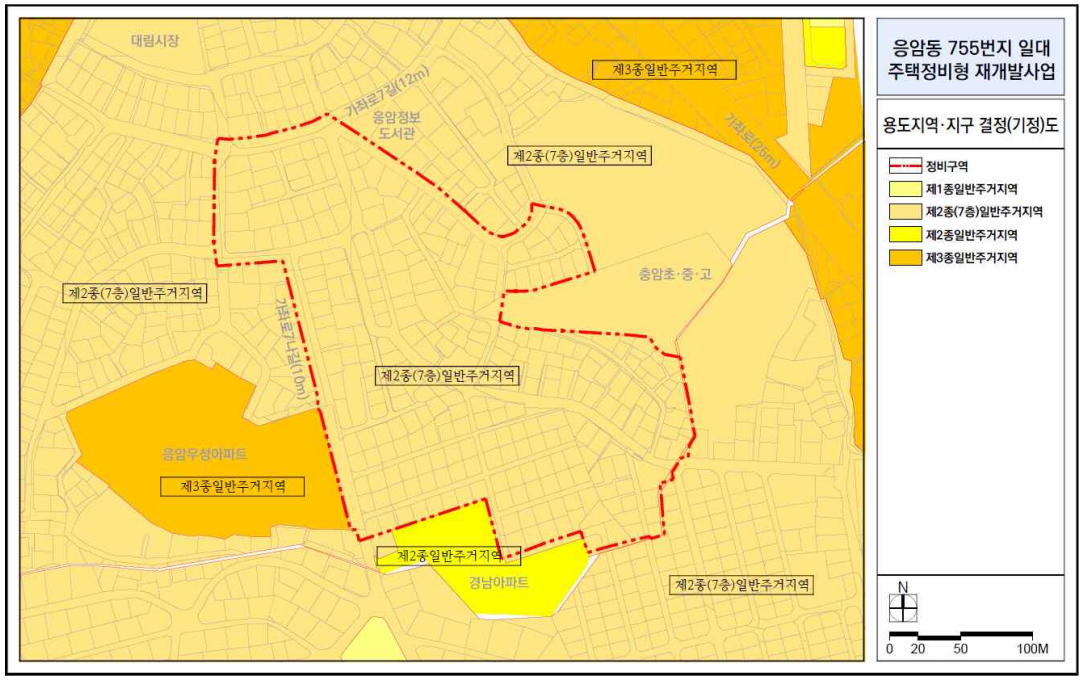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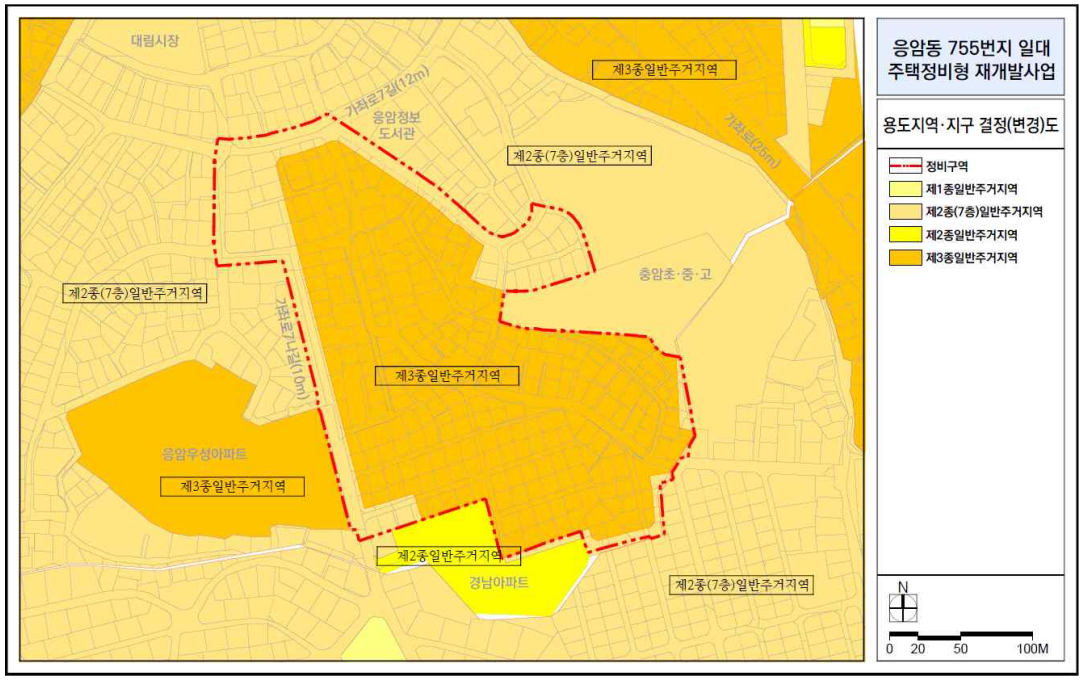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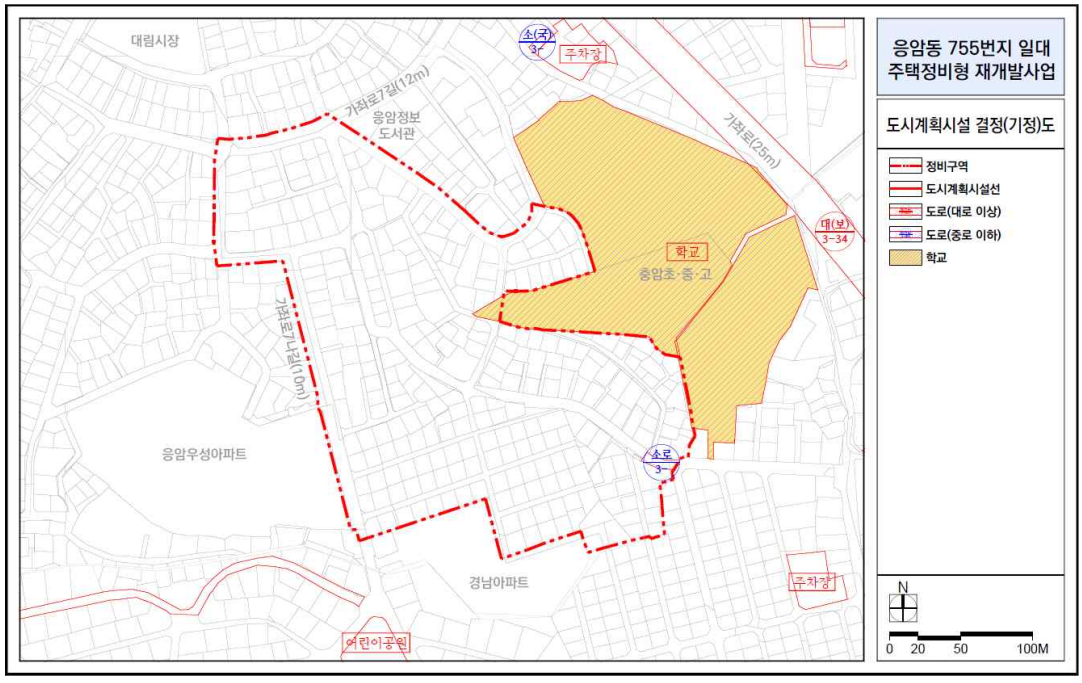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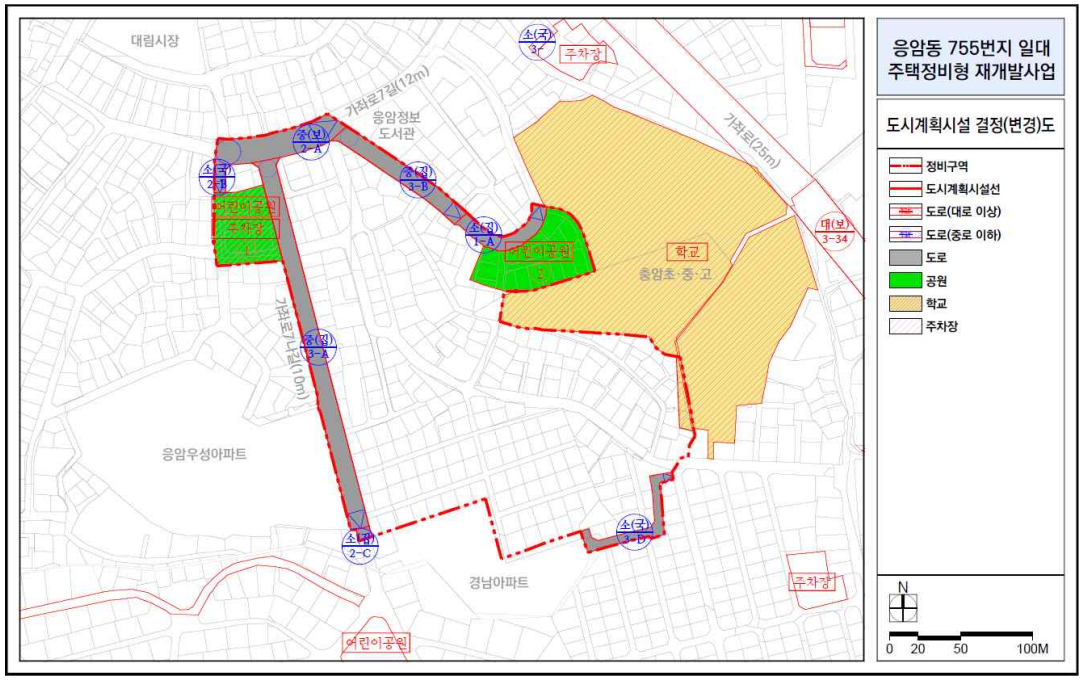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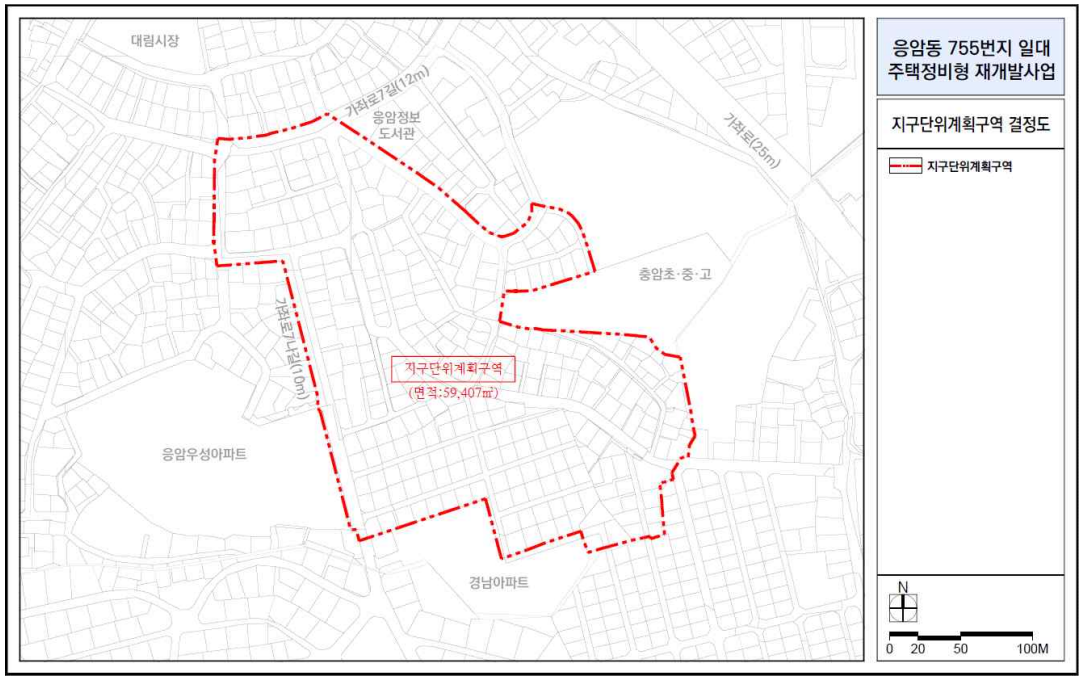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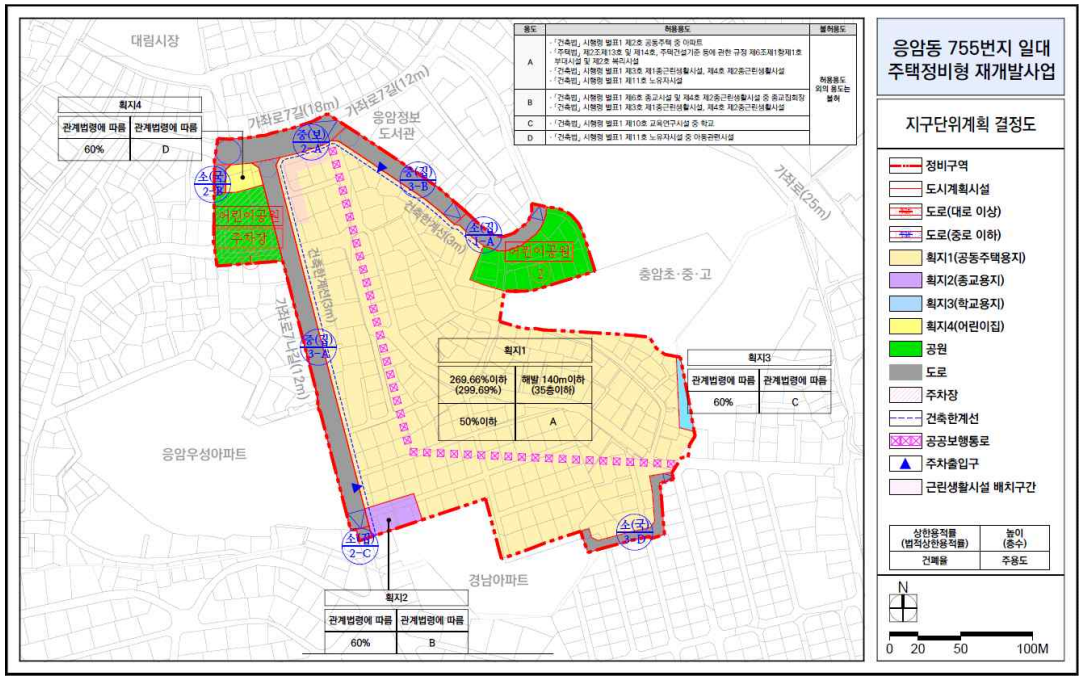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48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93호(2014.5.22.)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3호(2023.9.7.)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5호(2024.2.29.)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된 바 있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의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5.6.12.), 제2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5.7.14.)를 거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다. 면적 : 86,002.5㎡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16.06.30.)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에 대하여 변화하는 물류 · 유통 추세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물류시설과는 차별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서울 및 경부축 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심형 복합물류거점 조성 도모

3.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시행자 주소 및 명칭
      - 기정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21, 2층(마동, 하림지주 사옥), ㈜하림산업
      -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332, 3층 ㈜하림산업
   나. 대표자 성명 : 김기만

4.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22년 ~ 2029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토지소유자 직접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복합시설용지		83,183.2	96.7	
공공시설용지	도로	669.2	0.8	
	녹지	2,150.1	2.5	
	소계	2,819.3	3.3	
합계		86,002.5	100.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 계획(변경없음)

가) 단지 내 도로

구분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1	380	-	-	-	-	1	380	-
광로	1	380	-	-	-	-	1	380	광로 3-1
대로	-	-	-	-	-	-	-	-	-
중소	-	-	-	-	-	-	-	-	-
소로	-	-	-	-	-	-	-	-	-

나) 단지 외 도로

구분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2	19,950 (3,337)	2	19,950 (3,337)	-	-	-	-	-
광로	2	19,950 (3,337)	2	19,950 (3,337)	-	-	-	-	광로 1-28 광로 1-84
대로	-	-	-	-	-	-	-	-	-
중소	-	-	-	-	-	-	-	-	-
소로	-	-	-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항임

2) 유통업무설비 계획(변경없음)

가) 단지 외 유통업무설비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231,100.25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 일대	231,100.25	양재동 225 일대 유통업무설비 폐지

3) 자동차정류장 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74,411.6	증) 474.2	74,885.8	-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양재동 225 일대	74,411.6	증) 474.2	74,885.8	입체적 결정

※ 74,885.8㎡는 수평투영면적임

4) 광장 계획(변경없음)

가) 단지 외 광장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158,138.2	
광장	교통광장(양재I.C)	158,138.2	완충녹지 위치 일부 조정에 따른 광장 가각부 일부 변경

5) 공원·녹지 계획(변경없음)

가) 단지 내 녹지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2,150.1	
완충녹지	양재동 225 일대	857.4	양재대로변
경관녹지	양재동 225 일대	1,292.7	양재대로12길변

5의2.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변경)

가. 건축계획(변경)

1) 복합시설용지

○ 기정

구분		내용	비고
구역면적		83,183.20㎡	
건폐율		59.92%	60% 이하
용적률		799.50%	800% 이하
건축면적		49,846.70㎡	
연면적	지상	919,215.25㎡	
	지하	555,434.78㎡	
	소계	1,474,650.03㎡	
	용적률 산정용	665,051.88㎡	
높이		220.10m	대공방어협조구역 (해발고도 253.2m)
층수		지상 49~58층 / 지하 8층	

※ 향후 건축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상기 건축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내용	비고
구역면적		83,183.20㎡	
건폐율		59.92%	60% 이하
용적률		799.24%	800% 이하
건축면적		49,846.70㎡	
연면적	지상	929,030.23㎡	
	지하	545,442.06㎡	
	소계	1,474,472.29㎡	
	용적률 산정용	664,832.56㎡	
높이		220.10m	대공방어협조구역 (해발고도 253.2m)
층수		지상 49~58층 / 지하 9층	지하층 층수 표기 변경

※ 향후 건축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상기 건축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복합용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복합시설용지

구분			내용	비고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설 (연면적 50% 이상)	물류시설 (연면적 30% 이상)		창고시설(창고, 집배송 시설, 화물차 차고 등) 등	-
	상류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등) 등	-
지원시설	R&D (연면적 20% 이상)	연구전용공간 (연면적 15% 이상)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장(도시형 공장) 등	-
		직접연구 지원공간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시설

1)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 물류시설 : 창고시설(창고, 집배송 시설, 화물차 차고 등) 등

○ 상류시설 :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등) 등

2) 지원시설

○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공장(도시형 공장),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근린생활시설 등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배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배치

7. 공공기여계획(변경)

가. 공공기여 총량(변경없음)

○ 4,068억원(토지가액의 25% 내)

나. 공공기여 종류, 위치, 규모(변경)

○ 기정

종류		비율	규모	위치	비고
합 계		4,068억원			
공공기여금	소계	69%	• 2,804억원	-	-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25%	• 1,000억원	-	-
	서초구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25%	• 1,000억원	-	-
	외부교통대책(사업자 분담금 제외)	18%	• 741억원	-	-
	물류지원시설	1%	• 63억원	-	-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25%	• 연면적 : 23,600.00㎡ • 대지 지분 : 1,331.25㎡	• 양재대로변 (대상지 북서측)	1,000억원
공공임대주택(사회혼합 계획)		6%	• 세대수 : 84Type 45세대 • 대지 지분 : 473.07㎡	• 양재대로12길변 (대상지 남서측)	264억원

※ 공공기여는 비율로 우선 결정하고, 향후 사업시행자와 귀속 주체간 협의를 거쳐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공공기여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 변경

종류		비율	규모	위치	비고
합 계		4,068억원			
공공기여금	소계	69%	• 2,804억원	-	-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25%	• 1,000억원	-	-
	서초구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25%	• 1,000억원	-	-
	외부교통대책(사업자 분담금 제외)	18%	• 741억원	-	-
	물류지원시설	1%	• 63억원	-	-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25%	• 연면적 : 23,600.00㎡ • 대지 지분 : 1,331.41㎡	• 양재대로변 (대상지 북서측)	1,000억원
공공임대주택(사회혼합 계획)		6%	• 세대수 : 84Type 45세대 • 대지 지분 : 494.98㎡	• 양재대로12길변 (대상지 남서측)	264억원

※ 공공기여는 비율로 우선 결정하고, 향후 사업시행자와 귀속 주체간 협의를 거쳐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공공기여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공공기여 제공방법, 설치주체, 귀속주체(변경)

○ 기정

종류		제공방법	설치주체	비용주체	귀속주체
공공기여금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 비용	• 서울시	• 사업시행자	• 서울시(도로계획과)
	서초구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 비용	• 서초구	• 사업시행자	• 서초구(청소행정과)
	외부교통대책(사업자 분담금 제외)	• 비용	• 서울시	• 사업시행자	• 서울시(도로계획과)
	물류지원시설	• 비용	• 서울시	• 사업시행자	• 서울시(물류정책과)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 건물+대지지분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서울시(첨단산업과)
공공임대주택		• 건물+대지지분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서울시(공공주택과)

○ 변경

종류		제공방법	설치주체	비용주체	귀속주체
공공기여금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 비용	• 서울시	• 사업시행자	• 서울시(도로계획과)
	서초구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 비용	• 서초구	• 사업시행자	• 서초구(청소행정과)
	외부교통대책(사업자 분담금 제외)	• 비용	• 서울시	• 사업시행자	• 서울시(도로계획과)
	물류지원시설	• 비용	• 서울시	• 사업시행자	• 서울시(물류정책과)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 건물+대지지분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서울시(첨단산업과)
공공임대주택		• 건물+대지지분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서울시(임대주택과)

※ 공공임대주택 관련 부서 이관에 따라 귀속주체 변경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9.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7,090.0	-	3,067,090.0	2001.12.15 (서고 제2001-418호)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조서

(1) 도로(변경없음)

(2) 철도(변경없음)

(3) 주차장(변경없음)

(4) 자동차정류장(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터미널	양재동 225 일대	74,411.6 (입체적 결정)	증) 474.2	74,885.8 (입체적 결정)	24.02.29 (서고 제2024-115호)	입체적 결정조서 참조

※ 74,885.8㎡는 수평투영면적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만 기재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양재동 225 일대	층수(층)	지하8층~ 지상2층	-	지하8층~ 지상1층, 지상3층	24.02.29 (서고 제2024-115호)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결정도 (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 면적 (㎡)	74,411.6	증) 474.2	74,885.8		
				연면적 (㎡)	444,690.02	-	444,690.02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결정) - 층수(기정) : 지하8층~지상2층 - 층수(변경) : 지하8층~지상1층, 지상3층 - 수평투영면적(기정) : 74,411.6㎡ - 수평투영면적(변경) : 74,885.8㎡ 증) 474.2㎡ - 연면적 : 444,690.02㎡ - 대지지분(기정) : 25,084.4㎡ - 대지지분(변경) : 25,087.4㎡	• '24.02.29 결정된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층별 평면도 변경에 따라 수평투영면적 증가 및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의 층수는 물류시설에 해당하는 층수 표기(물류시설 지하8층은 건축물 지하9층 해당)

나) 공간시설 결정조서

(1) 광장(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3) 공원(변경없음)

다) 유통공급시설 결정조서

(1)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3) 시장(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1) 학교(변경없음)

(2) 도서관(변경없음)

(3) 연구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결정조서

(1) 하천(변경없음)

(2) 유수지(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불허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2) 권장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3) 지정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적률 결정조서(변경없음)

(2) 완화기준 설정표(변경없음)

(3)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4) 높이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경관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특정지역에 대한 세부지침(변경없음)

5)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없음)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⑪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5외 6	86,002.50	-	86,002.50	-

※ 해당 부분만 기재

2)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없음)

<table>
<tr><th colspan="4">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colspan="2" rowspan="2">도시관리 계획</td><td colspan="2">용도지역 · 지구</td><td>일반상업지역</td></tr>
<tr><td colspan="2">도시계획시설</td><td>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도로, 녹지</td></tr>
<tr><td colspan="4">가구 및 획지</td><td>· 복합용지 신설 : 83,183.20㎡</td></tr>
<tr><td rowspan="5">건축물 용도</td><td colspan="3">불허용도</td><td>· 지원시설 중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6.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에 한함)</td></tr>
<tr><td rowspan="4">허용 용도</td><td rowspan="2">R&D 용도 (연면적 20% 이상)</td><td>연구전용 공간 (연면적 15% 이상)</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관련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td></tr>
<tr><td>직접연구 지원공간</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td></tr>
<tr><td colspan="2">간접연구 지원공간</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9호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td></tr>
<tr><td colspan="3">지정용도</td><td>· 물류시설법 제2조제7의2호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물류시설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연면적의 60% 이상</td></tr>
<tr><td rowspan="3">건축물 밀도</td><td colspan="3">건폐율</td><td>· 60% 이하</td></tr>
<tr><td colspan="3">용적률</td><td>·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 – / 800% 이하</td></tr>
<tr><td colspan="3">최고높이</td><td>· 224m 이하</td></tr>
<tr><td>공공 기여</td><td colspan="3">공공기여율</td><td>· 토지가액의 25% 이내</td></tr>
<tr><td rowspan="4">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3">건축한계선</td><td>· 양재대로12길변 10m
· 양재대로변 5m</td></tr>
<tr><td colspan="2">대지내 공지</td><td>공개공지</td><td>· 주요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위치권장</td></tr>
<tr><td colspan="2">경관</td><td>의장 및 색상</td><td>· 외부색은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서울색정립 및 체계화의 경관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 권장</td></tr>
<tr><td colspan="3">차량출입불허구간</td><td>· 양재대로, 양재대로12길변 지정 진출입구간 외 차량출입 불허</td></tr>
</table>

※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입체적 결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밀도 및 용도, 공공기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개공지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참조

2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⑪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5외 6	86,002.50	-	86,002.50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조서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	44 ~48	집산도로	380	양재동 222 광 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도로	-	'01.09.22. (서초구고시 제312호)	양재대로12길

(2) 자동차정류장(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양재동 225 일대	74,411.6 (입체적 결정)	증) 474.2	74,885.8 (입체적 결정)	24.02.29 (서고 제2024 -115호)	입체적 결정조서 참조

※ 74,885.8㎡는 수평투영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양재동 225 일대	층수(층)	지하8층~ 지상2층	-	지하8층~ 지상1층, 지상3층	24.02.29 (서고 제2024 -115호)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결정도 (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 투영 면적 (㎡)	74,411.6	증) 474.2	74,885.8		
				연면적 (㎡)	444,690.02	-	444,690.02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결정) - 층수(기정) : 지하8층~지상2층 - 층수(변경) : 지하8층~지상1층, 지상3층 - 수평투영면적(기정) : 74,411.6㎡ - 수평투영면적(변경) : 74,885.8㎡ 증) 474.2㎡ - 연면적 : 444,690.02㎡ - 대지지분(기정) : 25,084.4㎡ - 대지지분(변경) : 25,087.4㎡	• '24.02.29 결정된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층별 평면도 변경에 따라 수평투영면적 증가 및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의 층수는 물류시설에 해당하는 층수 표기(물류시설 지하8층은 건축물 지하9층 해당)

나) 공간시설 결정조서

(1)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양재대로변	19,506.1 (857.4)	-	19,506.1 (857.4)	-	-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양재동 225	1,292.7	-	1,292.7	24.02.29 (서고 제2024 -115호)	-

※ ( )내는 특별계획구역 내 면적임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위치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	계획내용	비고
복합용지	특별계획구역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	A	83,183.2	• 하나의 용지에 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상업·주거 시설의 융·복합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높이고, 편의·휴식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계획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분	용도지역	불허용도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일반상업지역	• 지원시설 중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6.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에 한함)	• 좌동	-

○ 허용용도 결정조서

구분	용도지역	허용용도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일반상업지역	R&D 용도 (연면적 20% 이상)	연구 전용 공간 (연면적 15%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관련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R&D 용도 (연면적 20% 이상)	연구 전용 공간 (연면적 15%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관련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

구분	용도지역	허용용도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직접연구지원공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직접연구지원공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간접연구지원공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7호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9호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	간접연구지원공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	

○ 지정용도 결정조서

구분	용도지역	지정용도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일반상업지역	·물류시설법 제2조제7의2호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물류시설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연면적의 60% 이상	·좌동	-

나) 건축물 개발밀도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폐율·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 이하	·59.92%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 - / 800% 이하	·799.50% 이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밀도 및 용도, 공공기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다)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변경없음)

○ 높이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224m 이하	• 220.1m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기타	대지 내 공지	공개 공지	• 주요 보행 결절부에 공개공지 위치권장	• 좌동

2) 경관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경관	의장 및 색상	• 외부색은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서울색정립 및 체계화의 경관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 권장	• 좌동

3)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 양재대로, 양재대로12길변 지정 진출입구간 외 차량출입 불허	• 좌동

※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참조

– 이하 여백 –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총괄표)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역	• 좌동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도로	•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도로(669.2㎡), 녹지(2,150.1㎡)
가구 및 획지				• 복합용지 신설 : 83,183.20㎡	• 좌동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지원시설 중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6.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에 한함)	• 좌동
	허용용도	R&D 용도 (연면적 20% 이상)	연구 전용 공간 (연면적 15%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관련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 좌동
			직접 연구 지원 공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간접연구 지원공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9호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
	지정용도			• 물류시설법 제2조제7의2호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물류시설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연면적의 60% 이상	• 좌동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59.92%
	용적률			•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 – / 800% 이하	• 799.50% 이하
	최고높이			• 224m 이하	• 220.1m
공공기여	공공기여율			• 토지가액의 25% 이내	• 토지가액의 24.99%
기타 사항에	건축한계선			• 양재대로12길변 10m • 양재대로변 5m	• 좌동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주요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위치권장	·좌동
	경관	의장 및 색상	·외부색은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서울색정립 및 체계화의 경관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 권장	·좌동
	차량출입 불허구간		·양재대로, 양재대로12길변 지정 진출입구간 외 차량출입 불허	·좌동

※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입체적 결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밀도 및 용도, 공공기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개공지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참조

1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 게재 생략

14. 기타사항

○ 2023년도 제2차(‘23.12.26.)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의결) 및 2025년도 제2차(‘25.7.14.)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의결)를 이행할 것.

– 2023년도 제2차(‘23.12.26.)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변경)

· (조건1)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변경)

· (조건2) 신양재 IC신설에 대한 사업자 분담률 상향

· (권장사항)

계	도시계획	건축	교통·물류	경관·환경	재해	기타
26	1	6	9	4	3	3

– 2025년도 제2차(‘25.7.14.)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분야별 의견

계	교통	건축	소방	에너지
26	7	8	7	4

· 조건1 변경

(변경전)

[조건1]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

○ 신분당선 역사(만남의광장(가칭)) 신설을 적극 협조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에 따라 수혜자가 사업비를 분담한다.

– 우선 양재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시행사가 분담금 1차분 500억을 부담

▸ 납부시기는 역사 착공시 30%, 준공시 70%를 납부

– 향후 분담금은 검증 결과에 따라 가감한다.

(변경후) *2025년도 제2차(‘25.7.14.)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

[조건1]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

○ 신분당선 역사(가칭 만남의 광장역) 신설을 적극 협조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되,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의 검증결과에 따라 전체 분담금 규모를 정한다.

○ 사업시행자는 역사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분담금) 부담을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 우선,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시행자는 사전절차 이행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1차 분담금 500억원을 부담하되, 전체 분담금은 검증결과에 따라 가감한다.

– 1차분담금은 사전절차 이행과정에 필요시 납부하고, 나머지 분담금*은 역사착공시 30%, 도시첨단물류단지 준공시 70%를 납부하기로 한다.

단, 역사착공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준공시까지 지연될 경우 등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준공처리 전 나머지 분담금은 100% 납부한다.

* 나머지분담금 : 전체 분담금에서 1차 분담금 실집행액을 제외한 금액

○ 경제적 타당성 부족, 기술적한계 등 사정변경으로 신분당선역사 신설 추진이 무산될 경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 대안을 결정한다.

1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 물류정책과(☎ 02-2133-4083),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79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 등

가. 편입토지조서(변경없음)

1) 단지 내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서초구 양재동	222-3	대	3,866.30	3,595.65	서울특별시	착공전 취득예정
	225	대	24,449.90	24,178.91	KB부동산신탁(주)	실제 소유자 ㈜하림산업이 토지 확보 100%
	225-4	대	12,059.90	10,669.86	KB부동산신탁(주)	
	225-5	대	12,060.80	10,504.00	KB부동산신탁(주)	
	225-6	대	12,316.10	10,647.69	KB부동산신탁(주)	
	225-7	대	4,159.20	2,561.60	KB부동산신탁(주)	
	226	대	26,036.90	23,844.79	KB부동산신탁(주)	
합계			94,949.10	86,002.50	-	-

나.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 등(변경없음)

1) 토지

가) 단지 외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서초구 양재동	226-1	잡종지	966.00	966.00	서울특별시	사용
	226-2	대	1,046.60	1,046.60	서울특별시	사용
	226-3	대	21.70	21.70	서울특별시	사용
	226-4	잡종지	1,265.70	40.89	서울특별시	사용
합계			3,300.00	2,075.19	-	-

※ 붙임1.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도면

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구역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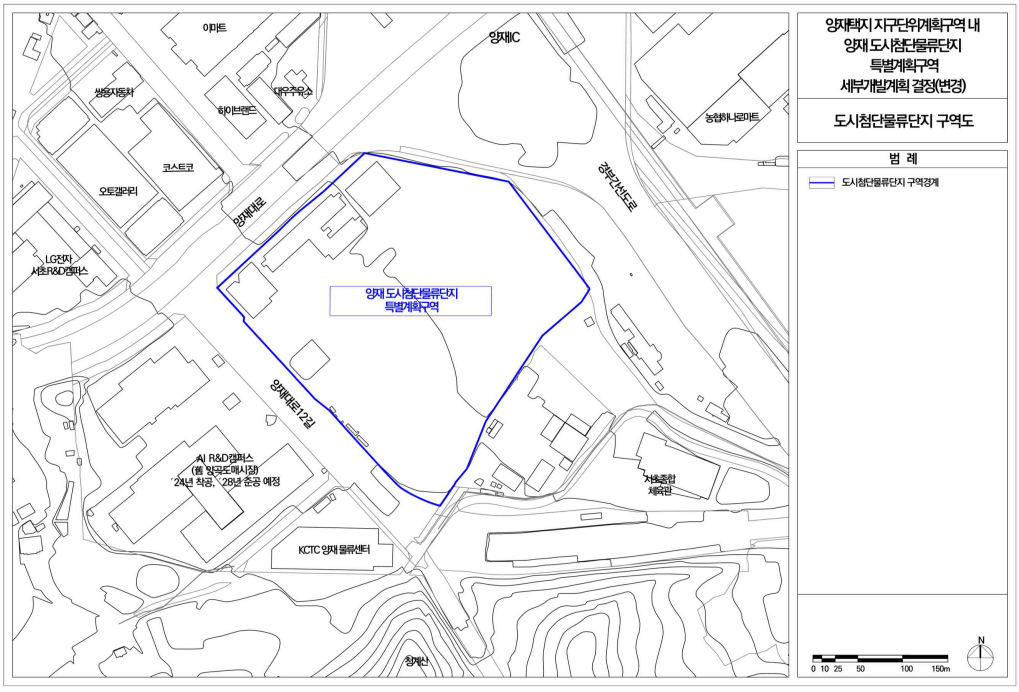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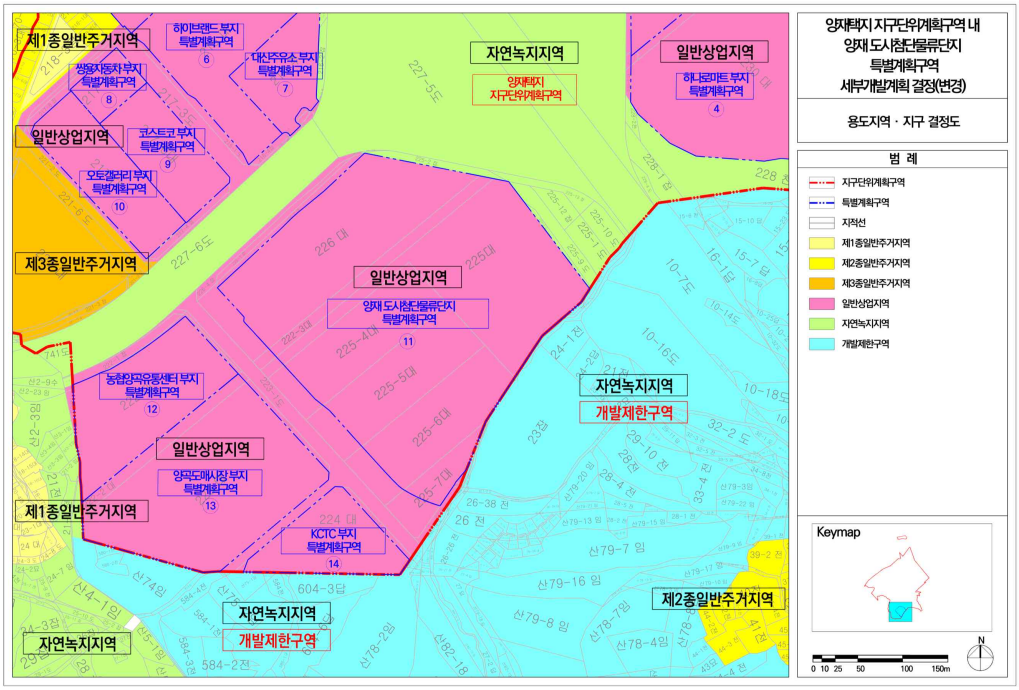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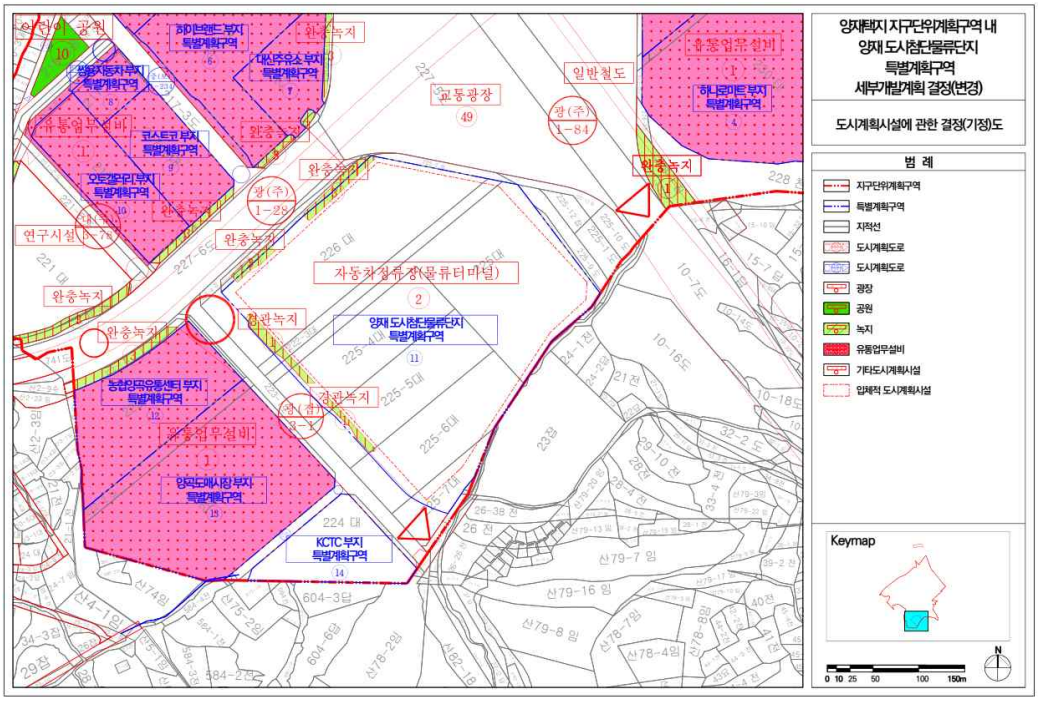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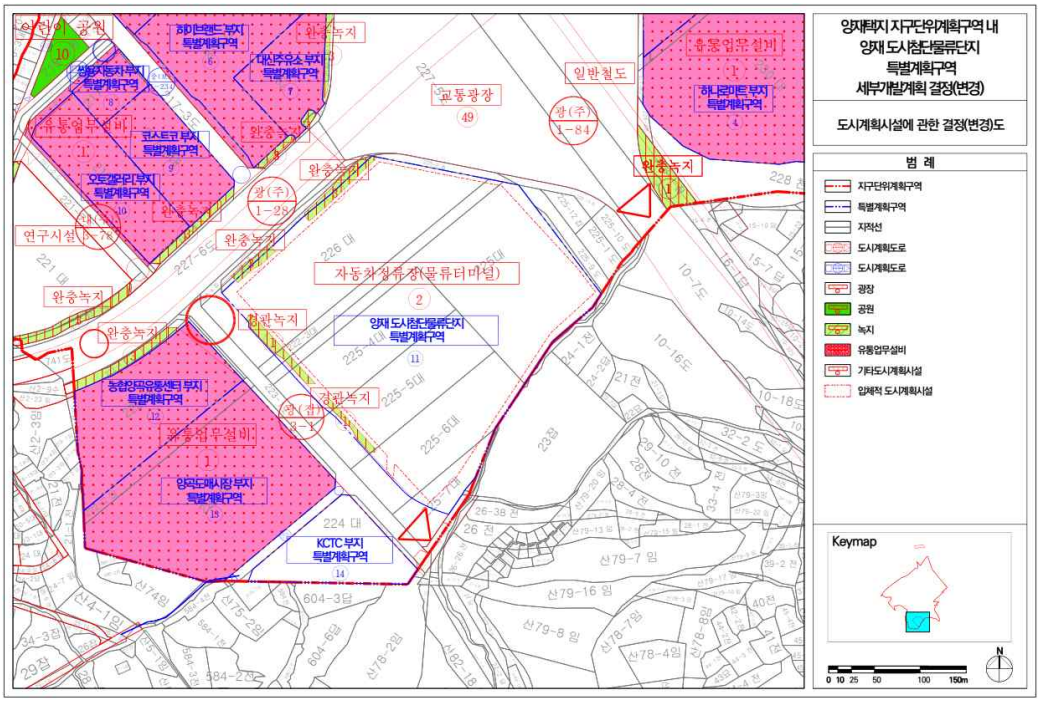

마.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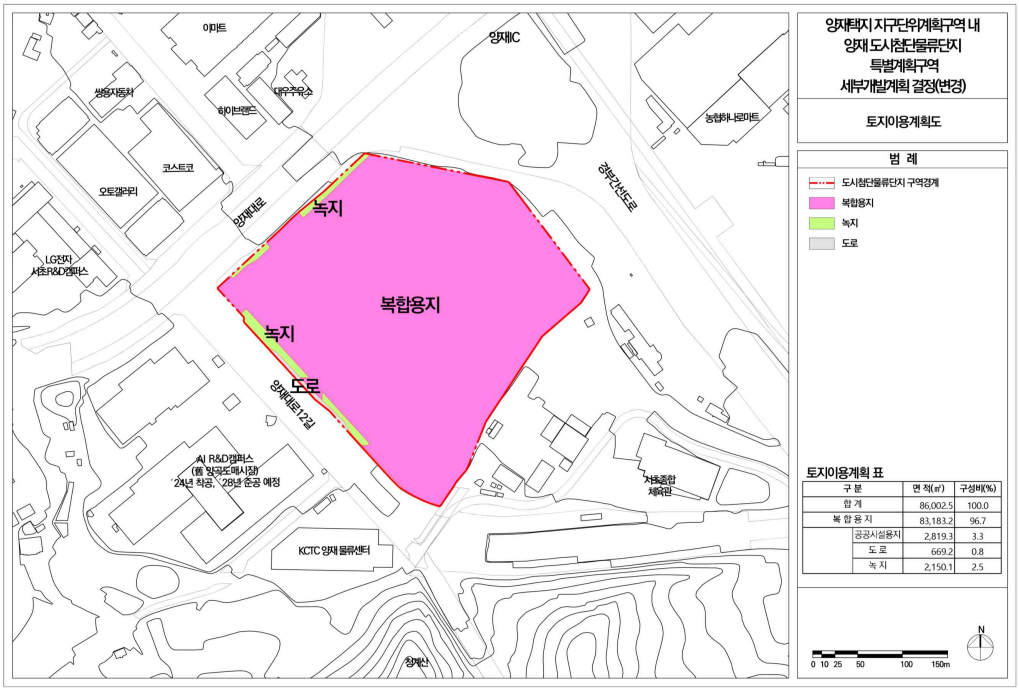

※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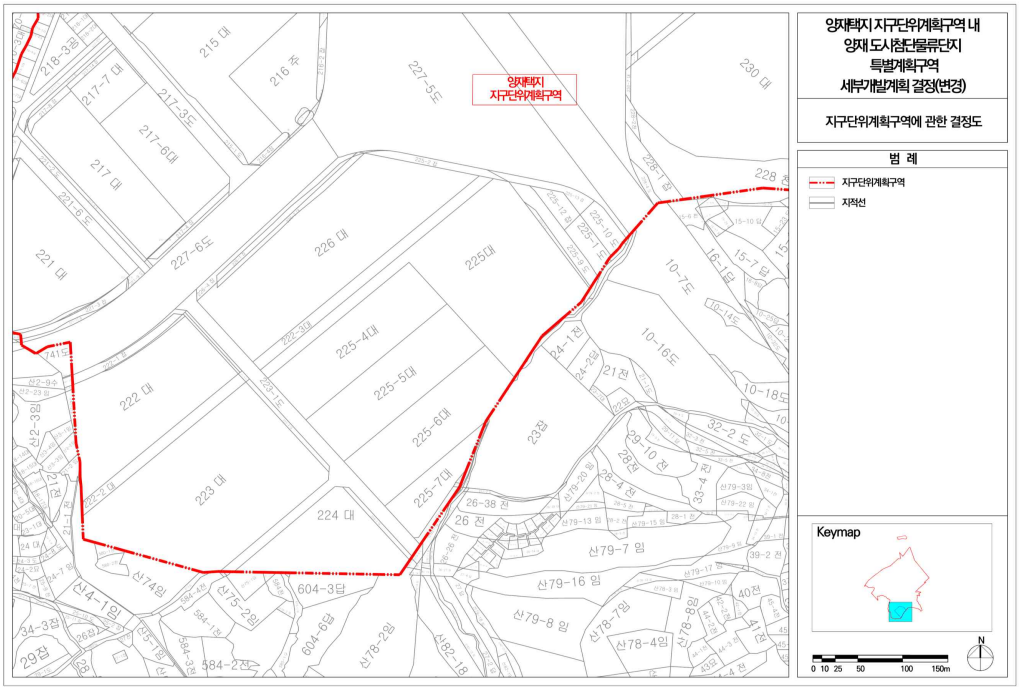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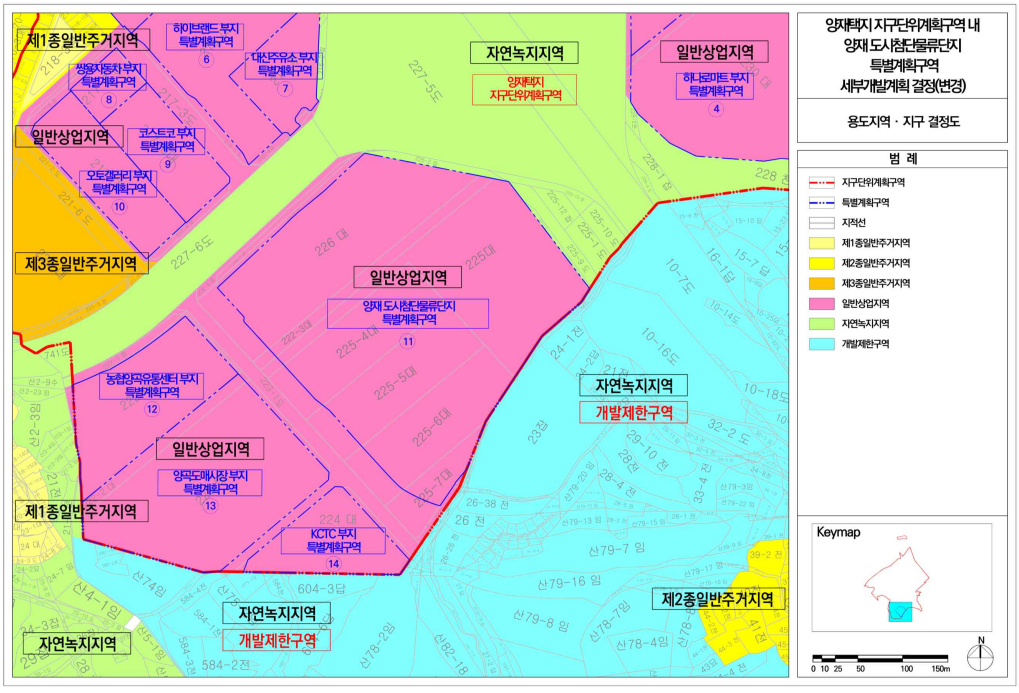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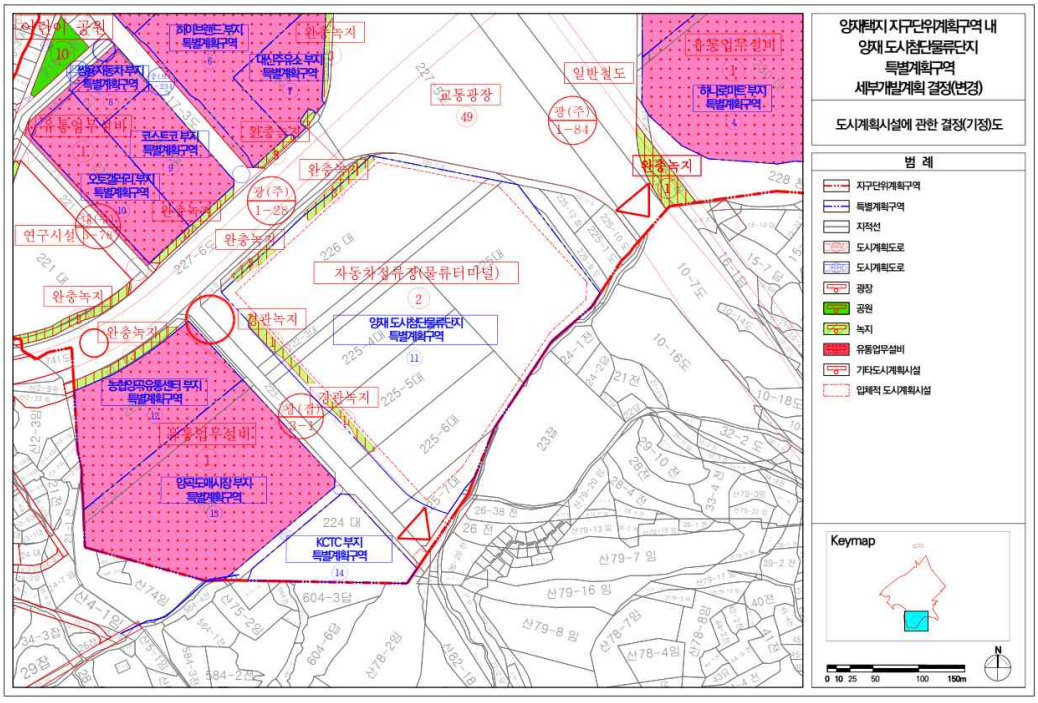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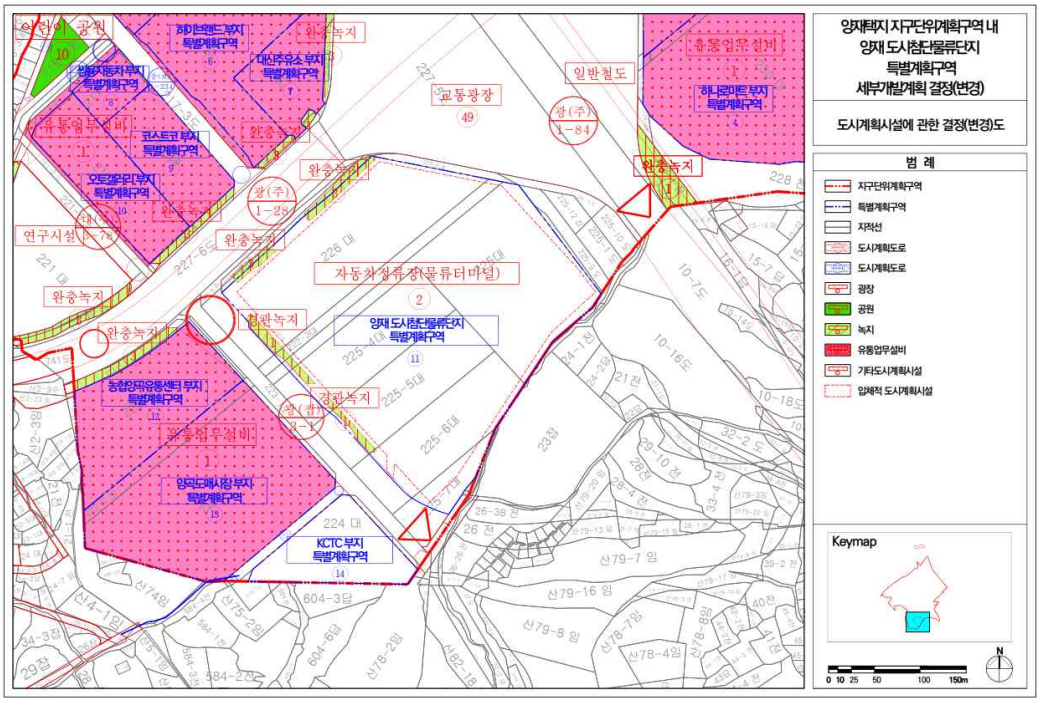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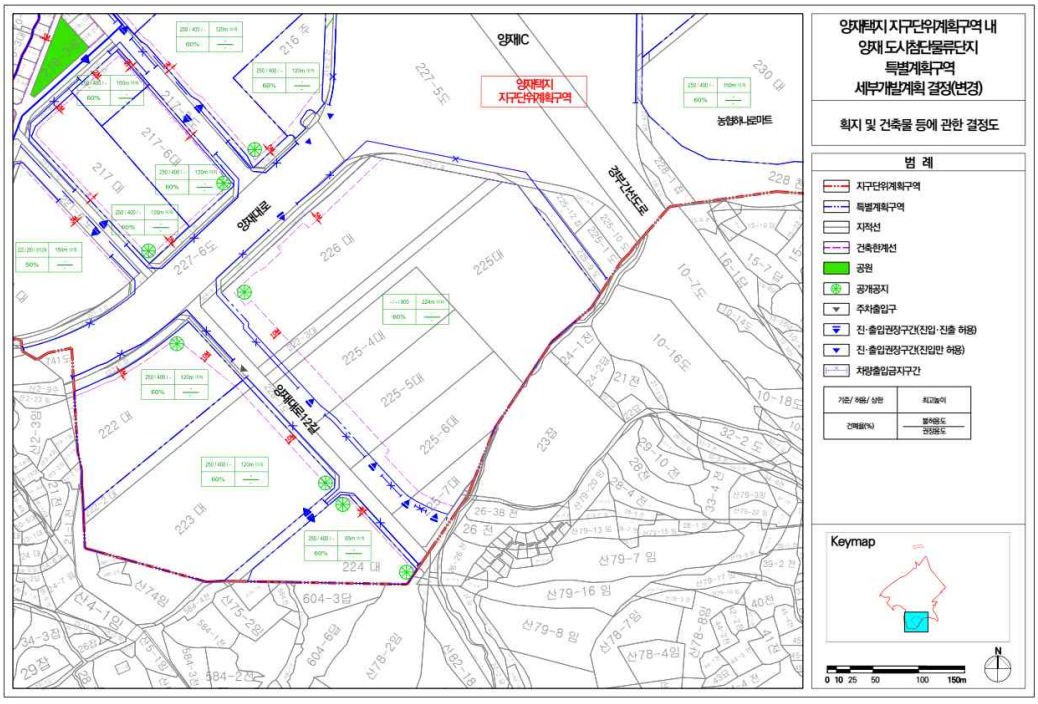

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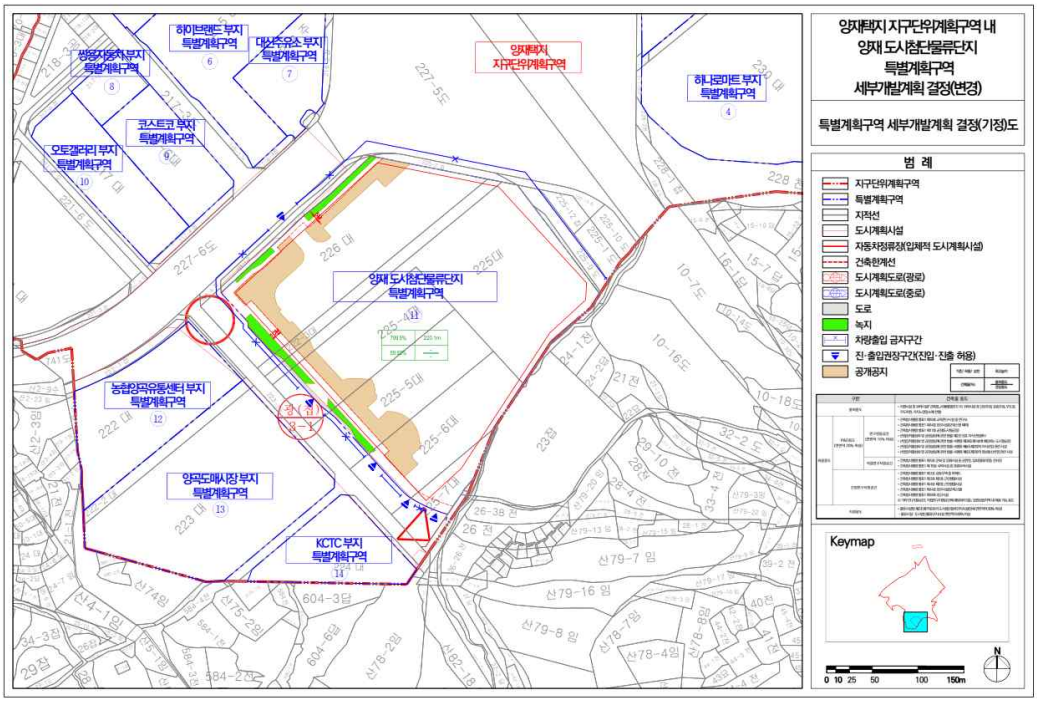

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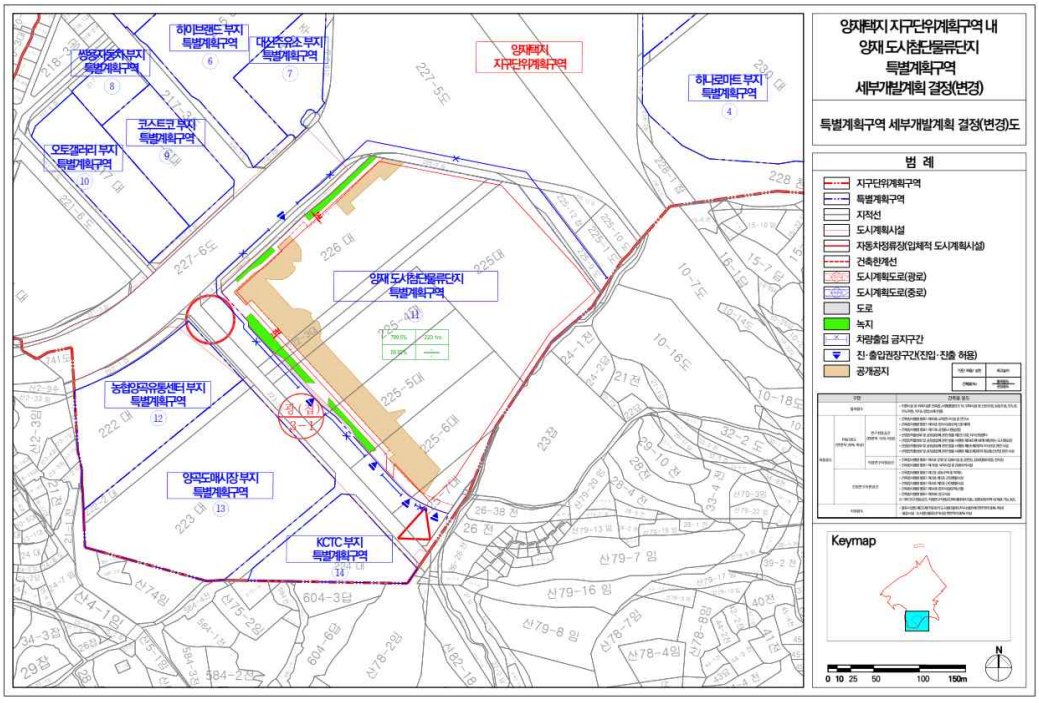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4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대학교)

건설부고시 제124호(1970.3.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5호(2014.7.2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호(2024.1.1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관악구 신림동 산56-1일대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1,5,8,9구역 내 신·증축 계획에 따라 건축계획 및 밀도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 교	대 학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3,895,659	-	3,895,659	건고 제124호 (1970.3.17.)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학교결정 면적(3,895,659㎡)은 비오톱1등급지(1,343,752㎡), 녹지보존구역 일부(852,002㎡) 포함한 면적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 변경 없음

구역	구분	면적(㎡)	구역	구분	면적(㎡)
일반관리구역	①	129,725	외부활동구역	②	53,884
	③	236,586		④	145,853
	⑤	257,508		⑫	61,523
	⑧	77,618	상징경관구역	⑦	71,871
	⑨	80,790	소 계		333,131
	⑩	152,510	녹지보존구역	⑥	47,410
	⑪	147,616		⑭	2,313,069

구역	구분	면적(㎡)	구역	구분	면적(㎡)
	⑬	119,696	소 계		2,360,479
소계		1,202,049	합 계		3,895,659

(2) 밀도계획(건폐율): 변경

구분	총면적(㎡)	용도지역별 관리지역면적(㎡)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기정	변경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1,699,905㎡ (3,895,659㎡)	제1종일반 주거지역	76,122 (76,122)	60.0	30.53 (30.53)	29.5 (29.5)	31.0
		자연녹지지역	1,623,783 (3,819,537)	20.0	19.84 (8.44)	19.8 (8.4)	20.0
합 계				21.8	20.32 (8.87)	20.2 (8.8)	21.8

※ 자연녹지지역(3,819,537㎡)에서 비오톱1등급지(1,343,752㎡), 녹지보존구역 일부(852,002㎡)을 제외한 면적(1,623,783㎡)을 대지면적으로 함

(3) 밀도계획(용적률): 변경

구분	총면적 (㎡)	비오톱 1등급지 (㎡)	녹지보존구역 일부제외면적 (㎡)	산정면적 (㎡)	조례 용적률 (%)	사용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76,122	-	-	76,122	150.0	84.96 (84.96)	79.8 (79.8)	94.36	94.0
자연녹지지역	3,819,537	1,343,752	852,002	1,623,783	100.0	76.87 (32.68)	76.4 (32.5)	94.36	94.0
합 계	3,895,659	1,343,752	852,002	1,699,905	102.2	77.24 (33.70)	76.6 (33.4)	94.36	94.0

※ 자연녹지지역(3,819,537㎡)에서 비오톱1등급지(1,343,752㎡), 녹지보존구역 일부(852,002㎡)을 제외한 면적(1,623,783㎡)을 대지면적으로 함

(4)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 높이): 변경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조례 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125.0	86.55	87.6	-	125.0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②	103.0	7.65	7.7	- 83.0	20.0	•지표로부터 16m 이하	외부활동구역 (정문,대운동장 등)
③	100.0	94.12	94.1	-	100.0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산복도로 연접지 별도 적용(기준3)	-
④	100.0	-	-	- 100.0	-	-	외부활동구역(국수봉)
⑤	101.0	114.95	112.5	+ 49.0	150.0	•지표로부터 40m 이하 •산복도로 연접지 별도 적용	-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조례 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⑥	100.0	-	-	-	-	-	녹지보존구역
⑦	100.0	92.68	92.1	-	100.0	•지표로부터 40m 이하	상징경관구역 (본관, 중앙도서관, 아크로폴리스, 규장각)
⑧	100.0	108.09	112.4	+ 50.0	150.0	•지표로부터 40m 이하 •산복도로 연접지 별도 적용(기준3)	-
⑨	100.0	129.35	131.1	+ 50.0	150.0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⑩	100.0	129.56	123.6	+ 50.0	150.0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⑪	100.0	77.56	77.0	-	100.0	•지표로부터 40m 이하 •녹지연접지 16~30m 이하	-
⑫	100.0	1.29	1.3	- 98.0	2.0	•오픈스페이스 구역에 부합되는 높이 관리: 표고 +16m이하	외부활동구역(버들골)
⑬	100.0	90.63	90.0	-	100.0	•지표로부터 16~40m 이하	-
⑭	100.0	0.063	0.063	-	0.063	•기존 건축물 개축 허용	녹지보존구역
합계	102.2	77.24	76.6	-	94.0		

(5)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구역	동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서울대	①	71	체육관	7,263.00	6,263.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5(-)	5(-)	준공면적반영
		71-1	체육문화교육연구동	3,426.28	2,580.95	13,134.63	11,107.65	9,232.08	7,900.76	6(1)	6(1)	준공면적반영
		80	수의대부속동물병원	860.21	-	2,575.52	-	2,246.56	-	3(1)	-	금회 철거 후 통합 증축
		80-1 → 80	반려동물병원	1,468.99	3,557.87	5,667.60	15,053.63	4,506.81	10,158.12	4(1)	5(3)	
		152-1	롯데국제관	2,000.00	1,345.92	8,000.00	5,211.83	6,000.00	5,211.83	6(2)	6(-)	준공면적반영

구분	구역	동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23	우석경제관	1,384.09	1,438.25	5,980.17	6,097.28	5,095.30	5,173.18	5(1)	5(1)	준공면적반영
	③	49	예술관	3,178.16	3,178.16	6,068.00	6,068.00	5,057.46	5,057.46	4(1)	3(1)	층수정정
		50	미술대학1	771.94	867.97	2,515.27	2,540.95	2,354.87	2,380.62	3(1)	3(1)	준공면적반영
		51	미술대학2	1,302.11	1,248.79	3,839.02	3,716.44	3,839.02	3,716.44	3(-)	3(-)	준공면적반영
		52	미술대학3	942.40	951.53	4,384.80	4,359.66	4,384.80	4,359.66	4(-)	4(-)	준공면적반영
		52-1	미대교양실습연구동	422.77	418.27	709.88	709.88	709.88	709.88	3(-)	3(-)	준공면적반영
		53	음악대학1	836.68	846.14	2,515.01	2,521.67	2,515.01	2,521.67	3(-)	3(-)	준공면적반영
			음악대학연결동	69.12	69.09	155.52	155.37	155.52	155.37	4(-)	3(-)	준공면적반영
		82	환경대학원	1,790.48	1,782.57	5,893.33	5,893.33	5,893.33	5,893.33	5(-)	5(-)	준공면적반영

구분	구역	동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서울대	⑤	921	기숙사 (학부생활관)1 → 기숙사 (학부생활관) (921,922,923)	655.00	1,606.38	7,470.00	21,781.49	6,370.00	19,454.11	10(1)	13(1)	계획 변경
		922	기숙사 (학부생활관)2 → 기숙사 (학부생활관) (921,922,923)	700.00		7,040.00		6,140.00		9(1)		
		923	기숙사 (학부생활관)3 → 기숙사 (학부생활관) (921,922,923)	615.00		6,475.00		5,375.00		9(1)		
		924	기숙사 (학부생활관)4	795.00	-	8,670.00	-	7,770.00	-	10(1)	-	
		943	SK연구동	1,810.59	1,832.45	10,284.55	9,962.07	8,029.72	7,848.76	6(1)	6(1)	준공면적반영
	⑦	60-1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500.00	143.74	15,221.11	15,222.23	500.00	54.83	1(2)	1(2)	준공면적반영
	⑧	5	인문대학4	1,323.12	1,337.66	5,221.74	6,802.38	5,221.74	6,802.38	4(-)	6(-)	금회 증축
		6	인문대학5	762.96	762.96	3,107.28	3,713.51	3,107.28	3,713.51	4(-)	5(-)	
		7	인문대학6	1,185.19	1,185.19	4,766.05	5,926.94	4,766.05	5,926.94	4(-)	5(-)	
			인문대학 연결동2	100.25	100.25	332.05	348.16	332.05	348.16	4(-)	5(-)	
		9	사범대학1	1,296.41	1,296.35	5,390.81	5,390.81	5,390.81	5,390.81	5(-)	5(-)	준공면적반영

구분	구역	동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⑨	75	농생대 및 역사연구 기록관	1,643.01	1,692.17	10,656.46	10,890.03	6,439.84	6,818.09	6(2)	6(2)	준공면적반영
		202	농생대시약 보관창고 → 캠퍼스 환경융합관	49.50	530.72	49.50	1,116.30	49.50	1,116.30	1(-)	3(-)	계획변경
	⑩	28	자연대 대형 강의동2	1,371.14	1,609.04	6,652.65	6,876.38	4,778.30	4,917.68	5(1)	5(1)	준공면적반영
		39	공학관	4,368.00	4,023.67	27,146.40	27,743.26	27,146.40	17,830.47	6(-)	6(3)	준공면적반영
		43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및 공대 대형 강의동1	567.34	572.46	2,853.44	2,222.35	2,153.65	2,222.35	5(1)	5(-)	준공면적반영
		43-2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및 공대 대형 강의동2	659.94	698.18	1,338.80	1,333.24	627.83	630.52	1(1)	1(1)	준공면적반영

구분	구역	동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서울대	⑪	20	약학관	1,665.70	2,097.40	8,645.20	8,315.59	8,645.20	7,927.51	6(1)	5(1)	준공면적반영
		21	약학관	1,607.76	1,620.05	6,576.24	6,480.20	6,576.24	6,480.20	4(-)	4(-)	준공면적반영
		104-4	나노융합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센터 신관	880.00	954.58	3,950.00	4,161.12	3,950.00	3,971.86	6(-)	6(1)	준공면적반영
	⑬	303	해동첨단 공학관	2,518.73	2,448.62	10,311.25	9,997.20	9,849.35	9,564.17	7(-)	7(-)	준공면적반영
		311	화학공정 신기술 연구소	1,989.74	1,950.60	5,309.76	5,285.04	5,309.76	5,285.04	5(-)	5(-)	준공면적반영
		312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 실험연구동	791.10	869.34	4,490.71	4,054.80	4,490.71	4,054.80	6(-)	6(-)	준공면적반영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02-2133-8411)
- 관악구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6층 (☎02-879-6372)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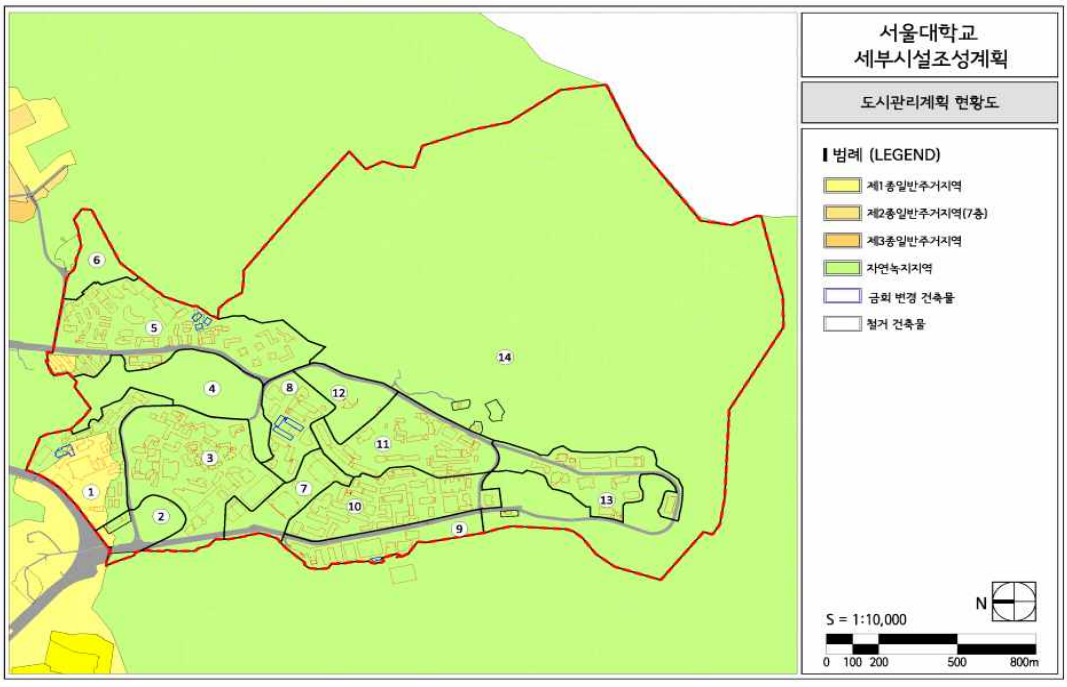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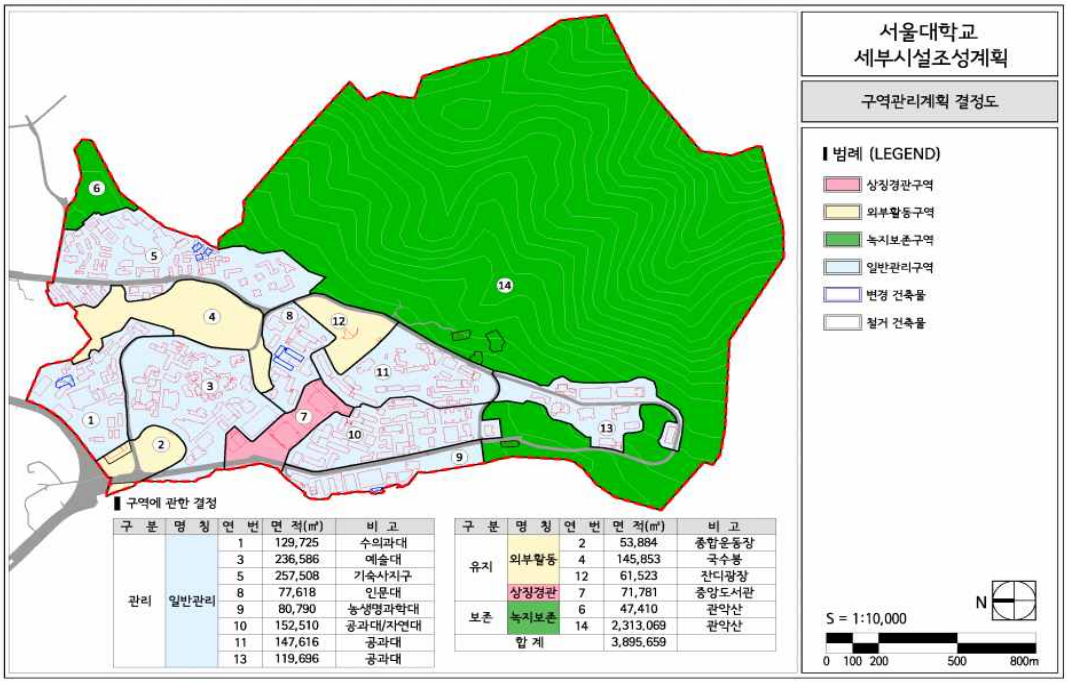

구역에 관한 결정

구 분	명 칭	연 번	면 적(㎡)	비 고
관리	일반관리	1	129,725	수의과대
		3	236,586	예술대
		5	257,508	기숙사지구
		8	77,618	인문대
		9	80,790	농생명과학대
		10	152,510	공과대/자연대
		11	147,616	공과대
		13	119,696	공과대

구 분	명 칭	연 번	면 적(㎡)	비 고
유지	외부활동	2	53,884	종합운동장
		4	145,853	국수봉
		12	61,523	잔디광장
	상징경관	7	71,781	중앙도서관
보존	녹지보존	6	47,410	관악산
		14	2,313,069	관악산
합 계			3,895,659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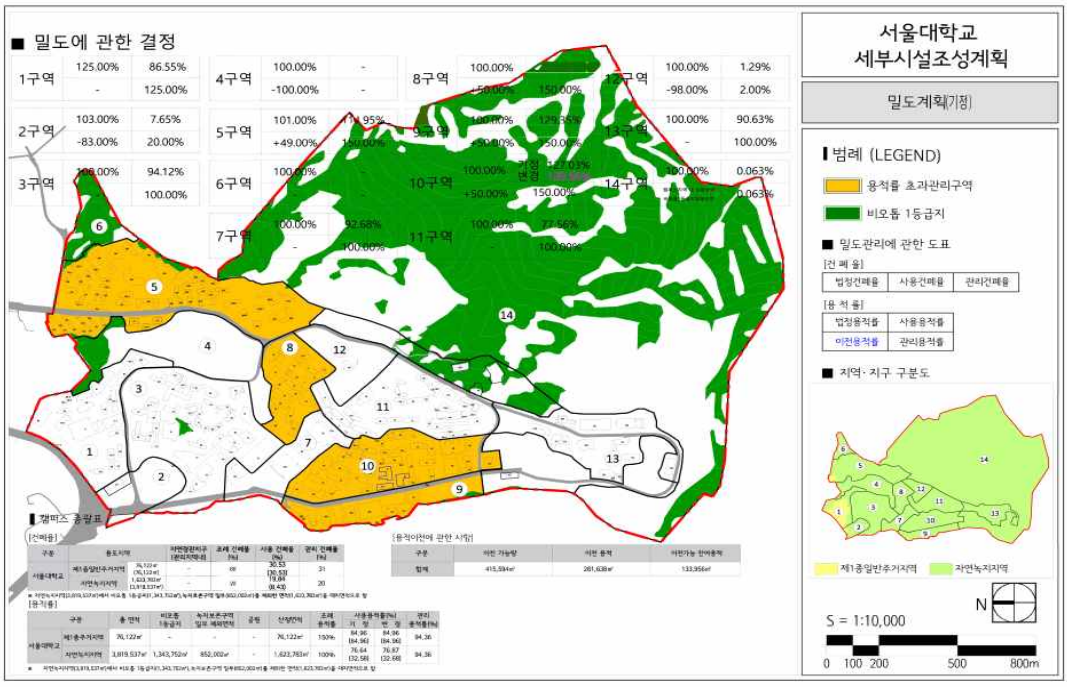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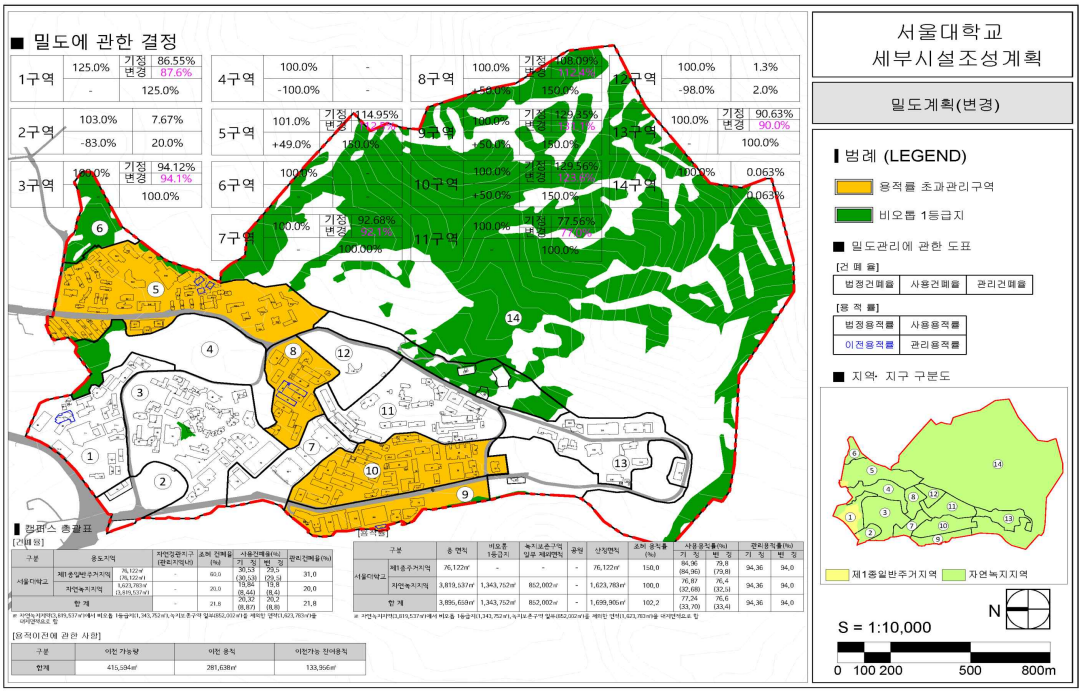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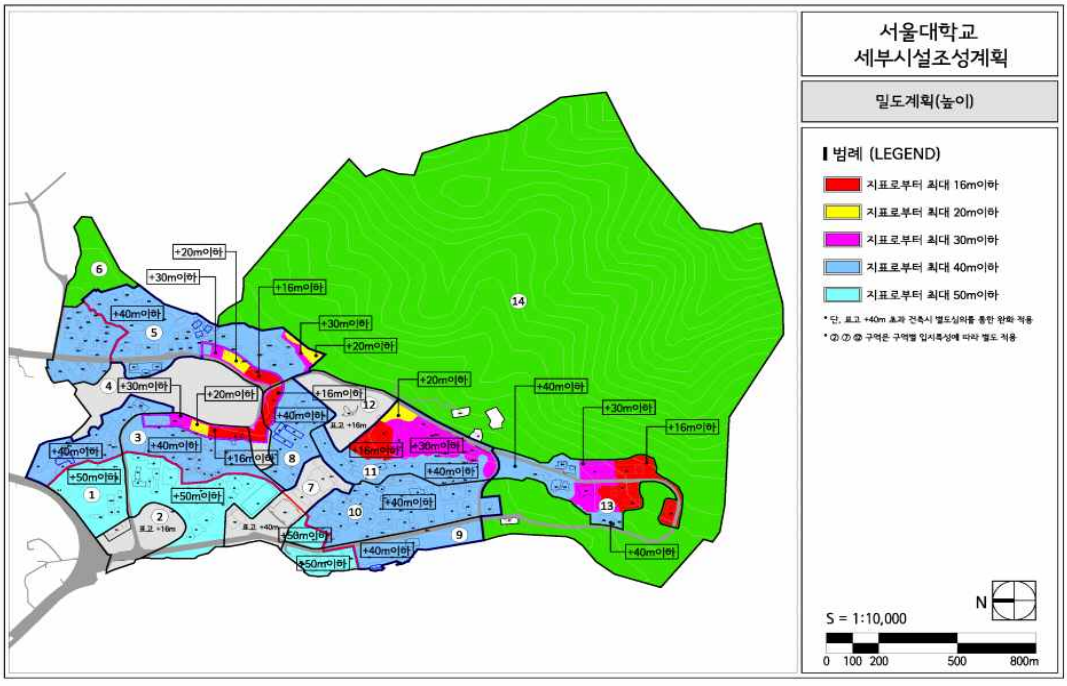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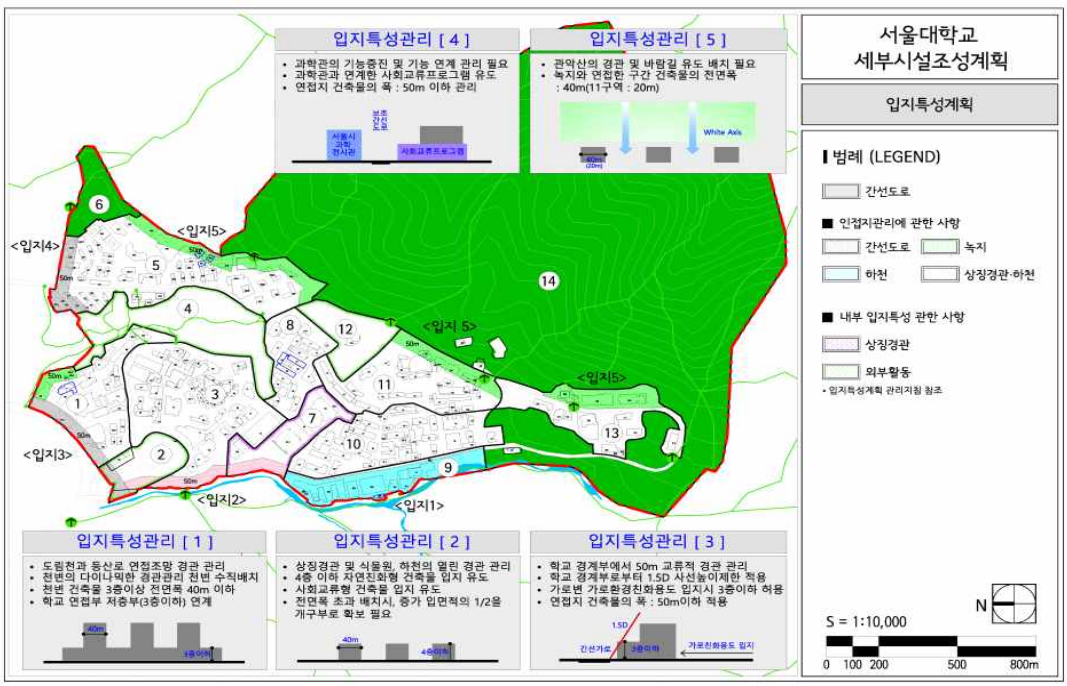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계획도 (기정)

연번	구분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기정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변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경 자연녹지지역	연면적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기정 자연녹지지역	연면적 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변 자연녹지지역	연면적 경 자연녹지지역	지상층연면적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상층연면적 기정 자연녹지지역	지상층연면적 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상층연면적 변 자연녹지지역	지상층연면적 경 자연녹지지역	비고
1		31	재료공학부	5(2)→6(1)	-	2,690.00	-	-	2,615.35	-	13,170.00	-	-	12,770.58	-	8,860.00	-	-	10,435.89	
2	10구역	31-1	간호대학	5(2)→6(1)	-	1,370.00	-	-	1,453.10	-	10,070.00	-	-	9,955.06	-	5,830.00	-	-	7,095.69	계획 변경
3		32	원자력공학과	5(2)→6(1)	-	1,720.00	-	-	1,713.49	-	8,390.00	-	-	8,102.78	-	5,190.00	-	-	6,2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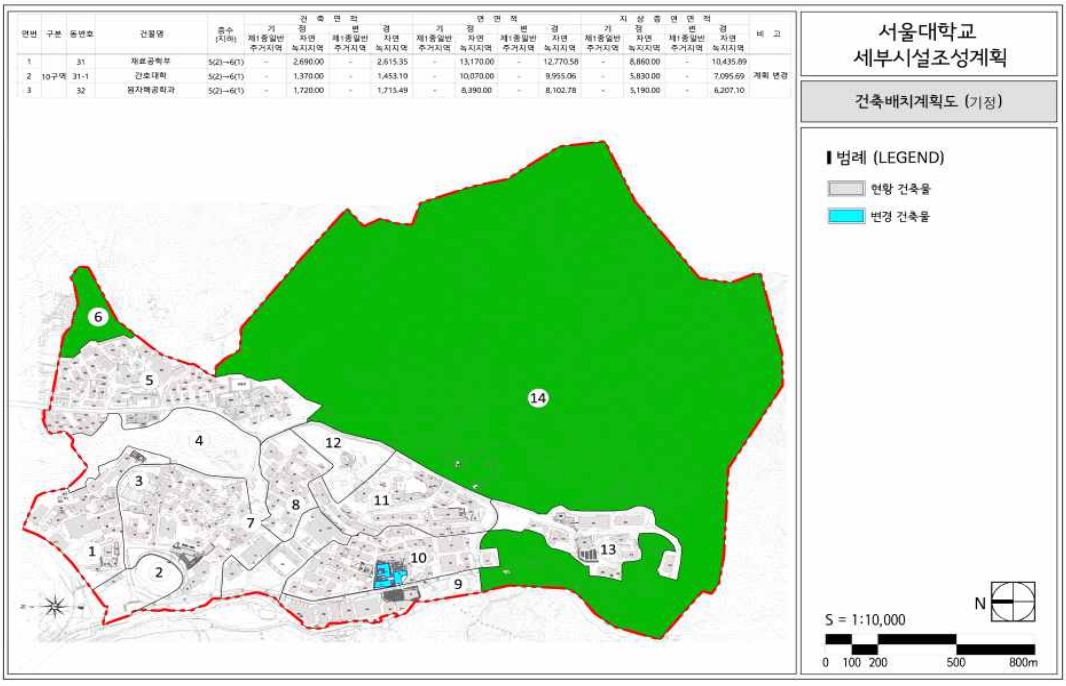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계획도 (변경)

연번	구분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기정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변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경 자연녹지지역	연면적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기정 자연녹지지역	연면적 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변 자연녹지지역	연면적 경 자연녹지지역	지상층연면적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상층연면적 기정 자연녹지지역	지상층연면적 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상층연면적 변 자연녹지지역	지상층연면적 경 자연녹지지역	비고
1		80	수의대부속동물병원	3(1)→-	235.00	625.21	-	-		929.76	1,645.76	-	-		768.64	1,477.92	-	-		
2	1구역	80-1 → 80	반려동물병원	4(1)→5(3)	151.31	1,317.68	1,894.95	1,662.92		151.31	5,516.29	2,457.56	12,596.07		151.31	4,355.50	1,281.96	8,876.16		철거 후 통합 증축
3	5구역	921	기숙사(학부생활관)1 기숙사(학부생활관) (921,922,923)	10(1)→13(1)	-	655.00	-			-	7,470.00	-			-	6,370.00	-			계획 변경
4		922	기숙사(학부생활관)2 기숙사(학부생활관) (921,922,923)	9(1)→13(1)	-	700.00	-	1,606.38		-	7,040.00	-	21,781.49		-	6,140.00	-	19,454.11		
5		923	기숙사(학부생활관)3 기숙사(학부생활관) (921,922,923)	9(1)→13(1)	-	615.00	-			-	6,475.00	-			-	5,375.00	-			
6		924	기숙사(학부생활관)4	10(1)→(-)	-	795.00	-	-		-	8,670.00	-	-		-	7,770.00	-	-		
7	8구역	5	인문대학4	4→6	-	1,323.12	-	1,337.66		-	5,221.74	-	6,802.38		-	5,221.74	-	6,802.38		수직증축
8		6	인문대학5	4→5	-	762.96	-	762.96		-	3,107.28	-	3,713.51		-	3,107.28	-	3,713.51		
9		7	인문대학6	4→5	-	1,185.19	-	1,185.19		-	4,766.05	-	5,926.94		-	4,766.05	-	5,926.94		
			인문대학 연결동2	4→5	-	100.25	-	100.25		-	332.05	-	348.16		-	332.05	-	348.16		
10	9구역	202	농생대시약보관창고 → 캠퍼스환경유틸관	1→3	-	49.50	-	530.72		-	49.50	-	1,116.30		-	49.50	-	1,116.30		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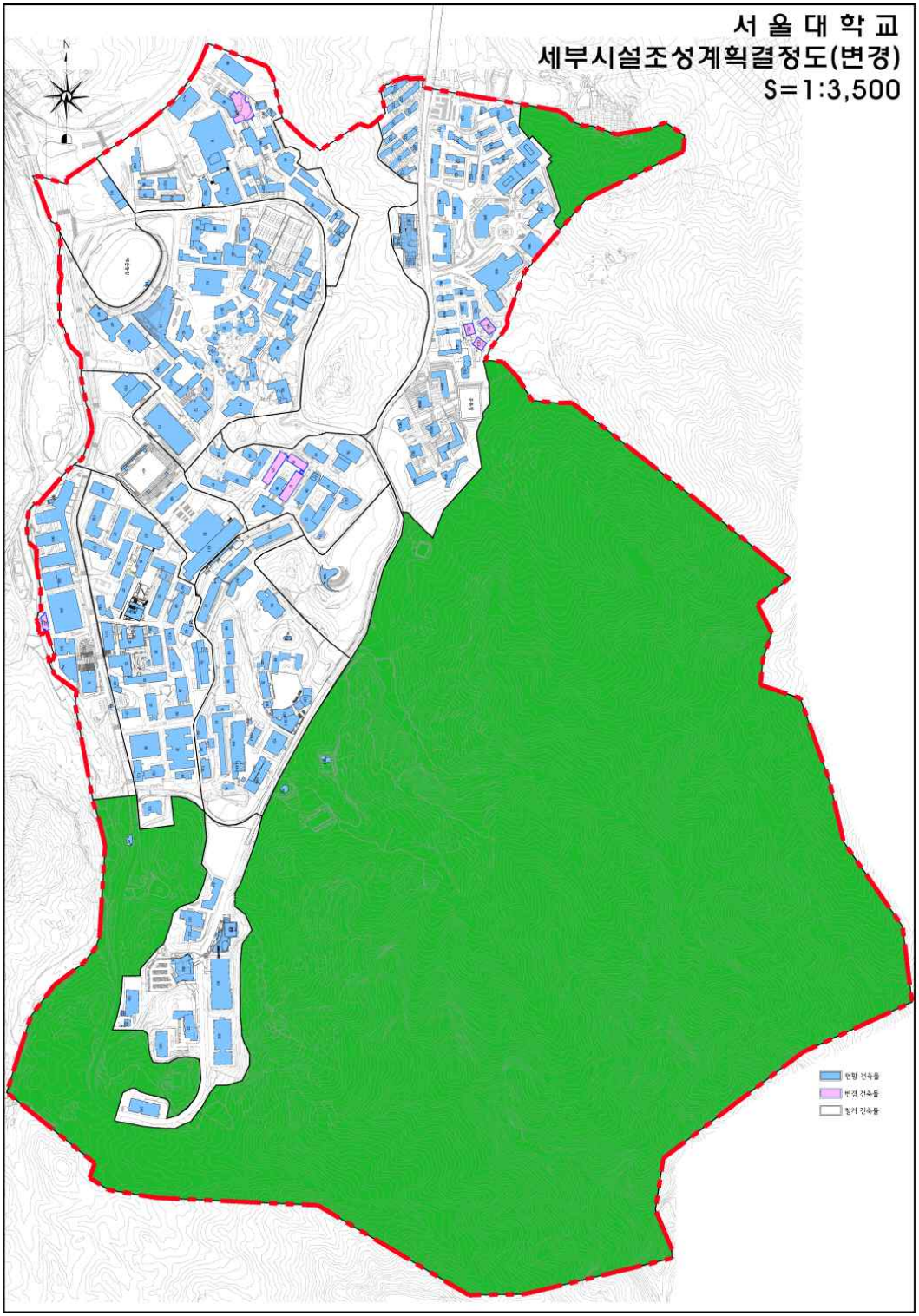
서 울 대 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S=1:3,500
N
현황 건축물
변경 건축물
철거 건축물

서 울 대 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대학 (서울대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3,895,659	-	3,895,659	건설부고시 제124호 (1970.3.17)	

※ 학교용지면적(3,895,659㎡)에서 비오톱 1등급지 (1,343,752㎡), 녹지보존구역 일부(852,002㎡)를 포함한 면적임

■ 구역별 밀도계획(건폐율)

면적	용도지역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기 정	변 경	
1,699,905㎡ (3,895,659㎡)	제1종일반주거지역	76,122㎡ (76,122㎡)	60.0	30.53 (30.53)	29.5 (29.5)	31.0
	자연녹지지역	1,623,783㎡ (3,819,537㎡)	20.0	19.84 (8.44)	19.8 (8.4)	20.0
합 계			21.8	20.32 (8.87)	20.2 (8.8)	21.8

※ 자연녹지지역(3,819,537㎡)에서 비오톱 1등급지 (1,343,752㎡), 녹지보존구역 일부(852,002㎡)을 제외한 면적 (1,623,783㎡)을 대지면적으로 함

■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용도지역	총 면적	비오톱 1등급지	녹지보존구역 일부제외면적	공원	산정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관리용적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76,122㎡	-	-	-	76,122㎡	150.0	84.96 (84.96)	79.8 (79.8)	94.36	94.0
자연녹지지역	3,819,537㎡	1,343,752㎡	852,002㎡	-	1,623,783㎡	100.0	76.87 (32.68)	76.4 (32.5)	94.36	94.0
합 계	3,895,659㎡	1,343,752㎡	852,002㎡	-	1,699,905㎡	102.2	77.24 (33.70)	76.6 (33.4)	94.36	94.0

※ 자연녹지지역(3,819,537㎡)에서 비오톱 1등급지 (1,343,752㎡), 녹지보존구역 일부(852,002㎡)을 제외한 면적 (1,623,783㎡)을 대지면적으로 함

■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높이(m)	비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기 정	변 경				
①	125.0	86.55	87.6	-	125.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②	103.0	7.65	7.7	-83.0	20.0	• 지표로부터 16m 이하	외부활동구역 (정문, 대운동장 등)
③	100.0	94.12	94.1	-	1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산복도로 연접지 별도 적용(기준3)	-
④	100.0	-	-	-100.0	-	-	외부활동구역 (국수봉)
⑤	101.0	114.95	112.5	+49.0	15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 산복도로 연접지 별도 적용	-
⑥	100.0	-	-	-	-	-	녹지보존구역
⑦	100.0	92.68	92.1	-	1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상징경관구역 (본관, 중앙도서관, 아크로폴리스, 규장각)
⑧	100.0	108.09	112.4	+50.0	15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 산복도로 연접지 별도 적용(기준3)	-
⑨	100.0	129.35	131.1	+50.0	15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⑩	100.0	129.56	123.6	+50.0	15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⑪	100.0	77.56	77.0	-	1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 녹지연접지 16~30m 이하	-
⑫	100.0	1.29	1.3	-98.0	2.0	• 오픈스페이스 구역에 부합되는 높이 관리 : 표고 +16m이하	외부활동구역 (버들골)
⑬	100.0	90.63	90.0	-	100.0	• 지표로부터 16~40m 이하	-
⑭	100.0	0.063	0.063	-	0.063	• 기존 건축물 개축 허용	녹지보존구역
합 계	102.2	77.24	76.6	-	94.3		

서 울 대 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 1구역 건축물 조서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	68	파워플랜트	2	-	2,592.00	-	2,592.00	-	3,153.60	-	3,153.60	-	3,153.60	-	3,153.60	
2	68-2	영선공장	2	-	404.00	-	404.00	-	546.00	-	546.00	-	546.00	-	546.00	
3	71	체육관	5	7,263.00	-	6,263.00	-	12,500.00	-	12,500.00	-	12,500.00	-	12,500.00	-	준공면적 반영
4	71-1	체육문화교육연구동	6(1)	1,833.06	1,593.22	1,449.35	1,131.60	7,027.03	6,107.60	5,341.97	5,765.68	4,939.16	4,292.92	3,454.11	4,446.65	준공면적 반영
5	71-2	포스코스포츠센터	4(1)	2,764.54	-	2,764.54	-	6,179.10	-	6,179.10	-	4,988.70	-	4,988.70	-	
6	80	수의대부속동물병원	3(1) → -	235.00	625.21	-	-	929.76	1,645.76	-	-	768.64	1,477.92	-	-	금회 철거 후 동합 증축
7	80-1 → 80	반려동물병원	4(1) → 5(3)	151.31	1,317.68	1,894.95	1,662.92	151.31	5,516.29	2,457.56	12,596.07	151.31	4,355.50	1,281.96	8,876.16	
8	80-3	야생동물구조센터	2	-	257.00	-	257.00	-	330.00	-	330.00	-	330.00	-	330.00	
9	81	생명공학연구동	6(2)	-	1,649.85	-	1,649.85	-	9,980.00	-	9,980.00	-	7,748.90	-	7,748.90	
10	85	수의과대학	10	2,584.40	815.00	2,584.40	815.00	12,591.91	3,976.39	12,591.91	3,976.39	12,591.91	3,976.39	12,591.91	3,976.39	
11	85-1	동물복제연구동	4	-	375.81	-	375.81	-	1,374.71	-	1,374.71	-	1,374.71	-	1,374.71	
12	85-2	수의대시약보관창고	1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13	86	치의학대학원첨단복합연구단지및의료센터	7(3)	-	2,900.00	-	2,900.00	-	19,000.00	-	19,000.00	-	13,000.00	-	13,000.00	
14	97	환경안전원1	3	-	630.00	-	630.00	-	1,702.00	-	1,702.00	-	1,702.00	-	1,702.00	
15	98	환경안전원2	4(1)	-	600.00	-	600.00	-	2,000.00	-	2,000.00	-	1,400.00	-	1,400.00	
16	117	양수장	1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17	137	언어교육원	4(1)	969.45	-	969.45	-	3,845.00	-	3,845.00	-	3,719.20	-	3,719.20	-	
18	137-1	대림국제관	6(1)	362.80	1,155.50	362.80	1,155.50	2,028.47	6,460.59	2,028.47	6,460.59	1,695.72	5,400.80	1,695.72	5,400.80	
19	150	입학본부	5(1)	865.10	-	865.10	-	4,733.08	-	4,733.08	-	4,010.56	-	4,010.56	-	
20	152	CI인터내셔널센터	2(1)	-	750.00	-	750.00	-	1,800.00	-	1,800.00	-	1,500.00	-	1,500.00	
21	152-1	호대국제관	6(2) → 6	1,003.82	996.18	50.17	1,295.75	4,015.27	3,984.73	194.39	5,017.44	3,011.45	2,988.55	194.39	5,017.44	준공면적 반영
22	153	글로벌상회공헌센터 우정원	5(1)	960.67	316.00	960.67	316.00	4,969.50	1,630.10	4,969.50	1,630.10	3,994.62	1,310.32	3,994.62	1,310.32	
23	223	우석경제관	5(1)	-	1,384.09	-	1,438.25	-	5,980.17	-	6,097.28	-	5,095.30	-	5,173.18	준공면적 반영
소 계				18,993.15	18,611.54	18,164.43	18,223.68	58,970.43	75,437.94	54,840.98	81,679.86	52,371.27	59,902.91	48,431.17	65,206.15	

■ 2구역 건축물 조서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4	149	대운동장본부석	2	-	393.67	-	393.67	-	733.34	-	733.34	-	733.34	-	733.34	
25	151	미술관	3(1)	-	2,434.88	-	2,434.88	-	4,697.84	-	4,697.84	-	3,391.30	-	3,391.30	
소 계				-	2,828.55	-	2,828.55	-	5,431.18	-	5,431.18	-	4,124.64	-	4,124.64	

■ 3구역 건축물 조서 - 1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6	15	법과대학1	6	-	1,198.40	-	1,198.40	-	6,483.33	-	6,483.33		6,483.33	-	6,483.33	
27	15-1	법대첨단강의동(우선법률관)	3(1)	-	1,398.39	-	1,398.39	-	6,207.17	-	6,207.17	-	3,412.34	-	3,412.34	
28	16	사회과학대학1	6(1)	-	6,590.00	-	6,590.00	-	28,750.00	-	28,750.00	-	24,940.00	-	24,940.00	
29	16-1	신양학술정보관Ⅱ	4	-	820.00	-	820.00	-	2,600.00	-	2,600.00	-	2,600.00	-	2,600.00	
30	17	법과대학2	6(1)	-	977.81	-	977.81	-	5,766.76	-	5,766.76	-	5,598.46	-	5,598.46	
31	49	예술관	4(1) → 3(1)	-	3,178.16	-	3,178.16	-	6,068.00	-	6,068.00	-	5,057.46	-	5,057.46	층수 정정

서 울 대 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 3구역 건축물 조서 - 2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2	50	미술대학1	3(1)	-	771.94	-	867.97	-	2,515.27	-	2,540.95	-	2,354.87	-	2,380.62	준공면적 반영
33	50-1	미대복합실기동	4(1)	-	1,500.00	-	1,500.00	-	5,000.00	-	5,000.00	-	3,800.00	-	3,800.00	
34	51	미술대학2	3	-	1,302.11	-	1,248.79	-	3,839.02	-	3,716.44	-	3,839.02	-	3,716.44	준공면적 반영
35	52	미술대학3	4	-	942.40	-	951.53	-	4,384.80	-	4,359.66	-	4,384.80	-	4,359.66	준공면적 반영
36	52-1	미대교양실습연구동	3	-	422.77	-	418.27	-	709.88	-	709.88	-	709.88	-	709.88	준공면적 반영
37	53	음악대학1	3	-	836.68	-	846.14	-	2,515.01	-	2,521.67	-	2,515.01	-	2,521.67	준공면적 반영
38	54	음악대학2	4	-	388.93	-	388.93	-	3,747.82	-	3,747.82	-	3,747.82	-	3,747.82	
39	55	음악대학3	4	-	472.37	-	472.37	-	1,431.99	-	1,431.99	-	1,431.99	-	1,431.99	
40		음악대학연결동	4/3	-	69.12	-	69.09	-	155.52	-	155.37	-	155.52	-	155.37	준공면적 반영
41	57	행정대학원	4(1)	-	1,191.84	-	1,191.84	-	5,289.11	-	5,289.11	-	4,197.08	-	4,197.08	
42	58	경영대학(SK경영관)	7(1)	-	3,252.37	-	3,252.37	-	14,902.03	-	14,902.03	-	13,831.63	-	13,831.63	
43	59	경영전문대학원(LG경영관)	7(1)	-	3,633.58	-	3,633.58	-	15,418.56	-	15,418.56	-	11,516.75	-	11,516.75	
44	64	IBK커뮤니케이션센터	4(1)	-	775.37	-	775.37	-	2,659.25	-	2,659.25	-	1,958.99	-	1,958.99	
45	67	두레학생문예관	5(1)	-	1,326.13	-	1,326.13	-	5,293.08	-	5,293.08	-	3,835.55	-	3,835.55	
46	70	박물관	2(1)	-	3,767.00	-	3,767.00	-	6,165.38	-	6,165.38	-	5,232.28	-	5,232.28	
47	72	법학도서관	6(1)	-	2,000.00	-	2,000.00	-	8,000.00	-	8,000.00	-	7,485.00	-	7,485.00	
48	73	문화관	6(2)	-	8,100.00	-	8,100.00	-	27,000.00	-	27,000.00	-	14,800.00	-	14,800.00	
49	74	예술계복합교육연구동	5(2)	-	2,193.84	-	2,193.84	-	11,112.20	-	11,112.20	-	6,591.33	-	6,591.33	
50	82	환경대학원	5	-	1,790.48	-	1,782.57	-	5,893.33	-	5,893.33	-	5,893.33	-	5,893.33	준공면적 반영
51	83	멀티미디어강의동(인문.사회계동)	6	-	1,723.54	-	1,723.54	-	6,453.83	-	6,453.83	-	6,453.83	-	6,453.83	
52	84	관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3	-	1,011.25	-	1,011.25	-	2,218.81	-	2,218.81	-	2,218.81	-	2,218.81	
53	101	아시아연구소	6(2)	-	2,000.00	-	2,000.00	-	12,000.00	-	12,000.00	-	10,000.00	-	10,000.00	
54	113	동원생활관	4	-	877.51	-	877.51	-	2,465.80	-	2,465.80	-	2,465.80	-	2,465.80	
55	140	국제대학원1	4(1)	-	1,503.00	-	1,503.00	-	4,500.00	-	4,500.00	-	4,307.00	-	4,307.00	
56	140-1	국제대학원2	6(1)	-	713.18	-	713.18	-	3,921.06	-	3,921.06	-	3,627.36	-	3,627.36	
57	220	종합교육연구동	7(2)	-	11,856.00	-	11,856.00	-	49,561.00	-	49,561.00	-	38,980.68	-	38,980.68	
58	221	보건대학원	6(1)	-	1,318.00	-	1,318.00	-	7,450.00	-	7,450.00	-	7,253.44	-	7,253.44	
소 계				-	69,902.17	-	69,951.03	-	270,478.01	-	270,362.48	-	222,679.36	-	222,563.90	

■ 5구역 건축물 조서 - 1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59	121	송장공관	3	-	600.00	-	6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60	122	교수아파트(1)	5(2)	-	3,000.00	-	3,000.00	-	17,400.00	-	17,400.00	-	9,680.00	-	9,680.00	
61	123	교수아파트(2)	5(1)	4,250.00	-	4,250.00	-	15,600.00	-	15,600.00	-	12,300.00	-	12,300.00	-	
62	125	호암교수회관	2(1)	-	1,012.70	-	1,012.70	-	2,538.90	-	2,538.90	-	1,574.60	-	1,574.60	
63	125-1	호암컨벤션센터	2(1)	-	1,341.77	-	1,341.77	-	2,448.40	-	2,448.40	-	1,765.40	-	1,765.40	
64	125-2	게스트하우스	2(1)	-	642.70	-	642.70	-	1,470.90	-	1,470.90	-	1,186.50	-	1,186.50	
65	126	호암동관	5	-	554.10	-	554.10	-	2,526.00	-	2,526.00	-	2,526.00	-	2,526.00	
66	127	호암서관	5	-	819.00	-	819.00	-	3,822.50	-	3,822.50	-	3,822.50	-	3,822.50	

서 울 대 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 5구역 건축물 조서 - 2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67	127-1	호암생활관잔디관리실	1	-	370.47	-	370.47	-	345.31	-	345.31	-	345.31	-	345.31	
68	128	호암교수회관후계실	1	-	189.67	-	189.67	-	189.67	-	189.67	-	189.67	-	189.67	
69	900	학생기숙사(BTL)	8(2)	-	1,571.19	-	1,571.19	-	24,154.18	-	24,154.18	-	9,914.14	-	9,914.14	
70	901	학생기숙사(BTL)	8	-	1,512.64	-	1,512.64	-	10,497.53	-	10,497.53	-	10,497.53	-	10,497.53	
71	902	학생기숙사(BTL)	8(2)	-	1,712.69	-	1,712.69	-	19,998.62	-	19,998.62	-	14,099.89	-	14,099.89	
72	903	학생기숙사(BTL)	8	-	516.46	-	516.46	-	4,030.01	-	4,030.01	-	4,030.01	-	4,030.01	
73	904	학생기숙사(BTL)	8	-	1,181.30	-	1,181.30	-	9,013.26	-	9,013.26	-	9,013.26	-	9,013.26	
74	915	외국인기숙사A동	8(2)													
75	916	외국인기숙사B동	9(2)	-	3,295.51	-	3,295.51	-	19,097.93	-	19,097.93	-	15,064.47	-	15,064.47	
76	917	외국인기숙사C동	7(2)													
77	918	대학원기숙사3	8(1)	-	1,044.14	-	1,044.14	-	5,479.40	-	5,479.40	-	5,061.16	-	5,061.16	
78	919	대학원기숙사4	9(1)	-	4,009.12	-	4,009.12	-	18,538.15	-	18,538.15	-	17,159.33	-	17,159.33	
79	920	관악사 호생관	4(1)	-	460.00	-	460.00	-	3,025.00	-	3,025.00	-	1,840.00	-	1,840.00	
80	921	기숙사(학부생활관)1 → 기숙사(학부생활관)(921,922,923)	10(1) → 13(1)	-	655.00	-		-	7,470.00	-		-	6,370.00	-		계획 변경
81	922	기숙사(학부생활관)2 → 기숙사(학부생활관)(921,922,923)	9(1) → 13(1)	-	700.00	-	1,606.38	-	7,040.00	-	21,781.49	-	6,140.00	-	19,454.11	
82	923	기숙사(학부생활관)3 → 기숙사(학부생활관)(921,922,923)	9(1) 13(1)	-	615.00	-		-	6,475.00	-		-	5,375.00	-		
83	924	기숙사(학부생활관)4	10(1) → -	-	795.00	-	-	-	8,670.00	-	-	-	7,770.00	-	-	
84	925	기숙사(학부생활관)5	10(1)	-	585.00	-	585.00	-	6,950.00	-	6,950.00	-	5,850.00	-	5,850.00	
85	926	기숙사(학부생활관)6	10	-	655.00	-	655.00	-	6,370.00	-	6,370.00	-	6,370.00	-	6,370.00	
86	931	대학원기숙사1	5	-	510.24	-	510.24	-	2,021.40	-	2,021.40	-	2,021.40	-	2,021.40	
87	932	대학원기숙사2	5(1)	-	510.24	-	510.24	-	2,062.03	-	2,062.03	-	2,021.42	-	2,021.42	
88	933	대학원기숙사5	5(1)	-	479.06	-	479.06	-	1,884.40	-	1,884.40	-	1,583.18	-	1,583.18	
89	934	대학원기숙사6	5	-	479.06	-	479.06	-	2,185.62	-	2,185.62	-	2,185.62	-	2,185.62	
90	935	대학원기숙사7	5(1)	-	510.24	-	510.24	-	2,342.81	-	2,342.81	-	2,015.60	-	2,015.60	
91	936	직원아파트	10(1)	-	650.96	-	650.96	-	4,281.12	-	4,281.12	-	4,113.75	-	4,113.75	
92	940	연구공원	5(2)	-	3,494.82	-	3,494.82	-	18,973.51	-	18,973.51	-	6,304.31	-	6,304.31	
93	941	백학어린이집	3	-	1,115.78	-	1,115.78	-	2,696.85	-	2,696.85	-	2,696.85	-	2,696.85	
94	941-1	느티나무어린이집	5(1)	-	1,200.00	-	1,200.00	-	5,000.00	-	5,000.00	-	4,000.00	-	4,000.00	
95	942	LG연구동	5(1)	-	2,073.52	-	2,073.52	-	8,464.63	-	8,464.63	-	7,174.34	-	7,174.34	
96	943	SK연구동	6(1)	-	1,810.59	-	1,832.45	-	10,284.55	-	9,962.07	-	8,029.72	-	7,848.76	준공면적 반영
97	944	삼성전자서울대연구소	10(2)	-	5,553.88	-	5,553.88	-	42,623.10	-	42,623.10	-	32,484.96	-	32,484.96	
98	945	코원이R&D센터	6(2)	-	1,899.39	-	1,899.39	-	12,209.10	-	12,209.10	-	9,506.92	-	9,506.92	
99	946	BK국제관	12(1)	-	2,031.56	-	2,031.56	-	17,388.40	-	17,388.40	-	16,793.12	-	16,793.12	
100	947	Post-DoC가족생활동(1)	7(2)	-	1,800.00	-	1,800.00	-	13,220.00	-	13,220.00	-	11,870.00	-	11,870.00	
101	950	국제백신연구소	5(1)	-	3,848.42	-	3,848.42	-	16,982.19	-	16,982.19	-	12,206.53	-	12,206.53	
102	952	외국인교수숙소(1동)	10(2)	-	480.00	-	480.00	-	6,160.00	-	6,160.00	-	4,560.00	-	4,560.00	
103	953	외국인교수숙소(2동)	9(2)	-	480.00	-	480.00	-	5,072.00	-	5,072.00	-	3,872.00	-	3,872.00	
104	954	외국인교수숙소(3동)	8(2)	-	480.00	-	480.00	-	4,932.00	-	4,932.00	-	3,632.00	-	3,632.00	
소 계				4,250.00	57,246.22	4,250.00	56,109.46	15,600.00	367,334.47	15,600.00	359,138.48	12,300.00	283,716.49	12,300.00	277,334.64	

서 울 대 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 7구역 건축물 조서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05	60	대학본부	5(1)	-	1,473.17	-	1,473.17	-	9,562.15	-	9,562.15	-	7,993.05	-	7,993.05	
106	62	중앙도서관	6	-	2,587.50	-	2,587.50	-	30,506.37	-	30,506.37	-	30,506.37	-	30,506.37	
107	62-1	관정도서관	7(1)	-	5,580.50	-	5,580.50	-	24,807.00	-	24,807.00	-	21,738.00	-	21,738.00	
108	103	규장각	4(1)	-	3,464.16	-	3,464.16	-	9,529.43	-	9,529.43	-	5,873.95	-	5,873.95	
109	60-1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1(2)	-	500.00	-	143.74	-	15,221.11	-	15,222.23	-	500.00	-	54.83	준공면적 반영
소 계				-	13,605.33	-	13,249.07	-	89,626.06	-	89,627.18	-	66,611.37	-	66,166.20	

■ 8구역 건축물 조서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10	1	인문대학1	4	-	961.02	-	961.02	-	3,844.08	-	3,844.08	-	3,844.08	-	3,844.08	
111	2	인문대학2	4	-	972.04	-	972.04	-	3,897.85	-	3,897.85	-	3,897.85	-	3,897.85	
112	3	인문대학3	4(1)	-	1,109.28	-	1,109.28	-	4,564.38	-	4,564.38	-	4,415.88	-	4,415.88	
113	4	신양학술정보관 II	4(1)	-	826.50	-	826.50	-	3,640.00	-	3,640.00	-	3,306.00	-	3,306.00	
114		인문대학연결동1	3(1)	-	125.13	-	125.13	-	494.39	-	494.39	-	369.29	-	369.29	
115	5	인문대학4	4→6	-	1,323.12	-	1,337.66	-	5,221.74	-	6,802.38	-	5,221.74	-	6,802.38	
116	6	인문대학5	4→5	-	762.96	-	762.96	-	3,107.28	-	3,713.51	-	3,107.28	-	3,713.51	금회 증축
117	7	인문대학6	4→5	-	1,185.19	-	1,185.19	-	4,766.05	-	5,926.94	-	4,766.05	-	5,926.94	
118	8	두산인문관	6(1)	-	890.00	-	890.00	-	5,340.00	-	5,340.00	-	4,840.00	-	4,840.00	
119		인문대학연결동2	4→5	-	100.25	-	100.25	-	332.05	-	348.16	-	332.05	-	348.16	금회 증축
120	9	사범대학1	5	-	1,296.41	-	1,296.35	-	5,390.81	-	5,390.81	-	5,390.81	-	5,390.81	준공면적 반영
121	10	사범대학2	4	-	762.96	-	762.96	-	3,107.28	-	3,107.28	-	3,107.28	-	3,107.28	
122	10-1	교육정보관	6(1)	-	1,610.54	-	1,610.54	-	8,175.29	-	8,175.29	-	6,902.01	-	6,902.01	
123	11	사범대학3	4	-	1,185.19	-	1,185.19	-	4,766.05	-	4,766.05	-	4,766.05	-	4,766.05	
124	12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	6(1)	-	1,000.00	-	1,000.00	-	6,000.00	-	6,000.00	-	5,200.00	-	5,200.00	
125		사범대학연결동	4	-	100.25	-	100.25	-	332.05	-	332.05	-	332.05	-	332.05	
126	14	인문대학7	6(1)	-	1,200.00	-	1,200.00	-	6,600.00	-	6,600.00	-	6,000.00	-	6,000.00	
127	61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기초교육원	3(1)	-	1,910.00	-	1,910.00	-	5,160.00	-	5,160.00	-	4,874.50	-	4,874.50	
128	76	제4식당(사당골)	5(2)	-	4,500.00	-	4,500.00	-	14,000.00	-	14,000.00	-	10,500.00	-	10,500.00	
129	109	자하연식당	4(1)	-	732.51	-	732.51	-	2,542.80	-	2,542.80	-	2,325.20	-	2,325.20	
130	111	간이식당	2	-	316.88	-	316.88	-	400.79	-	400.79	-	400.79	-	400.79	
소 계				-	22,870.23	-	22,884.71	-	91,682.89	-	95,046.76	-	83,898.91	-	87,262.78	

■ 9구역 건축물 조서 - 1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31	75	농생대 및 역사연구기록관	6(2)	-	1,643.01	-	1,692.17	-	10,656.46	-	10,890.03	-	6,439.84	-	6,818.09	준공면적 반영
132	75-1	제3식당(전망대)	5	-	2,548.00	-	2,548.00	-	10,615.00	-	10,615.00	-	10,615.00	-	10,615.00	
133	99-1	정구장 관리실	2	-	62.81	-	62.81	-	91.94	-	91.94	-	91.94	-	91.94	
134	200	농업생명과학대학	9(2)	-	5,674.13	-	5,674.13	-	47,256.25	-	47,256.25	-	36,823.93	-	36,823.93	

서 울 대 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 9구역 건축물 조서 - 2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35	201	농업생명과학공동기기원	5(1)	-	1,663.20	-	1,663.20	-	4,114.23	-	4,114.23	-	4,114.23	-	4,114.23	
136	202	농생대시약보관창고 → 캠퍼스환경융합관	1 → 3	-	49.5	-	530.72	-	49.5	-	1,116.30	-	49.5	-	1,116.30	계획 변경
137	203	SPC농생명과학 및 기초과학연구동	5(1)	-	2,000.00	-	2,000.00	-	9,600.00	-	9,600.00	-	7,600.00	-	7,600.00	
138	500	자연과학대학	7(2)	-	8,509.52	-	8,509.52	-	54,291.12	-	54,291.12	-	38,617.79	-	38,617.79	
139	501	자연대화학부시약보관창고	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140	506	자연대생명과학부 시약보관창고	1	-	51.75	-	51.75	-	51.75	-	51.75	-	51.75	-	51.75	
소 계				-	22,301.92	-	22,832.30	-	136,826.25	-	138,126.62	-	104,503.98	-	105,949.03	

■ 10구역 건축물 조서 - 1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41	21-1	약대시약창고	1	-	65	-	65	-	65	-	65	-	65	-	65	
142	22	화학관	4	-	1,752.50	-	1,752.50	-	6,420.35	-	6,420.35	-	6,420.35	-	6,420.35	
143		화학관연결동-2	1	-	98.8	-	98.8	-	98.8	-	98.8	-	98.8	-	98.8	
144	23	화학관	4(1)	-	933.9	-	933.9	-	4,309.18	-	4,309.18	-	3,964.68	-	3,964.68	
145		화학관연결동	2	-	66	-	66	-	132	-	132	-	132	-	132	
146	24	물리지학관	4(1)	-	1,378.08	-	1,378.08	-	6,964.03	-	6,964.03	-	5,601.73	-	5,601.73	
147	25	물리지학관	4(1)	-	1,492.72	-	1,492.72	-	6,625.94	-	6,625.94	-	6,059.64	-	6,059.64	
148	25-1	자연대강의실및실험연구동	6(1)	-	1,459.04	-	1,459.04	-	8,407.60	-	8,407.60	-	6,328.82	-	6,328.82	
150	26	기초과학실험 교육동	5(1)	-	1,520.00	-	1,520.00	-	6,790.00	-	6,790.00	-	5,080.00	-	5,080.00	
151	27	물리지학관	4(1)	-	1,378.08	-	1,378.08	-	6,360.55	-	6,360.55	-	5,590.95	-	5,590.95	
152		물리지학관연결동	4	-	155.96	-	155.96	-	311.92	-	311.92	-	311.92	-	311.92	
153	28	자연대 대형강의동2	5(1)	-	1,371.14	-	1,609.04	-	6,652.65	-	6,876.38	-	4,778.30	-	4,917.68	준공면적 반영
154	30	공학관	4(1)	-	1,667.85	-	1,667.85	-	8,125.57	-	8,125.57	-	6,468.67	-	6,468.67	
155	30-1	위험물옥내저장소	1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156	30-2	간이식당	2	-	195	-	195	-	273	-	273	-	273	-	273	
157	31	재료공학부	6(1)	-	2,615.35	-	2,615.35	-	12,770.58	-	12,770.58	-	10,435.89	-	10,435.89	
158	31-1	간호대학	6(1)	-	1,453.10	-	1,453.10	-	9,955.06	-	9,955.06	-	7,095.69	-	7,095.69	
159	32	원자핵공학과	6(1)	-	1,715.49	-	1,715.49	-	8,102.78	-	8,102.78	-	6,207.10	-	6,207.10	
160	32-1	해동학술관	4(1)	-	800	-	800	-	2,500.00	-	2,500.00	-	2,000.00	-	2,000.00	
161	33	공학관	4	-	1,421.71	-	1,421.71	-	4,186.71	-	4,186.71	-	4,186.71	-	4,186.71	
162	34	해양플랜트 인력양성관	4(1)	-	1,500.00	-	1,500.00	-	5,000.00	-	5,000.00	-	3,700.00	-	3,700.00	
163	35	공학관	4(1)	-	2,983.23	-	2,983.23	-	9,699.31	-	9,699.31	-	7,154.41	-	7,154.41	
164	36	공학관	4(1)	-	1,260.00	-	1,260.00	-	6,300.00	-	6,300.00	-	5,040.00	-	5,040.00	
165	37	공학관	4(1)	-	1,349.01	-	1,349.01	-	5,654.68	-	5,654.68	-	5,501.68	-	5,501.68	
166	37-1	이공계학술정보연구동 II	5(1)	-	800	-	800	-	2,500.00	-	2,500.00	-	2,000.00	-	2,000.00	
167	38	글로벌공학교육센터	6(2)	-	3,300.00	-	3,300.00	-	24,000.00	-	24,000.00	-	18,000.00	-	18,000.00	
168	39	공학관	6 6(3)	-	4,368.00	-	4,023.67	-	27,146.40	-	27,743.26	-	27,146.40	-	17,830.47	준공면적 반영
169	40	공동실험동1	1	-	630.75	-	630.75	-	630.75	-	630.75	-	630.75	-	630.75	

서 울 대 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 10구역 건축물 조서 - 2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70	43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및 공대 대형강의동1	5(1) → 5	-	567.34	-	572.46	-	2,853.44	-	2,222.35	-	2,153.65	-	2,222.35	준공면적 반영
171	43-1	멀티미디어강의동 (이공계동)	4	-	1,185.85	-	1,185.85	-	4,136.43	-	4,136.43	-	4,136.43	-	4,136.43	
172	43-2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및 공대 대형강의동2	1(1)	-	659.94	-	698.18	-	1,338.80	-	1,333.24	-	627.83	-	630.52	준공면적 반영
173	56	자연과학대학	5	-	1,400.73	-	1,400.73	-	6,800.46	-	6,800.46	-	6,800.46	-	6,800.46	
174	63	학생회관	6(1)	-	2,971.60	-	2,971.60	-	13,479.20	-	13,479.20	-	10,507.60	-	10,507.60	
175	102	정보화본부	4(1)	-	1,987.35	-	1,987.35	-	6,573.18	-	6,573.18	-	6,231.18	-	6,231.18	
176	107	역사기록관	2(3)	-	1,326.78	-	1,326.78	-	5,375.95	-	5,375.95	-	2,474.83	-	2,474.83	
177	130	기초전력연구원	5	-	1,087.66	-	1,087.66	-	3,480.63	-	3,480.63	-	3,480.63	-	3,480.63	
178	133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7	-	935.87	-	935.87	-	5,333.07	-	5,333.07	-	5,333.07	-	5,333.07	
179	131	신소재공동연구소	4(1)	-	1,067.00	-	1,067.00	-	4,925.00	-	4,925.00	-	3,902.70	-	3,902.70	
180	56-1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4(1)	-	593.30	-	593.30	-	1,999.69	-	1,999.69	-	1,590.50	-	1,590.50	
소 계				-	51,600.55	-	51,537.48	-	236,365.11	-	236,549.05	-	197,597.74	-	188,492.58	

■ 11구역 건축물 조서 - 1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81	13	사범대학4	4	-	1,607.76	-	1,607.76	-	6,576.24	-	6,576.24	-	6,576.24	-	6,576.24	
182	18	기초과학및자연과학연구동	5	-	954	-	954	-	4,975.20	-	4,975.20	-	4,975.20	-	4,975.20	
183	19	자연과학연구소	4(1)	-	1,058.00	-	1,058.00	-	4,983.00	-	4,983.00	-	4,334.30	-	4,334.30	
184	20	약학관	6(1) → 5(1)	-	1,665.70	-	2,097.40	-	8,645.20	-	8,315.59	-	8,645.20	-	7,927.51	준공면적 반영
185	21	약학관	4	-	1,607.76	-	1,620.05	-	6,576.24	-	6,480.20	-	6,576.24	-	6,480.20	준공면적 반영
186	29	약학연구관	3(1)	-	1,052.43	-	1,052.43	-	3,590.15	-	3,590.15	-	3,234.35	-	3,234.35	
187	41	선박실험공장동	2.00	-	330.00	-	330.00	-	508.50	-	508.50	-	508.50	-	508.50	
188	42	선형수초실험공장동	2	-	2,369.94	-	2,369.94	-	3,644.59	-	3,644.59	-	3,644.59	-	3,644.59	
189	42-1	슬로싱실험동	4(0)	-	280	-	280	-	800	-	800	-	800	-	800	
190	44	풍동실험동2	2	-	424.2	-	424.2	-	848.4	-	848.4	-	848.4	-	848.4	
191	44-1	신양학술정보관 I	4	-	850	-	850	-	2,750.00	-	2,750.00	-	2,750.00	-	2,750.00	
192	45	천문관측소1	3	-	309.38	-	309.38	-	615.76	-	615.76	-	615.76	-	615.76	
193	46	천문관측소2	2	-	147.04	-	147.04	-	283.48	-	283.48	-	283.48	-	283.48	
194	65	교수회관	2(1)	-	1,905.03	-	1,905.03	-	3,711.25	-	3,711.25	-	3,342.06	-	3,342.06	
195	66	학군단	2	-	1,292.97	-	1,292.97	-	2,604.14	-	2,604.14	-	2,604.14	-	2,604.14	
196	69	실험동물자원관리원	7(1)	-	945.67	-	945.67	-	5,625.90	-	5,625.90	-	4,722.97	-	4,722.97	
197	104	반도체연구소	2	-	3,011.48	-	3,011.48	-	4,620.13	-	4,620.13	-	4,620.13	-	4,620.13	
198	104-1	반도체공동연구소교육관	5	-	1,613.09	-	1,613.09	-	5,557.01	-	5,557.01	-	5,557.01	-	5,557.01	
199	104-2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약보관창고	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200	105	유전공학연구소	5(1)	-	1,622.87	-	1,622.87	-	6,565.48	-	6,565.48	-	5,652.48	-	5,652.48	
201	105-1	창업보육센터및 유전공학연구소	4(1)	-	769.14	-	769.14	-	2,875.86	-	2,875.86	-	2,833.67	-	2,833.67	
202	105-2	유전공학연구소 시약보관창고	1	-	80	-	80	-	80	-	80	-	80	-	80	
203	129	삼산수리과학관	5(1)	-	898.98	-	898.98	-	3,544.66	-	3,544.66	-	3,216.00	-	3,216.00	
204	132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4	-	1,507.34	-	1,507.34	-	5,257.04	-	5,257.04	-	5,257.04	-	5,257.04	

서 울 대 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 11구역 건축물 조서 - 2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 (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05	135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5	-	836.96	-	836.96	-	3,651.40	-	3,651.40	-	3,651.40	-	3,651.40	
206	138	컴퓨터연구소	6	-	1,118.80	-	1,118.80	-	5,145.02	-	5,145.02	-	5,145.02	-	5,145.02	
207	139	기초과학공동기기센터	4(1)	-	771.97	-	771.97	-	3,374.03	-	3,374.03	-	2,919.97	-	2,919.97	
208	139-1	기초과학공동기기원	4(1)	-	1,665.00	-	1,665.00	-	6,636.00	-	6,636.00	-	5,623.00	-	5,623.00	
209	141	약학연구관	4	-	436.81	-	436.81	-	1,241.28	-	1,241.28	-	1,241.28	-	1,241.28	
210	142	제약실습동	3	-	813.54	-	813.54	-	3,619.77	-	3,619.77	-	3,619.77	-	3,619.77	
211	143	약대신약개발센터	6(1)	-	2,025.41	-	2,025.41	-	9,611.44	-	9,611.44	-	6,563.14	-	6,563.14	
212	104-4	나노융합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센터	6 → 6(1)	-	880.00	-	954.58	-	3,950.00	-	4,161.12	-	3,950.00	-	3,971.86	준공면적 반영
소 계				-	34,951.27	-	35,469.84	-	122,567.17	-	122,352.64	-	114,491.34	-	113,699.47	

■ 12구역 건축물 조서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 (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13	100	버들골 풍산마당	2	-	902.60	-	902.60	-	794.36	-	794.36	-	794.36	-	794.36	
소 계				-	902.60	-	902.60	-	794.36	-	794.36	-	794.36	-	794.36	

■ 13구역 건축물 조서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 (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14	300	유회진 학술정보관	6(1)	-	2,609.92	-	2,609.92	-	8,361.83	-	8,361.83	-	8,265.25	-	8,265.25	
215	301	신공학관1	16(2)	-	5,192.08	-	5,192.08	-	41,632.13	-	41,632.13	-	35,142.56	-	35,142.56	
216	302	신공학관2	10(1)	-	4,012.07	-	4,012.07	-	26,887.56	-	26,887.56	-	25,564.77	-	25,564.77	
217	303	해동첨단공학관	7	-	2,518.73	-	2,448.62	-	10,311.25	-	9,997.20	-	9,849.35	-	9,564.17	준공면적 반영
218	310	엔지니어하우스	2(2)	-	1,705.95	-	1,705.95	-	2,968.58	-	2,968.58	-	1,359.34	-	1,359.34	
219	311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5	-	1,989.74	-	1,950.60	-	5,309.76	-	5,285.04	-	5,309.76	-	5,285.04	준공면적 반영
220	313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3(1)	-	1,433.60	-	1,433.60	-	4,330.50	-	4,330.50	-	3,962.40	-	3,962.40	
221	312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실험연구동	6	-	791.10	-	869.34	-	4,490.71	-	4,054.80	-	4,490.71	-	4,054.80	준공면적 반영
222	314	차세대자동차신기술 연구센터	5(1)	-	1,500.00	-	1,500.00	-	6,890.00	-	6,890.00	-	6,890.00	-	6,890.00	
223	316	대형구조실험동	5(2)	-	2,500.00	-	2,500.00	-	6,600.00	-	6,600.00	-	4,100.00	-	4,100.00	
224	330	제2파워플랜트	3	-	1,807.00	-	1,807.00	-	2,940.05	-	2,940.05	-	2,940.05	-	2,940.05	
225	331	차량정비고	2	-	261.59	-	261.59	-	475.56	-	475.56	-	475.56	-	475.56	
224	332	다목적차량보관소	1	-	128.27	-	128.27	-	128.27	-	128.27	-	128.27	-	128.27	
소 계				-	26,450.05	-	26,419.04	-	121,326.20	-	120,551.52	-	108,478.02	-	107,732.21	

서 울 대 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 14구역 건축물 조서

연번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25	47	기상관측소	3	-	284	-	284	-	780	-	780	-	780	-	780	
226	48	지진관측소	1(1)	-	265.08	-	265.08	-	351.09	-	351.09	-	265.09	-	265.09	
227	47-1	천파천문대	1	-	415.97	-	415.97	-	411.7	-	411.7	-	411.7	-	411.7	
소 계				-	965.05	-	965.05	-	1,542.79	-	1,542.79	-	1,456.79	-	1,456.79	

■ 변경 건축물 조서

연번	구역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	1구역	80	수의대부속동물병원	3(1) → 2	235.00	625.21	-	-	929.76	1,645.76	-	-	768.64	1,477.92	-	-	금회 철거 후 통합 증축
2		80-1 → 80	반려동물병원	4(1) → 5(3)	151.31	1,317.68	1,894.95	1,662.92	151.31	5,516.29	2,457.56	12,596.07	151.31	4,355.50	1,281.96	8,876.16	
3	5구역	921	기숙사(학부생활관)1→ 기숙사(학부생활관)(921,922,923)	10(1) → 13(1)	-	655.00	-	1,606.38	-	7,470.00	-	21,781.49	-	6,370.00	-	19,454.11	계획 변경
4		922	기숙사(학부생활관)2→ 기숙사(학부생활관)(921,922,923)	9(1) → 13(1)	-	700.00	-		-	7,040.00	-		-	6,140.00	-		
5		923	기숙사(학부생활관)3→ 기숙사(학부생활관)(921,922,923)	9(1) → 13(1)	-	615.00	-		-	6,475.00	-		-	5,375.00	-		
6		924	기숙사(학부생활관)4	10(1) → 2	-	795.00	-	-	-	8,670.00	-	-	-	7,770.00	-	-	
7	8구역	5	인문대학4	4→6	-	1,323.12	-	1,337.66	-	5,221.74	-	6,802.38	-	5,221.74	-	6,802.38	금회 증축
8		6	인문대학5	4→5	-	762.96	-	762.96	-	3,107.28	-	3,713.51	-	3,107.28	-	3,713.51	
9		7	인문대학6	4→5	-	1,185.19	-	1,185.19	-	4,766.05	-	5,926.94	-	4,766.05	-	5,926.94	
10			인문대학연결동2	4→5	-	100.25	-	100.25	-	332.05	-	348.16	-	332.05	-	348.16	
11	9구역	202	농생대시약보관창고→ 캠퍼스환경융합관	1→3	-	49.5	-	530.72	-	49.5	-	1,116.30	-	49.5	-	1,116.30	계획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1호

상도동 356-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3-933호(2023.06.01.)로 열람공고한「상도동 356-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06.25.)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동작구공고 제2025-1295호(2025.07.17.)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상도동 356-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	증)24,768.0	24,768.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비고
신설	①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24,768.0	•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4,768.0	-	24,768.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69.0	-	869.0	3.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070.0	감) 19,268.0	3,802.0	15.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268.0	19,268.0	77.8	
	제3종일반주거지역	829.0	-	829.0	3.3	

■ 용도지역 결정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68	250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지역의 용도지역 반영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3	A	12~15	국지도로	34	상도동 354-2	상도동 354-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A	10	국지도로	114	상도동 356-32	상도동 356-8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B	8~15	국지도로	235	대방동 산4-4	대방동 446	일반도로	-	국고 제2023-855호 ('23.12.28.)	
변경	소로	2	B	12~15 (8~15)	국지도로	117 (352)	상도동 353-1	대방동 5-23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A	6~7	국지도로	150	상도동 351-7	상도동 331-9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B	6	국지도로	70	상도동 356-98	상도동 356-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C	6	국지도로	77	상도동 356-221	상도동 356-213	일반도로	-	-	

※ ( )는 구역외 구간 포함된 전체구간의 연장 및 면적임, 소로2-B 기·종점은 위치변경 없는 주소지 변경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A	•도로 신설 - 폭원 12~15m, 연장 34m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소로1-A	•도로 신설 - 폭원 10m, 연장 114m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소로2-B	소로2-B	•변경 - 폭원 12~15m(8~15m), 연장 117m(352m)	•북측 서울대방공공주택지구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연장 및 기점 변경
-	소로3-A	•도로 신설 - 폭원 6~7m, 연장 150m	•막다른도로계획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소로3-B	•도로 신설 - 폭원 6m, 연장 70m	
-	소로3-C	•도로 신설 - 폭원 6m, 연장 77m	

※ ( )는 구역외 구간 포함된 전체구간의 연장 및 면적임, 소로2-B 기·종점은 위치변경 없는 주소지 변경사항임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공원명	시설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노량진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노량진동 294-190번지 일대	368,959 (869)	감)336	368,623 (533)	1940.03.12.	

※ ( )는 구역 내 공원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공원명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노량진 근린공원	근린 공원	•면적 변경 - 368,959㎡(869㎡) → 368,623㎡(533㎡) 감) 336㎡	• 기 공원시설 내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구간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감 336㎡) • 기 공원시설 내 도로시설의 결정 및 확폭에 따른 감소면적만큼 남측 공원 대체 조성(296㎡)

※ ( )는 구역 내 공원 면적임

다. 공공 · 문화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상도동 331-25번지 일대	-	증) 1,523.21	1,523.21 (입체적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층수(층)	-	지하4~5층 일부	지하4~5층 일부	-	
			수평투영면적(㎡)	-	증) 1,523.21	증) 1,523.21		

※ 해당 시설의 구체적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변경 시 서울시 관리부서 협의 필요

■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 층수 : 지하 4~5층 일부 - 연면적 : 3,750.14㎡ - 수평투영면적 : 1,523.21㎡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을 공동주택 하부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기부채납 함에 따른 신설

■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안)

지하 4층	지하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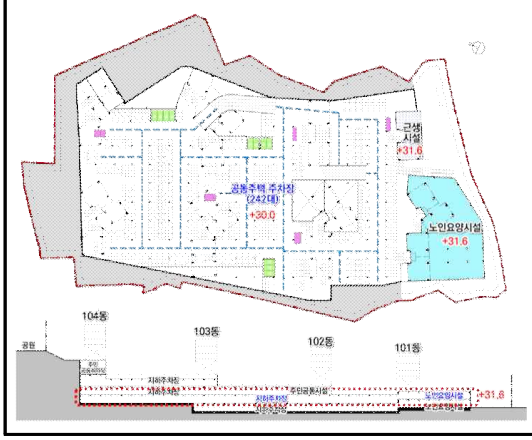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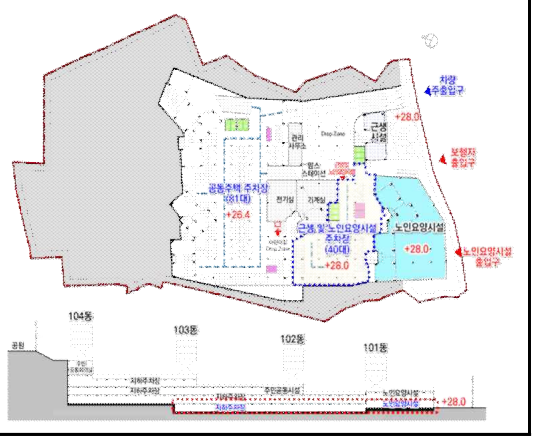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획지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I	19,268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19,268	•공동주택용지(아파트) •획지 내 필지 공동개발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용도	허용(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대,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제외)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불허(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 190% 이하 / 허용 195% 이하 / 상한 250% 이하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높 이	• 최고 88m 이하
		배 치	• 구역 내 · 외 일조, 통풍, 개방감, 보행연속성,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 배치
		형 태	• 층수 변화를 줌으로써 스카이라인의 굴곡을 형성토록 하며 코어 부분에는 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도한 장식물 지양
		색 채	• 중 · 저채도 색채로 안정감 유도되도록 권장 • 인접지역 색채계획과의 조화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규제) - 대지경계선 3m 지정 (도면번호 ①)

나.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계획기준

구 분	용도지역(기정)	용도지역(변경)	면적(㎡)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제2종(7층)	제2종	19,268	190%
합계			19,268	190%

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주변 가로망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α ※α=1이하 * 지역권: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설정)	10%p 이내
열린 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조성(지형도면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준공 후에도 유지)	5%p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 광장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 X α ※α=1이하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 · 돌봄시설을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 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방재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안전등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기준 : 시설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
기반시설 등 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 : 기준용적률 X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X α ※α=1이하 * 정비비용/사업지대지가액(「공공시설등기부채납용적률인센티브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지역특화 인센티브	‣감성디자인등 정책사업, 지역맞춤형 항목 신설가능 - 기준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0%p 이내 (합산)
합계	최대 20%p 이내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구 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비고
공공보행통로			5%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25.01) 준용
	조성면적	507㎡	190% X (507㎡ /19,268㎡) X 1	

라. 상한용적률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5,079.70㎡	•기부채납-무상귀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제외면적(소로1-A, 소로2-B, 기존공원 및 대체공원) •8,581.70㎡ - 488.00㎡ - 3,014.00㎡ = 5,079.70㎡	
기준용적률	190%	•기준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298㎡ →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98㎡= 190%	
허용용적률	195%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인센티브 = 190% + 5% = 195%	
가중치	0.9121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178% / 195% = 0.1921	
α토지	0.1449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2,791.04㎡ / 19,268.00㎡= 0.1449	
α현금·건축물	0.1188	•α(현금·건축물) =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2,288.65㎡ / 19,268.00㎡ = 0.1188	
상한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 = 195% × (1 + 1.3 × 0.9121 × 0.1449 + 1.0 × 0.1188) = 251.66% ≒ 250% 이하 적용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25.01.) 적용

마. 공공시설 부담계획

■ 공공시설 부담계획 기준(공공시설은 조성하여 기부채납함을 원칙)

구 분		내 용	산 식
도로	부속토지	1,865.00㎡	- 도로 4,834㎡ - 제외 2,969㎡ (소로1-A, 소로2-B, 국공유지 제외) = 1,865.00
공원		-	- 공원 533㎡ - 제외 533㎡ (기존 및 대체공원, 국공유지 제외) = 0
노인요양시설	부속토지	926.04㎡	- 부속토지 = 제공연면적/(제공연면적/전체연면적) = 3,750.14/(78,028.57/19,268.00)=926.04
	환산부지	2,288.65㎡ = 2,032.01㎡+127.09㎡+ 129.55㎡	① 전용·면적 : (설치비용(원/㎡)×건축연면적)/(개별공시지가(원/㎡)×2) = (3,782,000.00×3,046.41)/(5,670,000.00) = 2,032.01 ② 기타공용(주차장, 기계실, 전기실)면적 : (설치비용(원/㎡)×건축연면적)/(개별공시지가(원/㎡)×2) = (1,024,000.00×703,73)/(5,670,000) = 127.09 ③ 설계·감리비 : 건축물 공사비(건축물 설치비용×건축연면적)의 6%/개별공시지가(원/㎡)×2) = ((지상층:3,046.41×3,782,000.00)+(지하층:703.73×1,024,000.00)×0.06)/5,670,000 = 129.55
	소 계	3,214.70㎡	- 건축물 연면적 3,750.14㎡
합계		5,079.70㎡	- 도로 부속토지면적 + 노인요양시설 부속·환산부지면적 = 1,865.00+3,214.70 = 5,079.70

※ 기부채납은 하되 공공시설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3,502㎡)
- 남측도로(소로1-A) 1,136㎡ + 북동측도로(소로2-B) 1,391㎡ + 도로 내 국공유지 442㎡ + 기존공원 237㎡ + 대체공원 250㎡+ 대체공원 내 국공유지 46㎡

※ 건축물 환산부지 관련 산출내역
- 공사비 : ① 전용·공용면적 + ② 기타공용(주차장, 기계실, 전기실)면적 + ③ 설계·감리비
  ①「(2024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노인요양시설 건축비」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단가 적용
  ②「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25.03.18)」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적용
  ③「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공사비의 6% 적용
- 토지비 : 구역 내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2배 적용(2024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2,835,000원/㎡×2= 5,670,000원/㎡)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②		보도형 전면공지	• 소로1-A호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 내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형 전면공지(B=3) 조성 • 소로2-B호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 내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형 전면공지(B=3) 조성	소로1-A 호선 소로2-B 호선
③		공공 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원활한 보행통행 및 보행흐름 단절방지를 위한 24시간 개방형 공공보행통로 2개소 조성(4m 이상) ※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지역권을 설정할 것	-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④		차량 진출입구 (권장)	• 구역 남측 소로1-A호선, 북동측 소로2-B호선에 차량 진출입구 계획 • 진출입구와 근접한 위치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배치로 단지 내 차량동선 최소화	소로1-A 호선 소로2-B 호선

5 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계획

구분	규모	부담비용	부담주체	설치 및 부담시기	재원조달 방법	비 고
중로3-A	도로지정 및 폭원확장 A= 464㎡, B=12~15m, L=34m	공사비등 총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자체자금	조성후 기부채납
소로1-A	도로지정 및 폭원확장 A= 1,136㎡, B=10m, L=114m	공사비등 총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자체자금	조성후 기부채납
소로2-B	도로지정 및 폭원확장 A= 1,391㎡(4,864㎡) B=12~15m(8~15m), L=117m(352m)	공사비등 총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자체자금	조성후 기부채납
소로3-A	도로지정 및 폭원확장 A= 937㎡, B=6~7m, L=150m	공사비등 총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자체자금	조성후 기부채납
소로3-B	도로지정 및 폭원확장 A= 433㎡, B=6m, L=70m	공사비등 총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자체자금	조성후 기부채납

구분	규모	부담비용	부담주체	설치 및 부담시기	재원조달 방법	비 고
소로3-C	도로지정 및 폭원확장 A= 473㎡, B=6m, L=77m	공사비등 총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자체자금	조성후 기부채납
공원	공원→도로 전환만큼 북측공원 대체조성 A= 296㎡	공사비등 총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자체자금	조성후 기부채납
노인 요양시설	공동주택 하부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연면적 = 3,750.14㎡, 수평투영면적=1,523.21㎡	공사비등 총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자체자금	조성후 기부채납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865) 및 동작구 도시계획과(☎ 02-820-195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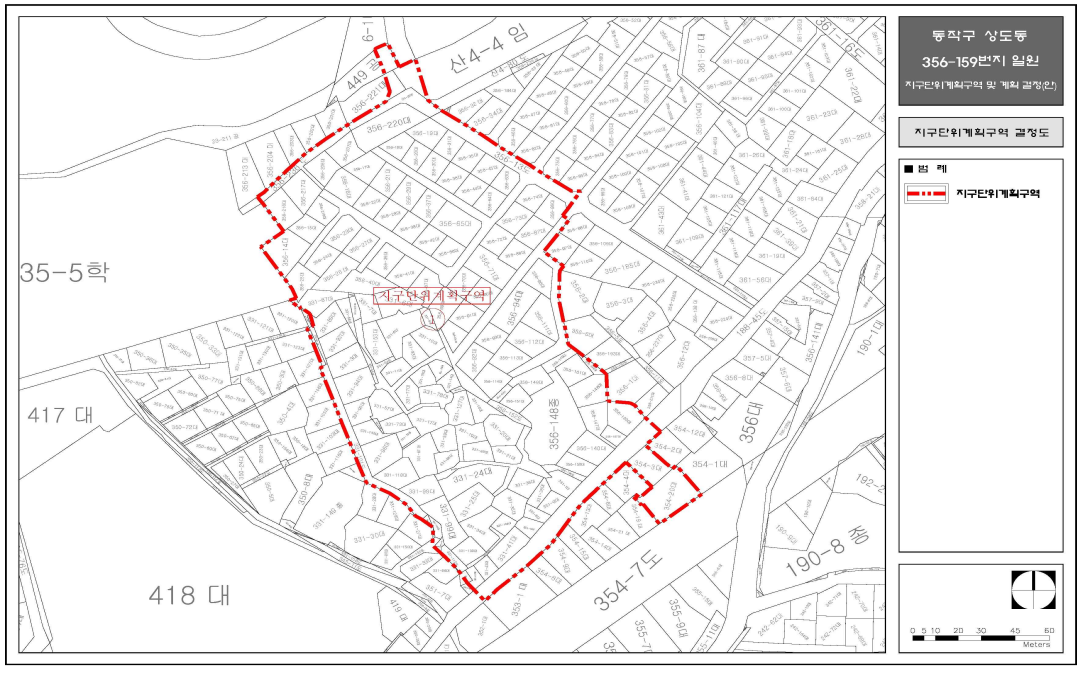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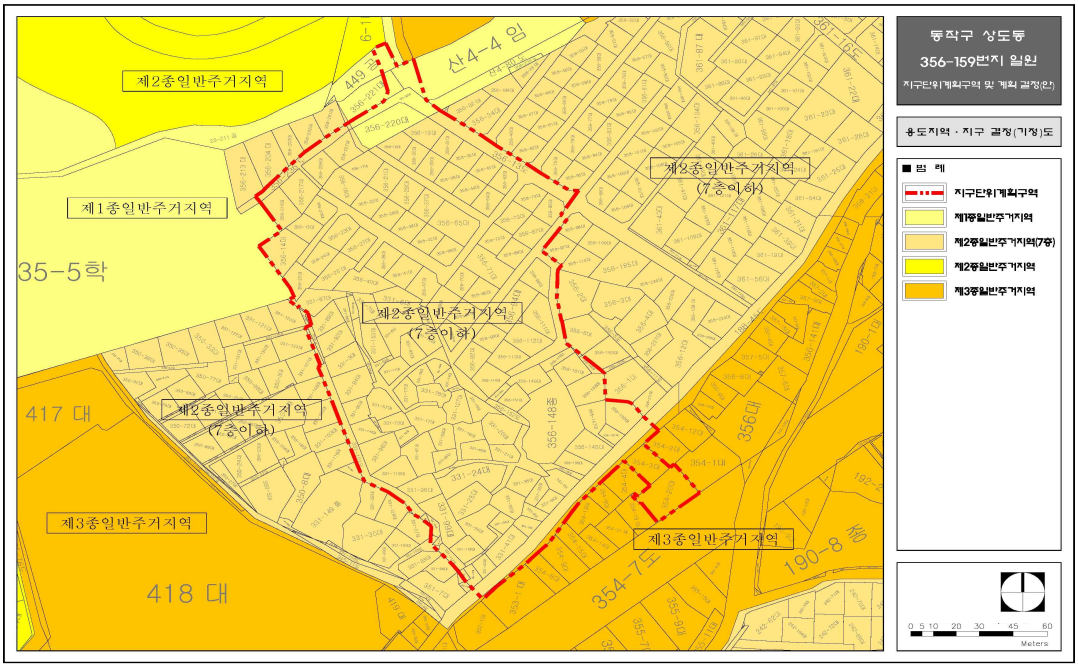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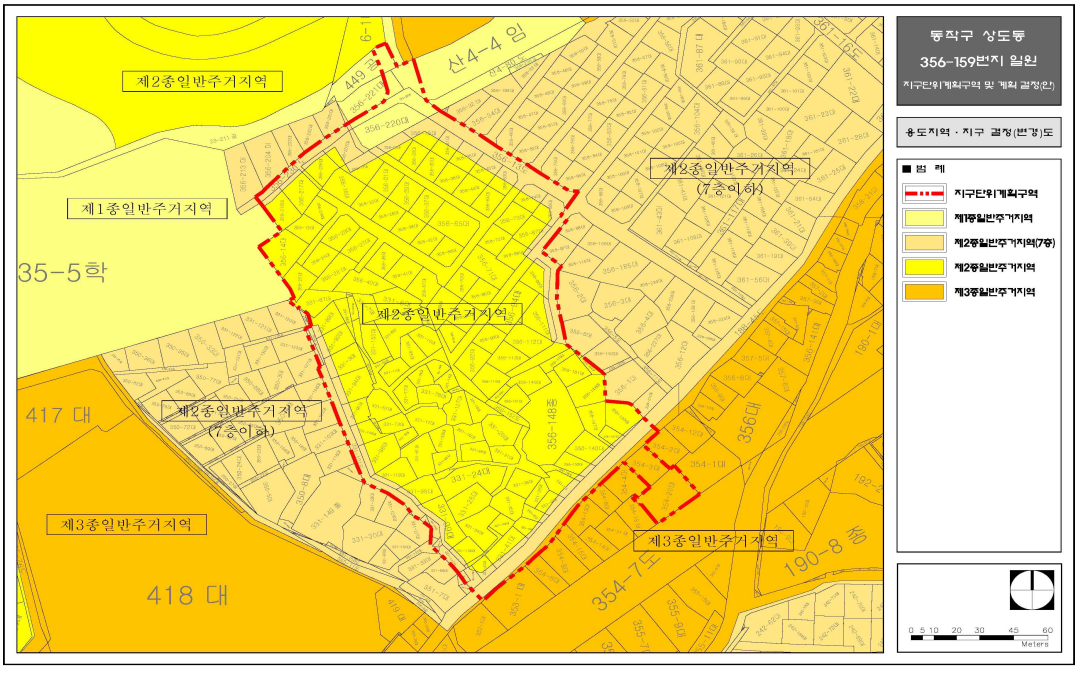

■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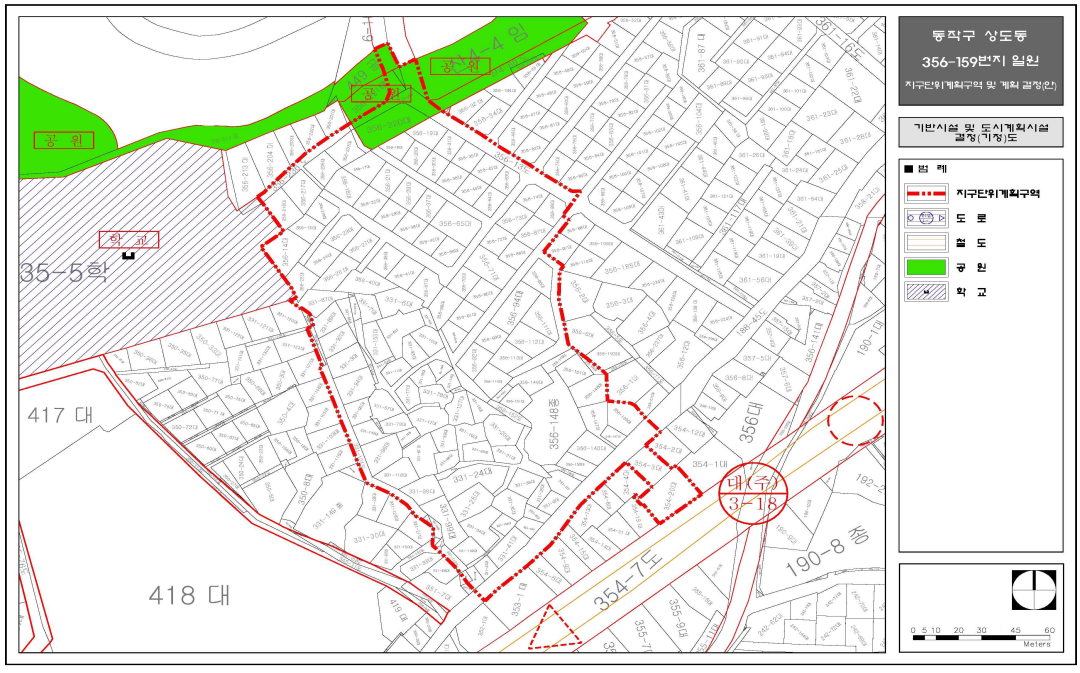

■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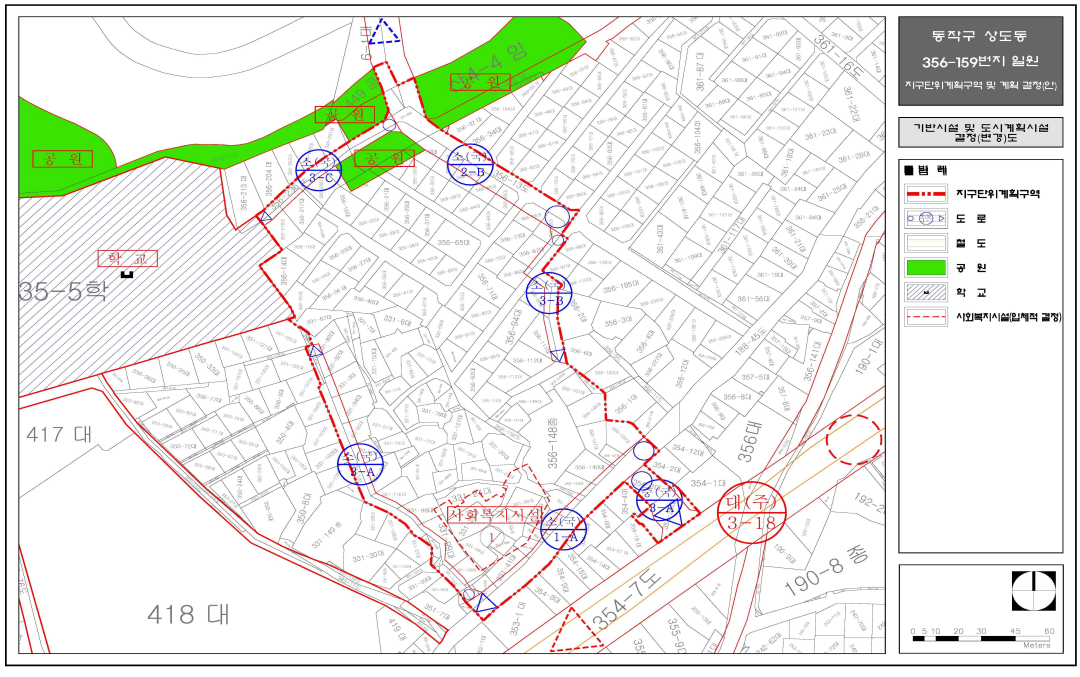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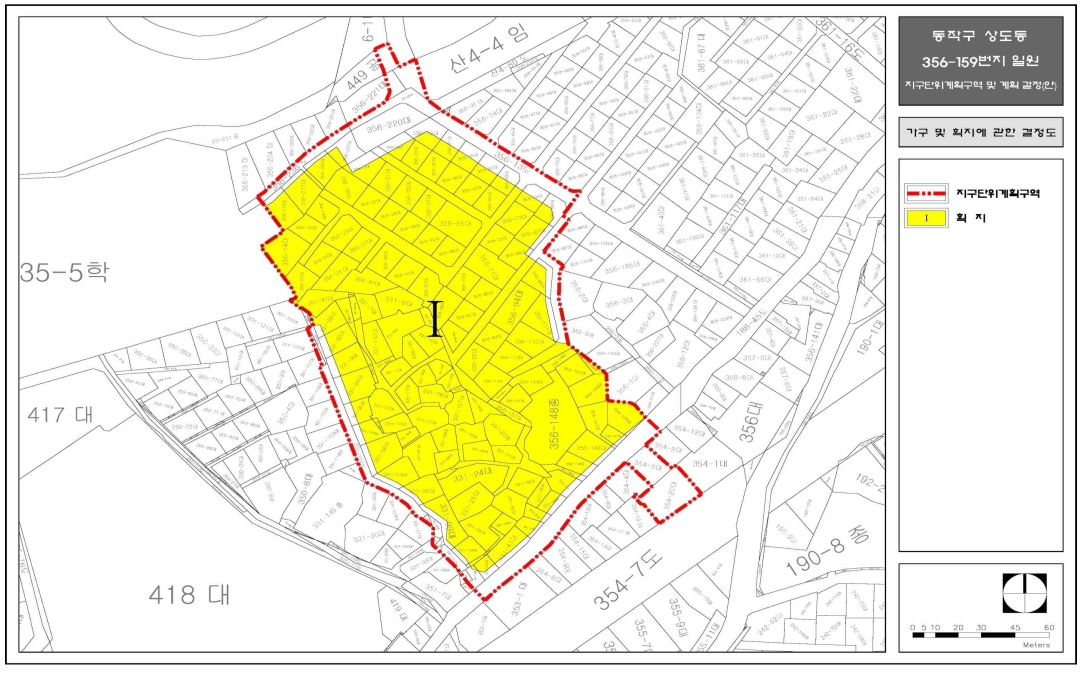

■ 건축물의 대한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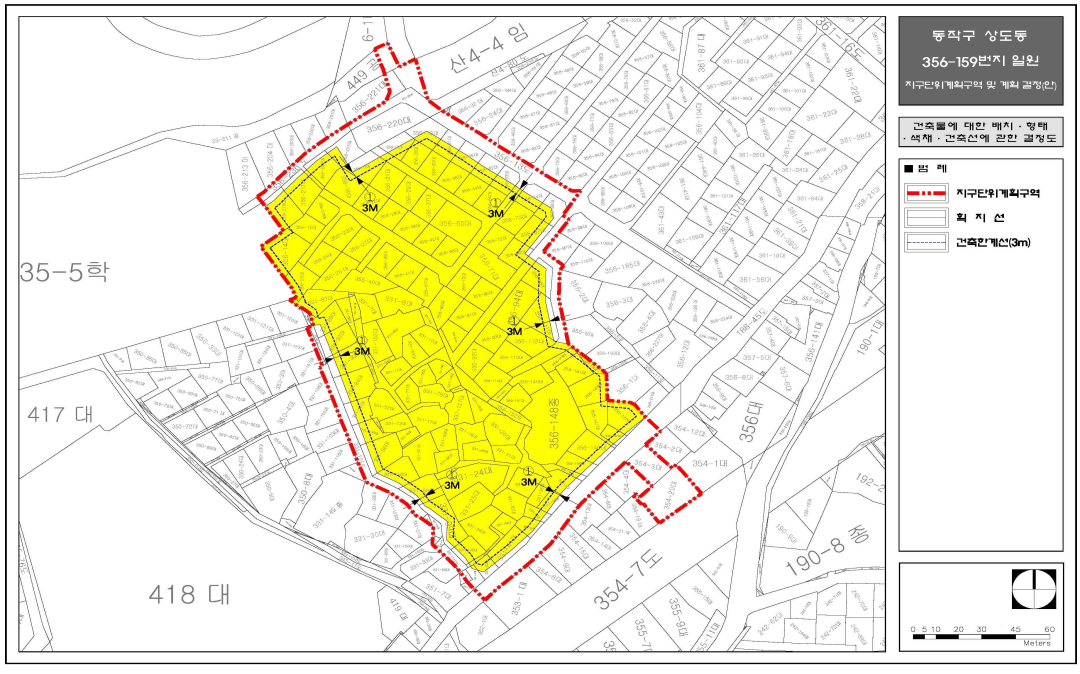

■ 건축물의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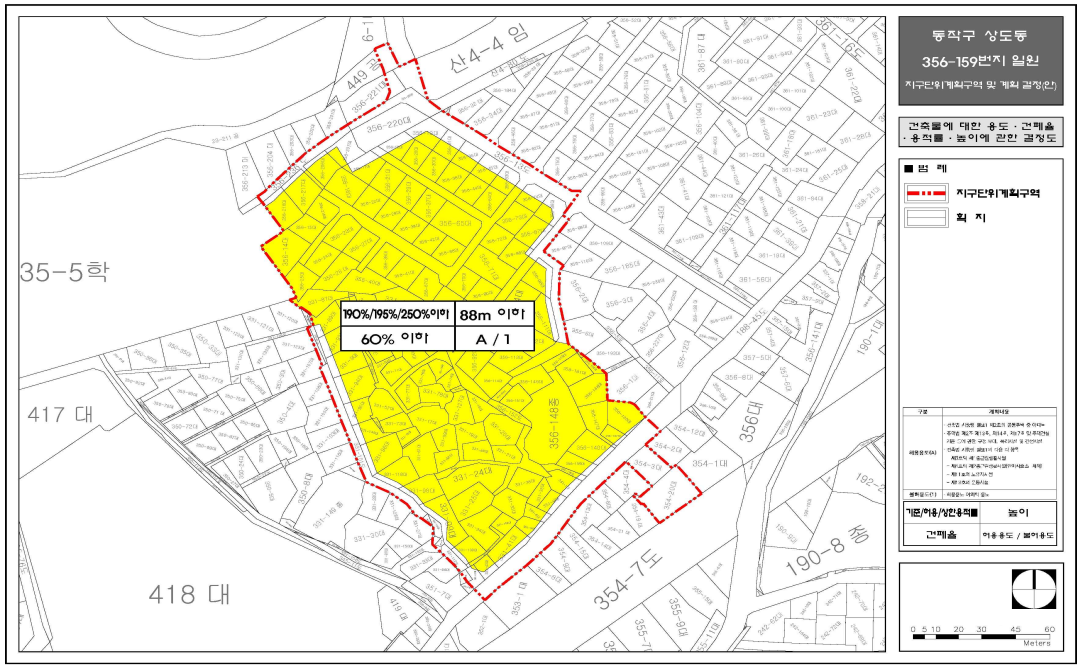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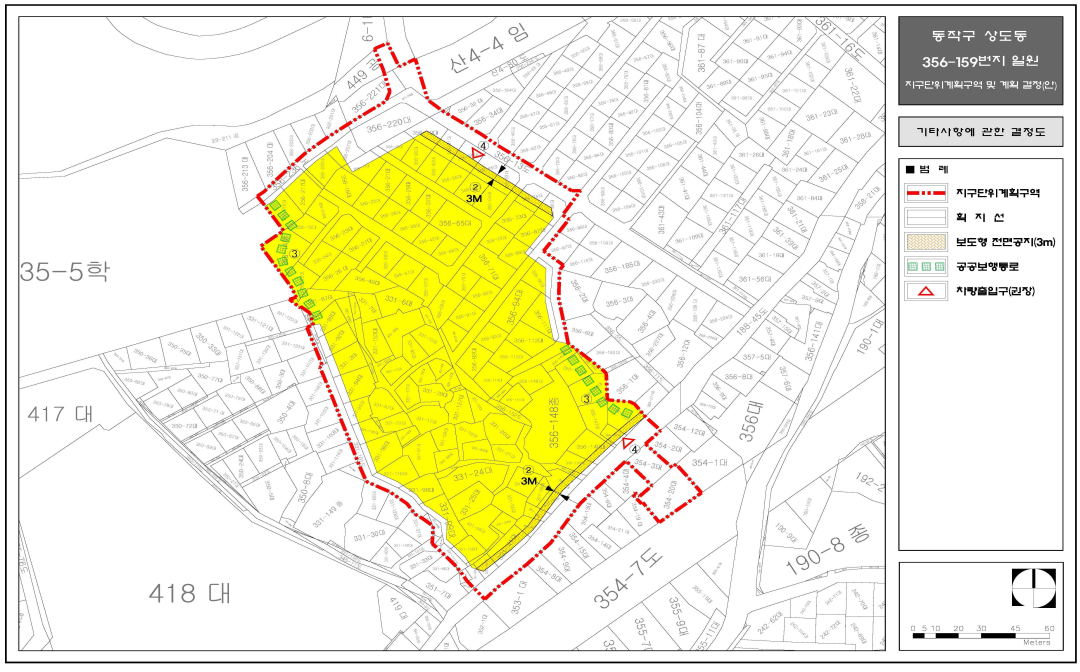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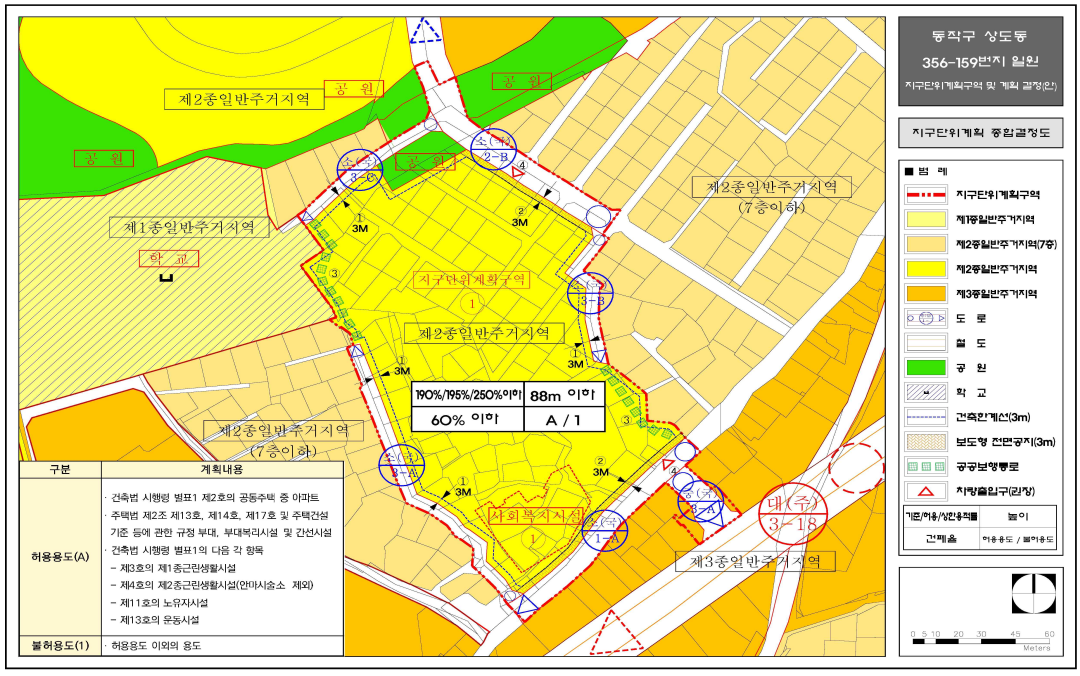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2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7호로 고시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해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정 내용을 (경미한)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명칭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유형: 광역복합환승센터)
   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1번지 8호 일대
   다. 면적 : 52,974㎡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가. 교통수단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
   나. 교통 결절점으로서 지역성장과 발전의 거점 조성
   다.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복합개발로 교통이용자 편의 향상
   라. 삼성역 일대에 계획된 다양한 철도노선 통합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가. 시행자 명칭 : 서울특별시
   나. 대표자 성명 : 오세훈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 착공일로부터 86개월
   나. 개발방법 : 공공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복합환승센터용지	계	56,207	100	
	복합환승센터	56,207	100	

나. 기반시설계획

시설명	위치	설치유형	설치내역
도로 (진입램프)	사업지 내	신규	복합환승센터내(주차장), 진입램프 322m
상수도	사업지 내	기존시설 활용	삼성동160번지 앞 인도방향 근처 공급
하수도	사업지 내	기존시설 활용	기존관로 이설
전 기	사업지 내	신규	한국전력에서 복합환승센터로 공급 복합환승센터 변전소에서 각 시설별 분리공급
통 신	사업지 내	신규	기간망 사업자가 복합환승센터에 회선공급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없음)

주요 유치 업종			배치계획
업종 구분	세부 용도		
환승시설	보행이동시설	보행통로, 에스컬레이터 등	지하1 ~ 5층
	환승편의시설	매표소, 대합실 등	지하1,2,3층
	연계교통시설	승강장, 버스환승정류장	지하1층, 지하2층, 지하4층, 지하5층
	정보안내시설	안내표지판, 키오스크 등	지하1 ~ 5층
환승지원 시설	근린생활시설	F&B 등	지하1 ~ 지하2층
	문화시설	다목적홀 등	
	판매시설	상점 등	

7.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8.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9.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02-2133-8245), 강남구청 공간개발과(02-3423-688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11.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변경 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권리자 등 현황 (변경)

가. 토지 (변경)

○ (기정)

일련번호	토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공부	영구 사용	임시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최저 심도	최고 심도			
합계		20필지		536,744							
1	강남구 삼성동	111-8	도	94,806	42,429	1,188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지상권)	
2	강남구 삼성동	172-21	도	754	606	15			강남구	-	
3	강남구 삼성동	172-66	도	43,712	4,891	21			서울특별시	-	
4	강남구 대치동	1011	도	43,853	2,078				서울특별시	-	
5	강남구 대치동	995	도	97,930	1,210	32			서울특별시	-	
6	강남구 삼성동	159	대	87,534	804.22	420.36 (24.1.1.~24.8.15.) 254.57 (26.06~28.10) 462.08 (26.01~28.07)	107.31	117.82	한국무역협회	서울특별시(지상권)	
7	강남구 삼성동	159-1	대	7,614	220.22	290.5 (26.01~28.10)	107.29	117.29	한국무역협회	-	
8	강남구 삼성동	159-9	대	53,636	743.68	148.90 (26.01~28.07) 517.88 (26.01~28.10)	99.75	117.60	한국무역협회	-	
9	강남구 삼성동	167	대	79,342	782.24	765.82 (25.01~28.10) 311.80 (26.01~28.07) 1,021.83 (26.01~28.10)	97.39	119.54	현대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기아자동차(주)	한국전력공사 (임차권,지상권)	

일련번호	토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공부	영구 사용	임시 사용	최저 심도	최고 심도			
10	강남구 삼성동	172-22	도	395	168	34			강남구	-	
11	강남구 삼성동	172-40	도	1,213	120	116			강남구	-	
12	강남구 삼성동	172-61	도	699	159	152			강남구	-	
13	강남구 삼성동	172	도	16,596	-	109			서울특별시	-	
14	강남구 삼성동	172-7	도	2,869	-	3			강남구	-	
15	강남구 삼성동	160	대	2,649	-	269.64 (26.08~28.03)			에이치디씨㈜	서울특별시(지상권) 메트라이프생명보험㈜(근저당) ㈜대구은행(근저당) 하이투자증권(주)(근저당) 비알코리아(주)(근저당) ㈜엠에프지코리아(근저당) ㈜케이비손해보험(근저당) ㈜브라이튼자산운용(근저당) 에스티팜㈜(근저당)	
16	강남구 삼성동	168	대	703	-	38.85 (26.01~28.10)			재령강씨종친회	-	
17	강남구 삼성동	168-1	대	690	-	45.27 (26.01~28.10)			두나무㈜		
18	강남구 삼성동	168-2	대	621	-	40.31 (26.01~28.10)			두나무투자일임㈜		
19	강남구 삼성동	168-3	대	666	-	42.75 (26.01~28.10)			㈜하나은행	㈜유니온테크(위탁) ㈜신라스테이(전세권)	
20	강남구 삼성동	168-4	대	462	-	12.63 (26.01~28.10)			㈜하나은행	㈜유니온테크(위탁) ㈜신라스테이(전세권)	

○ (변경)

일련번호	토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공부	영구 사용	임시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최저 심도	최고 심도			
합계		20필지		536,744							
1	강남구 삼성동	111-8	도	94,806	42,429	1,188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지상권)	
2	강남구 삼성동	172-21	도	754	606	15			강남구	-	
3	강남구 삼성동	172-66	도	43,712	4,891	21			서울특별시	-	
4	강남구 대치동	1011	도	43,853	2,078				서울특별시	-	
5	강남구 대치동	995	도	97,930	1,210	32			서울특별시	-	
6	강남구 삼성동	159	대	87,534	804.22	420.36 (24.1.1.~24.8.15.) 254.57 (26.06~28.09) 462.08 (26.10~28.08)	107.31	117.82	한국무역협회	서울특별시(지상권)	
7	강남구 삼성동	159-1	대	7,614	220.22	290.5 (26.10~28.08)	107.29	117.29	한국무역협회	-	
8	강남구 삼성동	159-9	대	53,636	743.68	148.90 (26.10~28.08) 517.88 (26.10~28.08)	99.75	117.60	한국무역협회	-	
9	강남구 삼성동	167	대	79,342	782.24	765.82 (25.01~28.10) 311.80 (26.01~28.07) 1,021.83 (26.01~28.10)	97.39	119.54	현대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기아자동차(주)	한국전력공사 (임차권,지상권)	
10	강남구 삼성동	172-22	도	395	168	34			강남구	-	
11	강남구 삼성동	172-40	도	1,213	120	116			강남구	-	

일련번호	토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공부	영구 사용	임시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최저 심도	최고 심도		
12	강남구 삼성동	172-61	도	699	159	152			강남구	-	
13	강남구 삼성동	172	도	16,596	-	109			서울특별시	-	
14	강남구 삼성동	172-7	도	2,869	-	3			강남구	-	
15	강남구 삼성동	160	대	2,649	-	269.64 (26.08~28.03)			에이치디씨㈜	서울특별시(지상권) 메트라이프생명보험㈜(근저당) ㈜대구은행(근저당) 하이투자증권(주)(근저당) 비알코리아(주)(근저당) ㈜엠에프지코리아(근저당) ㈜케이비손해보험(근저당) ㈜브라이튼자산운용(근저당) 에스티팜㈜(근저당)	
16	강남구 삼성동	168	대	703	-	38.85 (26.10~26.12) 12.96 (27.01~28.05) 38.85 (28.06~28.08)			재령강씨종친회	-	
17	강남구 삼성동	168-1	대	690	-	45.27 (26.10~26.12) 15.52 (27.01~28.05) 45.27 (28.06~28.08)			두나무㈜		
18	강남구 삼성동	168-2	대	621	-	40.31 (26.10~26.12) 12.59 (27.01~28.05) 40.31 (28.06~28.08)			두나무투자일임㈜		

일련번호	토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공부	영구 사용	임시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최저 심도	최고 심도		
19	강남구 삼성동	168-3	대	666	-	42.75 (26.10~26.12) 14.22 (27.01~28.05) 42.75 (28.06~28.08)			㈜하나은행	㈜유니온테크(위탁) ㈜신라스테이(전세권)	
20	강남구 삼성동	168-4	대	462	-	12.63 (26.10~26.12) 2.89 (27.01~28.05) 12.63 (28.06~28.08)			㈜하나은행	㈜유니온테크(위탁) ㈜신라스테이(전세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3호

도시관리계획(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1997.3.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77호(2003.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9호(2012.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5호(2019.9.11.)로 결정(변경)된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5년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동 74 일대	58,555.3	감) 1,515.3	57,040.0	서고시 제1999-165호 (99.6.18.)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면적 58,555.3㎡ → 57,040.0㎡ (공원 : 1,515.3㎡)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 전면공지 조성을 위해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내 공원을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편입 및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에서 제척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58,555.3	감) 1,515.3	57,040.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8,502.4	감) 1,515.3	6,987.1	12.2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004.1	-	12,004.1	21.1	-
제3종일반주거지역	35,983.8	-	35,983.8	63.1	-
준공업지역	2,065.0	-	2,065.0	3.6	-

나.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공간시설(어린이공원) 구역 제척

다.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위 변경 이외에는 변경사항 없음

Ⅱ.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도봉구 도봉동 87 일대	-	증) 30,131.8	30,131.8	-

2.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100 •추정비례율 : 107.46% ⇒ (856,359,443천원 - 425,737,389천원) ÷ 400,717,392천원 × 100% ≒ 107.46%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아파트는 최근(2021~2024년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한 거래 사례, KB부동산 시세 평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평균 등을 종합 참작하고, 주택형별 건물면적, 대지지분 면적 등이 상이하고 층별·향별·위치별 격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및 KB부동산 시세를 통하여 종전자산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상가는 아파트와 건축년도 등이 유사하여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거나, 재건축 사업시행 단계에 있는 단지로서 기존 세대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단지의 매매사례, 시세 조사 후, 층별·위치별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산하였으며, 일정 현금청산비율을 감안하였음 •공동주택 소유자 ≒ 3,948.0억원 •상가 등 소유자 ≒ 65.7억원

<table>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종전자산 추산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산액</th><th>추정 권리가액</th><th>추정분담금</th></tr>
<tr><td>전용 59.98㎡</td><td>821,500천원</td><td rowspan="5">개별 종전자산 추산액 X
추정 비례율(107.46%)</td><td rowspan="5">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 75.85㎡</td><td>927,500천원</td></tr>
<tr><td>전용 84.98㎡</td><td>1,035,900천원</td></tr>
<tr><td>전용 115.12㎡</td><td>1,351,800천원</td></tr>
<tr><td>신축상가(지상1,2층)</td><td>7,983,500천원</td></tr>
</table></td></tr>
</table>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 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산출근거

■ 종전자산가액 추정 : 400,717,39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건물면적(㎡)		세대수	일반평균시세(2025년 05월)		종전자산 (세대평균)	종전자산추산액
	공급	전용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97.81	73.89	420	535,000	570,000	580,000	243,600,000
	111.71	83.97	240	575,000	620,000	630,000	151,200,000
	합계		660	-	-	-	394,800,000
아파트外	구분		호수	해당 층	종전자산총액		
	상가		30	지하1,지상1	5,917,392		
	합계		-	-	5,917,392		
종전자산 총계			-	-	400,717,392		

※ 상기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은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될 예정임

※ 상가동의 경우 일정 청산비율을 감안하여 추산하였으며, 상기 면적과 세대수, 호수 등은 건축물대장, 한국부동산원 KAIS 및 각종 공부자료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였음

■ 총 수입 산출 : 856,359,443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공급세대(세대)	공급면적(㎡)	3.3㎡당 분양단가	세대별 분양금액	분양수입
공동주택	조합원분양	278	80.30	33,820	821,500	228,377,000
		243	99.72	30,750	927,500	225,382,500
		139	111.37	30,750	1,035,900	143,990,100
		총 660	-			597,749,600
	일반분양	144	111.37	36,173	1,218,610	175,479,840
		34	148.30	35,450	1,590,370	54,072,580
		총 178	-			229,552,420
	국민주택규모 임대	89	80.30	5,535	134,461	11,967,100
		19	99.72	5,564	167,860	3,189,300
		19	111.37	5,566	187,512	3,562,700
		총 127				18,719,100
	기부채납 공공주택	28	-	-	-	-
		총 28	-	-	-	-
	소 계	993	-	-	-	846,021,120
근린생활시설 등		-	1,020 (연면적)	-	-	12,083,500
매출부가세 수입차감액				-	-	-1,745,177
총 수입				-	-	856,359,443

※ 종후자산 추정 : 일반분양가(36,000천원/평), 조합원분양가(30,600천원/평, 평형간 격차율 적용, 84형 기준)
※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은 2024년 도봉구 도봉동 및 인근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으며, 추후 정확한 분양아파트 가격은 시공사 선정 및 종후 감정평가 후 관리처분시 결정됨.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소유유형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평형별 세대수 규모는 향후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임.
※ 공공주택 중 59형 23세대, 84형 5세대는 기부채납 임대주택으로 매각가액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지출(사업비) 산출 : 425,737,389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금액
공사비	건축공사비, 건축물철거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등	354,077,360
보상비	매도청구에 따른 현금청산 등	759,399
관리비	추진위원회운영비, 조합운영비 등	3,561,800
설계비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비계획(변경), 문화재조사비, 지질조사비, 정비기반시설설계 등	5,074,406
감리비	건축, 전기, 정보통신, 기타(소방, 석면) 등	4,909,138
수수료등 기타사업비	안전진단용역, 정비사업전문관리비, 측량비, 감정평가, 채권매입비, 사업비 PF 수수료, 광고선전비, 민원처리비, 보존등기비 등	17,641,109
각종부(분)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부담금 및 공사비, 하수도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등	3,718,567
금융 비용	사업비 PF 이자, 기타 경비 등	10,172,900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 세무 조정료	13,430,000
예비비	-	12,392,710
합계	-	425,737,389

※ 상기 추산액은 금회 정비계획(안)과 개략적인 설계 개요에 기반하여 개략적으로 추산한 사업비로서 향후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될 예정임

■ 추정분담금 예시

(단위 : 천원)

전용면적(㎡)	종전자산	추정권리가액		예상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비례율	권리가액	전용면적(㎡)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구분
73.89	580,000	107.46%	623,268	59.98	821,500	198,232	추가분담
				75.85	927,500	304,232	추가분담
				84.98	1,035,900	412,632	추가분담
				115.12	1,351,800	728,532	추가분담
83.97	630,000	107.46%	676,998	59.98	821,500	144,502	추가분담
				75.85	927,500	250,502	추가분담
				84.98	1,035,900	358,902	추가분담
				115.12	1,351,800	674,802	추가분담
상가	6,574,880	107.46%	7,065,366	신축상가 (지상1,2층)	7,983,500	예상분양가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환급)	

※ 분담금 추산액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추산하였음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안)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 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30,131.8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1,515.3	5.0	-
	공 원	1,515.3	5.0	누원 어린이공원
획 지	소 계	28,616.5	95.0	-
	획 지	28,616.5	9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용도지역·지구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30,131.8	-	30,131.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15.3	-	1,515.3	5.0
준공업지역	28,598.4	-	28,598.4	94.9
자연녹지지역	18.1	-	18.1	0.1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누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도봉구 도봉동 653	1,515.3	-	1,515.3	서고시 제1999-165호 (99.6.18.)	-
변경				도봉구 도봉동 653 일대					공원 형태 변경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누원 어린이공원	· 공원 형태 변경	· 획지 내 전면공지 조성에 따른 공원 형태 변경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법정		계획면적(㎡)	
			기준	면적(㎡)		
주민공동시설	합 계	-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993세대×2.5㎡×1.25)	3,103.13	3,685.00	-
	경로당	획지	500~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330.00	350.00	-
	어린이집	획지	500~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330.00	350.00	-
	작은도서관	획지	500~1,000세대 미만 : 158㎡ 이상	158.00	180.00	-
	주민운동시설	획지	-	-	600.00	옥외시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획지	최소 33㎡ 이상	33.00	105.00	-
	어린이놀이터	획지	200 + (세대수) × 1.0	1,193.00	1,200.00	옥외시설
	주민공동시설	획지	-	-	800.00	-
	다함께돌봄센터	획지	최소 66㎡ 이상	66.00	100.00	-
부대시설	경비실	획지	-	-	32.00	-
	관리사무소	획지	10㎡+[(993-50)×0.05㎡]	57.15	115.50	-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및 〈별표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30,131.8	획지	28,616.5	도봉구 도봉동 87 일대	7	-	-	7	-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삼환도봉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30,131.8	획지	28,616.5	도봉구 도봉동 87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343.49 이하	135m 이하 (42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 건립규모 : 총 993세대

구분	전용면적 (㎡)	세대수				비율 (%)	비고
		합계	분양주택	기부채납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60㎡ 이하	59	390	278	23	89	39.3	-
60㎡ 초과 ~ 85㎡ 이하	75	262	243	-	19	26.4	-
	84	307	283	5	19	30.9	-
85㎡ 초과	115	34	34	-	-	3.4	-
합계		993	838	28	127	100.0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심의완화 사항	·허용용적률 20% 이내(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 (공공보행통로, BF인증, 고령서비스시설, 층간소음해소 인센티브 적용)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용적률) : 343.49%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한 도봉로180길변 전면공지는 보도 및 차도로 조성) – 북측 획지경계선 : 획지선으로부터 3m – 동측 획지경계선 : 획지선으로부터 3m – 도봉로180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5.8 ~ 7.0m – 공공보행통로 동측변으로부터 3m								
기타 사항	·공공보행통로 : 획지 내 공공보행통로 폭 8m ※ 북측 인접단지 연결부는 인지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전면공지 – 차도형 전면공지 : 도봉로180길변 폭 2.8m ~ 4.0m – 보도형 전면공지 : 도봉로180길변 폭 3.0m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	대지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 등 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지분(㎡)	건축물 환산부지(㎡)		
	30,131.8	28,616.5	1,515.3	1,790.5	703.9	1,086.6	1,418.3	97.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 등 면적 = 1,515.3 – 1,418.3 – 97.0 + 1,790.5 = 1,790.5							
공공시설 등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면적	·기반시설 토지 : 공원 1,515.3㎡ ·기부채납 임대주택 토지지분 : 703.9㎡ 59㎡ 토지지분 : (건축연면적(㎡) ÷ 전체연면적(㎡)) × 주택용지면적(㎡) = 539.8㎡ ◦ 지상 : (1,880.5㎡ ÷ 163,637.93㎡) × 28,616.5㎡ = 328.8㎡ ◦ 지하 : (1,206.4㎡ ÷ 163,637.93㎡) × 28,616.5㎡ = 211.0㎡ 84㎡ 토지지분 : (건축연면적(㎡) ÷ 전체연면적(㎡)) × 주택용지면적(㎡) = 164.1㎡ ◦ 지상 : (567.2㎡ ÷ 163,637.93㎡) × 28,616.5㎡ = 99.2㎡ ◦ 지하 : (371.5㎡ ÷ 163,637.93㎡) × 28,616.5㎡ = 64.9㎡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기부채납 임대주택 환산부지면적 : 1,086.6㎡ ·(표준건축비(원/㎡) × 임대주택 계약면적(㎡)) ÷ 부지가액(원/㎡) 59㎡ 지상 : (2,065,151.8(원/㎡) × 1,880.5(㎡)) ÷ 5,936,000(원/㎡) = 654.2㎡ 59㎡ 지하 : (917,272.7(원/㎡) × 1,206.4(㎡)) ÷ 5,936,000(원/㎡) = 186.4㎡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산정내용</th></tr>
<tr><td colspan="2"></td><td>84㎡ 지상 : (1,974,343.6(원/㎡) × 567.2(㎡)) ÷ 5,936,000(원/㎡) = 188.6㎡
84㎡ 지하 : (917,272.7(원/㎡) × 371.5(㎡)) ÷ 5,936,000(원/㎡) = 57.4㎡
<table>
<tr><td rowspan="2">표준
건축비</td><td>59㎡</td><td>지상</td><td>2,065,151.8원/㎡</td><td>지하</td><td>917,272.7원/㎡</td><td rowspan="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24.09.13.)</td></tr>
<tr><td>84㎡</td><td>지상</td><td>1,974,343.6원/㎡</td><td>지하</td><td>917,272.7원/㎡</td></tr>
<tr><td colspan="3">시설 연면적</td><td colspan="2">4,025.5㎡</td><td>▹기부채납 임대주택 28세대</td></tr>
<tr><td colspan="3">부지가액</td><td colspan="2">5,936,000원/㎡</td><td>▹구역 내 토지 평균공시지가(2,968,000원/㎡, 2024년 기준) × 2</td></tr>
</table></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기준</td><td>· 가중평균 용적률 209.72% 이하
– 자연녹지지역 5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준공업지역 210%</td></tr>
<tr><td>허용</td><td>· 가중평균 용적률 249.57% 이하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사업성 보정계수) = 209.72 + (19.93 × 2.0) = 249.57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 공공보행통로(7.9%), 고령서비스시설(5%), BF인증(5%), 층간소음해소(3%) ⇒ 20% 적용
▶ 사업성 보정계수(공시지가 보정계수) 산정
–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 / 대상단지 평균 공시지가
= 7,192,258원/㎡ / 2,968,000원/㎡ ≒ 2.42 (2.0 적용)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산식에 따라 산정한 보정계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적용함
※ 사업성 보정계수는 추후 공시지가 및 계획내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상한</td><td>· 가중평균 용적률 266.03% 이하
= 249.57 + [(229.64 × 1.3 × 1.0 × 0.0252) + (229.64 × 1.0 × 0.0389)] = 266.03
◦ 가중치 = 1.0
◦ α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획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토지면적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 (획지면적 - 공공주택 토지지분면적)
= (2,219.0㎡ – 1,515.3㎡) / (28,616.5㎡ – 703.9㎡) = 703.9㎡ / 27,912.6㎡ = 0.0252
◦ β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면적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획지면적 - 공공주택 토지지분면적) = 1,086.6㎡ / 27,912.6㎡ = 0.0389</td></tr>
<tr><td colspan="2">법적
상한</td><td>·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용적률) : 343.49% 이하</td></tr>
</table>

※ 공공시설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항목		인센티브량
공공보행통로	기준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0% 이내
	적용	· 획지 내 1개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α=1이하) = 209.72% X (1,072.2㎡/28,616.5㎡) X 1 = 7.9% ※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7.9%
BF인증	기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5% 이내
	적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최우수등급 5% 적용	5%
고령서비스시설	기준	·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 / 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a ※ a=0.1이하 *노인복지시설 등	5% 이내
	적용	·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209.72% x (750.0㎡ / 3,103.13㎡) x 0.1 = 5.1% (5% 적용)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 / 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a * a=0.1이하 *노인복지시설 등	5%
층간소음해소	기준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5% 이내
	적용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2등급 3% 적용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합계			20.0% (20.9%)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하여 계획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9.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항목	지점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방안 제시(3개소)
	-	· 사업지 전면부 도봉로180길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2개소) - 사업지 주출입구(4지교차로), 부출입구(3지교차로)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 사업지 전면부 도봉로180길 원활한 통행을 위한 차도형 전면공지 확보(B=2.8~4.0m) 및 차로운영계획 재수립(2차로→3차로)
	-	· 사업지 진출입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12.0m)
대중교통 및 보행	-	· 사업지측 보행자를 위한 보도형 전면공지 확보(B=3.0m)
	-	· 보행연속성을 위하여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주차시설	-	· 법정주차대수 : 1,000대(공동주택 986대, 근생시설 14대)
	-	· 주차수요 : 1,153대(2029년 기준, 공동주택 1,138대, 근생시설 15대)
	-	· 계획주차대수 : 1,412대(공동주택 1,390대, 근생시설 22대)
	-	· 법정대비 : 141.2%, 수요대비 : 122.5%
	-	· 자전거주차 : 법정주차대수의 20%이상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 및 턱낮춤 시공
	★	· 차량 진출입시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램프 진출입부 경고등 설치
	◓	· 시거불량구간 시거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
	-	·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	· 사업지 주변 가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면표시 설치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면적 확보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재난방지	수재해	·계획구역의 입지상 한강변에 위치하나 기존 제방시설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음. 그러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산사태	·해당사항 없음	
	화재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입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대상지 내 주거지 및 녹지가 분포하고 있음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및 3등급(일부),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로 조사됨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
생태면적률	30%이상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물순환	30%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계획지구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도봉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에너지자립률 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고효율 기자재 사용 등 계획	-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 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	-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 강화	-
일조	수인한도 만족	○	·대상지 : 준공업지역 ·대상지 인근 :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건축물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북동측 수락고등학교 입지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은 수락고등학교로 약 300m 떨어져 있음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이주 · 철거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 및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가로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이주시작~철거완료시까지 사고 발생 방지토록 정비, 유지 ·유동인구 동선, 공가 등을 고려한 순찰로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순찰계획 수립 및 범죄 예방 ·이주 등으로 공가발생시 공가출입문을 폐쇄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 철거시까지 출입 차단 및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년 탈선 등의 범죄 장소로 사용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현수막, 벽보,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범죄예방활동 안내	-
공동주택 건립시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에 따른 건축설계를 통해 물리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 ·구역내 주요 지점에 경비인력이 상주 할 수 있는 순찰 초소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예방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상을 수시 점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한 관리와 범죄예방 조치	-

13.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증감	계획	
재건축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	(가칭) 삼환도봉아파트 준비위원회	660	증) 333	993	-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	28,616.5	도봉동 87 일대	28,61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외관, 마감, 생활환경(채광, 조망) 등을 동일(유사)하게 계획하고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조합원의 동·호수 선정 이전 또는 함께 추첨되도록 관리처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여(기부채납) 및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임대) 중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

■ 공공주택(임대) 공급계획

구분			총 세대수	기부채납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주택 공급 계획	신설	세대수	155	28	-	-	23	5	127	-	-	89	38
		비율(%)	100.0	18.1	-	-	14.8	3.2	81.9	-	-	57.4	24.5
		공급유형		장기전세주택 28세대					장기전세주택 127세대				

※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구분		내용			
법적상한용적률		• 343.49% 이하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66.03%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343.49% - 266.03% = 77.46%			
	초과 용적률의 50%	• 38.73% (77.46% × 50%)			
	의무연면적	• 11,083.17㎡ 이상 (대지면적 28,616.5㎡ × 38.73%)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계획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8	80.30	89	7,146.70
		75.85	99.72	19	1,894.68
		84.98	111.37	19	2,116.03
		합 계		127	11,157.41
		∴ 11,157.41㎡ > 11,083.17㎡(의무연면적)			

Ⅲ.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도봉동 87 일대	-	증) 30,131.8	30,131.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도봉구 도봉동 87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30,131.8㎡	·양호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 · 고시의 효력 등)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0,131.8	-	30,131.8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15.3	-	1,515.3	5.0	-
준공업지역	28,598.4	-	28,598.4	94.9	-
자연녹지지역	18.1	-	18.1	0.1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누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도봉구 도봉동 653	1,515.3	-	1,515.3	서고시 제1999-165호 (99.6.18.)	-
변경				도봉구 도봉동 653 일대					공원 형태 변경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누원 어린이공원	공원 형태 변경	·획지 내 전면공지 조성에 따른 공원 형태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획지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획지	도봉동 87 일대	28,61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획지	용 도	비 고
신설	허용 용도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폐율

구분	획지	건폐율	비 고
신설	획지	60% 이하	-

나) 용적률

구분	획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비 고
신설	획지	209.72% 이하	249.57% 이하	266.03% 이하	343.49% 이하	-

※ 허용용적률 : 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인센티브 (허용용적률)	
공공 보행통로	· 획지 내 1개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α (α=1이하) = 209.72% X (1,072.2㎡ / 28,616.5㎡) X 1 = 7.9% ※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7.9%
BF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최우수등급 5% 적용	5%
고령서비스 시설	·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209.72% x (750.0㎡ / 3,103.13㎡) x 0.1 = 5.1% (5% 적용)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 / 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a * a=0.1이하 *노인복지시설 등	5%
층간소음 해소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2등급 3% 적용	3%
합 계	최대 20% 이내 (20.9%)	

■ 상한용적률 완화 계획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법적상한용적률)	
합 계	16.46	77.46	총 93.92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획지	높이 (최고층수)	비고
신설	획지	135m 이하 (42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획지 및 도로 연접	·건축한계선(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한 도봉로180길변 전면공지는 보도 및 차도로 조성) - 북측 획지경계선 : 획지선으로부터 3m - 동측 획지경계선 : 획지선으로부터 3m - 도봉로180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5.8 ~ 7.0m - 공공보행통로 동측변으로부터 3m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방향성	획지	· 일률적인 배치 지양, 가로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수립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보행로 주변으로 주민편의시설 배치 및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커뮤니티 형성
건물 진출입구		· 계획 세대수와 주변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건물 진 · 출입구 설치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외부형태	획지	·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 고려 · 옥탑층 노출 금지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 노출 금지
저층부 외관		· 1층 개구부 높이 통일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금지
재료 및 색채		· 커튼월 등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원색계열 재료,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유효폭 1.8m이상으로 미끄러짐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함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개방감	획지	· 무수천, 중랑천 등 주변 하천으로 열린 통경축 확보
조명계획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 무수천, 중랑천변으로 중저층, 단지 중앙부는 고층으로 설계하여, 텐트형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획지 내	· 공공보행통로 : 획지 내 공공보행통로 폭 8m ※ 북측 인접단지 연결부는 인지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	· 전면공지 - 차도형 전면공지 : 도봉로180길변 폭 2.8m ~ 4.0m - 보도형 전면공지 : 도봉로180길변 폭 3.0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도봉로180길변	· 도봉로180길로의 차량진출입구 2개소 설치	-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대상지 내 주거지 및 녹지가 분포하고 있음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동 · 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및 3등급(일부),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로 조사됨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
생태면적률	30%이상	○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물순환	30%	○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 계획지구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 · 재생에너지 확보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 도봉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 에너지자립률 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고효율 기자재 사용 등 계획	-
경관	Skyline 보전	○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 라인 형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 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 주변 휴식 · 여가공간 부족	·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	·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	-
일조	수인한도 만족	○	· 대상지: 준공업지역 · 대상지 인근: 준공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	-

4) 공공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외관, 마감, 생활환경(채광, 조망) 등을 동일(유사)하게 계획하고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조합원의 동·호수 선정 이전 또는 함께 추첨되도록 관리처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여(기부채납) 및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임대) 중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용면적 기준)	전체 세대수	구성비(%)	일반분양	기부채납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공주택 비율(%)
합계	993	100.0	838	28	127	15.6
60㎡ 이하	390	39.3	278	23	89	11.3
60㎡ 초과 ~ 85㎡ 이하	569	57.3	526	5	38	4.3
85㎡ 초과	34	3.4	34	-	-	-

Ⅲ. 2025년 제4차(’ 25.05.21.)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수정사항	·용적률 계획, 허용인센티브 항목, 공공기여계획 순부담 면적, 주택공급 계획 및 건축한계선 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용적률 계획 : 기준 209.72% 이하, 허용 249.57% 이하, 상한 265.97% 이하, 법적상한 343.42%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20% (BF인증(5%), 돌봄시설(5%), 고령서비스시설(5%), 층간소음해소(5%)) - 순부담면적 : 1,786.0㎡(6.2%) - 주택공급계획 ▶ 공동주택 : 990세대(임대 159세대) 60㎡ 이하 : 388세대 60㎡~85㎡ : 568세대 85㎡ 초과 : 34세대	·용적률 계획, 허용인센티브 항목, 공공기여계획 순부담 면적, 주택공급 계획 및 건축한계선 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하도록 함 ·심의결과 따른 수정사항 반영 내용 - 용적률 계획 : 기준 209.72% 이하, 허용 249.57% 이하, 상한 266.03% 이하, 법적상한 343.49%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20% (BF인증(5%), 고령서비스시설(5%), 공공보행통로(7.9%), 층간소음해소(3%)) - 순부담면적 : 1,790.5㎡(6.3%) - 주택공급계획 ▶ 공동주택 : 993세대(임대 155세대) 60㎡ 이하 : 390세대 60㎡~85㎡ : 569세대 85㎡ 초과 : 34세대	반영
조건사항	·공공보행통로는 인접단지 연결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폭원 확대 및 진입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통한 인지성 제고 방안 마련	·인접단지 연결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을 확폭(6m → 8m)하고 인접단지 부근에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인지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음.	반영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등) 절차 진행 시 무수천 및 주변 교차로 등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상 위압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축 및 경관계획 검토할 것	·향후, 건축심의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상 위압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축 및 경관계획을 검토하겠음	추후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3),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3)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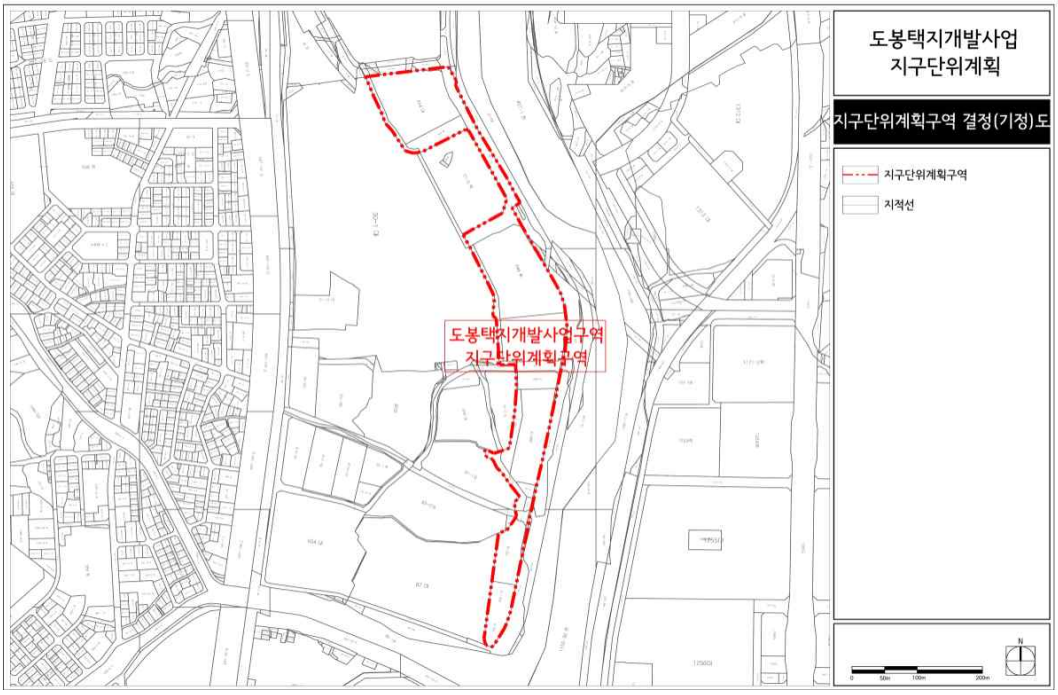

【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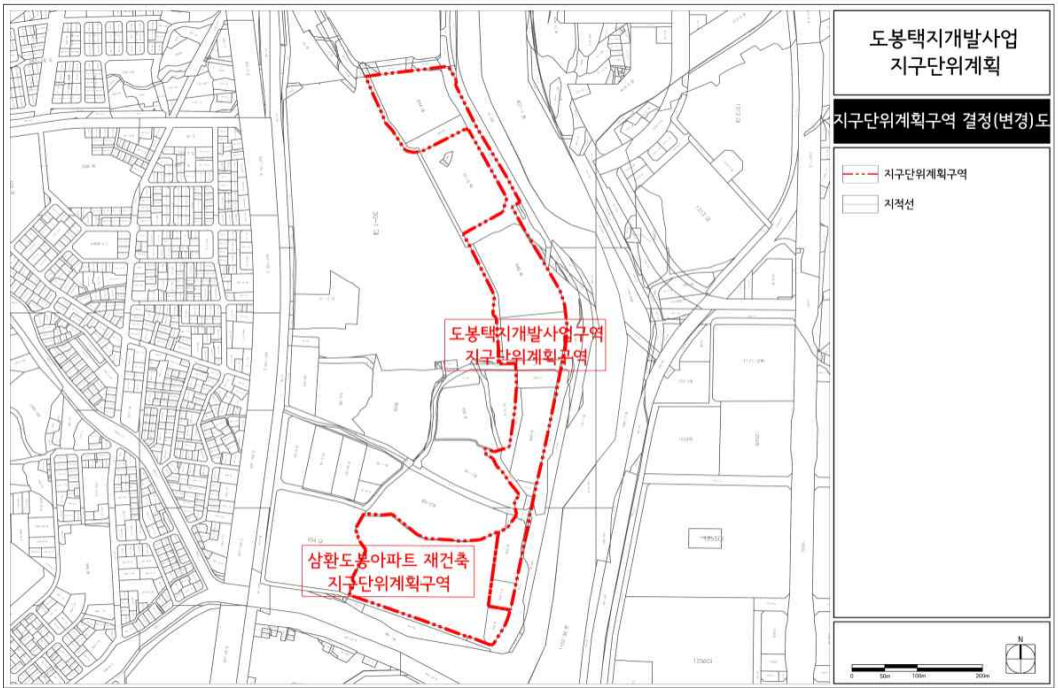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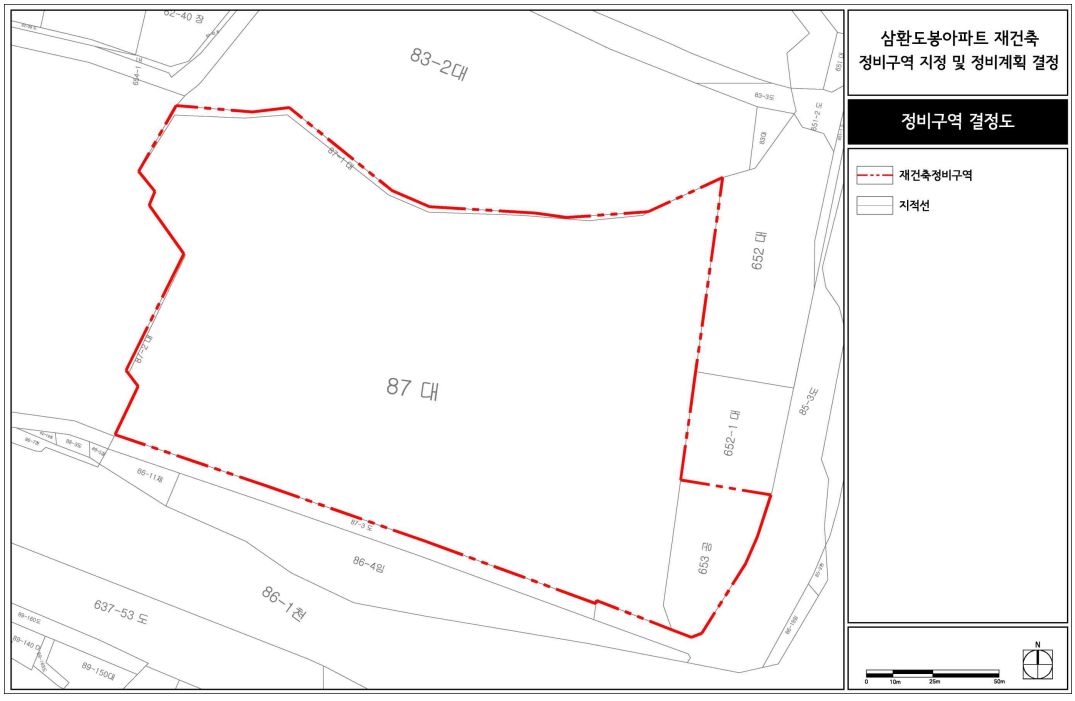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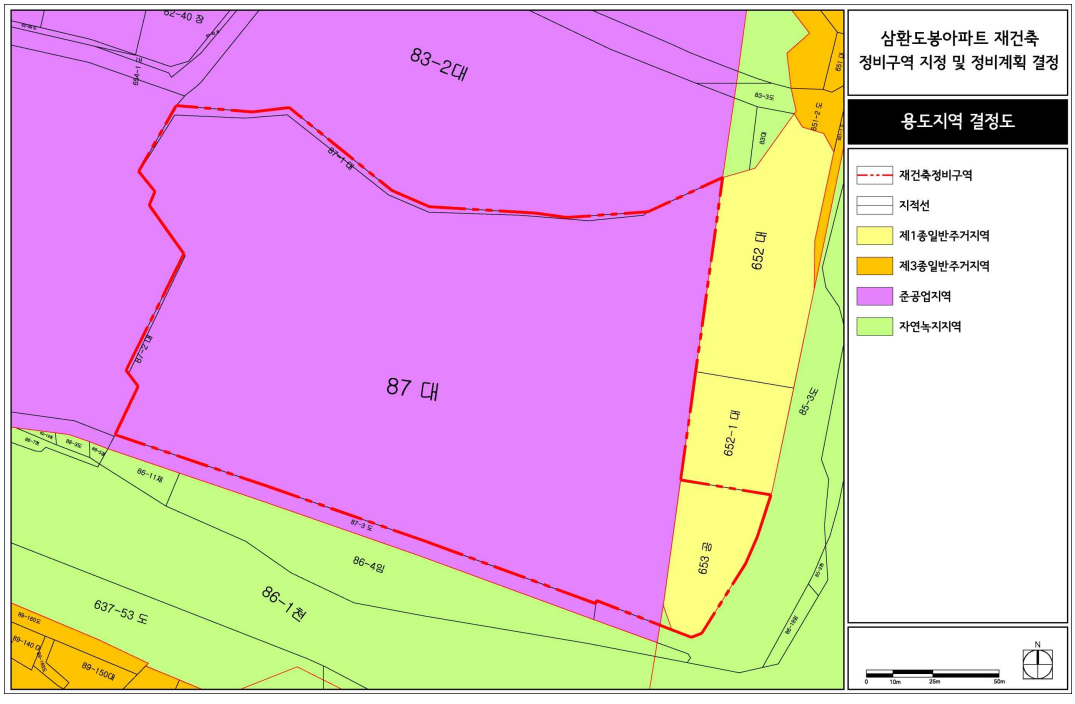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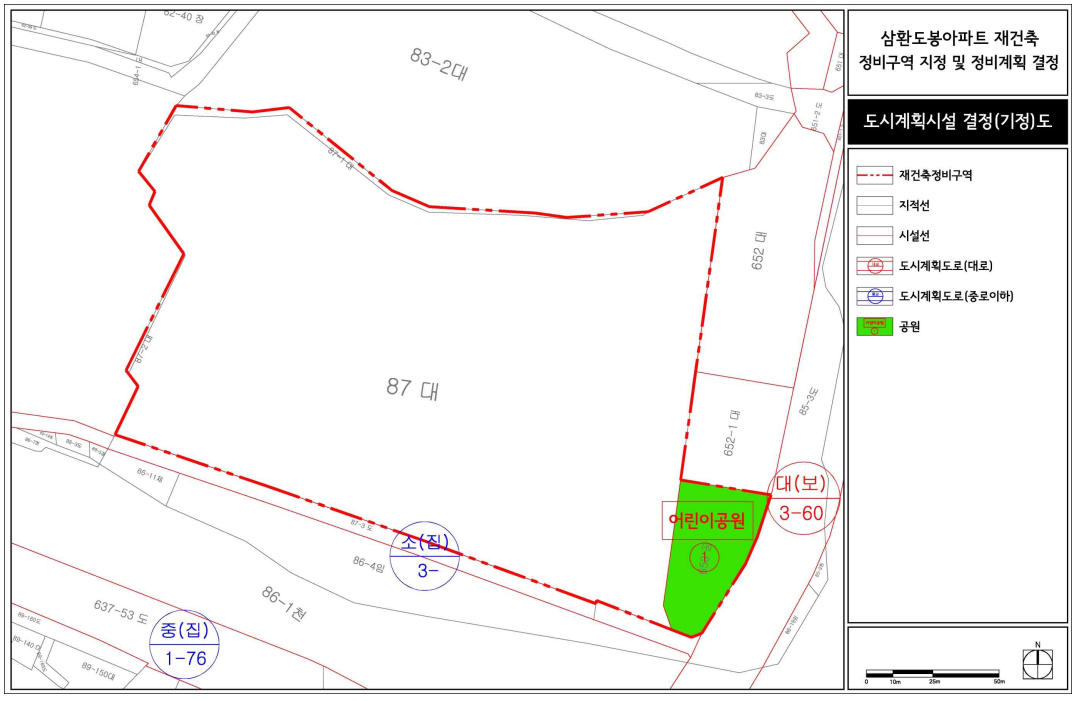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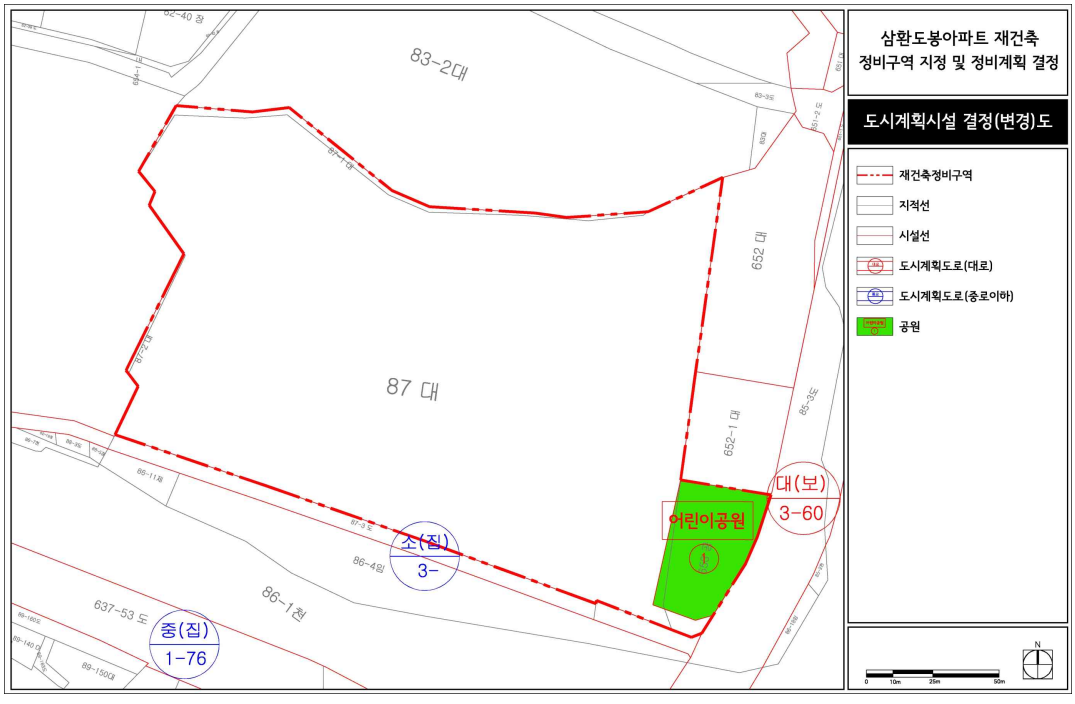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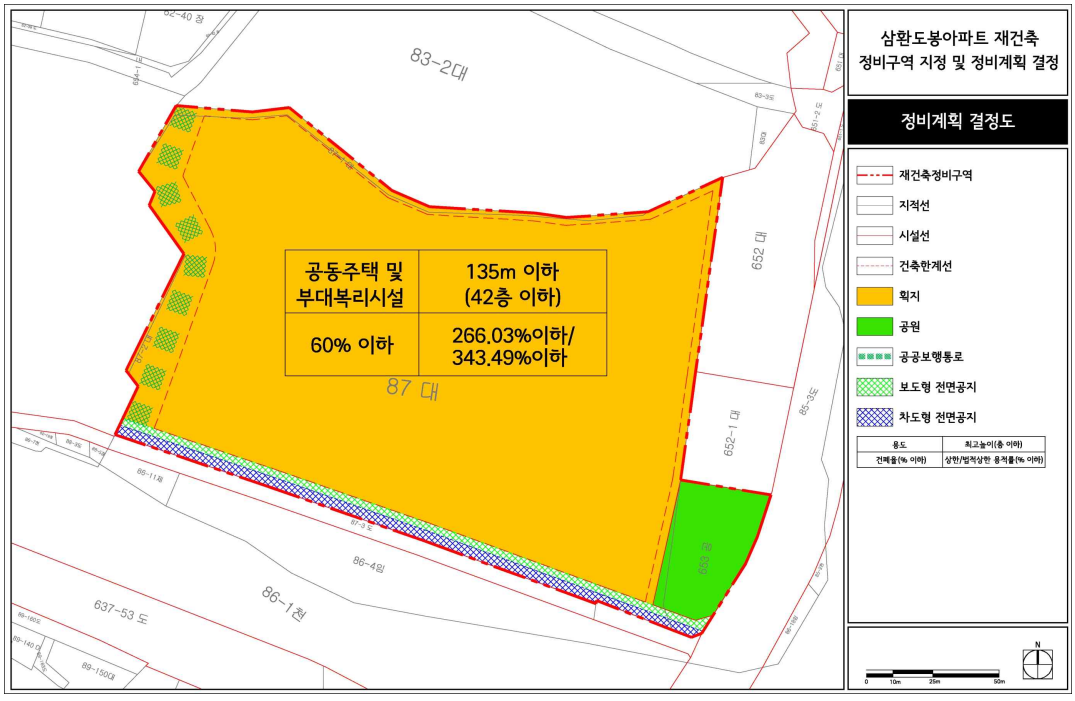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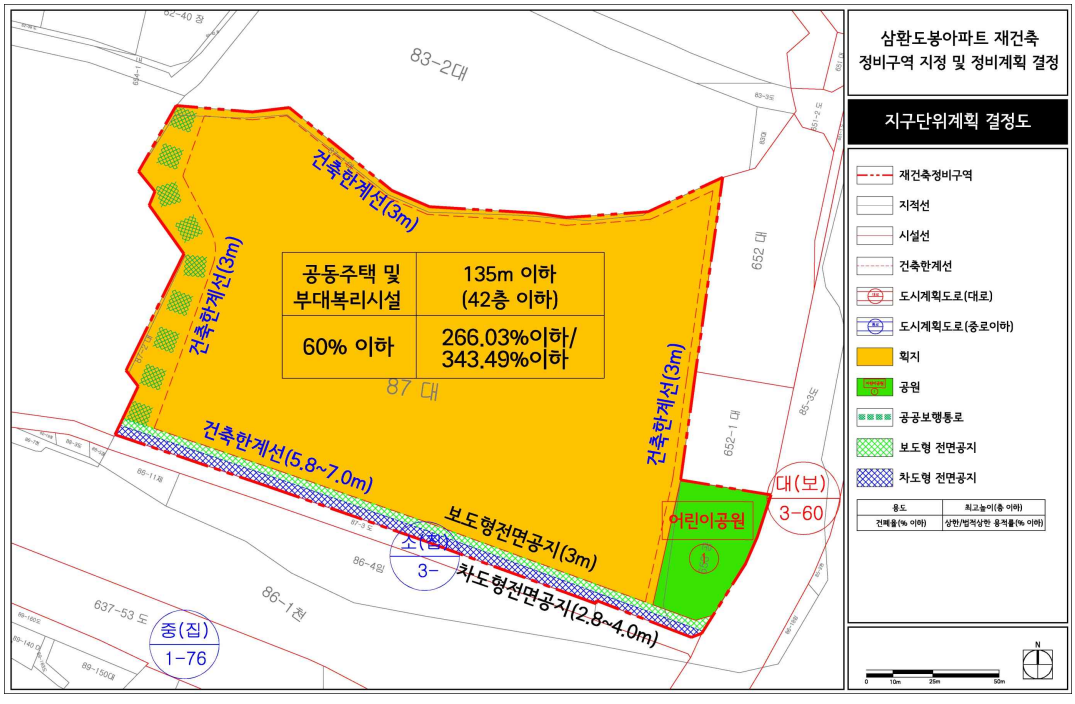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72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8.14.~2025.8.28.

5. 공고내용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5.9.30.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부과	691110-*******	남*현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08	33*7427	100,000	2025-06-02	2025-07-31	2022-04-18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	부과	691110-*******	남*현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09	33*7427	200,000	2025-06-02	2025-07-31	2022-04-19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3	부과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0	04*6820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1-31	흥인지문(종로, 진입)
4	부과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4	04*6820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2-07	흥인지문(종로, 진입)
5	부과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5	04*6820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2-12	경희궁(새문안로)
6	부과	110111-*******	(주)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6	89*7051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2-1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	부과	110111-*******	(주)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2	89*7051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2-0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8	부과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3	04*6820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2-05	흥인지문(종로, 진입)
9	부과	110111-*******	(주)강*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9	80*7939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2-21	남산1 호터널(삼일대로)
10	부과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23	04*6820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2-26	흥인지문(종로, 진입)
11	부과	110111-*******	(주)수*사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1	서울*1더1215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2-02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2	부과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20	01*4449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2-22	경희궁(새문안로)
13	부과	330725-*******	이*식외 이*섭(공채면제)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22	28*1042	200,000	2025-06-09	2025-07-31	2025-02-25	흥인지문(종로, 진입)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4	부과	700730-********	한*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27	78*8690	100,000	2025-06-09	2025-07-31	2025-04-11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5	부과	700730-********	한*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26	78*8690	100,000	2025-06-09	2025-07-31	2025-04-1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과태료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4621~2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td><td></td><td>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Email)</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위반차량</td><td>차량번호</td><td></td><td>차 종</td><td colspan="2"></td></tr>
<tr><td>소 유 자</td><td colspan="4">(신청인과의 관계)</td></tr>
<tr><td rowspan="3">과 태 료
처 분</td><td>처분근거</td><td colspan="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td></tr>
<tr><td>납부번호
(부과일자)</td><td>(년 월 일)</td><td>과태료 금액</td><td colspan="2"></td></tr>
<tr><td>위반일시</td><td></td><td>처분사유</td><td colspan="2">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td></tr>
<tr><td>과 태 료
처 분
불복사유</td><td colspan="5">※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td></tr>
</table>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73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5.8.14. ~ 2025.8.28.
5.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5.8.31.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공고 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50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1	흥인지문(종로, 진입)
2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51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	독촉	870818-*******	성*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23	90*2729	90,000	2025-03-07	2025-07-31	2020-03-06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4	독촉	870818-*******	성*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24	90*2729	130,000	2025-03-07	2025-07-31	2020-06-0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5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59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6	흥인지문(종로, 진입)
6	독촉	124864-****	가* 디엔씨(*)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60	10*2973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7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7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61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7	흥인지문(종로, 진입)
8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62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9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52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2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54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4	흥인지문(종로, 진입)
11	독촉	880701-*******	T*RKS*YLU SALIH	경상남도	통영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55	96*5197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4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2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56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5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3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57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4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58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6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15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63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8	흥인지문(종로, 진입)
16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64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7	독촉	761127-*******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65	95*9824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8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8	독촉	750821-*******	이*순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14	10*9918	100,000	2025-03-07	2025-07-31	2020-01-2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9	독촉	720916-*******	J*N F*NJUN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15	75*5245	100,000	2025-03-07	2025-07-31	2020-11-10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20	독촉	720916-*******	J*N F*NJUN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16	75*5245	100,000	2025-03-07	2025-07-31	2020-11-11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21	독촉	720916-*******	J*N F*NJUN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17	75*5245	200,000	2025-03-07	2025-07-31	2020-12-13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22	독촉	110111-*******	(*)이*마을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18	86*6926	100,000	2025-03-07	2025-07-31	2019-12-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3	독촉	870818-*******	성*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29	90*2729	130,000	2025-03-07	2025-07-31	2020-10-0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24	독촉	870818-*******	성*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25	90*2729	130,000	2025-03-07	2025-07-31	2020-07-1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5	독촉	870818-*******	성*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26	90*2729	130,000	2025-03-07	2025-07-31	2020-07-1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6	독촉	870818-*******	성*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27	90*2729	130,000	2025-03-07	2025-07-31	2020-08-05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27	독촉	870818-*******	성*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28	90*2729	130,000	2025-03-07	2025-07-31	2020-10-2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28	독촉	110111-*******	(*)비*비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53	85*6682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29	독촉	110111-*******	(*)한*청소년교육방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66	56*88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8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30	독촉	870818-*******	성*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30	90*2729	130,000	2025-03-07	2025-07-31	2021-02-0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1	독촉	761127-*******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75	95*9824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2	경희궁(새문안로)
32	독촉	710107-*******	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76	91*7023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33	독촉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19	04*6820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8	흥인지문(종로, 진입)
34	독촉	800413-*******	박*진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03	58*1173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5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05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6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74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2	흥인지문(종로, 진입)
37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77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8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04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1	흥인지문(종로, 진입)
39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21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40	독촉	110111-*******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02	89*705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41	독촉	124864-****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06	10*2973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2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42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07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2	흥인지문(종로, 진입)
43	독촉	630521-*******	김*경외1인(김*영)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08	80*4692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3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44	독촉	110111-*******	(*)비*비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09	85*6682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45	독촉	124864-****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10	10*2973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3	경희궁(새문안로)
46	독촉	870530-*******	홍*표	광주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12	03*1383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47	독촉	110111-*******	(*)비*비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13	85*6682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48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14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5	흥인지문(종로, 진입)
49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15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6	흥인지문(종로, 진입)
50	독촉	122860-****	기*개발(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16	20*1539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7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51	독촉	170111-*******	(*)천*개발	대구광역시	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17	32*8516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7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52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18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8	흥인지문(종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53	독촉	761208-*******	허*이	대구광역시	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24	89*8147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2-0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54	독촉	450122-*******	정*자외1(안*민)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67	38*780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8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55	독촉	110111-*******	(*)신*피엔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68	06*9189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09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56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69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57	독촉	600710-*******	김*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78	54*6240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3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58	독촉	640527-*******	박*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79	88*7816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3	청운공원(인왕산로)
59	독촉	110111-*******	(*)비*비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70	85*6682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60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71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1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61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72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1	흥인지문(종로, 진입)
62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73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63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82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64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83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5	흥인지문(종로, 진입)
65	독촉	730421-*******	O*IYAN P*TIENCE EGUKO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84	41*4892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66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85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5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67	독촉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90	04*6820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6	경희궁(새문안로)
68	독촉	940921-*******	김*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91	59*3226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7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69	독촉	110111-*******	(*)비*비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92	85*6682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70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93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8	흥인지문(종로, 진입)
71	독촉	110111-*******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86	89*705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2	독촉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87	01*4449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6	경희궁(새문안로)
73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88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6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74	독촉	110111-*******	(*)비*비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89	85*6682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6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75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94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76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95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9	흥인지문(종로, 진입)
77	독촉	170111-*******	(*)천*개발	대구광역시	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96	32*8516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9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78	독촉	145111-*******	(*) 에*스하이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97	93*4153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9	흥인지문(종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 구분	과세 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79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98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80	독촉	122860-****	기*개발(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199	20*1539	1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19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81	독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00	80*681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0	흥인지문(종로, 진입)
82	독촉	110111-*******	(*)예*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3	수시분	000201	83*6331	200,000	2025-03-11	2025-07-31	2024-11-20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74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8.14.~2025.8.28.(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5.8.14.~2025.9.13.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 첩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의견제출 방법)

- 팩스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6. 유의사항

가.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 납부

- 납부기한 : 2025.9.13.
-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의견제출,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연번	과태료	납세자주민번호	납세자명	차량번호	주소		본세금액	발송일자	납부기한	단속일자	단속장소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2******	(*)강*한성	80*7939	서울특별시	강동구	160000	2025-06-02	2025-07-02	2025-06-02 15:2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4******	(*)기*이엔씨	01*7564	서울특별시	관악구	160000	2025-06-02	2025-07-01	2025-05-31 12:06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0610-2******	함*옥	01*4449	서울특별시	중구	160000	2025-06-02	2025-06-30	2025-05-31 11:2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91208-1******	정*우	경기*2라5932	경기도	안양시	80000	2025-06-02	2025-06-29	2025-05-30 17:58	백범광장(소월로3길)
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81212-1******	박*우	서울*5두257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0000	2025-06-02	2025-06-28	2025-05-29 15:57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0910-1******	김*일	17*5220	경상북도	청도군	80000	2025-06-02	2025-06-28	2025-05-29 13:13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20817-1******	김*광	80*8069	경기도	양주시	80000	2025-06-02	2025-06-28	2025-05-29 11:32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10920-1******	박*곤	80*4765	경기도	안산시	80000	2025-06-04	2025-07-02	2025-06-02 06:3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1127-1******	한*희	95*9824	충청남도	천안시	160000	2025-06-09	2025-07-08	2025-06-08 10:1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90714-1******	최*석	07*9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160000	2025-06-09	2025-07-07	2025-06-07 16:3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5******	(*)예*이엔지	83*6331	서울특별시	서초구	160000	2025-06-09	2025-07-08	2025-06-05 10:32	경희궁(새문안로)
1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4-8*-*****	(*) 에*엘에스	71*5592	경기도	화성시	160000	2025-06-09	2025-07-09	2025-06-09 11:2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연번	과태료	납세자주민번호	납세자명	차량번호	주소		본세금액	발송일자	납부기한	단속일자	단속장소
1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50827-1******	이*선	07*8025	경상북도	김천시	80000	2025-06-10	2025-07-10	2025-06-06 15:4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20623-1******	김*석	52*0231	서울특별시	용산구	160000	2025-06-12	2025-07-12	2025-06-11 19:3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11026-1******	김*완	60*1807	경기도	양평군	160000	2025-06-12	2025-07-10	2025-06-10 19:20	회현역(퇴계로)
1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1127-1******	한*희	95*9824	충청남도	천안시	160000	2025-06-12	2025-07-10	2025-06-10 17:2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4-8*-*****	가* 디엔씨(*)	10*2973	경기도	화성시	160000	2025-06-12	2025-07-09	2025-06-10 06:53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1127-1******	한*희	95*9824	충청남도	천안시	160000	2025-06-12	2025-07-09	2025-06-06 10:3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0610-2******	함*욱	01*4449	서울특별시	중구	160000	2025-06-17	2025-07-16	2025-06-16 13:53	경희궁(새문안로)
2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20125-1******	김*용	11*9913	서울특별시	관악구	80000	2025-06-17	2025-07-14	2025-06-14 10:4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2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0130-1******	김*민	08*4101	경기도	오산시	160000	2025-06-17	2025-07-17	2025-06-13 17:21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0610-2******	함*욱	01*4449	서울특별시	중구	160000	2025-06-30	2025-07-28	2025-06-28 09:58	경희궁(새문안로)
2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70713-5******	M*AGMAR*UR EN *URE*BAATAR	94*5433	충청남도	천안시	80000	2025-06-26	2025-07-24	2025-06-24 15:14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40524-1******	한*섭	경기*5나8496	서울특별시	양천구	80000	2025-06-30	2025-07-29	2025-06-29 14:05	경희궁(새문안로)

연번	과태료	납세자주민번호	납세자명	차량번호	주소		본세금액	발송일자	납부기한	단속일자	단속장소
2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65011-0******	광*기초*설(주)	81*7440	충청남도	당진시	80000	2025-06-26	2025-07-23	2025-06-20 15:4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0******	(*)수*사	서울*1더1215	서울특별시	중구	160000	2025-06-30	2025-07-29	2025-06-28 10:27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91207-1******	최*호	83*6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160000	2025-07-01	2025-07-30	2025-06-30 09:2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65011-0******	광*기초*설(주)	81*7440	충청남도	당진시	80000	2025-07-01	2025-07-29	2025-06-30 17:1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 주요 의견제출 대상(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인증시험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에 따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국가유공자사용자동차 표지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0.6.30일까지 적용 보류)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라 함은 각 지자체의 저공해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을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와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2020.12.31.일까지 적용보류(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하지 않는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이라 함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의견제출서 작성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20 년 월 일 시 분	
제출의견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		
※의견제출방법 1. 팩스 2133-1446 2. 이메일 green5@seoul.go.kr 3. 인터넷 https://oksign.seoul.go.kr		
제 출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 제출일 :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85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등

3. 공시송달내용(총4건)
경고대상 차량의 차주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25년 8월 29일(금)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25년 8월 29일(금) 이후에는 위반 시 월 1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 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 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91노1084	이*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6-15 05:14	서초05_양재I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02로1491	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6-20 10:58	강동07_서하남IC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	04오2054	곽*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6-29 12:52	은평05_신사동고개(가좌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70마1861	안*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6-29 12:52	강동01_강일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년 8월 29일(금)
   나. 본 경고 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 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 (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86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7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80나2669	훼*리팜(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6-17 10:35	송파01_송파대로 3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39라1593	백*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6-23 19:38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3	08부3876	박*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6-26 15:28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4	11더7210	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6-27 21:47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5	03노1717	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6-29 16:44	노원05_화랑로(화랑대역) 4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6	09고7942	박*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6-29 07:51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3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7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6-30 12:43	금천02_서부간선도로(안양)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년 8월 29일(금)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 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010-9615-3659)로 사진파일을 문자 접수하셔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00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5. 8. 14. ~ 2025. 8. 28.(14일간)
2. 송달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만덕종합건설 (김동훈)	건축 공사업 01-55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5 3층(당산동4가)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5.8.29. ~ 2026.1.28.)	법 제83조 제3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0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8. 14. ~ 2025. 8. 28.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통지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42212852	동작구 상도로*3나길 *-1(상도동**5-14*)	수도 요금	2024. 2 외 4납기	5회	4,679,860원	압류통지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사업자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동작구 상도로*3나길 *-1(상도동**5-14*)	㈜**** 종합건설	180111-******* (등기번호 1126806265529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호	4,679,860원	2025. 7.24.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현혜지(☎02-3146-11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0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8. 14. ~ 2025. 8. 28.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통지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9683794	영등포구 영중로**9(영등포동8가 *3-*)	수도 요금	2022. 9 외 1납기	2회	2,918,210원	압류통지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영등포구 영중로**9(영등포동8가 *3-*)	*영*	601014-******* (등기번호 1126804792903 수취인불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3, **2호	2,918,210원	2025. 7.23.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현혜지(☎02-3146-11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0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8. 14. ~ 2025. 8. 28.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통지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1706931	동작구 상도로*8길 *4 (상도동 **6-8*)	수도 요금	2023. 4 외 12납기	13회	3,756,350원	압류통지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동작구 상도로*8길 *4(상도동 **6-8*)	오*진	710709-******* (등기번호 112680626542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 12*동 8**호	3,756,350원	2025. 7.24.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현혜지(☎02-3146-11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05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8. 14. ~ 2025. 8. 28.(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기간 : 2025. 8. 29. ~ 2025. 9. 12.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7, E-mail : jieun1004@seoul.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jieun1004@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납부기한 : 2025. 9. 12.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반 송 내 역		발송물 구 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유*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5-07-3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권*복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8-0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한*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5-08-0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4	이*엽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5-07-3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5	최*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5-08-05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6	황*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5-08-0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7	오*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가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주소불명	2025-07-30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8	임*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5-08-0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반송내역		발송물 구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9	윤*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나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2025-08-0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0	이*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5-08-05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1	유*양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5-08-0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2	최*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주소불명	2025-08-0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08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5. 8. 14. ~ 2025. 8. 28.(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간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3건																
1	20229921	177호6739	K3	000047339214201 20250525004032	훈련원공원	0000:14	2025-04-03	11:30	2025-04-03	11:44	1,600	0	1,600	주*회*라*글*벌	경기도구리시아차산로	이사불명	2025-08-19
2	20230092	03호9195	니로 EV	000047339214201 20250525002815	볕우물	0000:33	2025-04-21	15:49	2025-04-21	16:22	400	0	400	채*(*)	대구달성군유가읍테크노순환로	수취인불명	2025-08-19
3	20230114	175하8076	아반떼(AVANTE)	000047339214201 20250525002592	신대방역	0001:57	2025-04-24	12:38	2025-04-24	14:35	6,200	0	6,200	정*현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	폐문부재	2025-08-1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09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03809	아우토크립트 주식회사 (이*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B1,1,6,7,8층 (여의도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5.8.14.~2025.8.28.)
2	202986	비즈피어 주식회사 (이*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610, 611호 (가산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5.8.14.~2025.8.28.)
3	203379	신영에스아이 주식회사 (박*근)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75 (용문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5.8.14.~2025.8.28.)
4	203606	주식회사 디에스앤지 (서*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501호, 502호 (문래동3가)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5.8.14.~2025.8.28.)
5	201153	㈜일신전업 (김*경)	서울 강서구 송정로 51, 301호 (공항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5.8.14.~2025.9.12.)
6	203984	주식회사 엔와이컴퓨터 (나*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 대륭테크노타운1차 406호 (가산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5.8.14.~2025.9.12.)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7	202834	알바이오텍 주식회사 (김*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704호 (문래동3가)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5.8.14.~2025.9.12.)
8	201479	주식회사 웅진 (이*영)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 케이스퀘어 시티)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5.8.14.~2025.9.12.)
9	200717	주식회사 드림시스텍 (선*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마포태영데시앙 1711호 (도화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3개월 (2025.8.14.~2025.11.11.)
10	201813	하하정보통신(주) (송*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39길 14 (독산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3개월 (2025.8.14.~2025.11.11.)
11	203511	로봇앤컴 주식회사 (이*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나길 26, 102호 (자양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자본금확인서)	영업정지 3개월 (2025.8.14.~2025.11.11.)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12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5. 8. 14. ~ 2025. 8. 28.(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63건																
1	1	20230173	701로3756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구로디지털단지역	0002:05	2025-05-01	15:08	2025-05-01	17:13	6,500	0	6,500	오*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폐문부재	2025-08-26
2	2	20230176	210오3886	그랜저(GRANDEUR)	한강진역	0003:03	2025-05-01	15:03	2025-05-01	18:06	7,400	0	7,400	김*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수취인불명	2025-08-26
3	3	20230235	66나5013	TT Coupe 2.0 TFSI quattro	마포유수지	0001:03	2025-05-01	12:27	2025-05-01	13:30	2,800	0	2,800	곽*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폐문부재	2025-08-26
4	4	20230339	27너8142	모닝	중곡1동	0000:15	2025-05-03	10:04	2025-05-03	10:19	300	0	300	백*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폐문부재	2025-08-26
5	5	20230377	300서5891	레이	복정역	0006:23	2025-05-05	10:01	2025-05-05	16:24	6,100	0	6,100	이*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폐문부재	2025-08-26
6	6	20230404	58조9627	그랜저(GRANDEUR)	천호역	0001:51	2025-05-04	16:32	2025-05-04	18:23	5,900	0	5,900	김*완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폐문부재	2025-08-26
7	7	20230419	109머5702	아반떼(AVANTE)	사당노외	0001:49	2025-05-07	23:27	2025-05-08	01:16	8,800	0	8,800	윤*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폐문부재	2025-08-26
8	8	20230426	38너0933	말리부 2.0 DOHC	서울글로벌센터	0001:11	2025-05-09	11:04	2025-05-09	12:15	10,500	0	10,500	L* Y*N*J*N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폐문부재	2025-08-26
9	9	20230429	57저7283	렉서스 ES300h	수서역	0004:35	2025-05-10	04:23	2025-05-10	08:58	8,800	0	8,800	주*회*에*에*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폐문부재	2025-08-26
10	10	20230436	144우8765	캐스퍼(CASPER)	신설동	0001:32	2025-05-10	13:49	2025-05-10	15:21	2,400	0	2,400	백*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수취인불명	2025-08-26
11	11	20230439	07로9439	모닝	구로디지털단지역	0002:25	2025-05-10	17:47	2025-05-10	20:12	3,700	0	3,700	고*원	경기도시흥시매화로	폐문부재	2025-08-26
12	12	20230446	64오8451	CHEVROLET BOLT EV	신대방역	0003:34	2025-05-11	15:35	2025-05-11	19:09	4,000	0	4,000	이*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수취인불명	2025-08-26
13	13	20230449	08저0156	카렌스	서울글로벌센터	0000:15	2025-05-12	10:45	2025-05-12	11:00	2,100	0	2,100	P*K *U*I*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폐문부재	2025-08-26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4	14	20230464	21더5352	Mercedes-Benz EQC400 4MATIC	수서역	0012:50	2025-05-01	00:00	2025-05-01	12:50	11,500	0	11,500	송*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폐문부재	2025-08-26
15	15	20230471	349조5194	니로 하이브리드	사당노외	0001:09	2025-05-15	17:11	2025-05-15	18:20	2,800	0	2,800	차*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폐문부재	2025-08-26
16	16	20230472	04가6724	Model 3 RWD	구파발역	0009:50	2025-05-15	09:59	2025-05-15	19:49	6,100	0	6,100	천*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폐문부재	2025-08-26
17	17	20230481	370서5835	토레스	신대방역	0001:05	2025-05-16	20:06	2025-05-16	21:11	1,600	0	1,600	박*언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폐문부재	2025-08-26
18	18	20230488	68머6255	싼타페(SANTAFE)	한강진역	0004:15	2025-05-17	14:58	2025-05-17	19:13	20,400	0	20,400	이*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폐문부재	2025-08-26
19	19	20230493	48오5716	쏘나타(SONATA)	천호역	0027:01	2025-05-17	10:30	2025-05-18	13:31	5,600	0	5,600	류*현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폐문부재	2025-08-26
20	20	20230500	381두3741	투싼(TUCSON)	천호역	0001:59	2025-05-17	11:10	2025-05-17	13:09	1,500	0	1,500	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주소불명	2025-08-26
21	21	20230504	209부7773	카니발 하이리무진	신천유수지	0009:32	2025-05-19	06:49	2025-05-19	16:21	18,700	0	18,700	(*)구*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폐문부재	2025-08-26
22	22	20230507	96더0431	봉고III 1톤	신천유수지	0009:35	2025-05-19	06:45	2025-05-19	16:20	18,700	0	18,700	(*)구*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폐문부재	2025-08-26
23	23	20230530	123두4730	아반떼 N(AVANTE N)	서울글로벌센터	0000:16	2025-05-23	16:09	2025-05-23	16:25	2,800	0	2,800	H* M*N*R*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학사길	폐문부재	2025-08-26
24	24	20230535	15모6643	아반떼(AVANTE)	천호역	0001:17	2025-05-23	14:52	2025-05-23	16:09	1,000	0	1,000	김*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폐문부재	2025-08-26
25	25	20230548	16마9279	SM5	마포유수지	0002:25	2025-05-26	11:35	2025-05-26	14:00	3,100	0	3,100	지*철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향기로	폐문부재	2025-08-26
26	26	20230552	368어3813	K9	서울글로벌센터	0001:06	2025-05-27	14:55	2025-05-27	16:01	9,800	0	9,800	조*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폐문부재	2025-08-26
27	27	20230555	45노2368	넥쏘 (NEXO) 수소전기차	신설동	0004:30	2025-05-27	13:45	2025-05-27	18:15	7,000	0	7,000	티*지*엔* 주*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수취인불명	2025-08-26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28	28	20230564	87오9852	라보롱카고탑차	신대방역	0001:15	2025-05-28	12:32	2025-05-28	13:47	1,900	0	1,900	한*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폐문부재	2025-08-26
29	29	20230568	169다8311	K7	신대방역	0011:05	2025-05-27	19:01	2025-05-29	06:06	18,700	0	18,700	A* Y*L*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폐문부재	2025-08-26
30	30	20230571	219우7910	모닝	구파발역	0003:40	2025-05-29	08:35	2025-05-29	12:15	3,700	0	3,700	양*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폐문부재	2025-08-26
31	31	20230573	54저3130	올란도 2.0 LPG	마포유수지	0000:47	2025-05-29	17:45	2025-05-29	18:32	2,200	0	2,200	민*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폐문부재	2025-08-26
32	32	20230591	184무2325	쏘렌토 하이브리드	천호역	0001:44	2025-05-31	17:08	2025-05-31	18:52	700	0	700	이*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폐문부재	2025-08-26
33	33	20230640	05마3967	니로 하이브리드	잠실역	0000:51	2025-05-01	16:20	2025-05-01	17:11	2,200	0	2,200	박*승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폐문부재	2025-08-26
34	34	20230659	11소9651	토요타 Camry	동대문	0002:09	2025-05-05	21:42	2025-05-05	23:51	9,300	0	9,300	변*희	경기도남양주시덕송로	폐문부재	2025-08-26
35	35	20230660	11소9651	토요타 Camry	동대문	0000:36	2025-05-12	03:32	2025-05-12	04:08	2,800	0	2,800	변*희	경기도남양주시덕송로	폐문부재	2025-08-26
36	36	20230661	11소9651	토요타 Camry	동대문	0002:35	2025-05-12	20:09	2025-05-12	22:44	11,500	0	11,500	변*희	경기도남양주시덕송로	폐문부재	2025-08-26
37	37	20230672	21거0244	BMW 320d EfficientDynamics Edition	개화역	0009:30	2025-05-03	11:12	2025-05-03	20:42	6,100	0	6,100	오*환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폐문부재	2025-08-26
38	38	20230677	340무4643	재규어 E-PACE D180	개화역	0006:49	2025-05-02	16:47	2025-05-02	23:36	6,100	0	6,100	김*욱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로	폐문부재	2025-08-26
39	39	20230691	55우2202	E200	한강진역	0002:53	2025-05-16	13:27	2025-05-16	16:20	14,000	0	14,000	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수취인불명	2025-08-26
40	40	20230694	28다7608	모닝	복정역	0000:32	2025-05-10	21:27	2025-05-10	21:59	500	0	500	김*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북로	폐문부재	2025-08-26
41	41	20230712	47모3707	그랜저(GRANDEUR)	구파발역	0015:28	2025-05-27	07:14	2025-05-27	22:42	2,400	0	2,400	김*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폐문부재	2025-08-26
42	42	20230720	244더8845	코나 하이브리드(KONA HYBRID)	도봉산역	0011:58	2025-05-07	07:08	2025-05-07	19:06	2,400	0	2,400	박*인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주소불명	2025-08-26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43	43	20230721	244더8845	코나 하이브리드(KONA HYBRID)	도봉산역	0085:19	2025-05-13	06:49	2025-05-16	20:08	9,700	0	9,700	박*인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주소불명	2025-08-26
44	44	20230722	244더8845	코나 하이브리드(KONA HYBRID)	도봉산역	0036:09	2025-05-19	06:55	2025-05-20	19:04	4,800	0	4,800	박*인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주소불명	2025-08-26
45	45	20230723	246모7198	K5	도봉산역	0057:10	2025-05-20	07:24	2025-05-22	16:34	18,300	0	18,300	안*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폐문부재	2025-08-26
46	46	20230731	143마1786	트레일블레이저 1.35 TURBO FWD	종묘	0002:09	2025-05-29	11:54	2025-05-29	14:03	5,200	0	5,200	이*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폐문부재	2025-08-26
47	47	20230734	161고9615	BMW 320i Touring	종묘	0000:42	2025-05-23	10:13	2025-05-23	10:55	1,800	0	1,800	유*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폐문부재	2025-08-26
48	48	20230766	46루5737	레이	종묘	0002:30	2025-05-17	15:15	2025-05-17	17:45	6,000	0	6,000	이*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폐문부재	2025-08-26
49	49	20230769	51어8143	C200 Cabriolet	종묘	0003:47	2025-05-22	13:13	2025-05-22	17:00	18,400	0	18,400	조*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폐문부재	2025-08-26
50	50	20230777	61조6872	모닝	종묘	0001:13	2025-05-04	16:38	2025-05-04	17:51	3,000	0	3,000	박*선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수취인불명	2025-08-26
51	51	20230781	02우5112	코나(KONA)	세종로	0002:55	2025-05-21	12:33	2025-05-21	15:28	15,000	0	15,000	이*주	서울특별시관악구장군봉길	폐문부재	2025-08-26
52	52	20230785	07주6812	볼보 XC40T4 AWD	세종로	0001:45	2025-05-22	18:52	2025-05-22	20:37	9,000	0	9,000	심*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폐문부재	2025-08-26
53	53	20230790	143조1162	Mercedes-Benz C300	세종로	0005:05	2025-05-11	10:21	2025-05-11	15:26	13,100	0	13,100	김*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수취인불명	2025-08-26
54	54	20230817	57수4775	아이오닉5 (IONIQ5)	종묘	0006:33	2025-05-17	16:31	2025-05-17	23:04	14,400	0	14,400	신*이	경기도남양주시식송로	폐문부재	2025-08-26
55	55	20230834	10모6683	렉서스 NX300h	훈련원공원	0000:59	2025-05-28	11:57	2025-05-28	12:56	3,300	0	3,300	한*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폐문부재	2025-08-26
56	56	20230849	21구6066	쏘렌토	천호역	0005:57	2025-05-07	18:08	2025-05-08	00:05	18,400	0	18,400	최*진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폐문부재	2025-08-26
57	57	20230867	67거0593	Tiguan 2.0 TDI BMT	천호역	0001:26	2025-05-15	11:33	2025-05-15	12:59	4,600	0	4,600	박*우	세종특별자치시 만남로	폐문부재	2025-08-26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58	58	20230892	293부5101	K5 하이브리드	천왕역	0001:05	2025-05-12	14:55	2025-05-12	16:00	1,100	0	1,100	조*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폐문부재	2025-08-26
59	59	20230893	32수1388	SM3	천왕역	0014:53	2025-05-10	08:11	2025-05-10	23:04	12,200	0	12,200	김*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폐문부재	2025-08-26
60	60	20230905	10무1544	Model 3 Long Range	마포유수지	0003:22	2025-05-28	19:08	2025-05-28	22:30	4,500	0	4,500	백*엽	경기도 파주시 산내로	폐문부재	2025-08-26
61	61	20230911	373두7017	K8	마포유수지	0004:36	2025-05-08	16:03	2025-05-08	20:39	6,100	0	6,100	윤*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폐문부재	2025-08-26
62	62	20230922	13너3132	말리부 1.35 TURBO	개화산역	0000:19	2025-05-23	15:04	2025-05-23	15:23	300	0	300	장*욱	인천광역시서구이음로	폐문부재	2025-08-26
63	63	20230923	04오9116	BMW 320d	개화산역	0005:32	2025-05-24	17:34	2025-05-24	23:06	11,300	0	11,300	기*서	서울특별시관악구문성로	폐문부재	2025-08-2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15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87호(2023.3.16.)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2.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11-1번지 일대
나. 공원면적 : 110,198.00㎡
다. 공원세분 : 역사공원
라. 조성계획 변경(안)
1) 기반시설(도로) : 12,205.71㎡ → 28,009.92㎡ (증 15,804.21㎡)
· <변경> 도로　증)15,804.21㎡
기반시설(광장) : 6,685.65㎡ → 8,305.74㎡ (증 1,620.09㎡)
· <변경> 광장　증)1,620.09㎡
2) 조경시설 : 12,562.55㎡ → 1,359.91㎡ (감 11,202.64㎡)
· <신설> 벽천 166.97㎡
· <폐지> 다목적잔디광장 8,941.63㎡, 연못 630.72㎡ 등
3) 휴양시설 : 6,962.64㎡ → 1,241.38㎡ (감 5,721.26㎡)
· <변경> 휴게소　감)241.51㎡
· <폐지> 피크닉마당 5,436.01㎡, 휴게소 1,097.91㎡ 등
4) 유희시설 : 954.25㎡ → 0㎡ (감 954.25㎡)
· <폐지> 모험놀이터 954.25㎡
5) 교양시설 : 10,345.66㎡ → 12,336.06㎡ (증 1,990.40㎡)
· <신설> 가든센터 2,681.07㎡
· <폐지> 전통놀이마당 1,389.37㎡등
6) 편익시설 : 4,176.87㎡ → 2,425.24㎡ (감 1,751.63㎡)
· <변경> 주차장　감)1,645.88㎡ / 화장실　감)105.75㎡
7) 관리시설 : 200.79㎡ → 269.43㎡ (증 68.64㎡)
· <신설> 근로자휴게실 125.00㎡
· <폐지> 창고 56.36㎡ 등
8) 녹지 및 기타 : 56,103.88㎡ → 56,250.32㎡ (증 146.44 ㎡)

· <변경> 녹지 및 기타 증)2,376.36㎡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아. 기 타 :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열람장소(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강동구 암사동 211-1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10,198.00	54,094.12	17동	1,659.53	1,659.53	86	110,198.00	53,947.68	17동	1,764.94	1,731.59	60	시설면적 감)146.44㎡ 건축면적 증)105.41㎡
기반시설	소계	18,891.36	18,891.36	-	-	-		36,315.66	36,315.66	-	-	-		증)16,917.62
	광장	6,685.65	6,685.65	-	-	-		8,305.74	8,305.74	-	-	-		증)1,787.19
	도로	12,205.71	12,205.71	-	-	-		28,009.92	28,009.92	-	-	-		증)15,804.21
조경시설		12,562.55	12,562.55	-	-	-	3	1,359.91	1,359.91	-	-	-	20	감)11,202.63
휴양시설		6,962.64	6,962.64	-	-	-	28	1,241.38	1,241.38	-	-	-	39	감)5,721.26
유희시설		954.25	954.25	-	-	-	1	-	-	-	-	-		감)954.25
교양시설		10,345.66	10,345.66	13동	1,272.24	1,272.24	5	12,336.06	12,336.06	-	1,539.76	1,506.41	1	증)1,990.4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편익시설	4,176.87	4,176.87	2동	227.80	227.80		2,425.24	2,425.24	-	122.05	122.05		감)1,751.63
관리시설	200.79	200.79	2동	159.49	159.49	49	269.43	269.43	-	103.13	103.13		증)68.64
녹지및기타	56,103.88	-	-	-	-		56,250.32	-	-	-	-		증)146.44
시 설 율 (제한없음)	(54,094.12 / 110,198.00) × 100 =49.09%						(53,947.68 / 110,198.00) × 100 =48.96%						
건 폐 율 (공원면적의 20%이내)	(1,659.53 / 110,198.00) × 100 =1.51%						(1,764.94 / 110,198.00) × 100 =1.60%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10,198	54,094.12	조적외	17동	1,659.53	1,659.53	86			110,198.00	53,947.68	조적외	17동	1,764.94	1,731.59	60	
기반시설	소계			18,891.36	18,891.36								36,315.66	36,315.66						증)17,424.30
	도로			12,205.71	12,205.71								28,009.92	28,009.92						증)15,804.21
	광장 소계			6,685.65	6,685.65								8,305.74	8,305.74						증)1,620.09
	상징광장	가	암사동194전	1,875.83	1,875.83						가	암사동194전	1,835.43	1,835.43						감)40.40
	중심광장	나	6개소	725.29	725.29															
		나-1	암사동211,212,221,219	260.63	260.63															
		나-2	암사동197전	167.87	167.87															
		나-3	암사동197전	77.31	77.31															
		나-4	암사동133-3전	37.97	37.97															
		나-5	암사동194전	81.00	81.00															
		나-6	암사동205답	100.51	100.51															
	진입광장	다	암사동137-2전	3,465.31	3,465.31						다	암사동137-2전	3,095.89	3,095.89						감)369.42
	부진입광장	라	3개소	619.22	619.22						라	4개소	3,374.42	3,374.42						증)2,755.2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1	암사동207-7잡	128.84	128.84															
		라-2	암사동252-7답	323.28	323.28						라-2	암사동252-7답	1,407.25	1,407.25						증)1,083.97
		라-3	암사동137전	167.10	167.10						라-3	암사동199-4답	928.55	928.55						증)761.45
											라-4	암사동137전	364.85	364.85						증)364.85
											라-5	암사동207-4답	673.77	673.77						증)673.77
조경시설	소 계			12,562.55	12,562.55					3			1,359.91	1,359.91					20	감)11,202.64
	상징조형물	①	부진입광장 라-3							1										
	입구조형물	②								2										
		②-1	상징광장 가내																	
		②-2	부진입광장 라-2내																	
	목 교	마	3개소	49.25	49.25															
		마-1	암사동197전	29.25	29.25															
		마-2	암사동134-2천	10.00	10.00															
		마-3	암사동134-2천	10.00	10.00															

구분	시 설 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석교	바	암사동133-3전	127.50	127.50															
	생태계류	사	2개소	2,477.21	2,477.21						사	암사동134-2천	650.98	650.98						감)1,826.23
		사-1	전지역	1,630.59	1,630.59															
		사-2	전지역	846.61	846.61															
	다목적잔디마당	아	암사동211-3답 외	8,941.63	8,941.63															
	바닥분수	자	암사동194전	(384.00)	(384.00)															
	연 못	차	암사동133-3전,134-2천	630.72	630.72															
	화 계	카	암사동133-3전	336.25	336.25															
	벽 천										커	암사동194대	166.97	166.97						신설
	돌무지언덕										터	암사동227-1임	99.19	99.19						신설

구분	시 설 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캐스캐이드										㉮	암사동253-10답	258.07	258.07						신설
	놀이분수										㉯	암사동203-3전	184.70	184.70						신설
	장식가벽										㉰	암사동197-4전							10	신설
	플랜터1										㉱	전지역							7	신설
	플랜터2										㉲	전지역							3	신설
휴양시설	소 계			6,962.64	6,962.64					28			1,241.38	1,241.38					39	감)5,721.26
	피크닉마당 (프로그램캠핑)	타	3개소	5,436.01	5,436.01															
		타-1	암사동135-2,3,197전외	2,002.93	2,002.93															
		타-2	암사동197전	1,164.36	1,164.36															
		타-3	암사동198,199-2,211-2	2,268.72	2,268.72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폐지 시 영향 없음	휴게소	파	8개소	1,482.89	1,482.89						파	13개소	1,241.38	1,241.38						감241.51
		파-1	암사동193전	72.00	72.00						파-1	암사동193전	72.00	72.00						
		파-2	암사동193전	102.50	102.50						파-2	암사동193전	102.50	102.50						
		파-3	암사동195전	102.50	102.50						파-3	암사동195전	102.50	102.50						
		파-4	암사동211-1답	27.85	27.85															
		파-5	암사동211-2답	120.59	120.59															
		파-6	암사동188대	107.98	107.98						파-6	암사동188대	107.98	107.98						
		파-7	암사동134-2천	95.76	95.76															
		파-8	암사동133전	853.71	853.71															
											파-14	암사동196-3전	81.09	81.09						신설
											파-15	암사동196-2전	40.54	40.54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파-16	암사동196-2 전	60.81	60.81						신설
												파-17	암사동196-4 전	50.68	50.68						신설
												파-18	암사동197전	60.81	60.81						신설
												파-19	암사동197전	60.81	60.81						신설
												파-20	암사동253-9 답	143.93	143.93						신설
												파-21	암사동199-1 답	357.73	357.73						신설
파고라		③	3개소	(48.00)	(48.00)					3											
		③-1	휴게소	(16.00)	(16.00)																
		③-2	휴게소	(16.00)	(16.00)																
		③-3	모험놀이터	(16.00)	(16.00)																

구분	시 설 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조형파고라A	④	휴게소내	(175.50)	(175.50)					3										
		④-1	휴게소내	(58.50)	(58.50)															
		④-2	휴게소내	(58.50)	(58.50)															
		④-3	휴게소내	(58.50)	(58.50)															
	조형파고라B	⑤	유아숲놀이터	(40.49)	(40.49)					1										
	정자(전망대)	하	암사동133-3전	43.74	43.74					1										
	등의자	⑩	전지역	(23.40)	(23.40)					20	⑩	전지역							10	감)10기
	앉음벽										⑳	전지역							7	신설
	평의자										㉑	전지역							16	신설
	석재테이블										㉒	전지역							6	신설
유희시설	소 계			954.25	954.25					1										감)954.25
	모험놀이터	거	암사동219-1잡	954.25	954.25															
	모험놀이시설	⑥	모험놀이터 내	(257.25)						1										
교육시	소 계			10,345.66	10,345.66		13동	1,272.24	1,272.24	5			12,336.06	12,336.06		11동	1,539.76	1,506.41	1	증)1,990.40

구분	시 설 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설	야외무대 (공연장)	너	암사동135-1도,2대,3전	1,184.97	1,184.97						너	암사동135-1도,2대,3전	958.46	958.46						감)226.51
	막구조파고라	⑦	공연장내	(73.38)	(73.38)					1	⑦	공연장내	(73.38)	(73.38)					1	
	서원	더	암사동132,-1,2전	4,681.64	4,681.64						더	암사동132,-1,2전	4,681.64	4,681.64						
	서원건축물	1	암사동136-1,2전				11동	688.23	688.23		1	암사동136-1,2전				11동	688.23	688.23		
	전통놀이마당	러	암사동133-3전	1,389.37	1,389.37															
	테마정원	머	암사동195전	1,322.37	1,322.37						머	암사동195전	1,322.37	1,322.37						
	유아숲놀이터	버	암사동136-2전	332.63	332.63															
	숲체험놀이1	⑧	유아숲 놀이터내	(34.92)	(34.92)					1										
	숲체험놀이2	⑨	유아숲 놀이터내	(9.48)	(9.48)					2										
	주민참여체험관A	2	암사동203전,204답	489.33	489.33		1동	409.27	409.27											
	주민참여체험장B	3	암사동204답	241.62	241.62		1동	174.74	174.74											
	선사체험마당A	서-1	암사동135,136-1,137-3	348.40	348.40						서-1	암사동213대	779.39	779.39						증)430.99

구분	시 설 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육시설	선사체험마당B	서-2	암사동 207-2답	158.47	158.47						서-2	암사동211-3답	458.54	458.54						증)300.07
	선사체험마당C										서-3	암사동211-2답	1,257.73	1,257.73						신설
	기와가마터	처	암사동 210임	196.86	196.86						처	암사동 210임	196.86	196.86						
	전시시설	⑯	기와가마터 내							1										
	가든센터										고	암사동199-2답	2,681.07	2,681.07			851.53	818.18		신설
편의시설	소계			4,176.87	4,176.87		2동	227.80	227.80	-			2,425.24	2,425.24		1동				감)1,751.63
	주차장	어	2개소	3,872.88	3,872.88						어	2개소	2,227.00	2,227.00			122.05	122.05		감)1,645.88
		어-1	암사동199-2답외	2,786.14	2,786.14						어-1	암사동192전	1,086.74	1,086.74						감)1,645.88
		어-2	암사동188대,192전	1,086.74	1,086.74						어-2	암사동188대,192전	1,140.26	1,140.26						
	푸드트럭존	저	암사동188대	76.19	76.19						저	암사동188대	76.19	76.19						
	화장실	4	2개소	227.80	227.80		2동	227.80	227.80		4	암사동195전	122.05	122.05		1동	122.05	122.05		감)105.75
		4-1	암사동195전	113.90	113.90		1동	113.9	113.9											
		4-2	암사동143-4전	113.90	113.90		1동	113.9	113.9											

구분	시 설 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200.79	200.79		2동	159.49	159.49	49			269.43	269.43		1동	103.13	103.13		증)68.64
	비지터센터	5	암사동137-2전	144.43	144.43	철골조	1동	103.13	103.13		5	암사동137-2전	144.43	144.43	철골조	1동	103.13	103.13		
	창고	6		56.36	56.36		1동	56.36	56.36											
	공원명표지판	⑪	전지역							3										
	공원입구표지판	⑫	전지역							4										
	방향표지판	⑬	전지역							11										
	공원등	⑭	전지역							25										
	CCTV	⑮	전지역							6										
	근로자휴게실										노	암사동193전	125.00	125.00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56,103.88									56,250.32							증)146.44
	녹 지			56,103.88									56,250.32							

다.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12,205.71				
변경						28,009.92				
당초		계		13.0	260.83	3,541.26				
변경				15.0	579.31	8,689.65				
당초	중로	3	1	13.0	260.83	3,541.26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	
변경				15.0	579.31	8,689.6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계		36.0	1,415.15	5,925.04				
변경				76.5	1,759.0	12,435.83				
당초	소로	3	1	6.0	86.70	529.37	연결로	중로 3-1	공연장	
변경		"	1	5.0	109.52	547.60	연결로	광장 가	소로3-2	
당초		"	2	5.0	335.69	1,677.96	연결로	상징광장 가	소로 3-1	
변경		"	2	10.0	567.00	4,862.00	진입로	광장 가	공원경계	
당초		"	3	4.0	170.68	682.59	연결로	진입광장 다	석교 바	
변경		"	3	6.0	28.99	173.94	연결로	소로3-4	소로3-2	
당초		"	4	4.0	272.80	1,090.46	연결로	부진입광장라-2	중심광장 나-1	
변경		"	4	10.0	270.84	2,708.4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라-2	
당초		"	5	3.5	25.65	93.09	연결로	부진입광장라-1	소로3-4	
변경		"	5	6.0	122.71	736.26	연결로	소로3-4	중로3-1	
당초		"	6	3.5	123.04	431.11	연결로	소로 3-2	소로3-4	
변경		"	6	7.0	210.49	1,473.43	연결로	가든센터 노	가든센터 노	
당초		"	7	3.5	51.22	189.05	연결로	주차장 어-1	소로 3-7	
변경		"	7	5.0	108.78	543.90	연결로	소로3-2	소로3-2	
당초		"	8	3.5	290.44	1,054.62	연결로	소로 3-1	공원경계부 (마을진입부)	
변경		"	8	6.0	24.18	145.08	연결로	중로3-1	소로3-2	
당초		"	9	3.0	58.93	176.79	연결로	소로3-4	소로 3-6	
변경		"	9	6.0	8.27	49.62	연결로	소로3-2	광장 다	
신설		"	10	4.0	69.96	279.84	연결로	소로3-2	중로3-1	
신설		"	11	3.5	74.56	260.96	연결로	중로3-1	공원경계	
신설		"	12	4.0	77.93	311.72	연결로	소로3-2	광장 라-3	
신설		"	13	4.0	85.77	343.08	연결로	중로3-1	공원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계		53.0	1,134.90	2,739.41				
변경		계		169.0	2,712.10	6,884.44				
당초	산책로		1	3.0	211.07	633.35	연결로	중심광장 나-5	중심광장 나-3	
변경			1	3.0	251.44	754.32	연결로	소로3-1	소로3-2	
당초			2	3.0	17.01	55.33	연결로	소로 3-7	주민참여 체험장A	
변경			2	3.0	13.93	41.7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	
당초			3	3.0	10.35	30.69	연결로	소로 3-7	주민참여 체험장B	
변경			3	2.0	16.84	33.68	연결로	휴게소 파-1	휴게소 파-1	
당초			4	3.0	63.78	217.94	연결로	공원경계	중심광장 나-1	
변경			4	3.0	62.64	187.9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	
당초			5	3.0	23.74	71.23	연결로	부진입광장 라-1	소로 3-4	
변경			5	2.0	10.00	20.00	연결로	산책로1	소로3-1	
당초			6	3.0	3.98	12.18	연결로	소로 3-2	소로 3-4	
변경			6	2.0	10.00	20.00	연결로	산책로1	소로3-1	
당초			7	2.5	98.88	247.69	연결로	진입광장 다	부진입광장 라-3	
변경			7	2.0	24.82	49.64	연결로	산책로9	산책로10	
당초			8	2.5	45.49	114.23	연결로	부진입광장 라-3	연못	
변경			8	2.0	19.72	39.44	연결로	산책로10	산책로4	
당초			9	2.0	32.74	75.37	연결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변경			9	2.0	36.27	72.5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	
당초			10	2.0	51.31	104.61	연결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변경			10	2.0	51.10	102.2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	
당초			11	2.0	95.74	191.51	연결로	진입광장 다	중심광장 나-3	
변경			11	3.0	8.65	25.95	연결로	산책로1	소로3-2	
당초			12	2.0	42.00	83.95	연결로	산책로 11	소로 3-2	
변경			12	3.0	67.02	201.06	연결로	소로3-4	소로3-2	
당초			13	2.0	36.15	74.48	연결로	소로 3-1	산책로 14	
변경			13	2.0	19.29	38.58	연결로	산책로1	소로3-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4	2.0	80.30	160.78	연결로	주차장 어-1	중심광장 나-2	
변경			14	2.0	19.29	38.58	연결로	산책로1	소로3-7	
당초			15	2.0	80.29	160.61	연결로	소로 3-7	산책로 13	
변경			15	2.0	30.80	61.60	연결로	소로3-5	산책로19	
당초			16	2.0	10.00	20.00	연결로	산책로 14	산책로 15	
변경			16	2.0	33.37	66.74	연결로	산책로17	소로3-4	
당초			17	2.0	10.00	20.00	연결로	산책로 14	산책로 15	
변경			17	3.5	22.69	79.42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나	
당초			18	2.0	41.39	82.28	연결로	소로 3-3	휴게소 파-7	
변경			18	2.0	14.19	28.38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나	
당초			19	2.0	17.88	35.65	연결로	소로 3-3	유아숲놀이터	
변경			19	2.0	21.70	43.4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나	
당초			20	2.0	81.66	163.55	연결로	소로 3-3	산책로 8	
변경			20	2.0	28.36	56.72	연결로	산책로17	소로3-4	
당초			21	2.0	20.33	41.56	연결로	중심광장 나-4	유아숲놀이터	
변경			21	2.0	11.80	23.60	연결로	광장 나	소로 3-4	
당초			22	2.0	35.60	80.00	시설연결로	중로3-1	주차장 어-1	
변경			22	2.0	30.80	61.60	연결로	소로3-5	산책로26	
당초			23	2.0	25.21	62.42	시설연결로	공원경계	주차장 어-2	
변경			23	3.0	26.74	80.22	연결로	소로3-4	산책로24	
신설			24	2.0	23.78	47.56	연결로	산책로22	산책로26	
신설			25	2.0	11.34	22.68	연결로	소로3-5	산책로22	
신설			26	2.0	50.41	100.82	연결로	소로3-4	소로3-5	
신설			27	2.0	16.84	33.68	연결로	산책로26	소로3-5	
신설			28	2.0	9.33	18.66	연결로	산책로27	산책로29	
신설			29	2.0	45.26	90.52	연결로	산책로26	산책로30	
신설			30	2.0	28.90	57.80	연결로	산책로26	산책로32	
신설			31	2.0	26.33	52.66	연결로	소로3-4	산책로3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32	2.0	74.56	149.12	연결로	소로3-4	소로3-5	
신설			33	2.0	11.81	23.62	연결로	산책로32	산책로34	
신설			34	2.0	15.00	30.00	연결로	산책로32	산책로36	
신설			35	2.0	31.28	62.56	연결로	산책로34	산책로32	
신설			36	2.0	92.92	185.84	연결로	광장 라-2	소로3-5	
신설			37	4.0	6.00	24.00	연결로	산책로36	주차장 타-2	
신설			38	3.0	12.20	36.60	연결로	주차장 타-2	소로3-5	
신설			39	4.0	51.70	206.80	연결로	소로3-5	소로3-2	
신설			40	2.0	19.29	38.58	연결로	산책로1	소로3-7	
신설			41	2.0	101.68	203.36	연결로	산책로1	광장 다	
신설			42	2.5	17.80	44.50	연결로	산책로41	산책로1	
신설			43	2.5	27.01	67.53	연결로	산책로42	산책로44	
신설			44	2.0	43.28	86.56	연결로	산책로41	소로3-2	
신설			45	2.5	18.76	46.90	연결로	산책로41	산책로44	
신설			46	2.5	45.55	113.88	연결로	산책로47	산책로47	
신설			47	2.5	25.47	63.68	연결로	산책로44	소로3-2	
신설			48	2.5	56.51	141.28	연결로	산책로44	소로3-2	
신설			49	3.0	79.86	239.58	연결로	산책로50	광장 다	
신설			50	3.0	60.63	181.89	연결로	산책로49	산책로49	
신설			51	4.5	53.83	242.24	연결로	소로3-2	소로3-2	
신설			52	3.0	7.28	21.84	연결로	산책로51	소로3-2	
신설			53	2.0	68.59	137.18	연결로	휴게소 바-15	소로3-8	
신설			54	2.0	12.63	25.26	연결로	소로3-2	산책로53	
신설			55	2.0	71.87	143.74	연결로	소로3-8	소로3-10	
신설			56	2.0	85.65	171.30	연결로	소로3-9	소로3-2	
신설			57	2.0	84.21	168.42	연결로	광장 다	소로3-2	
신설			58	2.0	47.44	94.88	연결로	소로3-2	소로3-12	
신설			59	2.0	85.75	171.50	연결로	소로3-10	소로3-1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60	2.0	6.00	12.00	연결로	산책로58	산책로59	
신설			61	3.0	64.18	192.54	연결로	소로3-10	중로3-1	
신설			62	2.0	40.10	80.20	연결로	소로3-2	소로3-12	
신설			63	2.0	27.84	55.68	연결로	소로3-13	산책로64	
신설			64	3.5	6.27	21.95	진입로	소로3-13	공원경계	
신설			65	3.5	29.30	102.55	연결로	소로3-1	소로3-2	
신설			66	3.5	75.00	355.00	연결로	소로3-2	소로3-2	
신설			67	3.5	47.50	166.25	연결로	소로3-2	산책로12	
신설			68	3.5	29.00	101.50	연결로	산책로12	소로3-4	
신설			69	3.5	34.70	122.40	연결로	소로3-4	소로3-4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1,500

암사역사공원 기본계획 수립
역사공원

Scale : 1/1,500(A1)

N

0 50 100 20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영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110,198.00	54,094.12	1,659.53	1,659.53	86	
기반시설	소 계		18,891.36	18,891.36				
	도 로	㉮	12,205.71	12,205.71				
	상징광장	가	1,875.93	1,875.93				
	휴식광장	나-1	260.63	260.63				
		나-2	167.87	167.87				
		나-3	77.31	77.31				
		나-4	37.97	37.97				
		나-5	81.00	81.00				
		나-6	100.51	100.51				
	선입광장	다	3,465.31	3,465.31				
	무선입광장	라-1	129.84	129.84				
		라-2	323.28	323.28				
		라-3	167.10	167.10				
조경시설	소 계		12,562.55	12,562.55			3	
	상징조형물	①	-	-			1	
	입구조형물	②	-	-			2	
	목 교	마-1	29.25	29.25				
		마-2	10.00	10.00				
		마-3	10.00	10.00				
	석 교	바	127.50	127.50				
	생태저류	사-1	1,630.59	1,630.59				
		사-2	846.61	846.61				
	다목적잔디광장	아	8,941.63	8,941.63				
	바닥분수	자	384.00	384.00				
	연 못	차	630.72	630.72				
	화 계	카	336.25	336.25				
휴양시설	소 계		6,962.64	6,962.64			28	
	피크닉마당	타-1	2,002.93	2,002.93				
		타-2	1,164.36	1,164.36				
		타-3	2,268.72	2,268.72				
	휴 게 소	파-1	72.00	72.00				
		파-2	102.50	102.50				
		파-3	102.50	102.50				
		파-4	27.85	27.85				
		파-5	120.59	120.59				
		파-6	107.98	107.98				
		파-7	95.76	95.76				
		파-8	853.71	853.71				
	피 고 라	③	-	-			3	
	조형파고라A	④	-	-			3	
	조형파고라B	⑤	-	-			1	
	징자(전망대)	하	43.74	43.74			1	
	등 의 자	⑧	-	-			20	
유희시설	소 계		954.25	954.25			1	
	모험놀이터	거	954.25	954.25				
	모험놀이시설	⑥	-	-			1	
교양시설	소 계		10,345.66	10,345.66	1,272.24	1,272.24	5	
	야외무대(광연정)	너	1,184.97	1,184.97				
	학구조파고라	⑦	-	-			1	
	서 원	더	4,681.64	4,681.64				
	서원건축물	1	-	-	688.23	688.23		
	전통놀이마당	러	1,389.37	1,389.37				
	테마정원	머	1,322.37	1,322.37				
	무어술놀이터	버	332.63	332.63				
	숲체험놀이1	⑨	-	-			1	
	숲체험놀이2	⑨	-	-			2	
	주민참여체험관A	2	489.33	489.33	409.27	409.27		
	주민참여체험관B	3	241.62	241.62	174.74	174.74		
	선사체험마당A	서-1	348.40	348.40				
	선사체험마당B	서-2	158.47	158.47				
	기반기자재	서	196.86	196.86				
	전시시설	⑪	-	-			1	
편익시설	소 계		4,176.87	4,176.87	227.80	227.80		
	주 차 장	어-1	2,786.14	2,786.14				
		어-2	1,086.74	1,086.74				
	푸드트럭존	저	76.19	76.19				
	화장실	4-1	113.90	113.90	113.90	113.90		
		4-2	113.90	113.90	113.90	113.90		
관리시설	소 계		200.79	200.79	159.49	159.49	49	
	비지터센터	5	144.43	144.43	103.13	103.13		
	창 고	6	56.36	56.36	56.36	56.36		
	유원일표지판	⑩	-	-			3	
	공원입구표지판	⑩	-	-			4	
	방향표지판	⑩	-	-			11	
	유원등	⑨	-	-			25	
	CCTV	⑤	-	-			6	
녹지및기타	소 계		56,103.88					
	녹 지		56,103.88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1,500

암사역사공원 기본계획 수립
역사공원

Scale : 1/1,500(A1)

N

0 50 100 200

◩ 조 성 계 획 총 괄 표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기)	비 고
합	계		**110,198.00**	53,947.68	1,764.94	1,731.59	60	■ 시설율 48.0%
								■ 건폐율 1.6%
기반시설	소 계		36,315.66	36,315.66				
	도 로	㉮	28,069.92	28,069.92				
	상징공장	가	1,835.43	1,835.43				
	진입공장	다	3,095.89	3,095.89				
	부진입공장	라	3,374.42	3,374.42				
		라-2	1,407.25	1,407.25				
		라-3	928.55	928.55				
		라-4	364.85	364.85				
		라-5	673.77	673.77				
조경시설	소 계		1,359.91	1,359.91			20	
	생태계류	사	650.98	650.98				
	벽 천	커	166.97	166.97				
	돌무지언덕	터	99.19	99.19				
	캐스케이드	버	258.07	258.07				
	놀이분수	허	184.70	184.70				
	상수기둥	⑰	-	-			10	
	플 랜 터1	⑱	-	-			7	
	플 랜 터2	⑲					3	
휴양시설	소 계		1,241.38	1,241.38			39	
	휴게소	파	1,241.38	1,241.38				
		파-1	72.00	72.00				
		파-2	102.50	102.50				
		파-3	102.50	102.50				
		파-6	107.98	107.98				
		파-14	81.09	81.09				
		파-15	40.54	40.54				
		파-16	60.81	60.81				
		파-17	50.68	50.68				
		파-18	60.81	60.81				
		파-19	60.81	60.81				
		파-20	143.93	143.93				
		파-21	357.73	357.73				
	입출백	⑳	-	-			7	
	음수자	㉑	-	-			10	
	벤처자	㉒	-	-			16	
	적재테이블세트	㉓	-	-			6	
교양시설	소 계		12,336.06	12,336.06	1,539.76	1,506.41	1	
	야외무대(관연장)	너	958.46	958.46				
	마구조리고라	②	(73.38)	(73.38)			1	
	서원	머	4,681.64	4,681.64				
	서원건축물	1			688.23	688.23		
	테마정원	머	1,322.37	1,322.37				
	선사체험마당A	서-1	779.39	779.39				
	선사체험마당B	서-2	458.54	458.54				
	선사체험마당C	서-3	1,257.73	1,257.73				
	기와가마터	처	196.86	196.86				
	기든센터	고	2,681.07	2,681.07	851.53	818.18		
편익시설	소 계		2,425.74	2,425.74	122.05	122.05		
	주 차 장	어	2,227.00	2,227.00				
		어-1	1,086.74	1,086.74				
		어-2	1,140.26	1,140.26				
	푸드트럭존	저	76.19	76.19				
	화 장 실	4	122.05	122.05	122.05	122.05		
관리시설	소 계		269.43	269.43	103.13	103.13		
	비지터센터	5	144.43	144.43	103.13	103.13		
	근로자휴게실	노	125.00	125.00				
녹지및기타	소 계		56,250.32					■ 녹지율 51.0%
	녹 지		56,250.3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1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럭셔리뷰티 동작점	서울 후 제471호	윤태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 오피스동 447호 (신대방동)	상호 ('25.07.28.)	오휘대흥지사	럭셔리뷰티 동작점
					소재지 ('25.07.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47, 2층 (대흥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 오피스동 447호 (신대방동)
2	유니베라 (남양알로에) 수락우리	서울 후 제320호	박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40, 2층 (상계동)	폐업 ('25.07.31.)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18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변경)계획(안) 열람 공고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2호(2012. 7. 4.)로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34호(2025. 8. 7.)로 변경 승인한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계획' 에 대하여 산업단지(변경)계획 및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안)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되어 해당 내용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국가산업단지(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나. 열람내용 : 산업단지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1. 산업단지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2)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변경)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1)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전업종	1,421,474	감)15,021	1,406,453	· 가산동 319-7 일원의 토지이용계획이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어 전체 유치업종 배치면적 감소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합 계				1단지		2단지		3단지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22,261	-	1,922,261	100.0	447,922	23.3	387,555	20.2	1,086,784	56.5	-
산업시설용지	소 계	1,421,474	감) 15,021	1,406,453	73.2	309,186	16.5	269,821	14.0	827,446	43.0	-
	제조시설용지	1,421,474	감) 15,021	1,406,453	73.2	316,278	16.5	269,821	14.0	827,446	43.0	가산동 319-7외 2필지 용지변경
지원시설용지	소 계	207,915	증) 15,021	222,936	11.6	71,332	3.3	49,665	2.6	101,939	5.3	-
	지원시설	179,161	증) 15,021	194,182	10.1	71,332	3.3	49,665	2.6	73,185	3.8	가산동 319-7외 2필지 용지변경
	체육시설	17,043	-	17,043	0.9	-	-	-	-	17,043	0.9	-
	변전소	11,711	-	11,711	0.6	-	-	-	-	11,711	0.6	-
공공시설용지	소 계	288,128	-	288,128	15.0	67,404	3.5	63,325	3.3	157,399	8.2	-
	도 로	256,302	-	256,302	13.3	61,427	3.2	63,325	3.3	131,550	6.8	-
	철도용지	1,669	-	1,669	0.1	-	-	-	-	1,669	0.1	-
	공공청사	16,046	-	16,046	0.8	5,977	0.3	-	-	10,069	0.5	-
	유수지	14,111	-	14,111	0.7	-	-	-	-	14,111	0.7	-
주거시설용지	소 계	4,744	-	4,744	0.2	-	-	4,744	0.2	-	-	-
	공동주택용지	4,744	-	4,744	0.2	-	-	4,744	0.2	-	-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2) 지원시설용지(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시설용지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 400%이하 / 허용 : 400%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부지 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높이	•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2) 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시설용지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 400%이하 / 허용 : 400%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부지 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적용 - 제50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를 따르며, 오피스텔 용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높이	•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3) 주거시설용지(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주거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D	• 공동주택 중 기숙사(임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이하주1) 주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라 기숙사 및 임대주택 용적률 적용
		높이	• 25층 이하
	배치 및 형태 등	배치 및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건축선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를 따름

(3) 주거시설용지(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주거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D	• 공동주택 중 기숙사(임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이하주1) 주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라 기숙사 및 임대주택 용적률 적용
		높이	• 25층 이하
	배치 및 형태 등	배치 및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건축선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를 따름

※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신설)

■ 기본 방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용적률 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및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

■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10% 이상	245% 이하	265% 이하	530% 이하	-
20% 이상	260% 이하	280% 이하	560% 이하	
30% 이상	275% 이하	295% 이하	590% 이하	
40% 이상	290% 이하	310% 이하	620% 이하	
50% 이상	305% 이하	325% 이하	65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 라목 및 [별표17]에 따라서 산업단지는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신설하는 산업복합건물의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구분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α = 1이하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	10%p 이내
열린단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	5%p 이내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 X α ※α = 1이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시 /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놀이 · 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이내
방재안전	▸화재 · 소방 ·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 이내

구분	내용	비고
기반시설 등 정비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 (도로, 공원, 통학로 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 : 기준용적률 X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X α ※α = 10이하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공공시설등기부채납용적률인센티브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지역특화 인센티브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기준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0%p 이내(합산)
합계	최대 20%p 이내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구분	내용	비고
공공시설 등 제공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 기준 : 허용용적률×(1 + 1.3 ×가중치×α토지+ 1.0 ×α현금·건축물) * 인센티브 계수 적용 : 토지 1.3, 건축물 1.0*, 현금 1.0 * 건축물 계수 완화(1.2적용)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지하철출입구 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서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배전함 (지하철출입구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X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X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건물 연면적) 이내 - 연결통로 공사비 : '공공시설 제공시 인센티브 산정기준' 에 따라 공사비를 한산부지 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화되, 계수는 1.2로 적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령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 기준 : 완화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	
공개공지 확보 (의무면적 초과 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시 - 기준 : 허용용적률 X { (공개공지등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 * 완화범위는 허용용적률의 1.2배 이내	-
지능형건축물 인증	▸「건축법」 제65조의2에 의하여 「지능형 건축물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서 적용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완화비율	15%	12%	9%	6%	0%

친환경 건축물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초과획득	의무등급은 인센티브 제공 불가

구분	ZEB1	ZEB2	ZEB3	ZEB4	ZEB5	에너지효율 1++	에너지효율 1+
완화비율	15%	14%	13%	12%	11%	6%	3%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②
녹색건축인증</td><td>
<table>
<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
<tr><td>녹색건축 최우수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등급</td><td>3%</td></tr>
</table>
</td><td></td></tr>
<tr><td>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d><td>
<table>
<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이상</td><td>20%이상</td><td>25%이상</td></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td><td></td></tr>
<tr><td colspan="3">①~③ 합산 최대 15%까지 적용</td></tr>
</table>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

■ 특별계획구역 1 (기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위치</td><td colspan="2">· 가산동 60-6</td><td>-</td></tr>
<tr><td>구역면적</td><td colspan="2">· 9,547㎡</td><td>-</td></tr>
<tr><td>용도지역·지구</td><td colspan="2">· 준공업지역</td><td>-</td></tr>
<tr><td>용지계획</td><td colspan="2">·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또는 지원시설용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계획 결정</td><td>-</td></tr>
<tr><td rowspan="2">용도계획</td><td rowspan="2">허용
용도</td><td>· 산업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A)(연면적 50% 이상)
- 공장 및 부대시설주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창고시설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시설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연면적 30%이하. 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상점의 총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으로 도입되는 되는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15% 미만</td><td rowspan="2">복합
용지</td></tr>
<tr><td>·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연면적 5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주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3)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2)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도입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연면적 합계는 지원시설 연면적의 50% 미만, 건축물 총 연면적의 25% 미만
주3)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4)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4)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지원시설용지
	권장용도	・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	-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계획	지정용도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6〉 복합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복합용지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지원시설용지
	불허용도	・ 허용·지정·권장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구분		계획내용	비고
	높이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 · 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공공기여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50%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로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설치비용 및 종전 종후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련 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 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디지털로 9길(폭 20m) : 10m - 디지털로(폭 25m) : 10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디지털로9길변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특별계획구역 1 (변경)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위치</td><td colspan="2">· 가산동 60-6</td><td>-</td></tr>
<tr><td>구역면적</td><td colspan="2">· 9,547㎡</td><td>-</td></tr>
<tr><td>용도지역·지구</td><td colspan="2">· 준공업지역</td><td>-</td></tr>
<tr><td>용지계획</td><td colspan="2">·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또는 지원시설용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계획 결정</td><td>-</td></tr>
<tr><td rowspan="4">용도계획</td><td rowspan="3">허용
용도</td><td>· 산업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A)(연면적 50% 이상)
- 공장 및 부대시설주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창고시설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시설
주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연면적 30%이하. 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상점의 총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으로 도입되는 되는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15% 미만</td><td rowspan="2">복합
용지</td></tr>
<tr><td>·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연면적 5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주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3)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2)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도입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연면적 합계는 지원시설 연면적의 50% 미만, 건축물 총 연면적의 25% 미만
주3)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td></tr>
<tr><td>·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4)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4)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td><td>지원
시설
용지</td></tr>
<tr><td>권장
용도</td><td>·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td><td>-</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계획	지정용도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6〉 복합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복합용지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지원시설용지
	불허용도	· 허용·지정·권장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적용 - 제50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를 따르며, 오피스텔 용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높이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공공기여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50%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로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설치비용 및 종전 종후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련 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 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디지털로 9길(폭 20m) : 10m - 디지털로(폭 25m) : 10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디지털로9길변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특별계획구역 2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가산동 459-18	-
구역면적			· 17,043㎡	-
용도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유지하되,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범위 결정 가능 ※ 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결정 시 기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또는 대체 체육시설주1) 확보 주1) 체육시설 또는 대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규모는 부지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체육시설 및 대체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추후 체육시설 및 대체 체육시설 운영계획 포함	-
용지계획			· 지원시설용지	-
용도계획		허용용도	· 체육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 기준에 따름 · 비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 결정 시 지원시설용지내 허용가능시설(허용용도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2)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2)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
		지정용도	· 비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 결정 시,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 연면적 3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 - 기타 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통해 인정 받는 시설 ※ 지정용도로 확보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은 직접 또는 임대운영(8년 이상) ·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 에 따른 시설 설치	-
		불허용도	· 허용·지정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부지 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설치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구분		계획내용	비고
	높이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공공기여계획		· 토지가액의 2%를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로 기부채납 ※ 토지가액이란 시설완화가 결정되는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종후 토지가액을 말하며, 시설설치비용 산정 및 종후 토지가액 감정평가 기준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가산디지털2로(폭20m) : 8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II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공공보행통로조성(최소 폭3m 이상, 필로티형유효높이 6m이상)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가산디지털2로(20m)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특별계획구역 2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가산동 459-18		-
구역면적		· 17,043㎡		-
용도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유지하되,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범위 결정 가능 ※ 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결정 시 기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또는 대체 체육시설주1) 확보 주1) 체육시설 또는 대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규모는 부지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체육시설 및 대체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추후 체육시설 및 대체 체육시설 운영계획 포함		-
용지계획		· 지원시설용지		-
용도계획		허용 용도	· 체육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 기준에 따름 · 비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 결정 시 지원시설용지내 허용가능시설(허용용도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2)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2)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
		지정 용도	· 비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 결정 시,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 연면적 3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 - 기타 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통해 인정 받는 시설 ※ 지정용도로 확보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은 직접 또는 임대운영(8년 이상) ·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 II-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 에 따른 시설 설치	-
		불허 용도	· 허용·지정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부지 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적용 - 제50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 를 따르며, 오피스텔 용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II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높이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계획		· 토지가액의 2%를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로 기부채납 ※ 토지가액이란 시설완화가 결정되는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종후 토지가액을 말하며, 시설설치비용 산정 및 종후 토지가액 감정평가 기준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가산디지털2로(폭20m) : 8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II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공공보행통로조성(최소 폭3m 이상, 필로티형유효높이 6m이상)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가산디지털2로(20m)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특별계획구역 3 (기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위치</td><td colspan="2">· 가산동 371-12</td><td>-</td></tr>
<tr><td>구역면적</td><td colspan="2">· 5,348㎡</td><td>-</td></tr>
<tr><td>용도지역·지구</td><td colspan="2">· 준공업지역</td><td>-</td></tr>
<tr><td>용지계획</td><td colspan="2">·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또는 지원시설용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계획 결정</td><td>-</td></tr>
<tr><td rowspan="4">용도계획</td><td rowspan="3">허용
용도</td><td>· 산업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A)(연면적 50% 이상)
- 공장 및 부대시설주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창고시설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시설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연면적 30%이하. 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상점의 총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으로 도입되는 되는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15% 미만</td><td rowspan="2">복합
용지</td></tr>
<tr><td>·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연면적 5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주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3)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2)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도입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연면적 합계는 지원시설 연면적의 50% 미만, 건축물 총 연면적의 25% 미만
주3)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td></tr>
<tr><td>·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4)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4)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td><td>지원
시설
용지</td></tr>
<tr><td>권장
용도</td><td>·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td><td>-</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계획	지정용도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6〉 복합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복합용지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지원시설용지
	불허용도	· 허용·지정·권장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높이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공공기여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50%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로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설치비용 및 종전 종후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련 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 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가산디지털1로(폭 15m) : 8m - 가산디지털1로(폭20m): 10m · 벽면지정선(벽면의 1/3 이상 접할시인정)(가산디지털1로(폭 15m)) - 1층부(층고4.5m 이상)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 2층부 건축한계선과 동일 · 벽면한계선(가산디지털1로(폭 15m)) - 3층 이상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가산디지털1로(20m)변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특별계획구역 3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가산동 371-12		-
구역면적	· 5,348㎡		-
용도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용지계획	·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또는 지원시설용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계획 결정		-
용도계획	허용용도	· 산업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A)(연면적 50% 이상) - 공장 및 부대시설주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창고시설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시설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연면적 30%이하. 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상점의 총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으로 도입되는 되는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15% 미만	-
		·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연면적 5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주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3)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2)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도입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연면적 합계는 지원시설 연면적의 50% 미만, 건축물 총 연면적의 25% 미만 주3)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복합용지
		·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4)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4)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지원시설용지
	권장용도	·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	-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계획	지정용도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6〉 복합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복합용지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지원시설용지
	불허용도	· 허용·지정·권장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적용 - 제50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를 따르며, 오피스텔 용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높이	·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공공기여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50%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로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설치비용 및 종전 종후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련 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가산디지털1로(폭 15m) : 8m - 가산디지털1로(폭20m): 10m · 벽면지정선(벽면의 1/3 이상 접할시인정)(가산디지털1로(폭 15m)) - 1층부(층고4.5m 이상)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 2층부 건축한계선과 동일 · 벽면한계선(가산디지털1로(폭 15m)) - 3층 이상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가산디지털1로(20m)변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특별계획구역 4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가산동 319-25		-
구역면적		· 6,855㎡		-
용도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용지계획		· 공공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		-
용도계획		허용 용도	·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1)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1)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
		권장 용도	·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	-
		지정 용도	·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 연면적 3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 - 기타 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통해 인정 받는 시설 ※ 지정용도로 확보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은 직접 또는 임대운영(8년 이상) ·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 II-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 에 따른 시설 설치	-
		불허 용도	· 허용·지정·권장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부지 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II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구분		계획내용	비고
	높이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가산디지털1로(폭 20m) : 10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 공공보행통로조성(최소 폭3m 이상, 필로티형유효높이 6m이상)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가산디지털2로(20m)변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향후 구로세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국가계획)이 수행될 경우 서울시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세부지침을 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 4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가산동 319-25	-
구역면적		· 6,855㎡	-
용도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용지계획		· 공공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	-
용도계획	허용 용도	·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1)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1)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
	권장 용도	·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	-
	지정 용도	·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 연면적 3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 - 기타 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통해 인정 받는 시설 ※ 지정용도로 확보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은 직접 또는 임대운영(8년 이상)	-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 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 에 따른 시설 설치	
		불허용도	· 허용·지정·권장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부지 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적용 - 제50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 를 따르며, 오피스텔 용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높이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가산디지털1로(폭 20m) : 10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 공공보행통로조성(최소 폭3m 이상, 필로티형유효높이 6m이상)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가산디지털2로(20m)변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향후 구로세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국가계획)이 수행될 경우 서울시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세부지침을 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 5 (기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위치</td><td colspan="2">· 가산동 319-7</td><td>-</td></tr>
<tr><td>구역면적</td><td colspan="2">· 15,021㎡</td><td>-</td></tr>
<tr><td>용도지역·지구</td><td colspan="2">· 준공업지역</td><td>-</td></tr>
<tr><td>용지계획</td><td colspan="2">·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또는 지원시설용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계획 결정</td><td>-</td></tr>
<tr><td rowspan="3">용도계획</td><td rowspan="2">허용용도</td><td>· 산업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A)(연면적 50% 이상)
- 공장 및 부대시설주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창고시설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시설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호에 따른 시설로서 연면적 30%이하. 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상점의 총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으로 도입되는 되는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15% 미만</td><td rowspan="2">복합용지</td></tr>
<tr><td>·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연면적 5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주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3)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2)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도입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연면적 합계는 지원시설 연면적의 50% 미만, 건축물 총 연면적의 25% 미만
주3)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td></tr>
<tr><td>권장용도</td><td>·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4)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4)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td><td>지원시설용지</td></tr>
<tr><td></td><td>·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td><td>-</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계획	지정용도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6〉 복합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복합용지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지원시설용지
	불허용도	· 허용·지정·권장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 설치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높이	·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공공기여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50%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로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설치비용 및 종전 종후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련 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 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가산디지털1로(폭 20m) : 10m - 두산길지하차도(예정) : 6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가산디지털2로(20m)변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특별계획구역 5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가산동 319-7		-
구역면적	· 15,021㎡		-
용도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용지계획	·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또는 지원시설용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계획 결정		-
용도계획	허용용도	· 산업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A)(연면적 50% 이상) - 공장 및 부대시설주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창고시설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시설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연면적 30%이하. 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상점의 총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으로 도입되는 되는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15% 미만	-
		·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연면적 5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주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3)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2)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도입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연면적 합계는 지원시설 연면적의 50% 미만, 건축물 총 연면적의 25% 미만 주3)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복합용지
		·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4)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4)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지원시설용지
	권장용도	·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	-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계획	지정용도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6〉 복합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복합용지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지원시설용지
	불허용도	· 허용·지정·권장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적용 - 제50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를 따르며, 오피스텔 용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높이	·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공공기여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50%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로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설치비용 및 종전 종후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련 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가산디지털1로(폭 20m) : 10m - 두산길지하차도(예정) : 6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가산디지털2로(20m)변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특별계획가능구역 1 (기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위치</td><td colspan="2">· 가산동 79-2</td><td>-</td></tr>
<tr><td>구역면적</td><td colspan="2">· 6,585㎡</td><td>-</td></tr>
<tr><td>용도지역·지구</td><td colspan="2">· 준공업지역</td><td>-</td></tr>
<tr><td>용지계획</td><td colspan="2">·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또는 지원시설용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계획 결정</td><td>-</td></tr>
<tr><td rowspan="3">용도계획</td><td rowspan="2">허용
용도</td><td>· 산업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A)(연면적 50% 이상)
- 공장 및 부대시설주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창고시설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시설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연면적 30%이하. 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상점의 총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으로 도입되는 되는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15% 미만</td><td rowspan="2">복합
용지</td></tr>
<tr><td>·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연면적 5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주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3)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2)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도입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연면적 합계는 지원시설 연면적의 50% 미만, 건축물 총 연면적의 25% 미만
주3)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td></tr>
<tr><td></td><td>·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4)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4)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td><td>지원
시설
용지</td></tr>
<tr><td></td><td>권장
용도</td><td>·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td><td>-</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계획	지정용도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6〉 복합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복합용지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지원시설용지
	불허용도	· 허용·지정·권장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 설치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높이	·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공공기여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50%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로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설치비용 및 종전 종후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련 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벚꽃로36길(폭 20m) : 6m - 벚꽃로38길(폭 12m) : 6m · 구역경계 연접부: 건축한계선 3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주요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 디지털로9길 또는 벚꽃로36길변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특별계획가능구역 1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가산동 79-2		-
구역면적	· 6,585㎡		-
용도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용지계획	·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또는 지원시설용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계획 결정		-
용도계획	허용용도	· 산업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A)(연면적 50% 이상) - 공장 및 부대시설주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창고시설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시설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연면적 30%이하. 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상점의 총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으로 도입되는 되는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15% 미만	복합용지
		·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연면적 5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주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3)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2)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도입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연면적 합계는 지원시설 연면적의 50% 미만, 건축물 총 연면적의 25% 미만 주3)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 지원시설용지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주4)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내 입주가능 시설 주4)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지원시설용지
	권장용도	·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	-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계획	지정용도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6〉 복합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복합용지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지원시설용지
	불허용도	· 허용·지정·권장용도 외의 용도	-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적용 - 제50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를 따르며, 오피스텔 용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높이	· 기준높이 : 85m, 최고높이 : 100m, 완화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공공기여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50%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로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설치비용 및 종전 종후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련 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 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벚꽃로36길(폭 20m) : 6m - 벚꽃로38길(폭 12m) : 6m · 구역경계 연접부: 건축한계선 3m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주요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 디지털로9길 또는 벚꽃로36길변 차량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 계획지침 결정(변경) 사유서 (특별계획구역 1, 3, 5 / 특별계획가능구역 1)

구역명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특별계획구역 1,3,5 / 특별계획가능구역 1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적용 - 제50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를 따르며, 오피스텔 용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의 변경과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적률에 대한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용적률 체계 수립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추가적용

■ 계획지침 결정(변경) 사유서 (특별계획구역 2, 4)

구역명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특별계획구역 2,4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부지 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기준 : 400% 이하 / 허용 : 4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부지 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적용 - 제50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를 따르며, 오피스텔 용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의 변경과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적률에 대한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용적률 체계 수립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추가적용

구역명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3)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신설)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획지면적(㎡)			위치	면적(㎡)	단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5	15,021	-	15,021	가산동 319-7	8,331	3	교학사부지
					가산동 319-10	2,721		
					가산동 657	3,969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준공업지역	15,021	-	15,021	100%	-

(2)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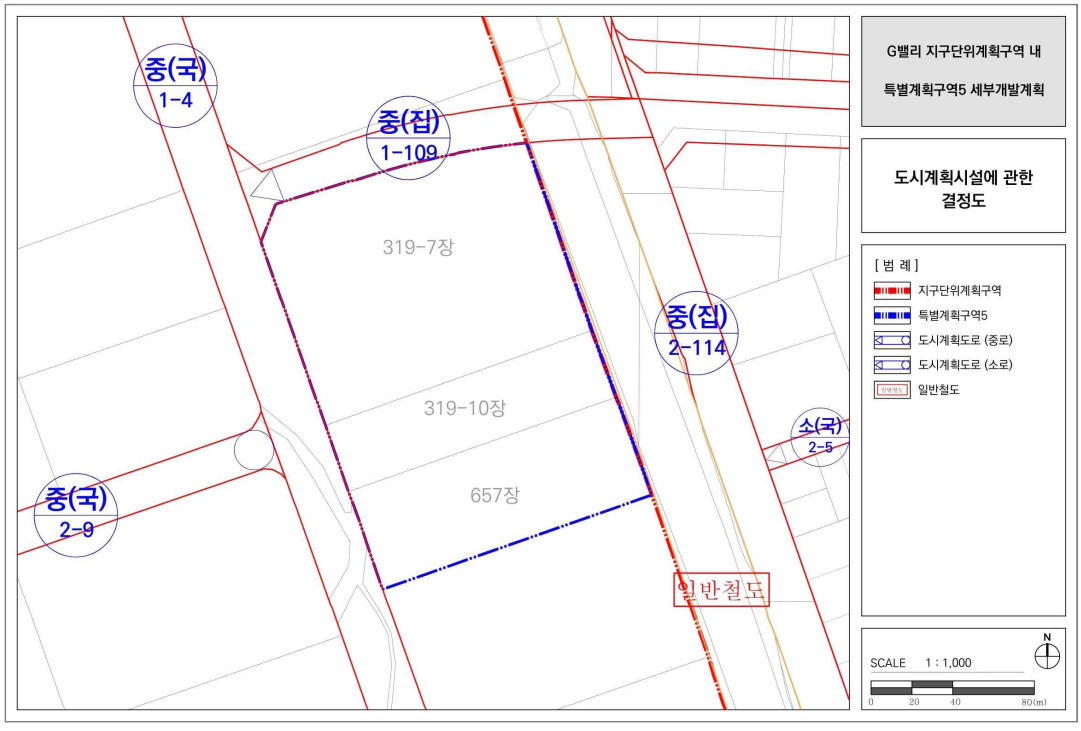

(이 하 여 백)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가구에 관한 사항

■ 가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비고
가구	C15	가산동 660 일원	특별계획구역 5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C15	가산동 319-7	8,331	15,021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특별계획구역 5)
	가산동 319-10	2,721				
	가산동 657	3,969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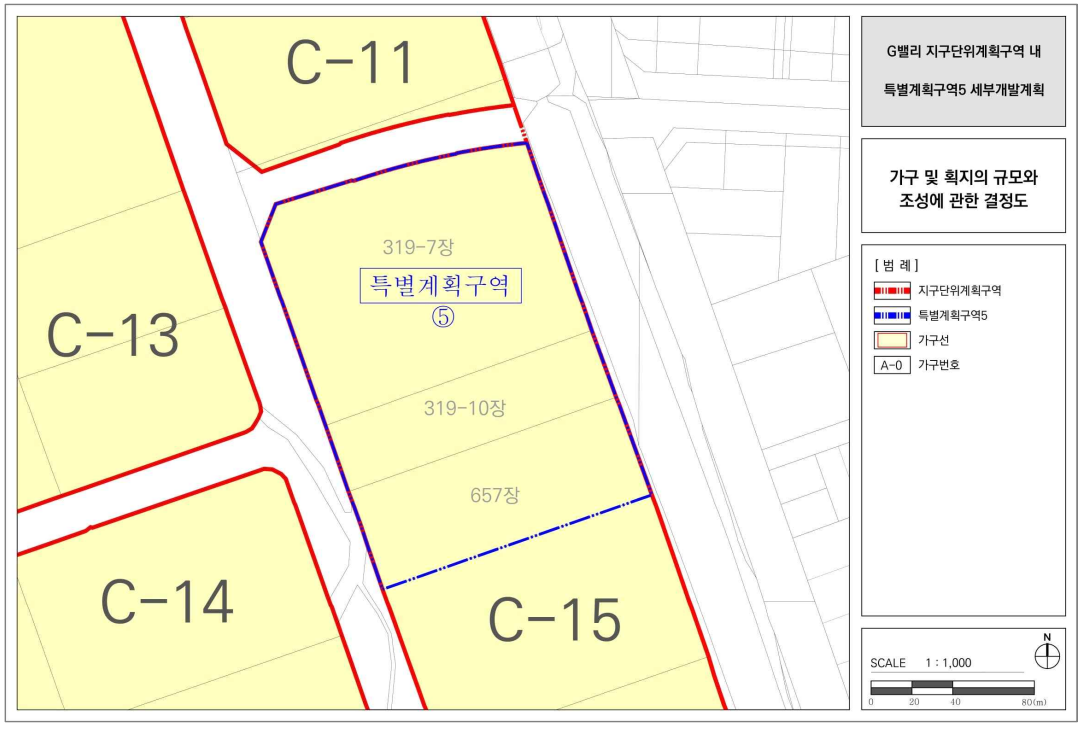

마.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허용용도	• 지원시설용지 내 허용 가능시설(허용용도 B)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시설	• 좌동	지원시설 용지
권장용도	• 1층 바닥면적의 70% 또는 1~2층 각층 바닥면적의 40% 이상 다음의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생 중 일용품소매점(공방),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하	• 좌동 - 1층 바닥면적의 70% 이상 가로활성화용도 계획 (71.0%) * 1층 바닥면적: 5,768㎡ * 1층 가로활성화용도 면적: 4,095㎡	-
지정용도	• 공개공지 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 부지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표Ⅱ-9〉 지원시설용지 지정용도 커뮤니티시설 확보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 좌동 - 커뮤니티시설 면적 3,142㎡ 설치 (개별시설에 세탁실,휴게실과 동일한 기능 설치에 따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1.5%(853㎡)이상 규모의 커뮤니티시설을 별도로 확보)	지원시설 용지
불허용도	• 허용 · 지정 · 권장용도 외의 용도	• 좌동	-

(2)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

■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계획

가)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10% 이상	245% 이하	265% 이하	530% 이하	건축계획 상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 비율 : 20%
20% 이상	260% 이하	280% 이하	560% 이하	
30% 이상	275% 이하	295% 이하	590% 이하	
40% 이상	290% 이하	310% 이하	620% 이하	
50% 이상	305% 이하	325% 이하	65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7] 및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24.10)」 (행정2부시장방침)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비율 20%를 확보하여 260% / 280% / 560% 이하 적용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 기준: 400% 이하 / 허용: 400% 이하 /상한: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허용용도B)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적용 - 제50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체계'를 따르며, 오피스텔 용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유도사항 모두 준수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복합용지로 변경 시: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1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시: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37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또는 녹색건축 인증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인센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립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3」의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기준: 260% 이하 / 허용: 280% 이하 / 상한: 510.52% 이하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5.03.27)」에 따른 용적률 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 항목 적용	-

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대상지 적용
열린단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열린단지 조성기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조성 등 준수 - 적용 : 5%	5%p 이내	5p%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놀이 · 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적용 : 공공어린이집 767.8㎡설치 * 주민공동시설 의무면적1)의 1/5: 765㎡ [=(500㎡+ 1280세대 X 2㎡) X 1.25]	5%p 이내	5p%
방재안전	▸화재 · 소방 ·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 공동소화전, 상수도 소화전, 오피스텔 각 세대별 하향식 피난구 등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소방,피난,방화시설을 적용하여 건축심의 시 확보조건을 만족토록 함 - 적용 : 5%	5%p 이내	5p%
기반시설 등 정비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 (도로, 공원, 통학로 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 : 기준용적률 X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X α ※α = 1이하 - 적용 : 260% X (288.9㎡/15,021㎡) X 1 = 5%p * 환산부지면적(288.9㎡)= 정비비용/부지가액 [=22.8억원 / 7,892,000원/㎡]	5%p 이내	5p%2)
합계	최대 20%p 이내		20%p

1)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의무면적(1,000세대 이상): (500㎡+ 세대당 2㎡) X 1.25
2) 서울시 및 금천구에서 추진 중인 대상지 관련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반영

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 공개공지 / 친환경 건축물 인센티브

구분	세분	완화기준	결과	완화비율		비고
				산업시설 (20.0%)	비산업시설 (80.0%)	
공개공지	공개공지	280% X {(4,162.2㎡-1,502.1㎡)/15,021}	49.59%	9.92%	39.67%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매뉴얼」 3-8-3.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내 공개공지 및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ZEB인증	280% X 0.15 (ZEB5, 녹색건축 최우수)	42.00%	8.40%	33.60%	
합계			91.59%	18.32%	73.27%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완화

구분	세분	면적	산식	산출결과	완화비율		비고
					산업시설 (20%)	비산업시설 (80%)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도서관	2,443㎡	기준/허용용적률 X (1+ 1.0 X α건축물)	27.50%	5.50%	22.00%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른 산식 및 완화기준 적용
	전시장·컨벤션	2,629㎡		34.55%	6.91%	27.64%	
	체육시설	3,154㎡		35.49%	7.10%	28.39%	
	기계 및 주차	2,678㎡		6.99%	1.40%	5.59%	
	합계	10,904㎡		104.52%	20.90%	83.62%	
공공시설 대지지분 기부채납	대지지분	1,297.2㎡	기준/허용용적률 X (1+ 1.3 X α토지)	34.41%	6.88%	27.53%	
	합계	1,297.2㎡		34.41%	6.88%	27.53%	
총 합계				138.93%	27.79%	111.15%	

※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면적,종류, 제공 위치 등은 관리부서와 향후 협의를 통해서 확정

■ 산업 대 주거(산업시설외) 용적률 배분

구분		완화량	내용		비고
			산업시설 (20%)	비산업시설 (80%) (오피스텔,근생시설 등)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 비율 20% 이상 적용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260%/280%/510.52%, 산업:비산업=20:80					
공공시설 등 제공 시		138.93%	27.79%	111.15%	부지면적 기준 순부담 15% 이상 (순부담률 42.7%)
다른 법률에 따른 항목	공개공지	49.59%	9.92%	39.67%	국계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4배 이내 (160%>91.59%)
	친환경 건축물	42.00%	8.40%	33.60%	

구분	완화량	내용		비고
		산업시설 (20%)	비산업시설 (80%) (오피스텔,근생시설 등)	
합계	91.59%	18.32%	73.27%	
총 합계	230.52%	46.10%	184.41%	-
상한용적률	280%(허용)+230.52% =510.52%	56%(허용)+46.10% =102.1%	224%(허용)+184.41% =408.41%	-

(3)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높이	• 기준높이: 85m / 최고높이: 100m / 완화높이: 최고높이의 1.2배 이하 ※ 권장용도 및 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형태 등 지침 준수 시 최고 높이(100m)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3」의 산식에 따라 최고높이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좌동 - 권장용도 준수,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100.4m로 계획	-

(4)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가산디지털1로(폭 20m): 10m - 두산길 지하차도(예정): 6m	• 좌동	-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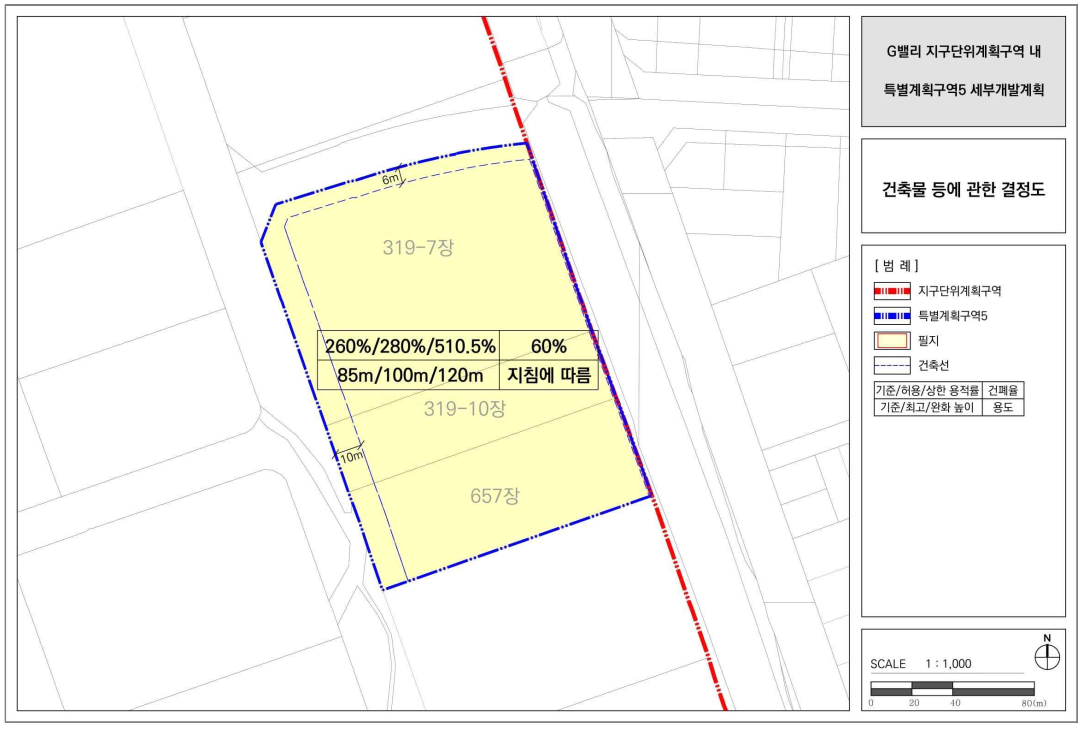

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대지 내 공지	• 도로와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접필지 경계부에 담장 등 설치 불가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의무 및 가각부에 위치지정 • 그 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에 따름	• 좌동 가산디지털1로 전면공지 10m, 두산길 지하차도 6m 확보 공개공지 약 27%이상 확보 - 공원형 공개공지(권장)와 저층부 활성화시설이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교류활성화 도모	-

(2)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교통처리 계획	•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상의 차량 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 • 가산디지털2로(20m)변 차량 출입구 1개소 이내 제한	• 좌동 - 가산디지털1로변 차량진출입구 1개소 조성	-

(3)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여 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 채납 ※ 공공기여 설치비용 및 종전 종후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련 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공공기여계획에 따름 ※ 산업단지 활성화 등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되는 산업교류혁신지원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정	• 공공건축물 계획 - 공공도서관 : 2,443㎡ - 전시장·컨벤션 : 2,629㎡ - 체육시설 : 3,154㎡ - 기계/주차 : 2,678㎡	-

※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면적,종류, 제공 위치 등은 관리부서와 향후 협의를 통해서 확정
※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조성 후 금천구 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서 시설의 면적, 층고, 형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시설용지로 용지변경된 326-4부지와 현재 산업시설용지인 319-7 용지의 2024년 공시지가기준 지가차액이 없어, 용지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은 미반영하였으나 향후 관련 협의를 통해 검토 반영할 예정임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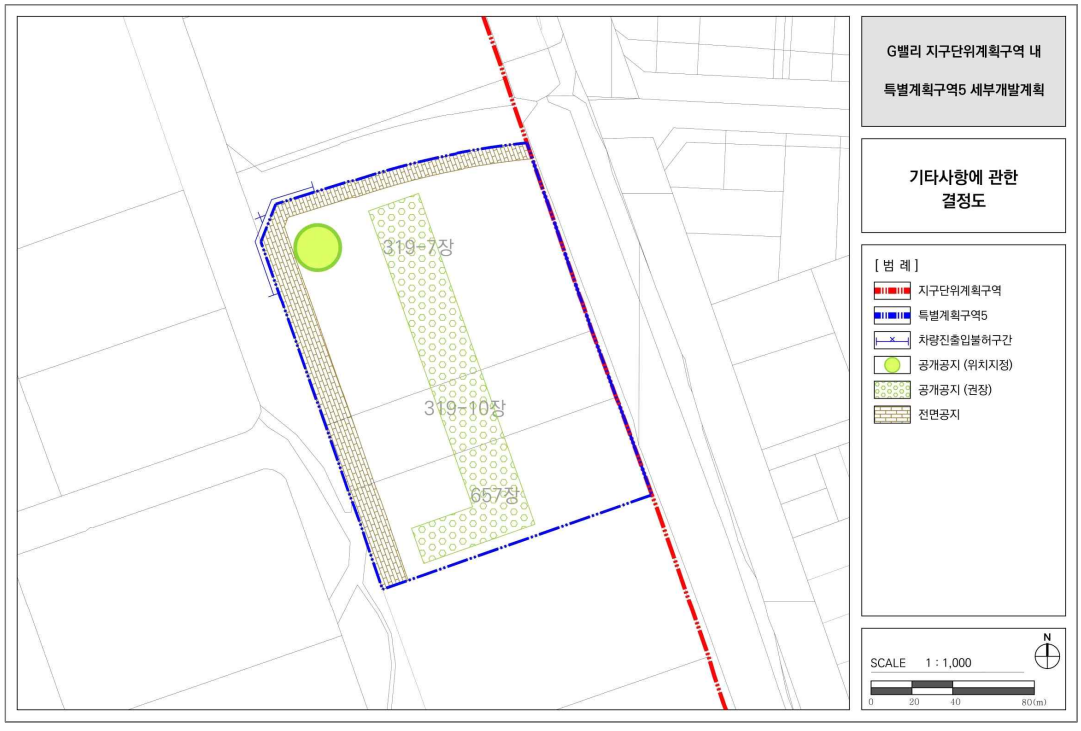

■ 세부개발계획 종합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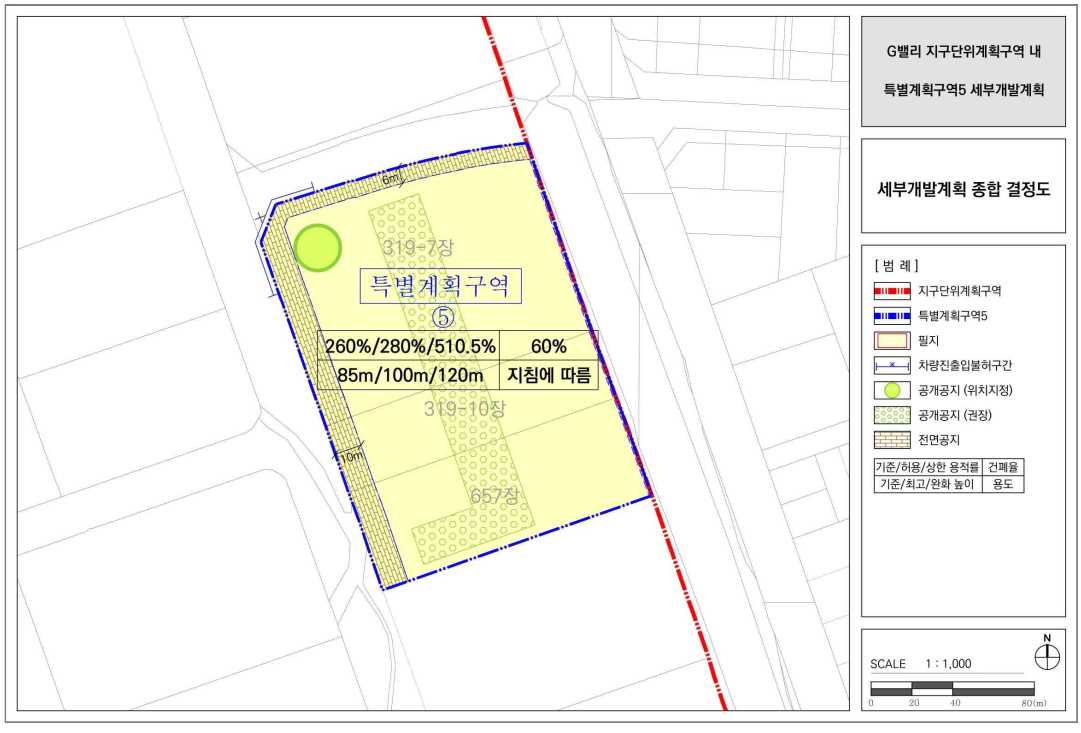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02-2133-8593)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가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2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한국체육대학교)

1. 건설부고시 제326호(1984.8.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0호(2017.12.2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9호(2024.5.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송파구 방이동 88-15 일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송파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서울시청 시설계획과(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시설계획과 ☎02-2133-8412)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6층 도시계획과 ☎02-2147-2995)

다.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7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사항과 체육진흥원 및 산학협력복합관 등 신·증축 계획 등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 교	대 학 (한국체육대학교)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15 일대	111,902.3	-	111,902.3	1984.8.25. (건고 제326호)	자연녹지지역

마.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주요 내용

o 구역계획: 외부활동구역 → 일반관리구역
o 밀도계획: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관리건폐율 25%→30%, 관리용적률 82%→95%)
o 높이계획: 4구역 최대높이 (기정) 지표로부터 5m → (변경) 지표로부터 8m
5구역 최대높이 (기정) 지표로부터 5m → (변경) 지표로부터 30m
o 건축계획: 체육진흥원 및 산학협력복합관 신축, 본관 증축 등

바. 관련도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30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시지정유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시지정유산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가. 지정 개요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 (廣德寺 塑造地藏菩薩三尊像 發願文)	1건 1점	33.2×285	1555년	용산구 (현○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백련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白蓮寺 冥府殿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22軀	지장보살좌상: 110 무독귀왕입상(우): 136 도명존자입상(좌): 128	17세기 (1852년 개금)	서대문구 (한국불교태고종 백련사)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	시대일보 (時代日報)	1건 10점	54.5×40.5	20세기 초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나. 예고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함.

■ 유형문화유산

【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廣德寺 塑造地藏菩薩三尊像 發願文) 】

조사대상은 1555년 천안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조성 발원문으로 명종의 모친 문정왕후와 허응당 보우가 관여한 왕실 불사로 추정되며 왕실 관련 인물, 승려 등 총 237명이 동참하였다. 발원문의 앞부분은 발원 내용, 왕실 인물에 대한 축원, 작성 연도 등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부분은 상단에는 시주자로 참여한 속인(俗人)을, 하단에는 불사에 동참한 승려들을 기록하였다. 조각승은 지융(志融), 지행(智行)이다. 조선시대 왕실 발원 불상 발원문이 대체로 청색 명주에 주서(朱書)된 것과 달리 자초로 추정되는 염료로 염색한 명주천에 주서한 특이한 사례이다. 불교사적 자료 가치가 크고 직물 문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백련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白蓮寺 冥府殿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백련사 명부전 내에 중앙의 본존 지장보살상을 중심으로, 협시인 도명존자상과 무독귀왕상이 있으며, 양측에는 시왕상과 그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복장유물에 1852년 명부전을 새로 건립하고 후불탱을 조성하며 이 존상들을 개금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원래 이곳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성 시기는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당시 대표적인 화승 수연(守衍)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무독귀왕상과 도명존자상은 수연의 제자 영철이 조성한 〈서울 화계사 명부전 존상〉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서울시 소재 사찰에 봉안된 명부전 존상들 중 제작 시기가 이른 귀중한 작품으로,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 등록문화유산

【 시대일보(時代日報) 】

『시대일보(時代日報)』는 1924년 창간되어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3대 민간 일간지로 꼽혔다. 사장은 최남선, 편집국장은 진학문이었으며, 사회면을 1면에 배치한 독특한 구성으로 주목받았으나 경영난으로 1926년 종간되었다. 창간 당시 『시대일보』는 8면 2만 부를 발행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안재홍(安在鴻), 염상섭(廉想燮), 현진건(玄鎭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오늘일 래일일’ 등 사회비평 코너, 실명 논설, 미국 만화 ‘엉석바지’ 연재 등으로 차별화된 편집을 시도했으며, 염상섭, 현진건의 소설 연재로 국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또한 항일 무장투쟁 관련 보도를 통해 민족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송파책박물관 『시대일보』는 창간호부터 1924년 4월 9일 제10호까지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 이미 서울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다수 호수가 훼손된 종로도서관 소장본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① 전화 : (02) 2133-2630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廣德寺 塑造地藏菩薩三尊像 發願文) 】

검 토 종 별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문 화 유 산 명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 (廣德寺 塑造地藏菩薩三尊像 發願文)
수 량	1건 1점	규 격 (㎝)	세로 33.2, 가로 285
형식 · 형태 (형 식)	두루마리	세 부 유 형	불상 발원문
재 료	명주	소 유 자 (관 리 자)	현○호
시 대	1555년(명종 10, 嘉靖 34)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 사 내 용

1. 문화유산 개요

○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은 소장자가 2021년 3월에 유진화랑(문화유산매매허가)에서 구매한 것이다. 이 발원문은 세로 33.2cm, 가로 285cm의 크기로 3m에 가까운 장서이다. 자색 명주천에 주서(朱書)로 내용을 쓴 두루마리 형식의 문서이다. 조선시대 불상의 조성 관련 기록은 발원문 · 원문 · 조성기 · 시주기 등 제목은 다양하다. 1555년에 작성된 광덕사 소조삼불상에 관한 이 문서는 문장 첫 줄에 '발원문' 이라고 적혀있어 불상 조성 당시에 발원한 내용에 대한 글로, 분명한 제목을 적고 있다.

○ 바탕천의 자색 염료는 자초로 추정되는데, 조선시대 왕실 발원 불상의 발원문이 주로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년)>과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1466년)>의 사례처럼 청색 명주에 주서된 것이 많은데, 이와 비교해보면 특이한 예이다. 발원문의 시작 부분은 명주천이 손실되어 있으며, 뒷면에 청색 명주를 덧대 보수한 흔적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손상된 발원문의 시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호한 편으로, 손상된 앞부분의 몇 글자를 제외하면 주서된 대부분의 글자 판독이 가능하다.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의 앞부분은 발원 내용, 왕실 인물의 축원, 발원문 작성 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면은 크게 2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시주자로 참여한 속인(俗人)들을 기록했고, 하단에는 불사에 동참한 승려들을 수록했다. 즉 속인과 승려들을 구분해 기록한 점이 특징인데, 발원문의 원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發願文

詳夫造佛 始於○時

釋尊為母說法○兜率天 而目犍○
孝而衆戀慕 造像于此時也 其時 靈
驗之事 具載于経典 今略不録 然而○
此造佛畫像之法 流傳於天下 尙矣 或
有塑佛前礼拜恭敬 而得福得道者 多
矣 或有畫像前供養讚嘆 而作佛作祖者
亦多矣 惟其如是故 今我等諸人 發廣大
願 興平等慈 不吝珎寶 不惜身命 擇諸
證師良工 塑造三尊 嚴若靈鷲之威
儀 煥若諸佛之親臨 因此得知 我等諸
人 一佛二佛三四五佛 乃至千萬億佛
所曾種善根 精造三尊 乏矣 然則想知
後之善男善女 見此佛像 亦發誓願 而
作佛作祖 得道得理者 何千萬焉
訟曰
願我諸人發大誓 生生世世出佛國
先登覺岸濟迷倫 同證如來涅槃路
又
次願不生邪見家 每生得道正知見
無偏無倚得自由 周遊八極渾無碍
又
又願壽命等佛慧 不遇魔事常坦坦
清風明月長為伴 施諸迷輩永無窮
又
願我別録諸人等 結願因緣生浄土
相為主伴論佛法 春風和氣永流傳
皇明嘉靖三十四年三月 日 山人継燈 誌

後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聖列仁明大王大妃殿下壽萬歲
恭懿王大妃殿下壽萬歲
元子保體 壽命長
諸君宗室各安寧

國泰民安法輪轉

大施主 南氏保体
忠義衛 李溶两位
李堅两位
興陽柳氏
完山李氏
柳營春两位
察訪 李孝讜两位
李好仁两位 李龍
李達門 夢今
李孝年 崔氏萬年
李香蘭
李元几
大施主
金其叱三两主
安乭石两主
貴希
……
……

禪宗判事 普雨
敎宗判事 義尙
廣德住持大禪師戒仁

證師山人性衍
持殿山人印岑
禪德 智明
性祖 ……

義環
覺林 祖根
性岑

……
……

畫員 衲子 志融
智行

……
……

○ 이 발원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첫 번째 이 발원문은 광덕사에서 “皇明嘉靖三十四年三月 日(1555년)”에 행해진 불사의 발원문임을 알 수 있다. 이 발원문이 광덕사에서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廣德 住持 大禪師 戒仁”이 등장하는데, 이는 광덕(廣德)이 사찰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555년 광덕사에서는 『묘법연화경』,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몽산화상육도보설』등 경전이 다수 간행되었는데, 주지인 계인을 비롯한 선종판사 보우, 교종판사 의상 등은 『묘법연화경』 간행에도 동참한 인물로 등장한다.

- 두 번째로는 위 발원문은 “塑造三尊”상을 조성하면서 발원한 내용이라 적혀있어,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조성 발원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존상을 조상한 화원(畫員)으로는 지융(志融), 지행(智行)이 조성하였음을 알려준다.

- 세 번째로는 1555년 천안 광덕사에서 소조삼존불상을 조성할 때 왕, 왕비, 대왕대비, 대비, 원자, 종실 인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왕은 명종(1534~1567, 재위 1545~1567)이고, 왕비는 안순왕후 심씨(1532~1575)이다. 성열인명대왕대비는 명종의 모친 문정왕후 윤씨(1501~1565)이고, 공의왕대비는 명종의 의붓형 인종(1515~1545, 재위 1544~1545)의 비 인성왕후 박씨(1514~1578)이다. 원자는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1551~1563)이다. 이 가운데 당시 대왕대비였던 문정왕후는 16세기에 허응당 보우(1515~1565)와 함께 불교를 중흥시킨 대표적인 왕실 인물이다. 인종 비 공의왕대비는 1550년에 인종의 극락왕생을 위해 <관음32응신도>를 제작해 영암 도갑사에 봉안했는데, 현재는 일본 교토 지온인(知恩院)에 소장되어 있다. 이처럼 이 불사는 조선 중기 시대에 점점 퇴보해 가는 불교계를 중흥시킨 문정왕후와 허응당 보우 등과 관련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특히 문정왕후는 1565년에 중수 불사를 마친 양주 회암사의 낙성식에 맞춰 아들 명종의 치병과 1563년에 순회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새로운 세자의 탄생을기원하며 석가모니불 · 미륵불 · 아미타불 · 약사불의 화상(畵像)을 각각 금화(金畵)로 50점, 채화(彩畵)로 50점씩 제작하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1565년에 제작된 <회암사명 약사삼존도>의 바탕천이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과 유사한 색으로 염색한 천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문정왕후의 불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네 번째로는 왕실 인물 이외에 실질적으로 1555년에 광덕사 불상을 조성하는데 동참한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여 당시 불사에 참여한 이들을 알 수 있다. 가장 주도적인 시주자는 '大施主 南氏保体'인데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또한 '忠義衛 李溶 兩位', '李堅 兩位', '興陽柳氏', '完山李氏', '柳營春兩位', '察訪 李孝讜 兩位', '李好仁 兩位' 등은 왕실과 관련된 인물이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로 추정된다.

  또한 선종판사 보우(普雨), 교종판사 의상(義尙), 광덕사 주지 계인(戒仁), 증사(證師) 성연(性衍), 지전(持殿) 인잠(印岑)외 선덕(禪德) 35명의 스님이 참여하였으며, 시주자로 소임이 없는 승려 32명, 속인(부부 27쌍, 단신 106명)을 포함하여 총 237명이 동참하였음을 보여준다.

2. 원형 유지 정도

○ 발원문의 오른쪽 시작 부분에는 손실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짙은 청자색의 명주로 보수하였다. 뒷면을 관찰한 결과 약 70㎝ 길이로 청자색 명주가 덧대어져있어 손실된 부분보다 길게 보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자색 명주 기계에서 직조한 것으로 1900년대 이후에 보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 사 결 과	**3. 지정 여부 및 사유 :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가** ○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은 제작 연도가 1555년이 확실하고 불상이 봉안된 사찰, 소조삼존불상이라는 점, 작가와 불상 조성을 주도한 승려 및 시주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16세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 불상의 소재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불상 발원문 가운데 매우 드문 자색(紫色) 발원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은 불교사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직물 문화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 ○ 권선문이 단독으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예로는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1464년)과 설씨부인 권선문(1482년)이 있다.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은 왕실발원 불사의 자료적 가치가 높고, 불교사적 의의도 크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참 고 : 유근자, 박윤미, 이종수 「가정 34년(1555) 소조삼존불상 발원문 조사 보고서」

붙임	문화유산 이미지

가정 34년(1555)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 1

가정 34년(1555)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 2

가정 34년(1555)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 3

가정 34년(1555)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 4

가정 34년(1555) 광덕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 5

【 백련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白蓮寺 冥府殿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검 토 종 별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문 화 유 산 명	백련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白蓮寺 冥府殿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수 량	22구	규 격 (㎝)	지장보살좌상: 상높이 110, 무릎폭 77 무독귀왕입상(우): 상높이 136, 어깨폭 36 도명존자입상(좌): 상높이128, 어깨폭 36
형식 · 형태 (형 식)	목조조각상	세 부 유 형	불교조각
재 료	나무	소 유 자 (관 리 자)	한국불교태고종 백련사
시 대	17세기(1852년 개금)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개요

○ 서울시 백련사의 명부전에는 목조로 조성된 지장삼존상과 시왕상 및 명부의 권속상이 봉안되어 있다. 존상들의 뒤에는 지장보살도와 시왕도가 봉안된 명부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가 작은 전각이다. 내부에 봉안된 상들은 좌상의 경우에도 110-153cm의 대규모인 상들이 대부분으로, 작은 전각은 존상의 수가 22위에 달하므로 비좁을 정도로 꽉 차있다.

○ 백련사 명부전 존상의 구성은 중앙에 본존인 지장보살상과 협시의 도명존자상과 무독귀왕상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시왕상과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다. 향우측으로 1, 3, 5, 7, 9의 시왕상과 귀왕 2위, 판관상 1위, 사자상 1위, 장군상 1위가 있으며, 향좌측에는 2, 4, 6, 8, 10 시왕상과 귀왕 1위, 판관상1위, 사자상 1위, 장군상 1위가 배치되어 있다.

○ 중앙의 지장보살삼존상은 지장보살은 좌상이며, 양 협시는 입상인 형태인데, 지장보살상은 본존불임을 나타내기 위해 도명존자와 무독귀왕보다 큰 규모로 조성되었다. 지장보살은 손에 지물은 없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의 수인을 짓고 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올리고 왼손은 무릎위에 올려져 있다. 지장보살상은 방형의 긴 사각형의 얼굴로 이마가 넓고 이목구비가 가운데로 모인 형태로 오밀조밀한 인상이다. 눈은 가로로 길며, 코는 콧등에서 솟은 듯하고 짧은 편이다. 입은 다문 모습으로 입 양 끝을 눌러 표현하였고, 청년형의 맑은 얼굴이다. 신체는 상체가 길고, 무릎이 낮아 안정적인 모습이다. 착의법은 이중으로 대의를 걸쳤는데 군의 상단은 가슴 위까지 올라왔으며 일직선이다. 오른쪽 소매를 가린 부견의가 보통 배 앞에서 끼어지는데, 이 상은 배 앞에서 넓게 퍼진 상태로 왼쪽 팔로 넘겨진 것이 특징적이다. 하체를 덮은 옷주름은 둥

근 무릎을 감싸고 왼쪽 발을 드러내고 있으며, 양 발목으로 모아지는 옷주름은 다리 사이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지며, 왼쪽 발아래 표현된 옷의 끝자락은 나뭇잎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 무독귀왕은 시왕상과 같은 관모를 쓰고 합을 양손으로 받쳐 들고 있으며, 도명존자는 장삼 위에 가사 장식을 한 가사를 걸치고 설법인을 짓고 있다. 도명존자, 무독귀왕의 얼굴은 젊은 비구형으로 매끄럽고 귀여운 얼굴이다.

○ 시왕상은 무독귀왕과 같은 관모를 쓰고 금관조복의 복식을 하고 있으며 의자에 앉아 있는 형태이다. 손에는 책이나 홀을 들고 있다. 귀왕은 시왕과 같은 모자를 쓰고 있으며, 판관상은 복두를 쓰고 있고, 사자상은 용형 당과 두루마리를 각각 들고 있다. 입구에는 장군상 2위가 시립하여 있다. 예전에는 권속으로 동자상 10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도난당한 상태이다.

2. 양식 특징

○ 백련사 명부전 존상은 복장에 조성기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제3 송제대왕 복장에서 1852년 개금할 당시 원문이 발견되었다. 원문 서두에는 “佛弟子海東朝鮮國京畿道漢陽三角山白蓮寺冥府殿新建丹與地藏改金並以補處兩尊像改彩後臸佛幀十大冥王諸位眷屬補缺重修改彩各具幀新造”이라하여, 명부전을 새로 건립하고 꾸미면서, 후불탱을 조성하고 명부전 존상을 개채 보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현재 명부전에 봉안된 존상들은 원래 이곳에서 조성한 상이 아니라 명부전을 건립하면서 이운해 온 상으로, 불화를 조성하는 불사와 함께 이 존상들을 개보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조선후기 특히 왕실 관련 사찰에서 폐사된 사찰의 불상을 이운해 온 사례들은 종종 있다. 서울 화계사의 경우에는 배천 강서사에서 시왕상을 옮겨온 뒤 명부전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다. 1858년 용문사 명부전 존상을 옮겨와서 봉원사로 옮겨 온 사례도 있으며, 1886년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으로 이운해 온 운복사 나한상도 마찬가지 경우로, 19세기에는 왕실과 관련 사찰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한 편이다. 이처럼 백련사 명부전 존상은 본래 조성된 곳은 적혀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1852년에 이운해 온 상으로, 당시 개채와 보수가 이루어진 보인다.

○ 이 존상의 조성시기는 17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백련사 명부전 지장보살상의 신체비례나 의습선의 표현, 얼굴의 표현 등은 전반적으로 수연파(守衍派)의 양식이 엿보인다. 수연은 17세기 전반의 대표적 화원으로 수연파를 이끈 조각승이다. 1639년 <수덕사 삼불좌상>을 제작할 때까지 서천, 강화, 군산 등 서해안 지역과 전라도 나주, 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제자로는 영철과 의엄, 밀영 등을 들 수 있다. 수연파의 명부전 존상의 조성을 살펴보면, 수연작으로는 1636년 강화 전등사 명부존상과 제자인 영철작으로는 1649년 서울 화계사 존상이 전하고 있다.

	○ 백련사 무독귀왕상의 합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모습과 도명존자의 장삼 위에 장식이 있는 가사를 걸친 형태, 그리고 도명존자, 무독귀왕의 젊은 비구형의 모습은 서울 화계사 명부전 존상과 유사하다. 백련사 도명존자상은 석장을 쥐고 있지 않지만 본래는 석장을 쥐고 있는 화계사의 도명존자상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백련사 지장보살상의 가슴 앞에서 넓게 펴진 옷주름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표현과 왼쪽 무릎에 접혀진 옷주름과 하반신 대의 자락의 형태는 1639년 <수덕사 삼불좌상>과 흡사하다. 하반신의 나뭇잎 모양의 대의 자락의 표현에서 제자인 영철의 작풍이 엿보이는데, 백련사 상에서는 훨씬 부드럽게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덕사 삼불좌상의 양식에서 수연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작풍도 두드러지는데, 백련사 명부전 조상도 수연과 제자 간의 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후기 명부전 존상은 1610년 남원 선원사 지장삼존과 시왕상의 조성을 시작으로 17세기에 왕성하게 제작되었는데, 제작시기가 있는 명부전 존상들을 통해 17세기 전반과 후반에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645년 김천 쌍계사 시왕상에서 서수 형태가 처음 나타나며, 이후의 상들에서 서수를 조성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 ○ 또한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시왕상의 관모는 주로 오량관의 형태인 것에 비해 17세기 후반에는 장식적 모티프가 강조된 형태로 변형된다. 이와 비교하여 보면, 백련사 명부전의 시왕상의 관모가 주로 오량관 형태이며, 시왕상의 경우 서수가 표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성 시기를 17세기 전반기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백련사 지장보살상의 상체가 긴 신체비례와 섬세하고 긴 손가락의 표현, 오른손을 어깨까지 올리는 형태 등은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불상의 양식을 공유하고 있어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참고] 백련사 명부전 목조시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규격 ■ 지장보살좌상본존 : 높이 110, 무릎폭 77 ■ 무독귀왕입상우 (우) : 높이 136, 무릎폭 36 ■ 도명존자입상좌 (좌) : 높이 128, 무릎폭 36 ■ 제1진광대왕의좌상 (좌1) : 높이 138, 무릎폭 41 ■ 제2초강대왕의좌상 (우1) : 높이 144, 무릎폭 46.5 ■ 제3송제대왕의좌상 (좌2) : 높이 126, 무릎폭 46 ■ 제4오관대왕의좌상 (우2) : 높이 142, 무릎폭 43 ■ 제5염라대왕의좌상 (좌3) : 높이 134, 무릎폭 49.5 ■ 제6변성대왕의좌상 (우3) : 높이 134, 무릎폭 38.5 ■ 제7태산대왕의좌상 (좌4) : 높이 135, 무릎폭 42.5 ■ 제8평등대왕의좌상 (우4) : 높이 130, 무릎폭 46.3 ■ 제9도시대왕의좌상 (좌5) : 높이 140.5, 무릎폭 38 ■ 제10오도전륜대왕의좌상 (우5) : 높이 153, 무릎폭 41.5
조 사 결 과	**3. 지정 여부 및 사유 :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가** ○ 백련사 명부전 존상들은 조성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852년 개보수 기록이 남아있고 존상들의 이운 내력 등을 알 수 있으며,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조각승 계열인 수연파 상들과 유사한 양식을 공유하고 있어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서울시 소재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 명부전 존상들 가운데 제작 시기가 이른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또한 존상의 규모가 크고, 상의 보존상태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붙임	문화유산 이미지

백련사 명부전 존상 현황

지장삼존상

1,3,5,7,9 시왕상

2,4,6,8,10 시왕상

명부전 권속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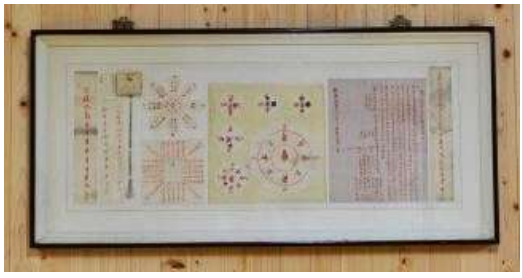

제3송제대왕 복장유물

제3송제대왕 복장원문

백련사 명부전 지장보살상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39년, 수연,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영철, 1649년

〈부안 개암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영철 추정, 1656년	〈배천 강서사목조석가여래좌상〉 영철 추정, 1649년

【 시대일보(時代日報) 】

검 토 종 별	서울시 등록문화유산	문 화 유 산 명	시대일보(時代日報)
수 량	1건 10점	규 격 (㎝)	세로 54.5, 가로 40.5
형식·형태 (형 식)	종이신문	세 부 유 형	활자본
재 료	종이	소 유 자 (관 리 자)	송파구청 (송파책박물관)
시 대	20세기 초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개요

○ 『시대일보』(時代日報)는 1924년 3월 31일 창간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3대 민간 일간지 중 하나였다. 사장은 최남선이었고, 법적인 편집 발행인이며 편집 국장은 진학문이었다. 이 신문은 다른 일간지와 달리 1면을 정치면 대신 사회면으로 했던 특색 있는 신문이었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2년 반 만에 1926년 7월 31일자를 마지막으로 종간되었다.

○ 『시대일보』의 발간은 3.1운동 후 문화정치로 전환되면서, 『조선일보』(1920.1.6.),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 3개의 민간 일간지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어용지 『매일신보』와 4개의 일간지가 되었다. 『시대일보』의 창간 배경은 당시 친일 일간지였던 『시사신문』이 1921년 2월 사장 민원식이 일본에서 피살되면서 1921년 2월 폐간되고, 1922년 월간지 『시사평론』으로 이름을 바꾸어 발간하면서 일간지는 2개로 줄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육당 최남선과 진학문에게 주간 시사 신문 '『동명』(東明)'을 일간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 1922년 9월 3일 창간한 타블로이드판 20페이지의 주간잡지 『동명』의 사장은 최남선, 편집 겸 발행인은 진학문이었다. 『동명』은 최초의 본격적인 시사 주간 신문으로서 '시사 주보 동명'이라는 표지의 제목 아래에 "조선 민족아 일치합시다. 민족적 자조에 일치합시다"를 구호로 내걸었다. 창간호부터 권두에 '조선민시론(朝鮮民是論)'을 장기 연재하기 시작하여 조선 민족의 당면과제가 '민족정신'을 찾고, 대동 일치단결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민족지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국학 관련 논문 연재, 창작 문예 작품, 외국 작품 소개 등 이전과는 다른 격조 높은 종합 시사주간지였다. 그러나 새로운 일간지 『시대일보』를 창간하고자 1923년 6월 3일자를 마지막으로 자진 정간였다.

○ 창간 당시 『시대일보』는 8면 2만 부를 발행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위협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안재홍(安在鴻, 1891~1965) 정치부장 및 신태악(辛泰嶽, 1902~1980), 이시목(李時穆) 기자, 염상섭(廉想燮) 사회부장 및 현진건(玄鎭健, 1900~1943), 나빈(羅彬), 김달진(金達鎭, 1907~1989) 기자 등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였다.

○ 창간 목적은 민족의 성장과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고난을 함께 하는 민족의 단합과 협

동을 사명으로 삼았다.

○ 그러나 경영난으로 보천교(普天敎)로부터 선급금 3만 원을 받았는데, 보천교가 1924년 7월 9일 경영권을 인수하고 편집 겸 발행인을 이성영(李成英)으로 바꾸었다. 사원들의 반대로 7월 10일 자진 휴간을 신청하였고, 7월 15일 조선교육협회관에서 '『시대일보』 사건 토의회'를 개최하여 보천교의 처사를 성토하였다. 그러자 보천교는 『대동신문』 사장 박일근(朴逸根)에게 발행권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여론에 밀려 포기하고 9월 3일 자로 속간호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1924년 12월 28일 『시대일보』 이사회가 해체되고, 사원들로 조직된 사원회가 경영권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다.

○ 1925년 4월 사장 홍명희(洪命憙, 1888~?), 편집국장 한기악(韓基岳, 1898~1941) 등으로 하는 합자회사를 조직하고, 그해 12월 다시 발행인으로 조준호(趙俊鎬), 편집인 한기악, 인쇄인 홍성희(洪性喜) 등으로 개편하였다. 그런데도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해 1926년 7월 31일 자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되면서 일간지 발행 허가도 소실되고 말았다. 무한책임 사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회사는 문을 닫게 되어 『시대일보』는 폐간되기에 이르렀다.

○ 1926년 9월 18일 이상협(李相協, 1893~1957)이 『시대일보』의 판권을 인수한 후 1926년 11월 15일 '『중외일보』(中外日報)'라는 이름으로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이후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로 제호와 판권이 바뀌면서 발행을 계속하다가 1936년의 일장기 말소 사건 이후 정간되었다.

2. 원형 유지 정도

○ 송파책박물관(송파구청)의 『시대일보』는 1924년 3월 31일 창간호부터 부터 1924년 4월 9일(음력) 10호까지이다. 창간호는 8면, 2호와 3호는 6면, 4호부터 4면으로 발간하였다.

○ 창간호는 1면에(편의상 '其一'로 표기) '시대일보, 창간호' 아래에 '시대일보의 사명'이라는 전면 기사로 창간 목적 등을 게재하였다. 2면에는 방정환의 '녀자 이상으로 진보하지 못한다', '이도영 화백의 시대일보 창간 축하 그림' 3면에는 미국 만화 엉석바지 등을 실었다. 4면은 '근하창간'이라는 제호 아래에 이발기구 전문업체 요시가와가나모노(吉川金物) 지점의 전면 광고를 실었다.

○ 이어 '其二' 1면에는 '오늘일 래일일', 2면에는 '我報의 創刊에 對하야' 등을 싣고, '其三' 1면에는 '祝朝鮮的 再生', '丁大有의 창간 축하 글씨' 2면에는 '경제적 궁박에 관하야', '오세창의 창간 축하 글씨' 등을 실었다. 1면을 제외한 6개 면 하단에는 '근하창간', '축 창간'이라는 축하 광고를 실었다.

○ 송파책박물관의 『시대일보』는 창간호부터 4월 9일자 제10호까지 소장하고 있으며,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창간호는 其一 ~ 其三이 각기 4면씩이라면 12면이 된다.

○ 其一은 1, 2, 3, 4면의 4개 면, 其二는 1, 2면의 2개면, 其三은 1, 2면의 2개 면이 남아 있다. 제2호는 1, 2, 3, 8면의 4면이 남아 있다. 3호는 1, 2, 3, 6면의 4면이 있다. 제4호 이후 제10호까지는 4면씩 온전하게 남아 있다. 이로 보아 창간호는 12면, 제2호는 8면, 제3호는 6면, 제4호 이하는 4면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서울시 종로도서관 소장본 창간호는 '其一'의 2면(이도영 그림), 3면(엉석바

	지), ‘其二’의 1면, ‘其三’ 2면(오세창 글씨), 1호이긴 하나 기 1~3중 어딘지 모르는 4면(근하창간 전면)만 있다. 5장만 있다. 2호는 3~8면 6장, 3호는 1~6면 6장, 4호부터는 4면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및 사유; 서울시 등록문화유산 가** ○ 『시대일보』는 첫째, 창간호부터 국한문 혼용 대형판으로 발간하였고, 창간호는 12면, 2호는 8면, 3호는 6면, 4호부터는 4면으로 발간하였다. 1면 12단, 1단 124행, 1행 14자로 8포인트 활자를 사용하였다. ○ 둘째, 다른 신문과 달리 1면이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면을 배치하고, 1면 머리기사로 사회비평 코너인 ‘오늘일 래일일’을 연재하여 민족신문의 위상을 강화하려 했다. 1925년 4월 이후 1면이 국제면으로 바뀌면서 머리기사로 사설을 배치하였고, 2면은 사회면, 3면은 지방 기사와 연재소설 등, 4면은 경제면으로 구성을 변경하였다. ○ 셋째, 논설에 필자의 이름을 넣어 다른 신문과 차별화되었다. ○ 넷째, ‘엉석바지’(작가; George McManus)라는 미국 만화와 특약으로 3면에 가로 세로 6단 6컷짜리 대형만화를 일간지 최초로 1개월간 연재하였다. 또한 1924년 12월 27일 제198호부터 1925년 1월 12일까지 지방 만화를 연재하기도 하였다. ○ 다섯째, 현진건(玄鎭健, 1900~1943)의 단편소설 ‘발’을 1924년 2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연재하고, 이어서 염상섭의 만세전(萬歲前)을 1924년 4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연재하여 인기가 있었는데, 이는 국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 여섯째, 『시대일보』의 창간 목적은 민족의 성장과 무궁한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고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민족의 단합과 협동을 사명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과 김원봉의 의열단, 통의부, 대한청년단 등 국내외 독립단체와 함께 무장 독립운동으로서 만주와 국내에서 일어난 일본 군경과의 교전, 친일파 사살 등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을 보도하였다. 1926년 6월 10일과 11일에는 순종 인산일의 상황과 6.10만세 운동을 보도하였고, 사설에서 항일 민족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분히 민족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보도 성향에 따라 1924년 49건, 1925년 38건, 1926년 26건 등 발행 기간 중 103건 정도의 기사가 보도되지 못하였다. ○ 일곱째, 『시대일보』는 1925년 대홍수 때 다른 신문들과 함께 수재민 구호 운동을 하고, 학술강연회, 전국 농구선수권대회, 전국 자전거대회, 전 조선 축구전 등의 운동경기를 주최하기도 하는 등 민족지로서 구실을 하였다. ○ 언론의 역사에서 볼 때 『시대일보』의 가치, 역사적 가치, 희귀성을 인정하고, 발행된 신문의 55% 이상이어서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여 2022년 10월 13일 서울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그러나, 종로도서관 본은 창간호부터 9호까지는 하단 부분이 대부분 1/3 이상 탈락되고, 찢어짐을 방지하고자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흔적이 많고, 이후 호수도 같은 현상이 많은 반면,

	○ 송파책박물관 본은 창간호부터 10호까지만 있고, 9호와 10호의 가장자리 일부가 찢어짐과 오염이 있지만,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 따라서 종로도서관 본에는 없는 창간호의 其一의 완형 보완, 탈락된 부분의 완형 보완 등 기 지정된 서울시 등록문화유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송파책박물관 본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위원들은 의견을 모았다.

참고 자료 2	문화유산 이미지

시대일보 창간호 ‘시대일보의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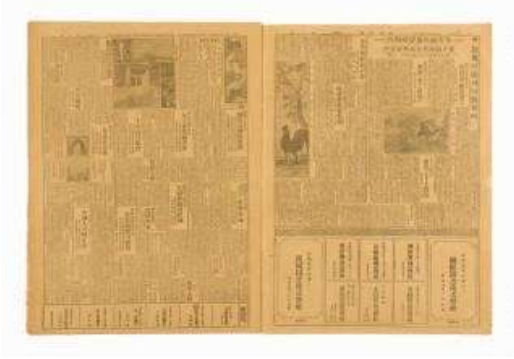

1면 머리기사 사회비평 코너 ‘오늘일 래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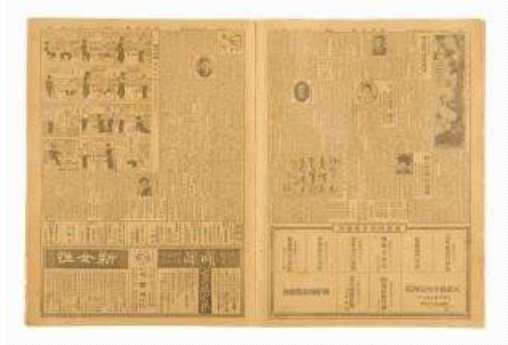

미국 만화 ‘엉석바지’ (작가; George McManus)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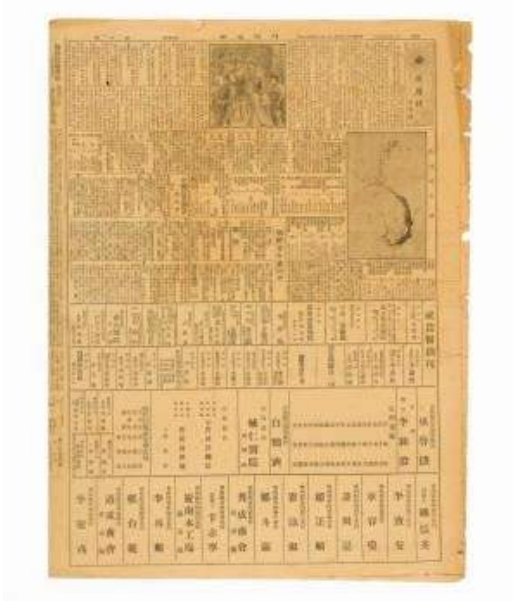

시대일보 10호 일부 페이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32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김○구 등 322명
4. 공고기간 : 2025. 8. 14. ~ 2025. 8. 28.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8. 14. ~ 2025. 8. 28.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84모18**	김*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9 18:21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2	36부04**	최*실	충청북도 괴산군	2025-07-09 19:2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	141오95**	윤*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0 18: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	175가89**	조*성	경기도 성남시	2025-07-10 18: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	92너68**	주*회*정*공*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10 09:31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6	인천83바42**	양*준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09 09:55	경문고교교차로~이수역사거리	50,000
7	31어36**	유*곤	부산광역시 서구	2025-07-10 09:27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8	09누16**	김*희	경기도 여주시	2025-07-10 19: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	11허84**	최*경	경기도 성남시	2025-05-30 14:21	을지로2가교차로~퇴계로2가교차로	50,000
10	223허79**	황*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6-30 18: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	193호33**	(*)*이*가*코*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3 11:1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2	111로43**	주*회*두*감*평*법*데*노*리*점	경기도 성남시	2025-06-28 12:1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3	182머58**	주*회*버*파*투*	부산광역시 남구	2025-06-27 17: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4	191호16**	주*회*폴*켐	경기도 화성시	2025-07-06 07:5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5	서울320아25**	이*업	경기도 김포시	2025-07-07 07:16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16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01 12:37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교차로	50,000
17	116오38**	(*)*스*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02 07:47	매봉역~양재전화국교차로	50,000
18	335라36**	주*회*걸*컴*니	경기도 수원시	2025-07-04 18:04	신사역~논현역	50,000
19	서울31바23**	최*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7 19: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	90도57**	장*원	경기도 파주시	2025-07-07 11:4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1	서울80배93**	김*호	대구광역시 서구	2025-07-02 13: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여의도동)	50,000
22	164버70**	가*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07 18: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	378루66**	지*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8 09: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	서울31바47**	이*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07 14:5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25	16더88**	A*A*I*A*A*A*I*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08 21:1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	220호80**	(*)*뉴*니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7-03 17: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7	222호38**	농*회*법*주*회*성*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5-07-04 19:15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8	154호42**	이*희	경기도 파주시	2025-06-16 18:56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50,000
29	368루17**	동*개*주*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8 11:4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0	21다94**	주*회*대*산*	경상북도 포항시	2025-07-07 17:0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1	32다27**	K*M*U*I*A*E*S*N*R*V*C*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07 08: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	03더23**	고*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5-07-07 18:3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3	24라22**	이*덕	경기도 수원시	2025-07-04 08:23	서울 서초구 잠원로 94 (잠원동, 한신빌딩)	50,000
34	서울38아25**	이*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04 14:37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20 (신사동)	50,000
35	112무95**	김*주	경기도 동두천시	2025-07-08 08:5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6	55나81**	S*N*M*N*Z*I	경기도 군포시	2025-07-08 06:4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37	46어94**	L*J*N*Z*U	경기도 고양시	2025-07-08 18:5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8	서울광진하85**	김*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6-13 14:33	장한평역~군자역	40,000
39	187모49**	홍*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08 20:0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0	153하89**	주*회*렌*카*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5-07-08 17:52	도림교~거리공원입구교차로	50,000
41	서울38아37**	이*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08 18:42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42	180보62**	이*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9 20: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3	27다74**	주*회*코*스*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9 17:3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4	171머25**	이*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0 09:5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5	90버89**	K*E*A*P*V*L*N*O*O*I*H	경기도 안산시	2025-07-10 13:4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6	서울중파61**	김*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08 17:24	종로5가교차로~동대문역	40,000
47	314너84**	홍*식	경기도 성남시	2025-07-09 18: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8	01거70**	이*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09 20: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9	380우45**	방*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9 09: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50	65마82**	이*주	경기도 안산시	2025-07-09 19:3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1	서울32바92**	김*춘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9 18:4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2	351러68**	한*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09 18:30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53	225하11**	이*선	경기도 이천시	2025-06-19 13: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4	40버07**	윤*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9 18:1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5	26구73**	이*훈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09 20:1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6	서울31자27**	권*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09 16:20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50,000
57	서울32사72**	조*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9 19:30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58	35어82**	박*범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10 07:35	시흥IC~디지털단지입구교차로	50,000
59	27수07**	방*섭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7 08:32	화랑대사거리~육사야구장	50,000
60	707더52**	P*N*V*E*I*V*T*L*V*C*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10 16:4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60,000
61	124조76**	P*A*C*A*G*H*N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10 14: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2	143누17**	김*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10 18: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3	139서59**	이*백	경기도 시흥시	2025-07-07 16:4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64	166무31**	유*회*비*라*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07 08:0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65	서울31바33**	진*두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0 17:1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66	166거24**	김*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0 17:1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67	258러54**	(*)*이*스*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0 15:4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68	179나87**	방*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10 18:47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69	경기06소74**	함*수	경기도 김포시	2025-07-10 09:3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60,000
70	80주96**	조*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09 09: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71	133하66**	권*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1 17:14	롯데백화점본점앞	50,000
72	148호88**	김*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3 17:2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73	07로61**	주*회*유*오*라*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15: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74	152누26**	오*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7 09: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75	40무90**	김*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8 09: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6	50다98**	이*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08 20: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7	36도78**	신*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08 09: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8	163거90**	(*)*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3 18: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9	03허57**	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6-25 19:02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8 (여의도동)	50,000
80	경기87바85**	김*덕	경기도 안산시	2025-07-07 08:3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81	서울31자59**	황*술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08 09:0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82	222구95**	주*회*하*로*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6-30 18:17	서대문역~독립문역사거리	50,000
83	190호36**	문*예*교*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02 08:4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84	152루99**	이*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04 17: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5	221하97**	천*희	경기도 화성시	2025-07-02 13:0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6	197하38**	(*)*이*스*퍼*이*	경기도 성남시	2025-07-05 11:0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87	103수80**	김*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3 18:38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50,000
88	111로43**	주*회*두*감*평*법*데*노*리*점	경기도 성남시	2025-06-28 12: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9	223하99**	조*철	경기도 성남시	2025-07-04 17:2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90	220호53**	강*석	경기도 시흥시	2025-07-04 17: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1	179너93**	주*회*흰*래*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0 14:2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2	58다76**	(*)*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5-07-10 14:2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93	07라03**	주*정	경기도 안산시	2025-07-10 17: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4	18머92**	박*열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5-07-10 17:1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95	42마11**	진*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10 08:5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6	299소97**	주*회*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5-07-08 11:1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7	11마01**	금*디*털*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08 17:3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98	14가99**	윤*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7-08 20: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9	91조07**	김*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08 09:4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0	인천30바23**	유*영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09 07:4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1	197하49**	주*회*오*기*공*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6-26 07:5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02	83모19**	권*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02 10:0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9-2 (여의도동)	50,000
103	서울32자15**	주*수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02 13:39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50,000
104	서울31사71**	김*욱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01 07:5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5	서울31아36**	이*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6-30 09:00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	50,000
106	86우19**	안*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30 08:39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107	64루72**	함*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6-30 08:40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108	293저92**	한*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6-30 08:33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109	서울14다74**	홍*용	경기도 구리시	2025-06-30 08:42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60,000
110	서울31사15**	이*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3 09:57	대치역~도곡역	50,000
111	370로83**	김*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08 09:21	천호대교~광나루역	50,000
112	37구43**	김*석	경기도 고양시	2025-07-04 07:31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50,000
113	176가33**	김*우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06 11:37	한남ic~잠원ic	50,000
114	38나03**	S*T*I*U	경기도 김포시	2025-07-09 08:38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15	100머96**	이*정	경기도 수원시	2025-07-04 08:28	복정역~장지역	50,000
116	81부55**	이*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0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7	222허73**	주*회*윈*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2 07:20	복정역~장지역	50,000
118	62저33**	성*무*주*회*	경기도 평택시	2025-07-07 14: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9	41도86**	조*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4 20:25	국제금융로8길	50,000
120	85모76**	박*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7 16: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0 (신사동)	50,000
121	25버55**	연*만	경기도 하남시	2025-07-08 13:50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50,000
122	50도34**	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10 22:1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23	05무10**	최*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0 20: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24	83주81**	박*희	경기도 고양시	2025-07-03 08:43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50,000
125	101허43**	프*렌*카*식*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0 08:3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26	25부41**	장*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7-02 08:21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27	서울31아22**	우*성	경기도 김포시	2025-07-07 08:2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8	서울87자36**	정*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07 17:3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29	15주83**	한*희	경기도 양주시	2025-07-07 20:0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30	78구25**	강*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07 10:06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31	37노23**	강*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8 17:5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2	서울31아61**	김*호	경기도 하남시	2025-07-03 12:59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50,000
133	서울32사45**	이*호	경기도 김포시	2025-07-08 19:1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34	127구15**	강*호	경기도 부천시	2025-07-07 08:28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35	46부62**	김*중	경기도 하남시	2025-07-09 18:1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36	142호23**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09 09: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37	254조10**	주*회*나*경*컨*팅	경상북도 구미시	2025-07-09 12:36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138	379조59**	김*선	경기도 김포시	2025-07-09 17:4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39	88러93**	임*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9 08: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40	173주11**	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5-07-08 15:2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41	182보46**	디*이*앤*주*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03 15:26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142	04우37**	주*회*닷*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4 08:26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43	서울31자30**	서*석	경기도 광주시	2025-07-09 18: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4	서울32자20**	윤*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7-09 18:0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45	77러21**	윤*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0 12:22	천호대교	60,000
146	18가71**	강*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08 09: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50,000
147	161다33**	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10 19: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48	서울32자20**	김*식	경기도 광주시	2025-07-10 13:23	강남소방서앞	50,000
149	384도79**	박*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0 09:00	월계1교~하계5-6단지 교차로	50,000
150	21마48**	김*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0 09:13	상계백병원교차로~중계역교차로	50,000
151	168부84**	에*치*디*설*식*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6-10 1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2	229하71**	김*영	부산광역시 서구	2025-06-11 18:5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53	177호56**	최*철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24 20: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4	111로43**	주*회*두*감*평*법*테*노*리*점	경기도 성남시	2025-06-28 12:1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55	경기14모68**	이*용	경기도 용인시	2025-07-07 08: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156	21머43**	최*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7 18:5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7	811주63**	주*회*더*유*스	경기도 광주시	2025-07-07 19: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8	14노75**	신*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7-07 17:18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59	인천30바20**	김*익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02 15:19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50,000
160	56머79**	김*일	경기도 양주시	2025-07-08 07:1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61	25너04**	(*)*우*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8 15: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50,000
162	47루54**	최*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09 09:1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63	81고95**	황*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02 08:26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64	86가52**	명*건*(*)	경기도 하남시	2025-07-09 09:0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65	14다95**	임*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09 13:5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6	160우54**	차*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10 17: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67	인천30바48**	김*현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0 09:0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68	240거31**	주*회*유*이*디*	경기도 광주시	2025-07-10 09:1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69	168루35**	주*회*제*엔*코*레*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6-20 16:46	정동사거리~서대문역	50,000
170	서울32아27**	임*순	경기도 하남시	2025-07-07 08:47	성내교	50,000
171	174호11**	(*)*에*시*퍼*	경기도 안양시	2025-06-30 18: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72	197호53**	주*회*동*관*람*	충청북도 청주시	2025-06-30 20:0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73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01 17: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174	서울38아35**	김*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5 20:4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75	서울32아51**	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7-03 14:3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76	84무55**	주*회*에*선*트	경기도 김포시	2025-07-07 14:17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50,000
177	32다27**	K*M*U*I*A*E*S*N*R*V*C*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07 08:4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78	서울35아16**	최*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8 09:16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79	119나79**	김*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08 09:16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80	서울32자47**	최*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08 08:38	강동구청역~풍납사거리	50,000
181	177호21**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07 19:01	매봉터널교차로~도곡역	50,000
182	83서65**	이*	경기도 김포시	2025-07-08 06:28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83	26루83**	Z*A*G*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8 17:5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4	37머91**	정*관	경기도 양주시	2025-07-08 17:5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85	95주98**	(*)*아*업*경	경기도 구리시	2025-07-08 14:58	은천삼거리~봉천고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6	220호99**	김*실	경기도 고양시	2025-07-02 11:2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7	62저72**	유*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4 18:58	흑석역~한강대교남단교차로	50,000
188	106라94**	주*회*교*	경기도 수원시	2025-07-09 08:12	고촌IC~개화교	50,000
189	24로50**	김*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8 17:54	길음교교차로~성신여대입구역	50,000
190	서울강남너37**	유*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6-14 14:28	논현역~신사역	40,000
191	383두54**	추*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9 09: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2	819모26**	고*연	경기도 화성시	2025-07-09 10:0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93	233무54**	장*란	경기도 이천시	2025-07-09 19:56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94	156노76**	주*회*에*지*퍼*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0 11:2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95	서울06하80**	장*천	경기도 시흥시	2025-07-10 07:52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60,000
196	165수58**	Y*N*Z*X*A*	경기도 파주시	2025-07-10 19:5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97	223누59**	L*U*O*G*U*	경기도 안양시	2025-07-08 09:05	온수골사거리~마들역	50,000
198	166저77**	이*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6-19 09:2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99	180허33**	주*회*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3 1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0	191호16**	주*회*폴*켐	경기도 화성시	2025-07-06 07: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1	229하22**	류*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4 19:1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02	167수49**	양*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2 08:44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203	85어04**	임*자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07 07: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04	40마68**	W*H*N*L*A*	충청남도 서산시	2025-07-07 17:0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05	43오05**	장*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07 09:1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06	123라54**	공*주	경기도 안양시	2025-07-07 09:3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07	846구60**	주*회*푸*앤*쿨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7 07:5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08	61보93**	김*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7-07 08:3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09	32다27**	K*M*U*I*A*E*S*N*R*V*C*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07 08:4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10	213버14**	주*회*헤*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8 08: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1	서울31자50**	원*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07 15:37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212	서울31자51**	신*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7 15:38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3	37라08**	이*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08 14: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14	68어96**	김*자	경기도 화성시	2025-07-08 12: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15	45고49**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7-08 07:23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216	46어58**	(*)*이*드*	경기도 화성시	2025-07-07 09:13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217	09버42**	강*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08 09:27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218	192더58**	(*)*진*터*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7 09:5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여의도동)	50,000
219	서울36바14**	박*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08 17:3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20	86우24**	조*연	경기도 파주시	2025-07-08 07:14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221	67너06**	주*회*극*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8 18:58	우장초등학교~화곡역	50,000
222	60수65**	이*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7 1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50,000
223	810저53**	최*성	경기도 안산시	2025-07-09 12:0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24	경기14모88**	김*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9 11: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60,000
225	175저54**	이*훈	경기도 시흥시	2025-07-09 17:1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26	경기81바58**	조*희	경기도 광주시	2025-07-09 18:2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27	서울32아16**	서*복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9 08:3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28	67보43**	문*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2 09:56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29	서울32자52**	정*열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9 09:1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30	174루59**	최*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9 09:1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31	69두27**	박*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7-09 18: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32	48소98**	주*회*다*	충청남도 천안시	2025-07-09 17:2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33	801더10**	이*양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9 17:28	염창역~등촌역	50,000
234	175호12**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6-09 08:03	영등포시장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235	07라03**	주*정	경기도 안산시	2025-07-10 13:1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6	68나41**	박*홍	대구광역시 서구	2025-07-10 12:3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37	30수15**	장*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10 18: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8	86더37**	김*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0 14:55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39	378로51**	강*연	경기도 김포시	2025-07-10 08:2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0	101허43**	프*렌*카*식*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0 08:3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41	170루43**	주*회*위*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6-30 14:3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42	서울32자24**	강*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09 19:29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50,000
243	333우19**	유*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9 18:49	대치역~도곡역	50,000
244	170루99**	조*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07 09:1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245	73조31**	나*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09 18:01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올림픽회관교차로	60,000
246	289다57**	L*T*ㅣ*ㅣ*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09 22:13	기상청입구교차로~대림삼거리	50,000
247	서울중차73**	이*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1 17:53	군자교~군자역	40,000
248	05다38**	신*구	경기도 파주시	2025-07-10 08:59	삼양입구사거리~미아역	50,000
249	13조18**	박*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8 07:57	중계근린공원교차로~중계역	50,000
250	299주17**	임*래	충청남도 부여군	2025-07-09 13: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8	50,000
251	213버79**	김*기	경기도 파주시	2025-07-07 18:4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52	58무03**	아*리*라*선*주*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19: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53	146주83**	김*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7 09:0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54	165허68**	임*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6-30 20: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55	154호44**	김*식	경기도 파주시	2025-06-30 11: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56	143소50**	조*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07 08: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57	100버28**	이*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7 08:5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58	167너94**	남*성	경기도 안산시	2025-07-02 13:40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50,000
259	56머79**	김*일	경기도 양주시	2025-07-08 07: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0	97부08**	박*숙	세종특별자치시	2025-07-09 14:35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61	서울89자34**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09 08:1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62	24버05**	이*자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7 11: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63	252소24**	(*)*제*비*	경기도 김포시	2025-07-07 20:1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64	68도16**	(*)*민*축*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4 19: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265	서울32자51**	이*익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07 10:0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50,000
266	803수35**	강*연	경기도 고양시	2025-07-09 09: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7	108러77**	L*G*A*G	경기도 광명시	2025-07-09 08:5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68	경기87바85**	정*환	경기도 고양시	2025-07-02 07:08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269	703머20**	주*희*더*관*	경기도 부천시	2025-07-09 15:4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60,000
270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18:25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271	804주86**	정*진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07 11:05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272	61가21**	유*윤	경기도 성남시	2025-07-09 17: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73	04마68**	남*경훈	경기도 동두천시	2025-07-09 19:2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74	101무38**	고*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6-18 16: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75	153부93**	H*N*O*I*I*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09 17:3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76	229하71**	김*영	부산광역시 서구	2025-06-11 18:5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77	경기81자59**	고*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7 09: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8	09고84**	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07 20: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79	서울32자52**	정*열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9 07:2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80	60수65**	이*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6 19:5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여의도동)	50,000
281	94무09**	김*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7 09: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2	37라98**	주*회*케*티*씨*지*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8 08:27	개화교	50,000
283	92수37**	신*준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09 18:0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84	32두62**	장*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8 19: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85	125호86**	한*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6-20 17: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6	132마50**	임*택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6-08 13:26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287	서울중랑파34**	장*창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07 11:05	여의대로2길	40,000
288	31가01**	고*경	경기도 김포시	2025-07-08 08:08	고촌IC~ 개화교	50,000
289	159노45**	이*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9 20:0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90	284부85**	유*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10 19: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1	서울31아35**	정*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07 09:5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92	89수05**	(*)*한*에*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09 13: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3	62저33**	성*무*주*회*	경기도 평택시	2025-07-07 14: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94	150두87**	주*회*에*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08 17:3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95	91라73**	안*섭	경기도 시흥시	2025-07-09 15:0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96	경기14모81**	여*현	경기도 양주시	2025-07-08 13:27	풍납사거리~강동구청역교차로	60,000
297	28거90**	안*근	경기도 김포시	2025-07-09 09:27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298	18다78**	박*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9 07:39	대치역~도곡역	50,000
299	216두23**	이*우	경기도 부천시	2025-07-10 08:06	개화교	50,000
300	24다54**	김*영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0 08:06	개화교	50,000
301	228주84**	주*회*엔*미*	경기도 광주시	2025-07-10 18:4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02	31나92**	김*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8 09: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03	223호71**	(*)*에*지*리*	서울특별시 중구	2025-06-26 08:3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6 (잠실동)	50,000
304	07라03**	주*정	경기도 안산시	2025-07-10 13:1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05	서울35아20**	강*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03 09:0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06	178고89**	송*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9 08:1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07	30우77**	(*)*원*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17:2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08	09누86**	송*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10 09: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9	378루66**	박*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7 20:2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10	64무39**	정*나	경기도 화성시	2025-07-10 12:4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11	393조83**	고*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6-25 13: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2	193호33**	(*)*이*가*코*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3 11: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3	153다26**	최*익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8 19:20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314	806나55**	박*섭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03 17:29	매봉터널교차로~도곡역	50,000
315	30고26**	김*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3 18:39	서울과학기술대입구교차로~하계역	50,000
316	55오26**	황*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0 19: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17	서울31바75**	김*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01 17:28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318	서울31바88**	박*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0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9	서울31아30**	주*조	경기도 부천시	2025-07-08 17:1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0	56머79**	김*일	경기도 양주시	2025-07-08 07:1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1	서울32아47**	박*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05 09:3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322	29가44**	더*쓰*드*인*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09 19: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 · 공고 명칭 :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고시 · 공고 근거법령 : 과태료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제1항 제2호)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법령 · 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공람 · 열람 · 공청회 · 토론회 · 설명회 등)가 규정되어 있거나 이미 거친 경우	□
B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1호)	□
C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2호**)	■
D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3호)	□
E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4호)	□

5. 작성자 : 안영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33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8. 14. ~ 2025. 8. 28.(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현금종류	적요	보관액	납부자	수납일자
보관금-급여압류금	급여압류금	270	선O곤	2000-11-18
보관금-기타보관금	2012년 하반기 공공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1,520	정O호	2015-12-10
보관금-기타보관금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 실업보험	9,100	허O숙	2015-7-16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 목적 · 보관 기간 · 이행 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 : 서울특별시 총무과 (☏02-2133-5617)

붙임 :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

반환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청구금액	금 원			
송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 내용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41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23호(2024.8.29.)로 결정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2. 공람기간 : 2025. 8.14. ~ 8.28.(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창조과(도시재창조정책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0층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정책팀
   - 이메일 주소 : seoyeoreum@seoul.go.kr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02-2133-4636,4633)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 변경내용

1) 정비가능구역

– 정비가능구역 추가

기 존	변 경
♦ **정비가능구역(11개)** – 도심(1개) · 영등포 – 광역중심(3개) ·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 지역중심(7개) ·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 **정비가능구역(14개)** – **도심(2개)** · **강남,** 영등포 – 광역중심**(5개)** · **잠실,**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창동·상계** – 지역중심(7개) ·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 정비구역 지정요건 변경

기 존	변 경
♦ **검토기준** –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 신설 〉 –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최소필지 : 150㎡ 미만 필지비율 40% 이상 ·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 신축건축물 비율 : 10년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이상 지역 제외 – 구역별 최소면적은 3,000㎡이상, 지구별 최소면적은 1,000㎡ 이상 권장. 단,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비구역 결정	♦ **검토기준** –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 **세부기준은 별도 수립** –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삭제)** · **(삭제)** ※ **(삭제)** – **구역(지구)별 최소면적은 2,000㎡ 이상**. 단,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비구역 결정

2) 용적률 계획

- 용적률 체계 변경

<table>
<tr><th>기 존</th><th>변 경</th></tr>
<tr><td>

◆ 일반상업
- 600% / 800% / 법적용적률 2배

◆ 준주거
- 300% / 400% / 법적용적률 2배

◆ 준공업
- 양평 10,12,13구역 용적률 체계
<table>
<tr><th>장기전세주택 미설치 시</th><th>장기전세주택 설치 시</th><th>비고</th></tr>
<tr><td>· 기준 230%
· 최대 230%+α</td><td>· 기준 230%
· 허용 280%
(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25%, 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한 완화용적률 25%)
· 최대 280%+α</td><td>-</td></tr>
</table>
- 신규 정비예정구역 운용방안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예정구역 전환('08.03.)</td><td>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예정구역 전환('10.03.)</td><td>우선 정비대상구역('10.03.)</td></tr>
<tr><td colspan="2">구역명</td><td>양평 10,12,13구역</td><td>양평14구역</td><td>문래동2가 2, 신도림동 293 성수동2가 301-27</td></tr>
<tr><td rowspan="2">용적률 체계</td><td>공동주택 부지</td><td>230%+α</td><td colspan="2">210% + 20% +α</td></tr>
<tr><td>산업 부지</td><td colspan="3">400%+α</td></tr>
</table>
- (신설)

</td><td>

◆ 일반상업(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600% / 880% / 법적용적률 2배

◆ 준주거(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300% / 440% / 법적용적률 2배

◆ 준공업
- (삭제)

- (삭제)

- 준공업지역 제도개선('24.11.)에 따라 운용
※ 준공업지역 운영기준 변경 시 그에 따름

</td></tr>
</table>

※ 공통사항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 또는 2000.7.1. 이전 용도지역이 결정되었거나 변경된 지역은 금번 변경된 용적률 체계 적용

- 2000.7.1.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변경

기 존	변 경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외)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외)
- 개방형녹지 확보 시: 최대 100% · 개방형녹지 20% 설치 시 : 정량 50% · 개방형녹지 20% 초과 설치 시 : 정률 / 보상계수 1 / 최대 인센티브 100%	**- 개방형녹지 확보 시: 최대 150%** · 개방형녹지 20% 설치 시 : 정량 50% · 개방형녹지 20% 초과 설치 시 : 정률 / 보상계수 1 / **최대 인센티브 150%**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복합개발(구역(지구)간 공동개발) : 정량 / 최대 인센티브 50%	**- 복합개발(구역(지구)간 공동개발) :** 정량 / **최대 인센티브 100%**
- 친환경(재활용 건축자재) : 정률 / 보상계수 0.4 / 최대 인센티브 20%	**- (삭제)**
- 생활SOC(도서관, 보육시설 등) : 정량 / 최대 인센티브 100% · 요건 :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 생활SOC(도서관, 보육시설 등) :** 정량 / 최대 인센티브 100% · 요건 :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 공익시설(건축물 내 공익시설) : 정률 / 보상계수 0.2 / 최대 인센티브 50%	**- (삭제)**
- 공익시설(실내 공개공지) : 정률 / 보상계수 0.2 / 최대 인센티브 50%	**- 공익시설(실내 공개공간) :** 정률 / 보상계수 0.2 / 최대 인센티브 50%

기 존	변 경
- 무장애도시조성(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정량 / 최대 인센티브 30% -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정률 / 보상계수 2 / 최대 인센티브 50% -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정률 / 보상계수 2 / 최대 인센티브 50%	- (삭제)* -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정률 / **보상계수 3 / 최대 인센티브 100%** -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정률 / 보상계수 2 / **최대 인센티브 100%**

* BF유도 별도 지침 운영

기 존	변 경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신설)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관련 법령에 의거 산후조리원 설치 시 : 정률 / 보상계수 0.4 / 최대 인센티브 200%* - 관련 법령에 의거 예식장 설치 시 : 정률 / 보상계수 0.4 / 최대 인센티브 200%* - 시니어주택 도입 시 : 도입 면적에 따라 최대 200%**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고령자 대상)' - 순환형 정비사업 추진 시 : 세입자 수용비율에 따라 최대 200%***

* 산후조리원, 예식장 설치는 공공 무상임대 조건이며 관련기관(부서) 요청 시 적용 가능

** 시니어주택 도입 면적에 따른 인센티브량(안)

도입면적(지상부 연면적)	20% 이상	50% 이상
인센티브	100%	200%

*** 정비사업 추진 시 임시장소(대체 영업장 또는 거처) 마련에 따른 인센티브량(안)

수용비율[1]	20% 이상	50% 이상
인센티브	최대 100%	최대 200%

※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적용 가능

[변경] 허용용적률 인센티브_서울도심 도심부

구 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계획 유도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지구별 개방형녹지 30%(3천㎡미만 소규모 20%) 초과 - 의무기준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 부여	2.0	최대 100%
		공동개발 시 녹지확보	지구간 건축협정(협의 등)에 따른 공동개발을 통해 도로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정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복합개발	구역(지구)간 공동개발	구역(지구)간 통합을 통해 대지면적 1만㎡이상 개발시	정량 부여	**100%**	**최대 1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추가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 사항 ½이상 초과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장수명 주택인증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정량 부여	20%	
	저출산 고령화 대책시설	**산후조리원**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설치 시 ※ 공공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	**정률 부여**	**0.4**	**최대 200%**
		예식장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설치 시 ※ 공공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	**정률 부여**		**최대 200%**
		시니어주택	**시니어주택 도입(노인복지법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지상부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도입면적에 따라 최대 20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MICE 산업관련시설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4 최대 1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1) [기준] 상가 : 점포수, 사람 : 세대수

구 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 산업시설 도입 시			
			전략산업육성조례에 따른 신성장산업육성시설 도입 시			
			관광진흥법 상 3성급 호텔이상 도입시	호텔복합비율에 따라 최대100%		
			건축연면적의 30%이상 주거도입 시 **※ 오피스텔 제외 및 주거 안정항목 중복 적용 불가**	주거복합비율에 비례하여 최대 100%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정률부여	0.4	최대 100%
	문화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부여	0.4	최대 100%
	주거안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도입 (전용 60㎡이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정량부여	50%	최대 50%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소규모 기업의 다양한 활동공간(개방형리운지 등)을 제공하는 시설 등 도입 시~~	정률부여	0.2	최대 50%
		특정층(최상층)개방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포비) 조성 시			
		실내 공개**공간**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 공개공지 도입 시(세부지침 조정)			
		저층부 개방공간	지상부 개방형녹지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저층부(최소1층) 특정시간대 완전 개방 시		0.3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 시~~	**정량부여**	~~30%~~	**최대 30%**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부여	2.0	최대 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가로지장물이전/지중화 (가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역내에서 연결되는 구역외 도로도 포함) ※ 도입시설면적은 공사구간 면적 기준.단, 지상 전주·전선의 이전/지중화 시에는 시설 공사비 환산면적 기준으로 적용	정률부여	**3.0**	**최대 100%**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2.0	**최대 10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부여	20%	최대 20%
	세입자 대책	**순환형 정비사업**	**순환형 정비사업 추진 시**	**수용비율에 따라 최대 200%**		
	역사보전	건축자산 등	법적의무대상은 아니나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부여	50%	최대 50%
의무	역사보전	지정·등록문화재 등	문화재 등 법적의무대상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부여	50%	최대 50%

[변경] 허용용적률 인센티브_서울도심 도심부 외

구 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계획유도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확보 시	지구별 개방형녹지 20% 설치 시	정량부여	50%	**최대 150%**
			지구별 개방형녹지 20% 초과 설치 시 -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부여	1	
		공동개발 시 녹지확보	지구간 건축협정(협의 등)에 따른 공동개발을 통해 도로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 시	정량부여	50%	최대 50%
	복합개발	구역(지구)간 공동개발	구역(지구)간 통합을 통해 대지면적 1만㎡이상 개발시	정량부여	**100%**	**최대 1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추가 설치 시	정량부여	20%	최대 20%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 사항 ½이상 초과설치 시	정량부여	20%	최대 20%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정량부여**	**20%**	최대 20%
		장수명 주택인증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정량부여	20%	
	저출산 고령화 대책시설	**산후조리원**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설치 시 ※ 공공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	**정률부여**	**0.4**	**최대 200%**
		예식장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설치 시 ※ 공공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	**정률부여**		**최대 200%**
		시니어주택	**시니어주택 도입(노인복지법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지상부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도입면적에 따라 최대 20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MICE 산업관련시설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4 최대 1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 산업시설 도입 시			
			전략산업육성조례에 따른 신성장산업육성시설 도입 시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 시			
			업무전용빌딩(업무시설 50% 이상 복합하는 경우에 한함) 설치 시(단, 오피스텔 제외)	업무복합비율에 비례하여 최대 50%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정률부여	0.4	최대 100%
	문화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부여	0.4	최대 100%
	주거안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도입 (전용 60㎡이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정량부여	50%	최대 50%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소규모 기업의 다양한 활동공간(개방형라운지 등)을 제공하는 시설 등 도입 시**	정률부여	0.2	최대 50%
		특정층(최상층)개방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조성 시			
		실내 공개**공간**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 공개공지 도입 시(세부지침 조정)			
		저층부 개방공간	지상부 개방형녹지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저층부 (최소1층) 특정시간대 완전 개방 시		0.3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 시**	**정량부여**	**30%**	**최대 30%**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부여	2.0	최대 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가로지장물이전/지중화	정률	**3.0**	**최대**

구 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가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역내에서 연결되는 구역외 도로도 포함) ※ 도입시설면적은 공사구간 면적 기준.단, 지상 전주·전선의 이전/지중화 시에는 시설 공사비 환산면적 기준으로 적용	부여		100%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2.0	최대 10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세입자 대책	순환형 정비사업	순환형 정비사업 추진 시	수용비율에 따라 최대 200%		
	역사보전	건축자산 등	법적의무대상은 아니나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의무	역사보전	지정·등록문화재 등	문화재 등 법적의무대상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변경

기 존	변 경
◆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등을 제공하거나 **서울도심 도심부의** 경우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 조성 시 추가로 부여 ~(이하생략)~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등을 제공하거나 ~~서울도심 도심부의 경우~~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 조성 시 추가로 부여 ~(이하생략)
◆ **상한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외)**	◆ **상한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외)**
– (신설)	**– 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기부채납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 **※ 도시계획조례 제51조 2항 라목에 따름** **※ 가로지장물 이전 및 지중화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불가**
–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과등급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시 인센티브 제공	**–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인센티브 제공**
①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0 ×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①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0 ×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기 존	변 경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0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②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0.5 × 지능형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③ (삭제)**
※ ①,②는 별도 적용이 가능하며, ③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녹색건축물 초과등급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초과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①+②+③은 허용용적률의 최대 15%까지 완화	**※ ①+②는 허용용적률의 최대 15%까지 완화**
※ 친환경 상한용적률은 구역 부담률 충족 및 필수 정비기반시설 우선 확보 시 적용	※ 친환경 상한용적률은 구역 부담률 충족 및 필수 정비기반시설 우선 확보 시 적용
- (신설)	**- 상한용적률 산정 시 허용용적률이 조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조례용적률 적용**

※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플러스(+) 등급	15%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변경된 규정에 따름

3) 높이 계획

<table>
<tr><th>기 존</th><th>변 경</th></tr>
<tr><td>

♦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서울도심 도심부외)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높이(m)</th><th>최고높이(m)</th></tr>
<tr><td rowspan="3">영등포</td><td>역세권</td><td>150</td><td>200</td></tr>
<tr><td>일반상업</td><td>100</td><td>200</td></tr>
<tr><td>준공업</td><td>80/150</td><td>200</td></tr>
<tr><td colspan="2">용산</td><td>80 ~ 150</td><td>-</td></tr>
<tr><td rowspan="2">청량리</td><td>일반업무</td><td>70</td><td>-</td></tr>
<tr><td>혼합서비스</td><td>50</td><td>-</td></tr>
<tr><td colspan="2">가산대림</td><td colspan="2">지구단위계획에 따름</td></tr>
<tr><td rowspan="4">마포·공덕</td><td>역세권</td><td>110</td><td>-</td></tr>
<tr><td>업무상업</td><td>110</td><td>-</td></tr>
<tr><td>업무주거</td><td>70</td><td>-</td></tr>
<tr><td>일반업무</td><td>70/90</td><td>-</td></tr>
<tr><td colspan="2">연신내·불광</td><td colspan="2">지구단위계획에 따름</td></tr>
<tr><td colspan="2">신촌</td><td colspan="2">지구단위계획에 따름</td></tr>
<tr><td colspan="2">봉천</td><td colspan="2">지구단위계획에 따름</td></tr>
</table>

</td><td>

♦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서울도심 도심부외)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높이(m)</th><th>최고높이(m)</th></tr>
<tr><td rowspan="3">영등포</td><td>역세권</td><td>제한없음</td><td>-</td></tr>
<tr><td>일반상업</td><td>제한없음</td><td>-</td></tr>
<tr><td>준공업</td><td>제한없음</td><td>-</td></tr>
<tr><td colspan="2">용산</td><td>150</td><td>-</td></tr>
<tr><td rowspan="2">청량리</td><td>일반업무</td><td>150</td><td>-</td></tr>
<tr><td>혼합서비스</td><td>150</td><td>-</td></tr>
<tr><td colspan="2">가산대림</td><td>150</td><td>-</td></tr>
<tr><td rowspan="4">마포·공덕</td><td>역세권</td><td>150</td><td>-</td></tr>
<tr><td>업무상업</td><td>150</td><td>-</td></tr>
<tr><td>업무주거</td><td>150</td><td>-</td></tr>
<tr><td>일반업무</td><td>150</td><td>-</td></tr>
<tr><td colspan="2">연신내·불광</td><td>130</td><td>-</td></tr>
<tr><td colspan="2">신촌</td><td>130</td><td>-</td></tr>
<tr><td colspan="2">봉천</td><td>130</td><td>-</td></tr>
</table>

</td></tr>
</table>

기 존	변 경
♦ 완화높이(서울도심 도심부) - 매장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전면 보존**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 가능	♦ 완화높이(서울도심 도심부) - 매장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전면 보존~~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 가능
♦ 완화높이(서울도심 도심부) - 공공성 확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시 도시계획	♦ 완화높이(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외) - **그 외 추가적 완화는** 공공성 확보 및 지역 특성을 고

기 존	변 경
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완화 및 강화 가능 ·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보행, 상권활성화, 통경축, 인접대지와의 관계,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30m 범위 내 높이 완화' 및 '강화'	려한 계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완화 및 강화 가능 ·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보행, **시책사항 반영**, 상권활성화, 통경축, 인접대지와의 관계,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30m 범위 내 높이 완화' 및 '강화'
♦ 개방형녹지 확보율에 따른 추가 높이 완화(α) – 완화높이m = 적정건폐율50% × (기준높이+20m) / (80%–개방형녹지율%)	**♦ 개방형녹지 확보율에 따른 추가 높이 완화(α)** – 완화높이m = [적정건폐율50% × (기준높이+20m) / (80%–개방형녹지율%)] **– 기준높이**

4) 상업지역 주거공급계획

기 존	변 경
♦ 주거비율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며(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 지역별 주거비율 차등 적용**	**♦ 주거비율**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 지역별 주거비율 차등 적용**~~
· 서울도심 도심부 : 최대 90% · 영등포 및 광역중심, 연신내(GTX) : 최대 80% · 지역중심 : 최대 90%	· 삭제 · 삭제 · 삭제

기 존	변 경
♦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단, 상업지역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 시 매입예산의 과다소요 등으로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삭제** – **(삭제)**

기 존	변 경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가능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 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	- **(삭제)**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 85㎡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로 확보	- **(삭제)**
-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주택 등 확보 시 공공이 부담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삭제)**
♦ 오피스텔 관리방안(준주거지역 공통사항)	**♦ 오피스텔 관리방안(준주거지역 공통사항)**
- 오피스텔은 준주택 용도로 관리토록 하며,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 용도로 관리, 주거비율 완화 시 완화받는 용적률의 1/2 공공주택 의무 적용 · 거주 주민의 편익 도모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공급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주민공동시설 설치 준용) ※ 지역특성 및 대상지 여건상 주민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오피스텔은 준주택 용도로 관리토록 하며,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한다. · **삭제** · 거주 주민의 편익 도모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공급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주민공동시설 설치 준용) ※ 지역특성 및 대상지 여건상 주민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기 존	변 경
♦ 노인복지주택 관리방안(준주거지역 공통사항) -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 용도로 관리토록 하며,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 의무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 용도로 관리, 주거비율 완화 시 완화받는 용적률의 1/2 공공주택 의무 적용 · 거주 주민의 편익 도모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SOC 공급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 의무화 ※ 노인복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시설 설치 ※ 주민편익시설은 의무설치하나 노인복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가능	♦ 삭제 - (삭제)

5) 시니어주택 공급 부문 신설

기 존	변 경
♦ 신설	♦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 - 정의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고령자)' (입주대상자 변경 불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 10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적용 ※ 고령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1호 나목 3) 적용 - 주 용 도 · 각 지역별 토지이용계획상 건축물 주용도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니어주택 주용도 도입 가능 - 주거비율 · 시니어주택 및 필수부대시설은 주거비율 산정시 주거로 산정

기 존	변 경
♦ 신설	♦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 – 용적률 계획 · 용적률 체계 : 각 지역별, 용도지역별 용적률 체계를 따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지상 연면적의 20%이상 시니어주택 도입 시 허용 용적률 최대 200% 부여 – 높이 계획 ·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시니어주택 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기준높이 외 추가높이 완화(최대 30m) 가능 – 도입시설 기준 ·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기준 등 관련 기준 충족 ※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된 규정에 따름 · 데이케어센터 등 노유자시설, 의료 관련 시설 등 시니어주택과 연계되는 시설 설치 원칙. 단, 개발규모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인접시설과 협약 및 운영계획 등 제시 ※ 그 외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함

6) 기타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 마포·공덕지역 용적률계획 – 마포로 일대 일부 준주거지역(마포로 4-7지구, **마포로2구역,** 마포대교·공덕동 로타리 주변, 중림동 등)은 주변 완료지구 현황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설정한 바, 용도지역 상향 조정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단,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용적률 체계 적용	♦ 마포·공덕지역 용적률계획 – 마포로 일대 일부 준주거지역(마포로 4-7지구, ~~마포로2구역,~~ 마포대교·공덕동 로타리 주변, 중림동 등)은 주변 완료지구 현황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설정한 바, 용도지역 상향 조정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단,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용적률 체계 적용

기 존	변 경
◆ 마포·공덕지역 용적률계획 - (신설)	◆ 마포·공덕지역 용적률계획 - 현황용적률이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재재개발지구에서 용도지역 상향(일반상업) 시는 아래의 용적률 및 의무공공기여 적용 · 용적률체계 : 현황용적률/조례용적률/법적용적률 2배 ※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9항제2호 적용 · 공공기여량 : (일반상업지역용적률-현황용적률) × 0.6 / 일반상업지역용적률

7) 경과규정

-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전
  · 정비계획 결정(변경포함)을 위한 주민공람을 추진한 경우에는 종전 기본계획 적용이 가능하다.
-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 정비계획 결정(변경포함)하는 경우 금번 기본계획변경 사항을 적용한다
  · 단, 높이와 용적률은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결정된 사항은 인정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 경미한 변경 시에는 종전 기본계획 적용이 가능하다.
  · 공공주택이 계획된 사업지의 경우 매입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변경한다.

6. 기본계획 변경 관련 도서 : 서울시청 누리집(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붙임>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변경(안)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서 제출 서식

성 명	(인)	연락처	
거주지 주소			
의 견			
제출일	2025년 8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3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본 규칙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됨에 다라 상위 법령의 근거 소멸
   나. 「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기본 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심의 기능 사실상 소멸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시설안전과)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O 연락처 : 전화 02-399-9655
         O 이메일 : black0@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5년 월 일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324호

서울특별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정책자문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함(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주소: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 연락처: 전화 02-2282-8599, FAX 02-6973-9918
○ 이메일: windyepo@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새소식/공지-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입법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설치) ①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6.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
7. 삭 제	
8. ~ 24. (생 략)	8. ~ 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5-114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12호(2025.06.12.)로 결정(변경)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건동 195-11번지 외 2필지 가구 및 획지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종 로 구 청 장

1.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기정)

가구 번호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B-7	연건동	195-30	55.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5-31	155.1		
		195-11	257.8	-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구 번호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B-7	연건동	195-30	55.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건축
		195-31	155.1		
		195-11	257.8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B-7 (연건동)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	○ 공동개발 지정 기준에 따라 기공동건축된 195-11, 30, 311번지를 공동개발 지정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계도서는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도]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도_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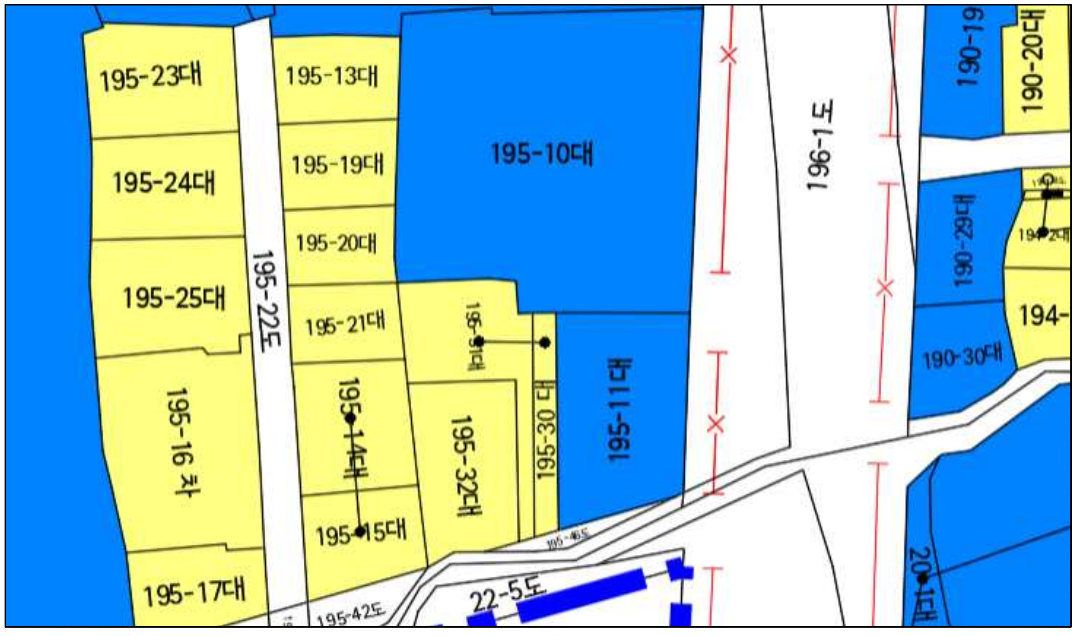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도_변경

◈ 은평구고시 제2025-7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호(1995.1.20.)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03호(2004.4.1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4-24호(2024.1.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오릉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2019-100호(2019.8.8.)로 최초 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3-67호(2023.6.8.)로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은평구 공고 제2025-975호(2025. 5. 29.)로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281-237 등 7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보상 13,723㎡(갈현동 281-237 등 7필지)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
바. 공시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에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갈현동	281-237	대지	2	2	권*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건영아파트 104동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갈현동	281-237	대지	2	2	서울특별시			
						김*주	서울 은평구 갈현동 ***-215 대양연립 라에이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이*선	서울 은평구 갈현동 ***-215 대양연립 에이동 하층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지점)									
						이*선	서울 은평구 갈현동 ***-18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지점)									
						전*열	서울 은평구 갈현동 ***-215 대양연립 에이동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박*규	서울 은평구 갈현로37길 59, ****호(**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김*식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갈현동	281-237	대지	2	2	권*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건영아파트 104동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갈현동	281-237	대지	2	2	서울특별시			
						김*주	서울 은평구 갈현동 ***-215 대양연립 라에이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이*선	서울 은평구 갈현동 ***-215 대양연립 에이동 하층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지점)									
						이*선	서울 은평구 갈현동 ***-18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지점)									
						전*열	서울 은평구 갈현동 ***-215 대양연립 에이동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박*규	서울 은평구 갈현로37길 59, ****호(**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김*식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의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곽*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 B동 ***호(갈현동, **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지점)	근저당권												
						이*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번길 30, 901동 ****호(신원당마을)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김*영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 ***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이*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 204호(갈현동, **아파트)															
						김*중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3, **호(갈현동, **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박*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59, B동 ***호(갈현동, **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정*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33, 110동 ***호(**아파트)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김*기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37길 **, ***호(대조동)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점)	근저당권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갈현동	281-237	대지	2	2	정*중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15 **아파트 B동 ***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1	갈현동	281-237	대지	2	2	서울특별시					
						이*길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15 **아파트 B동 ***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신*우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길 57, A동 **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이*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63, C동 4**호(갈현동, **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남*희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5길 **-1, 3층 ***호(*동)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압류													
								서울특별시 은평구		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류													
								국 처분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맑은도시과)		압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압류													
								주식회사 ****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점)	근저당권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토지의 전부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주식회사 **** 은행		지상권														
2	갈현동	281-214	도로	724	9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동 **-3						2	갈현동	281-241	도로	9	9	서울특별시					
3	갈현동	산51-1	임야	10,810	437	박*현	서울 **구 관악로 1, *** **동 621호	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2	근저당권			3	갈현동	산51-4	임야	437	437	서울특별시					
								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2	지상권														
4	갈현동	산49-32	임야	42	42	김*욱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 101동 601호(가양동, **아파트)						4	갈현동	산49-32	임야	42	42	서울특별시					
5	갈현동	산92-4	임야	5,012	5,012	이*드 류*인	서울 노원구 공릉2동 109 **아파트 ***-***	서울특별시 **구		압류			5	갈현동	산92-4	임야	5,012	5,012	서울특별시					
						이*인	미국 ****주 95124 산호세시 *** 세페리탄 드라이브	서울특별시 **구		압류														
6	갈현동	228-100	대지	4,110	4,110	학교법인 **학원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능동)						6	갈현동	228-100	대지	4,110	4,110	서울특별시					
7	갈현동	228-61	대지	4,111	4,111	학교법인 **학원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능동)						7	갈현동	228-61	대지	4,111	4,111	서울특별시					

물 건 조 서

○사업명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갈현동 228-100	테니스 코트	테니스장 시설물	1식	학교법인 **학원	서울 광진구 ***대로 ***(*동)	1	갈현동 228-100	테니스 코트	테니스장 시설물	1식	서울특별시	
2	갈현동 228-61	테니스 코트,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식	학교법인 **학원	서울 광진구 ***대로 ***(*동)	2	갈현동 228-61	테니스 코트,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식	서울특별시	

◈ 은평구고시 제2025-8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은 평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거북골	근린공원	구산동 산37-4 일대	43,812.6	감) 80.0	43,732.6	1977.7.14.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	미집행구간의 실효
변경	녹번서	근린공원	녹번동 85-1일대	29,945.0	감) 27.0	29,918.0	1977.7.14.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	미집행구간의 실효

2. 실효일자 : 2022. 6. 25.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8조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1:1000 Scale 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계획과(☎02-351-7405), 공원녹지과(☎02-351-800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지형도면(거북골 근린공원)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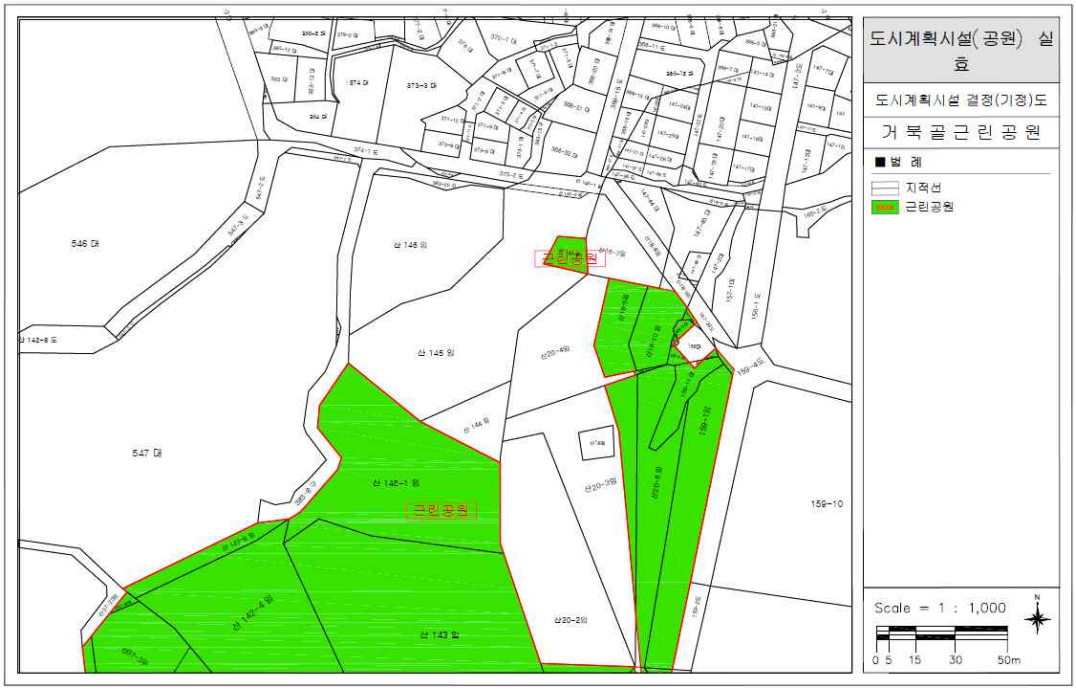

– 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지형도면(녹번서 근린공원)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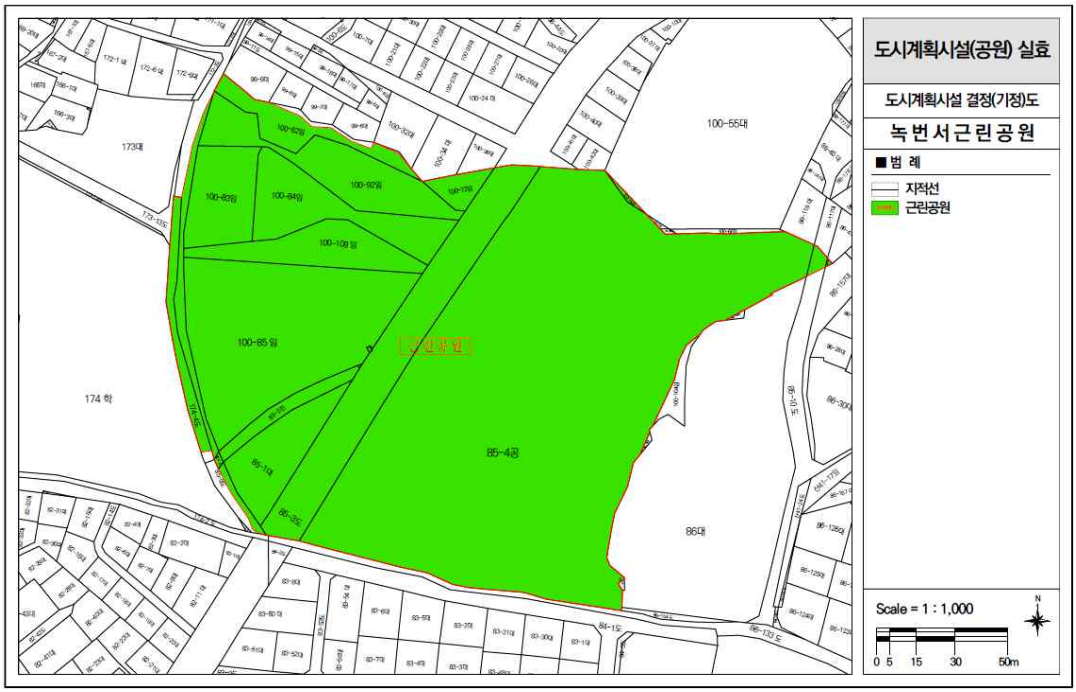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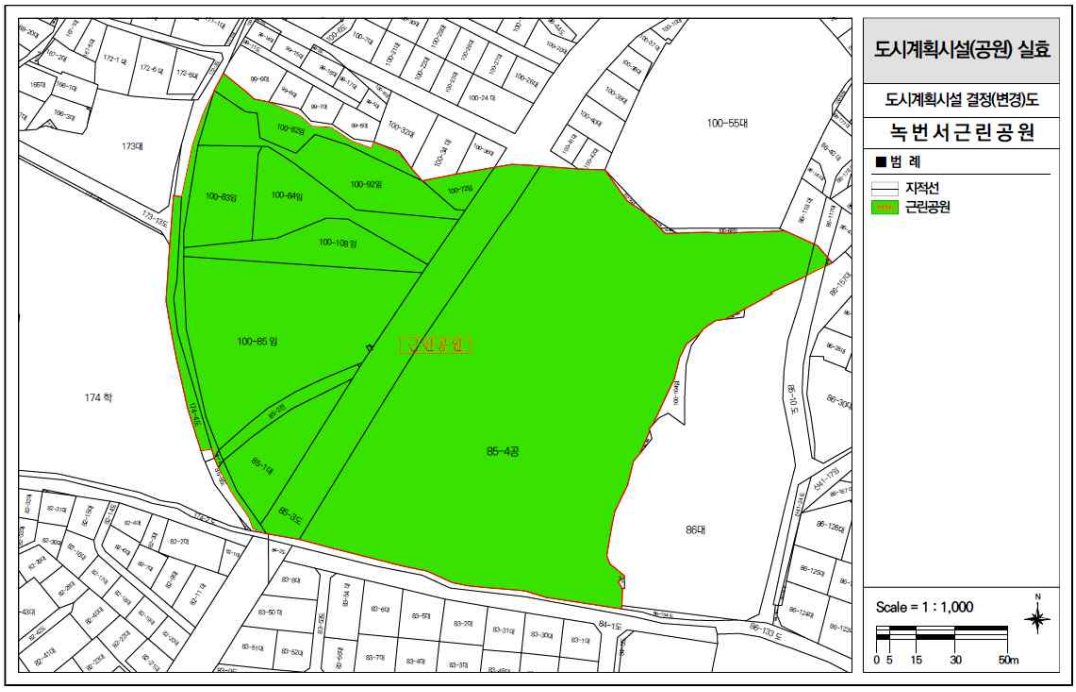

◈ 은평구고시 제2025-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실효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은 평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류	-	6	국지 도로	141	역촌동 84	역촌동 186-1	일반 도로	-	1969.1.18. (서울시 고시 제3호)	실효
폐지	소로	3류	-	6	국지 도로	204	녹번동 109-1	녹번동 106-29	일반 도로	-	1969.1.18. (서울시 고시 제3호)	실효

2. 실효일자 : 2025. 6. 26.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8조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1:1000 Scale 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계획과(☎02-351-7405), 도로과(☎02-351-790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역촌동 84 ~ 역촌동 186-1)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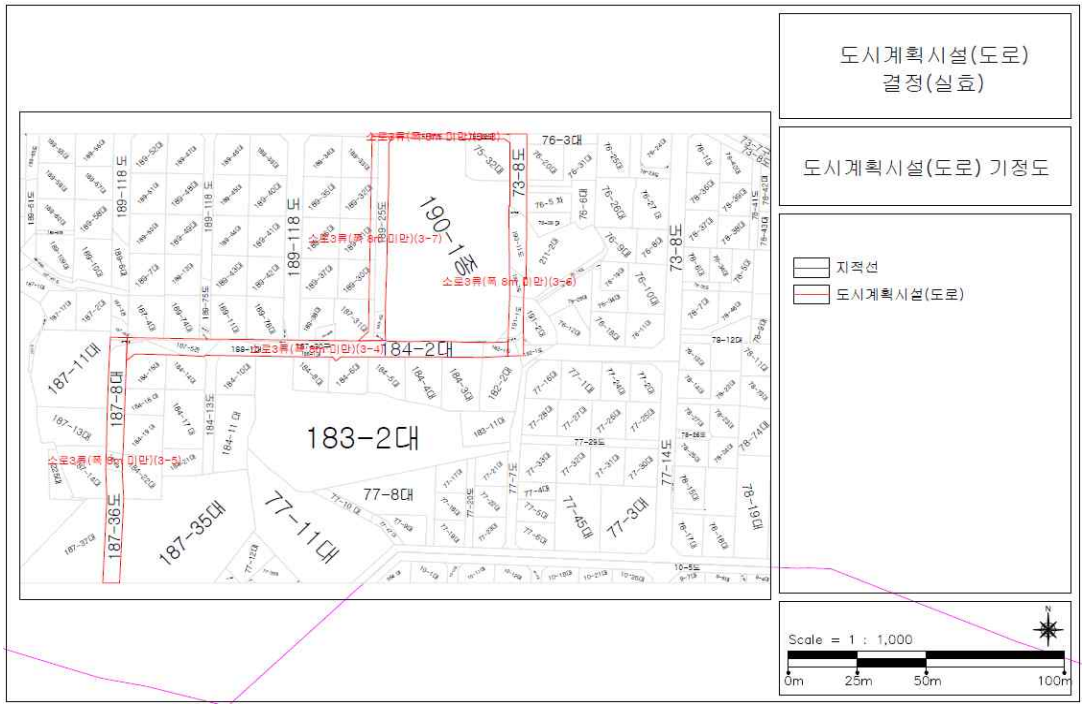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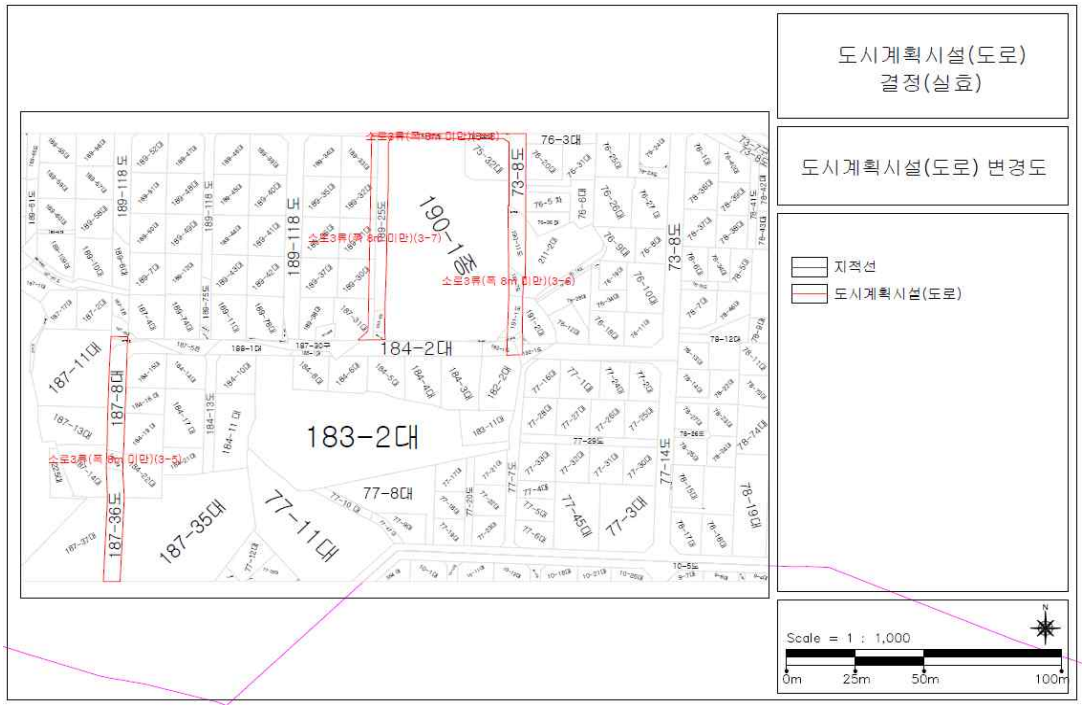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녹번동 109-1 ~ 녹번동 106-29)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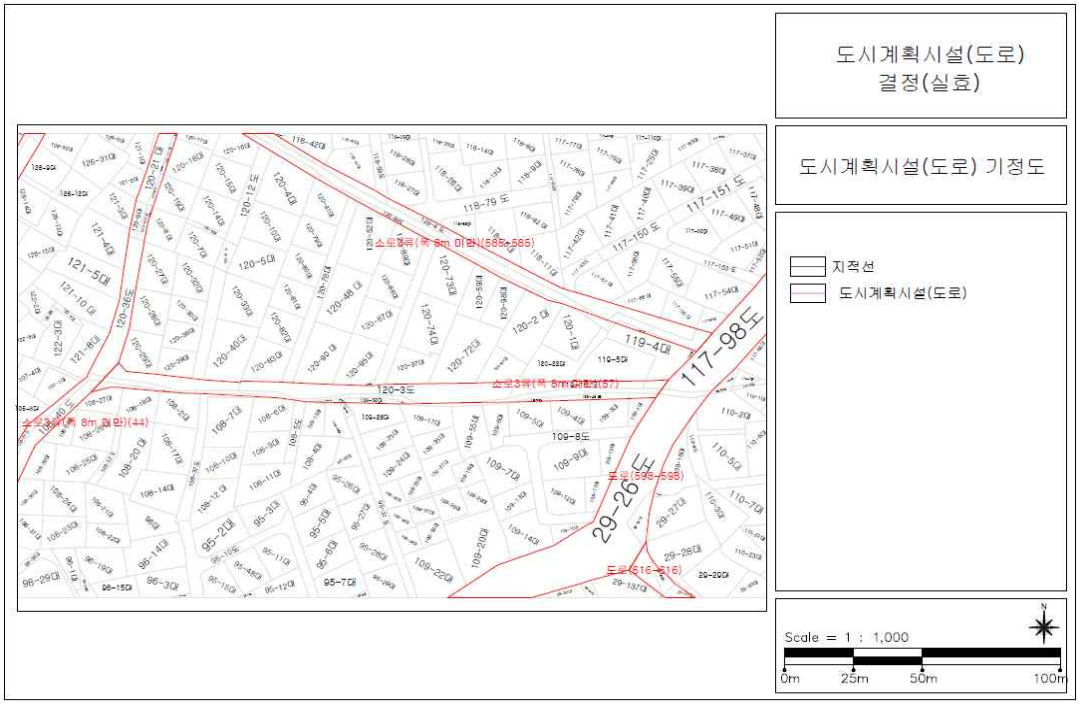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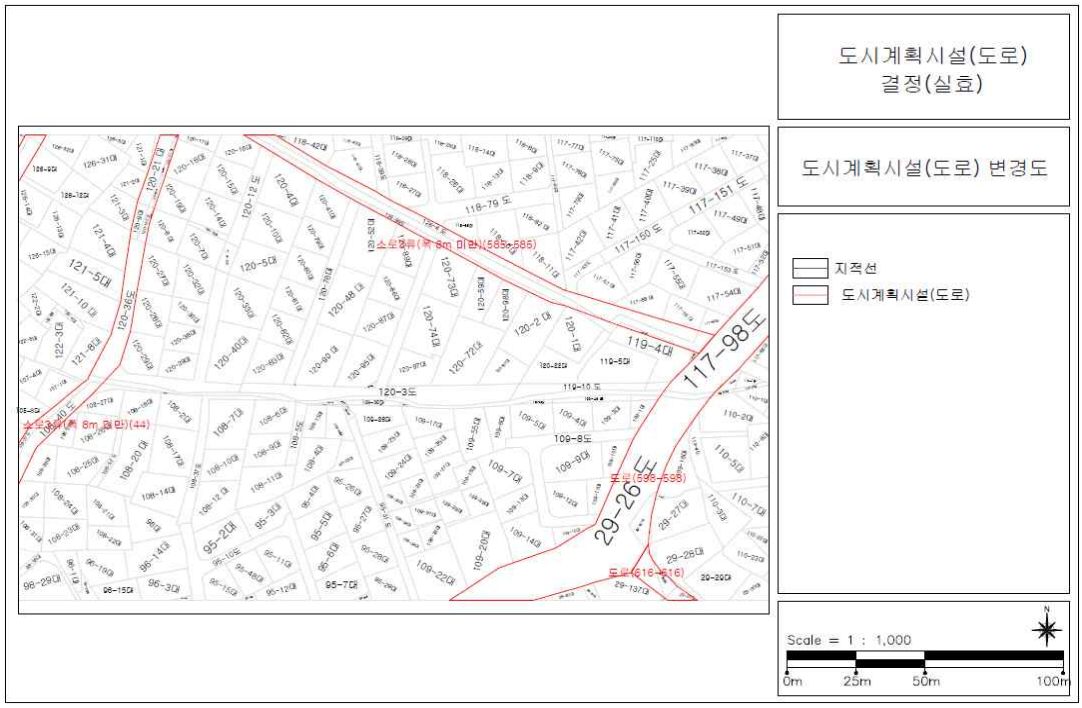

◈ 강남구고시 제2025-6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12호(2022.05.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9호(2023.05.04.)로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86조 · 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제32조 ·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243-62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8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미정)	근린공원	강남구 율현동 145-3 일원	44,920	증)49	44,969	서울시고시 제2022-212호 (2022.5.12.)	철도 중복 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44,920㎡ → 44,969㎡(증 49㎡)	· 토지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편입토지 면적 및 지번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사항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14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당 초: 44,920㎡
- 변 경: 44,9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헌동]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24년 9월 19일 ~ 2027년 9월 18일

6) 열람 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243)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조경설계부 (02-3410-7745, 7741)

※ 보상 관련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용지보상부 (02-3410-7875, 7871)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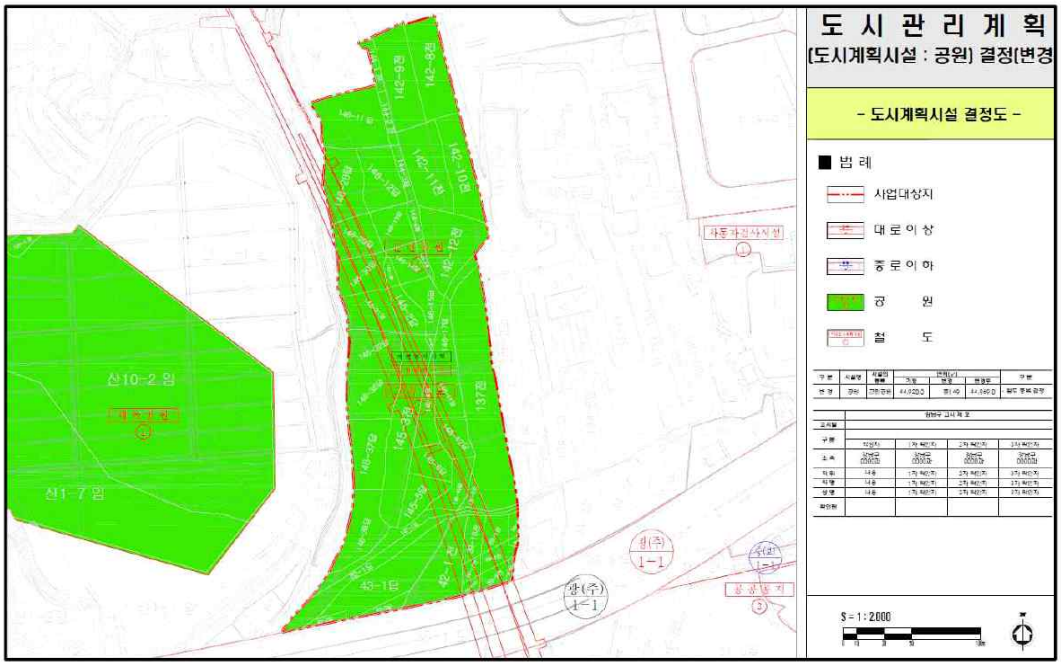
도 시 관 리 계 획
(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 범 례
사업대상지
대 로 이 상
중 로 이 하
공 원
철 도
신10-2 임
신1-7 임
S=1:2,00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44,969	44,969						
1	강남구 세곡동	38-4	전	116	116	안*식	청담동127-31 목련아파트 *동 ***호				
2	강남구 세곡동	38-5	도	45	45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3	강남구 세곡동	39-1	전	407	407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4	강남구 세곡동	39-37	전	347	347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5	강남구 세곡동	39-38	전	6	6	이*형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				
6	강남구 세곡동	39-8	전	51	51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7	강남구 세곡동	39-9	전	273	273	이*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07, ***동 ***호(역삼동, 역삼아이파크)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8	강남구 세곡동	39-10	전	143	143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9	강남구 세곡동	39-16	전	430	430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10	강남구 세곡동	39-17	전	179	179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11	강남구 세곡동	39-39	전	9	9	공*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길 **(수서동)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12	강남구 세곡동	42-1	전	1,502	1,502	이*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동 ****호(서초동, 삼풍아파트)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세곡동지점)	근저당권	
13	강남구 세곡동	43-1	답	2,126	2,126	정*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번길 **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성수역지점)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화양시장지점)	지상권	
								농업협동	서울 중구 충정로1가	근저당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조합중앙회	75(성수역점)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14	강남구 세곡동	43-2	답	156	156	정*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번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화양시장지점)	지상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성수역점)	근저당권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성수역지점)	근저당권	
15	강남구 세곡동	43-3	답	217	217	정*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번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화양시장지점)	지상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성수역지점)	근저당권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성수역지점)	근저당권	
16	강남구 세곡동	82-8	도	1,273	1,27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17	강남구 율현동	137-3	전	4,348	4,348	이*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동 ****호(정자동, 로얄팰리스)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이*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24, ***동 ***호(정자동, 정든마을)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문정동)(세곡동지점)	근저당권	
18	강남구 율현동	137-4	도	813	813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19	강남구 율현동	137-2	전	232	232	이*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동 ****호(정자동, 로얄팰리스)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이*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24, ***동 ***호(정자동, 정든마을)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문정동)(세곡동지점)	근저당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강남구 율현동	142-19	전	1,749	1,74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한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태허정로 531				
21	강남구 율현동	142-9	전	1,838	1,838	이*우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568번길 ***호				
						이*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				
						이*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91-7 영광빌라 *-***				
						이*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55 은빛아파트 ***-***				
22	강남구 율현동	142-10	전	1,269	1,269	이*진	서울 강남구 율현동 ***-*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세곡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문정동)(세곡동지점)	근저당권	
23	강남구 율현동	142-11	전	1,845	1,845	강*훈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동 ****호				
						강*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동 ***호				
24	강남구 율현동	142-12	전	1,841	1,841	황*성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동 ****호 도곡동 타워팰리스				
25	강남구 율현동	142-20	구	219	2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6	강남구 율현동	144-1	전	291	291	방선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중앙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장지동지점)	근저당권	
27	강남구 율현동	144-2	전	235	235	오*분	서울 은평구 갈현동 ***-*				
						이*순	서울 관악구 남현동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오*현	서울 강남구 율현동 ***				
						오*준	서울 관악구 남현동 ****-**				
						오*영	서울 관악구 남현동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오*화	서울 관악구 남현동 ****-**				
						오*자	서울 구로구 독산동 ***-**				
28	강남구 율현동	144-3	제	241	241	김*준	서울 강남구 반포동 444-1 삼호가든맨션 *동 ***호				
						강*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7번지 영동아파트 **동 ***호				
						박*호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지축리 ***-*				
29	강남구 율현동	144-4	제	221	221	신*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12길 11-7, ***호(미아동,성신쉐르빌)				
30	강남구 율현동	144-5	제	162	162	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63 역삼럭키아파트 ***-***				
31	강남구 율현동	145-1	답	152	152	박*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김*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압류	
32	강남구 율현동	145-2	답	575	575	황*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길 **(방이동)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문정동)(거마지점)	근저당권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	지상권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33	강남구 율현동	145-3	전	2,588	2,588	정*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번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농협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식회사	120 (충정로1가)(성수역지점)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34	강남구 율현동	145-4	답	661	661	최*익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3길 **-*, ***호(성내동,늘푸른빌라트)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이*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03, ***동 ****호(창동,동아청솔아파트)				
35	강남구 율현동	145-5	답	771	771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39, ***동 ***호(마북동,교동마을현대필그린아파트)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36	강남구 율현동	145-6	답	661	661	이*자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길 **(태화동)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37	강남구 율현동	146-52	답	1,828	1,828	오*분	서울 은평구 갈현동 ***-*				
						오*현	서울 강남구 율현동 ***				
						이*순	서울 강남구 율현동 ***-**				
						오*준	서울 강남구 세곡동 ***-*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75(마천동),	근저당권	
								홍*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신촌동)		
						오*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 지하				
						오*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				
						오*영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로 222, ***동 ***호(하상동, 연꽃마을대우아파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8	강남구 율현동	146-12	답	1,217	1,217	김*준	서울 강남구 반포동 444-1 삼호가든맨션 *동 ***호				
						강*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7번지 영동아파트 **동 ***호				
						박*호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지축리 ***-*				
39	강남구 율현동	146-13	답	740	740	신*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길 15 한강우성아파트 ***동 ****호				
						신*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늘마을로 184 일산현대성우오스타 ***동 ***호				
40	강남구 율현동	146-14	답	572	572	신*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논현동)				
41	강남구 율현동	146-15	답	651	651	고*숙	서울 강남구 도곡동 228-3 개포2차 우성아파트 **동 ****호				
						고*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 쌍용아파트 *동 ***호				
42	강남구 율현동	146-16	답	60	60	박*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이동 ***				
						박*애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3 동부센트레빌아파트 ***-****				
						박*희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박*희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				
						박*도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상대리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	가압류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압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박*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39 백마마을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박*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39 백마마을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박*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아파트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박*희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박*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39 백송마을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송*례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83-1 세중참사랑아파트 ***-****				
						송*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압류	
						송*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9 아트빌 ****-***				
						임*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2 문래공원한신아파트 *-***				
						홍*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	강남구 율현동	146-17	답	655	655	김*선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52번길 15 은행주공아파트 ***동 ***호				
44	강남구 율현동	146-28	답	1,388	1,388	강*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 ***동 ***호 (중앙동, 중앙동 힐스테이트2차)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김*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길 30, ***동 ****호(방배동,방배1차 현대아파트)				
						박*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내유동)				
45	강남구 율현동	146-29	답	902	902	박*희	경기도 의정부시 백석로 33, ***동 ****호 (호원동, 삼익아파트)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신*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61번길 17 인정멜로디아파트 ***동 ****호				
						신*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6, ***동 ***호(백석동, 백석역동문굿모닝힐2)				
						신*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12길 11-7, ***호(미아동,성신쉐르빌)				
46	강남구 율현동	146-30	답	922	922	홍*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잠실동)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임*규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4길 51, ***동 ***호	엄*동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99 대원칸타빌2단지 ***-***	근저당권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47	강남구 율현동	146-31	답	985	985	최*덕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길 **(미아동)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8	강남구 율현동	146-53	답	1,129	1,129	김*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0, ****호(삼성동,아이파크삼성동 사우스윙)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49	강남구 율현동	146-54	답	1,321	1,321	김*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0, ****호(삼성동,아이파크삼성동 사우스윙)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50	강남구 율현동	146-37	답	1,322	1,322	김*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1, ***동 ***호 (역삼동,래미안그레이튼)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75(마천동)	근저당권	
51	강남구 율현동	146-38	답	1,322	1,322	김*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7길 5-12, ***호(방이동)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문정동)(호수지점)	근저당권	
52	강남구 율현동	146-41	답	655	655	손*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동 ***호(신정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손*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동 ****호(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53	강남구 율현동	146-42	답	654	654	고*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233번길 34, ***동 ***호(화도센트럴 우방아이유쉘)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54	강남구 율현동	146-43	답	654	654	김*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23번길 17, 7***동 ****호 (다산동, 다산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입류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사업위치도 및 공원조성계획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145-3 일원

사업 위치도

공원조성계획도

◈ 송파구고시 제2025-75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6호(2015.9.24.), 제2021-241호(2021. 12. 9.)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송 파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방이동 47-4, 12호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변경(도로확폭,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축소 등)된 지구단위계획을 당초 계획(안)으로 환원하는 결정(변경)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683.4)	-	858,791 (720.0)	서고제397호 (' 84.7.4.)	

※ ( )는 사업부지 면적임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70	6~8 (8)	국지 도로	307	방이동 43-5	방이동 46-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3	70	6~8 (7)	국지 도로	307 (36.6)	방이동 43-5	방이동 46-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 폭원, 연장의 ( )는 사업부지 내 사항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70	소로 3-70	• 폭원: 6~8m (사업부지: 8m→7m)	•방이동 47-4, 12호 신축을 위한 기부채납 계획에 대해 건축계획(안)이 변경(신축→증축)되어 기존 계획으로 환원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D1-8	방이동 47-4, 12	683.4	720.0	공동개발	도로 기부채납 취소 (증 36.6㎡)

※ 도로 1m(36.6㎡) 기부채납 취소, 향후 지적측량에 따라 일부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배치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방이지역: 1~5m 〈대상지〉 - 서측 도로변: 1m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방이지역: 1~5m 〈대상지〉 - 서측 도로변: 2m	결정도 참조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방이지역: 1~5m 〈대상지〉 - 서측 도로변(차도형): 1m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방이지역: 1~5m 〈대상지〉 - 서측 도로변(차도형): 2m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사업부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폭원 1m 축소	•방이동 47-4, 12호 신축을 위한 기부채납 계획에 대해 건축계획(안)이 변경(신축→증축)되어 기존 계획으로 환원 •기부채납(36.6㎡) 취소로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당초 계획으로 환원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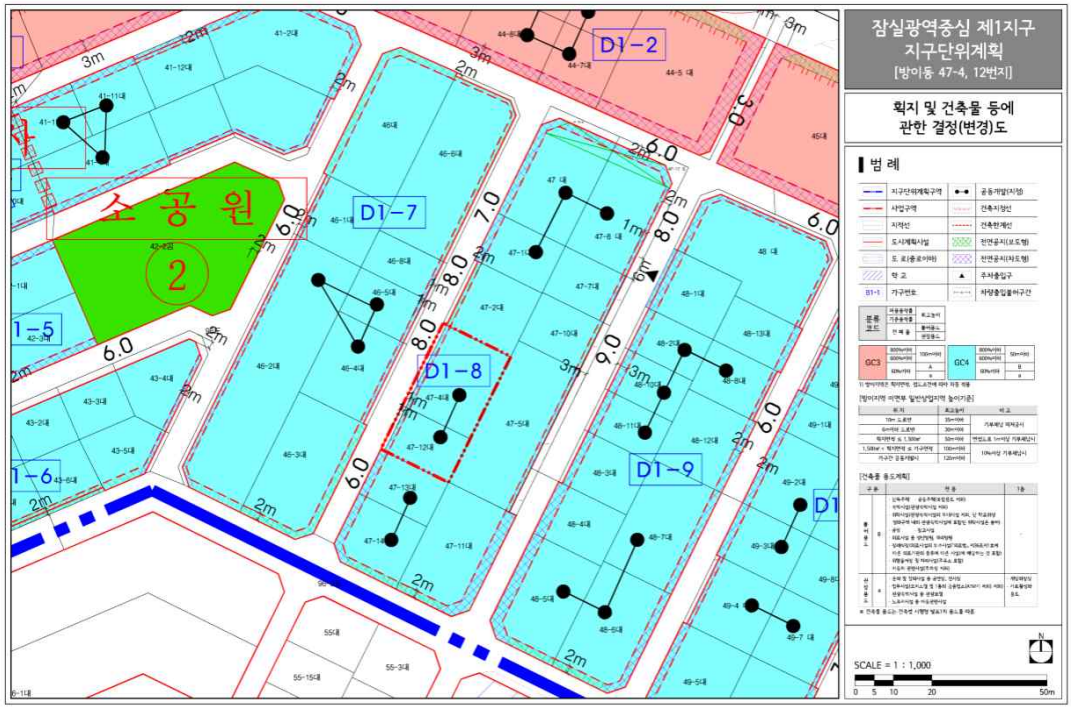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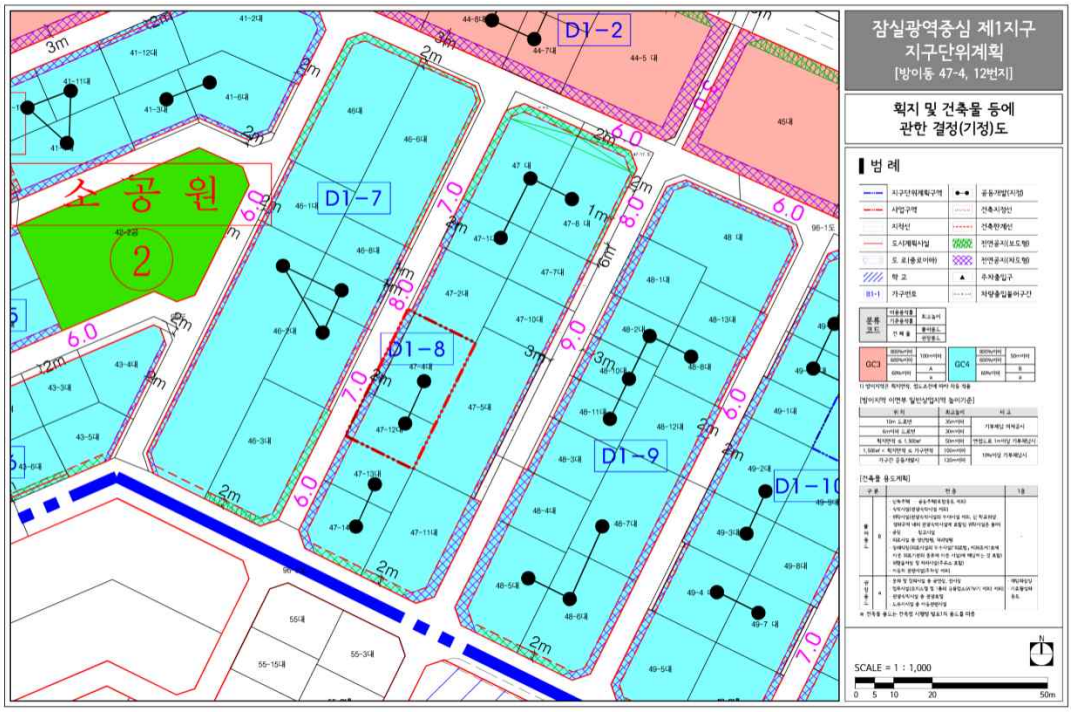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5-8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2호(2020. 1. 16.)호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17호(2021. 12. 23.)호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중구고시 제2022-81호(2022. 9. 15.)호로 실시계획인가 처리된 우리 구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양동 쪽방 주민의 이주대책으로 계획된 양동구역 제 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2) 사업의 명칭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11,12지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주)한마루 (대표이사 차원석)
   2)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1, 4층 나호(사우동)
4. 사업시행기간 : 2022. 12. ~ 2025. 8.
5. 사용승인일 : 2025. 8. 12.
6. 사업면적 및 규모
   1) 대지면적 : 852.1㎡
   2) 건축면적 : 510.83㎡(건폐율 59.95%, 용적률 759.44%)
   3) 연 면 적 : 8,431.05㎡
   4) 규　　모 : 지하4층/지상18층
   5)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7.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3396-5775)에 비치

◈ 성북구공고 제2025-14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10-5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성 북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공공공지	성북구 성북동 210-57 외 3필지	994	성북구 고시 제2023-194호 (`23. 12. 28)	-
변경	공공공지	성북구 성북동 210-57 외 3필지	1,000	성북구 고시 제2023-194호 (`23. 12. 28)	· 면적 : 증) 6㎡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편입 면적 변경 - 면적 기정 : 994㎡ → 변경 : 1,000㎡ 증) 6㎡, 증) 0.6%	• 해당 공공공지 사업의 편입 필지인 성북동 산58-3번지는 전체면적 529m2 중 523m2 가 사업 대상이었으나, 해당 구간이 지적불부합지로 토지분할을 진행할 수 없는 필지로,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지적 정리 기간이 1-2년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분할없이 전체면적 529m2을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다. 지형도면의 작성

○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열람장소) 또는 온라인 의견제출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 도시관리계획 → 열람공고 → 주민의견서작성

마.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과(☎2241-276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공고 제2025-11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85호(1973.12.3.)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도봉구 고시 제1997-20호(1997.4.1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5호(2018.11.29.)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관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82호선에 대하여,
2. 창동민자역사 신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로1-8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 시행령 제9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도 봉 구 청 장

가. 인가신청 개요
① 명칭: 소로1-8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②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35-84 주변 일대
③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④ 사업규모 및 내용
- 도로개설: 폭 7~18m, 길이 420m
- 면적: 5,237.7㎡
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창동역사(주)
-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한국빌딩 9층
⑥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2026.6.30.까지
⑦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자 성명: 따로붙임
⑧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가 각 토지소유자와 협의(예정)
- 서울시 토지는 현황 도로이며, 향후 도봉구에서 유지관리

나. 열람기간 및 장소
①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② 열람장소: 도봉구청 도로과(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15층)
③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로과(☎02-2091-4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공고 제2025-1333호

도시계획시설(영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6호(2023. 11. 2.)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영축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14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108번지 일대
나. 공원면적 : 82,045.4㎡
다. 조성계획변경(안)
1) 영축산근린공원
○ 부지면적 : 82,045.4㎡
○ 시설면적 : (당초)21,430.05㎡ → (변경)23,005.97㎡
○ 주요변경내용
- 기반시설 : 도로(79㎡)신설, 광장(176.15㎡) 신설
- 조경시설 : 잔디마당(307.10㎡)신설
- 휴양시설 : 휴게소(128..89㎡) 신설, 야외긴테이블의자 (1기) 신설
장의자 (1기) 증설
- 교양시설 : 도서관(240.05㎡) 신설, 정원치유센터(321.34㎡) 신설
- 편익시설 : 주차장(323.39㎡) 신설
- 관리시설 : 종합안내판(1기) 증설
- 녹지 및 기타: 녹지(1,575.92㎡) 감소

라.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9:00 ~ 18:00)
바.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3)
사.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축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가. 총괄표(위치 : 노원구 월계동 산10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82,045.40	21,430.05	1	2,381.02	7,986.27	79	82,045.40	23,005.97	4	2,732.64	8,484.59	83	증) 1,575.92㎡ 증) 4기
기반시설	소계	9,659.91	9,659.91					9,915.06	9,915.06					증) 255.15㎡
	도로	6,290.65	6,290.65					6,369.65	6,369.65					증) 79.00㎡
	광장	3,369.26	3,369.26					3,545.41	3,545.41					증) 176.15㎡
조경시설		945.37	945.37				13	1,252.47	1,252.47				13	증) 307.10㎡
휴양시설		2,352.84	2,352.84				14	2,481.73	2,481.73				17	증) 128.89㎡ 증) 3기
유희시설		847.66	847.66				6	847.66	847.66				6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3,333.30	3,333.30	1	2,381.02	7,986.27	12	3,333.30	3,333.30	1	2,381.02	7,986.27	12	
교양시설	13,000.00	3,940.00				13	13,561.39	4,501.39	3	351.62	498.32	13	증) 561.39㎡
편익시설	193.00	193.00					516.39	516.39					증) 323.39㎡
관리시설	157.97	157.97				21	157.97	157.97				22	증) 1기
녹 지	51,555.35						49,979.43						감) 1,575.92㎡
시 설 율 (법정 40%)	(21,430.05 / 82,045.40) × 100 = 26.11%						(23,005.97 / 82,045.40) × 100 = 28.04%						
건 폐 율 (법정 10%)	(2,381.02 / 82,045.40) × 100 = 2.90%						(2,732.64 / 82,045.40) × 100 = 3.33%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82,045.40	21,430.05		1	2,381.02	7,986.27	79			82,045.40	23,005.97		4	2,732.64	8,484.59	83	증) 1,575.92㎡ 증) 4기
기반시설	소 계			9,659.91	9,659.91								9,915.06	9,915.06						증) 255.15㎡
	도로		전지역	6,290.65	6,290.65							전지역	6,369.65	6,369.65						증) 79.00㎡
	(도시계획도로)		870-3	(540)	(540)							870-3	(540)	(540)						
			568-2대 일대	(125.0)	(125.0)							568-2대 일대	(125.0)	(125.0)						
	광장	가	8개소	3,369.26	3,369.26						가	9개소	3,545.41	3,545.41						증) 176.15㎡
		가-1	월계동 산130-3	859.00	859.00					(6)	가-1	월계동 산130-3	859.00	859.00					(6)	장의자(⑤) 6기
		가-2	월계동 566-5	764.64	764.64						가-2	월계동 566-5	764.64	764.6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조경시설	소계			945.37	945.37					13			1,252.47	1,252.47					13	증) 307.10㎡
		가-3	월계동 547-61공	827.35	827.35						가-3	월계동 547-61공	827.35	827.35						
		가-4	월계동 산120-5임	311.97	311.97						가-4	월계동 산120-5임	311.97	311.97						
		가-5	월계동 산120-5임	192.34	192.34						가-5	월계동 산120-5임	192.34	192.34						
		가-6	월계동 산117-6임	233.46	233.46						가-6	월계동 산117-6임	233.46	233.46						
		가-7	월계동 산114-2임	97.27	97.27						가-7	월계동 산114-2임	97.27	97.27						
		가-8	월계동 127-7임	83.23	83.23						가-8	월계동 127-7임	83.23	83.23						
											가-9	월계동 534-223	176.15	176.15					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전	연못	나	월계동 산130-3	552.00	552.00						나	월계동 산130-3	552.00	552.00						
	그늘시렁	①	9개소	(233.00)	(233.00)					13	①	9개소	(233.00)	(233.00)					13	
		①-1	월계동 산114-2 (휴게소(다-1) 내)	(32.00)	(32.00)					2	①-1	월계동 산114-2 (휴게소(다-1) 내)	(32.00)	(32.00)					2	
		①-2	월계동 산125-8 (체력단련장(바-3)내)	(16.00)	(16.00)					1	①-2	월계동 산125-8 (체력단련장(바-3)내)	(16.00)	(16.00)					1	
		①-4	월계동 산125-9 (체력단련장(바-1)내)	(57.00)	(57.00)					2	①-4	월계동 산125-9 (체력단련장(바-1)내)	(57.00)	(57.00)					2	
		①-5	월계동 산130-3 (휴게소(다-4) 내)	(16.00)	(16.00)					1	①-5	월계동 산130-3 (휴게소(다-4) 내)	(16.00)	(16.00)					1	
		①-6	월계동 산120-5임 (공장(가-4)내)	(16.00)	(16.00)					1	①-6	월계동 산120-5임 (공장(가-4)내)	(16.00)	(16.00)					1	
		①-7	월계동 산120-5임 (공장(가-5)내)	(32.00)	(32.00)					2	①-7	월계동 산120-5임 (공장(가-5)내)	(32.00)	(32.00)					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①-8	월계동 산120-5임 (유희시설(라-5)내)	(32.00)	(32.00)					2	①-8	월계동 산120-5임 (유희시설(라-5)내)	(32.00)	(32.00)					2	
		①-9	월계동 산117-6 (괴정(가-6)내)	(16.00)	(16.00)					1	①-9	월계동 산117-6 (괴정(가-6)내)	(16.00)	(16.00)					1	
		①-10	월계동 산114-2임 (괴정(가-7)내)	(16.00)	(16.00)					1	①-10	월계동 산114-2임 (괴정(가-7)내)	(16.00)	(16.00)					1	
합계		사	7개소	318.80	318.80						사	7개소	318.80	318.80						
		사-1	월계동 547-61	59.23	59.23						사-1	월계동 547-61	59.23	59.23						
		사-2	월계동 547-61	74.06	74.06						사-2	월계동 547-61	74.06	74.06						
		사-3	월계동 547-61	24.84	24.84						사-3	월계동 547-61	24.84	24.84						
		사-4	월계동 547-61	10.62	10.62						사-4	월계동 547-61	10.62	10.6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주요시설	화계	사-5	월계동 산120-5	85.76	85.76						사-5	월계동 산120-5	85.76	85.76						
		사-6	월계동 산120-5	58.40	58.40						사-6	월계동 산120-5	58.40	58.40						
		사-7	월계동 산127-7	5.89	5.89						사-7	월계동 산127-7	5.89	5.89						
	수생비오톱	차	월계동 547-61	74.57	74.57						차	월계동 547-61	74.57	74.57						
	잔디마당										타	월계동 534-1	307.10	307.10						선설
부속시설	소계			2,352.84	2,352.84					14			2,481.73	2,481.73					17	증) 128.89㎡ 증) 3기
	휴게소	다	6개소	2,352.84	2,352.84						다	7개소	2,481.73	2,481.73						증) 128.89㎡
		다-1	월계동 산114-2	1,250.00	1,250.00					(6)	다-1	월계동 산114-2	1,250.00	1,250.00					(6)	그늘시렁(①-1) 2기 장의자(⑤) 4기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다-3	월계동 산130	73.00	73.00						다-3	월계동 산130	73.00	73.00						
		다-4	월계동 산130-3	539.00	539.00					(2)	다-4	월계동 산130-3	539.00	539.00					(2)	그늘시렁(①-5) 2기
		다-5	월계동 산130	61.00	61.00						다-5	월계동 산130	61.00	61.00						
		다-6	월계동 547-61	59.84	59.84						다-6	월계동 547-61	59.84	59.84						
		다-7	월계동 산125-11	370.00	370.00						다-7	월계동산125-11	370.00	370.00						
											다-8	월계동 534-1	128.89	128.89						신설
	장의자	⑤	전지역							14	⑤	전지역							16	증) 2기
	야외긴테이블의자										⑫	월계동 534-1대							1	신설 증) 1기

놀 이 시 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소계			847.66	847.66					6			847.66	847.66					6	
	놀이터	라	3개소	847.66	847.66						라	3개소	847.66	847.66						
		라-3	월계동 산131-4	232.00	232.00					(3)	라-3	월계동 산131-4	232.00	232.00					(3)	조합놀이대(⑥) 1기 시이소(⑦) 2기
		라-4	월계동 산125-8	94.00	94.00					(3)	라-4	월계동 산125-8	94.00	94.00					(3)	조합놀이대(⑥) 1기 흔들놀이대(⑧) 2기
		라-5	월계동 산120-5	521.66	521.66						라-5	월계동 산120-5	521.66	521.66						
	조합놀이대	⑥	월계동 산131-4			목조				1	⑥	월계동 산131-4			목조				1	
			월계동 산125-8							1		월계동 산125-8							1	
	시이소	⑦	월계동 산131-4			목조				2	⑦	월계동 산131-4			목조				2	
	흔들놀이대	⑧	월계동 산125-8							2	⑧	월계동 산125-8							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여수시	소계			3,333.30	3,333.30		1	2,381.02	7,986.27	12			3,333.30	3,333.30		1	2,381.02	7,986.27	12	
여수	체력단련장	바	3개소	723.97	723.97						바	3개소	723.97	723.97						
여수	체력단련장	바-1	월계동 산125-9	307.13	307.13					(7)	바-1	월계동 산125-9	307.13	307.13					(7)	철봉(⑨) 3기 평행봉(⑩) 2기 윗몸일으키기(⑪) 2기
여수	체력단련장	바-3	신내동 산136-11	286.00	286.00					(5)	바-3	신내동 산136-11	286.00	286.00					(5)	철봉(⑨) 3기 윗몸일으키기(⑪) 2기
여수	체력단련장	바-4	월계동 산120-5	130.84	130.84						바-4	월계동 산120-5	130.84	130.84						
여수	철봉	⑨	월계동 산125-9			철재	3			3	⑨	월계동 산125-9			철재	3			3	
여수	철봉	⑨	신내동 산136-11			철재	3			3	⑨	신내동 산136-11			철재	3			3	
여수	평행봉	⑩	월계동 산125-9			철재	2			2	⑩	월계동 산125-9			철재	2			2	
여수	윗몸일으키기	⑪	월계동 산125-9			철재	2			2	⑪	월계동 산125-9			철재	2			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시설	구민체육센터	1	월계동 산125-8	2,609.33	2,609.33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지상3층	2,381.02	7,986.27	2		산내동 산136-11			철재				2	
교육시설	소계			13,000.00	3,940.00					13			13,561.39	4,501.39		3	351.62	498.32	13	증) 561.39㎡
	유아숲체험원	카	월계동 산130-3	13,000.00	3,940.00					13	카	월계동 산130-3	13,000.00	3,940.00					13	
	도서관										2	월계동 534-223	240.05	240.05	철골콘크리트조	지상1층	153.86	153.86		신설
	정원치유센터 (1)										3	월계동 534-1	161.55	161.55	철골콘크리트조	지상2층	104.58	251.28		신설
	정원치유센터 (2)										4	월계동 534-1	159.79	159.79	철골콘크리트조	지상1층	93.18	93.18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편의시설	소계			193.00	193.00								516.39	516.39						증) 323.39㎡
	데크쉼터	마	5개소	193.00	193.00						마	5개소	193.00	193.00						
		마-1	월계동 산116-1	17.00	17.00						마-1	월계동 산116-1	17.00	17.00						
		마-2	월계동 산114-2	30.00	30.00						마-2	월계동 산114-2	30.00	30.00						
		마-3	월계동 산130	54.00	54.00						마-3	월계동 산130	54.00	54.00						
		마-4	월계동 산130	40.00	40.00						마-4	월계동 산130	40.00	40.00						
		마-5	월계동 산130	52.00	52.00						마-5	월계동 산130	52.00	52.00						
	주차장										파	월계동 534-223	323.39	323.39						신설
관리시설	소계			157.97	157.97					21			157.97	157.97					22	증) 1기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게시판	②	전지역							3	②	전지역							3	
	종합안내판	③	전지역							6	③	전지역							7	증) 1기
	이정표	④	전지역							12	④	전지역							12	
	D.A	아	2개소	35.42	35.42						아	2개소	35.42	35.42						
		아-1	월계동 547-61	5.99	5.99						아-1	월계동 547-61	5.99	5.99						
		아-2	월계동 547-61	29.43	29.43						아-2	월계동 547-61	29.43	29.43						
	주차장램프	자	월계동 547-61	122.55	122.55						자	월계동 547-61	122.55	122.55						
녹지 및 기타	소계			51,555.35									49,979.43							감) 1,575.92㎡
	녹지			51,555.35									49,979.43							

다.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307	6,290.65				
변경					3,343	6,369.65				
당초	소로	소 계			94	319.65				
변경										
당초		3류	1	6	(90)	(540.0)	연결로	월계동 870-3	산116임	도시계획도로
당초			2	3.7	(55)	(125.0)	도로	월계동 568-2대	산106-4임	도시계획도로
당초			3	3.4	94	319.65	보행로	산 106-5임	576-1 전	
당초	산책로	소 계			3,213	5,971.0				
변경					3,249	6,050.0				
당초			3	2.0	45	90.0	산책로	월계동 산108-1	월계동 산108-2	
당초			5	1.5	212	318.0	산책로	월계동 산125-8	체력단련장(바-1)	
당초			6	1.5	94	141.0	산책로	산책로5 분기점	월계동 산125-11	
당초			14	2.0	77	155.0	산책로	월계동 산106-2	월계동 산106-5	
당초			17	1.5	51	76.0	산책로	휴게소(다-1)	월계동 산114-4	
당초			19	2	19	59.0	산책로	월계동 산116-2	산책로22 종점	
당초			21	1.5	65	97.0	산책로	산책로48 종점	월계동 산117-1	
당초			22	3.0	13	40.0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48 분기점	
당초			23	1.5	114	172.0	산책로	월계동 산117-1	광장(가-5)	
당초			25	1.5	324	486.0	산책로	월계동 산130	산책로43 분기점	
당초			26	2.0	298	596.0	산책로	월계동 산130	광장(가-1)	
당초			27	1.5	64	81.0	산책로	월계동 산127-7	월계동 산127-3	
당초			30	2.0	17	33.0	산책로	월계동 산130	산책로26 분기점	
당초			31	2.0	116	232.0	산책로	월계동 산130	연못(나)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7	2.0	73	147.0	산책로	월계동 산114-2	산책로 47 종점	
당초			38	1.5	42	63.0	산책로	산책로37 분기점	산책로39 분기점	
당초			39	1.5	62	93.0	산책로	산책로17 분기점	산책로37 분기점	
당초			43	1.5	66	99.0	산책로	휴게소(다-5)	광장(가-1)	
당초			44	1.5	6	10.0	산책로	산책로45 분기점	월계동 산125-11	
당초			45	1.5	47	71.0	산책로	산책로5 분기점	월계동 산125-11	
당초			46	1.5	56	84.0	산책로	월계동 산114-2	산책로50 분기점	
당초			47	1.5	66	99.0	산책로	광장(가-7)	산책로17 시점	
당초			48	1.5	68	102.0	산책로	월계동 산 114-4	산책로22 종점	
당초			49	1.5	94	140.0	산책로	광장(가-7)	산책로48 분기점	
당초			50	2.0	41	162.0	산책로	월계동 산 114-2	광장(가-7)	
당초			52	1.8	15	27.0	산책로	월계동 산125-11	산책로5 분기점	
당초			55	2.0	20	40.0	산책로	산책로 38	월계동 산108-24	
당초			57	5.3	39	353.0	산책로	광장(가-2)	주차장램프(자)	
당초			58	2.4	4	9.0	산책로	광장(가-3)	월계동 547-61	
당초			59	2.0	17	35.0	산책로	광장1(가-1)	월계동 산131-4	
당초			60	2.0	12	30.0	산책로	휴게소9(다-9)	월계동 산125-9	
당초			64	2.0	61	121.0	산책로	산책로26 분기점	산책로31 분기점	
당초			65	1.8	135	270.0	산책로	유아체험원(카)	데크쉼터(마-4)	
당초			66	1.8	126	226.0	산책로	데크쉼터(마-4)	데크쉼터(마-3)	
당초			67	1.8	9	17.0	산책로	데크쉼터(마-3)	월계동 산130	
당초			68	1.8	102	196.0	산책로	월계동 산130	데크쉼터(마-5)	
당초			69	1.8	32	59.0	산책로	데크쉼터(마-5)	휴게소(다-5)	
당초			70	1.8	200	351.0	산책로	월계동 산114-1	월계동 산114-4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71	1.8	61	114.0	산책로	데크쉼터(마-1)	월계동 산116-1	
당초			72	2.5	107	260.0	산책로	광장(가-4)	광장(가-5)	
당초			73	1.5	70	105.0	산책로	산책로23 분기점	산책로72 분기점	
당초			74	1.5	6	11.0	산책로	산책로23 분기점	산책로72 분기점	
당초			75	1.5	67	101.0	산책로	광장(가-8)	산128-1임	
신설			76	3.0	15	47.0	산책로	월계동 534-225	광장(가-9)	
신설			77	1.5	21	32.0	산책로	산책로76 시점	광장(가-9)	

조성계획도[변경전]

영축산근린공원

Scale : 1/2,000(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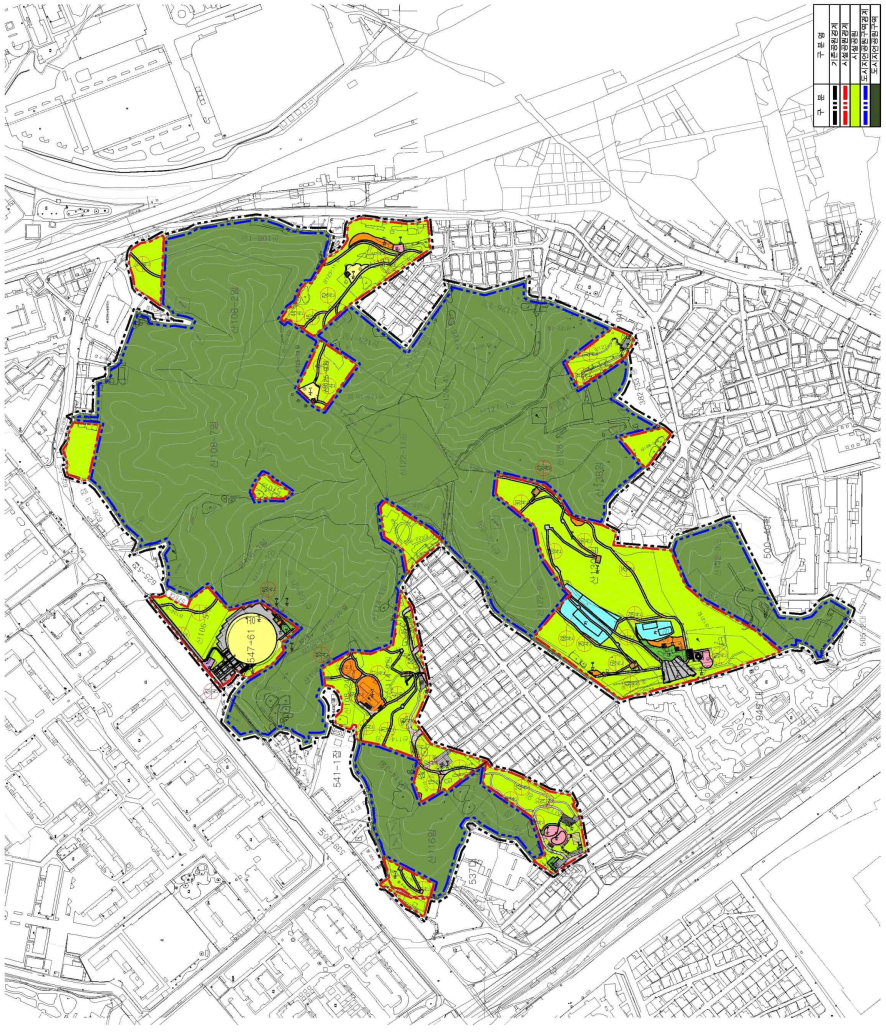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영축산근린공원

Scale : 1/2,000(A1)

N

0 50 1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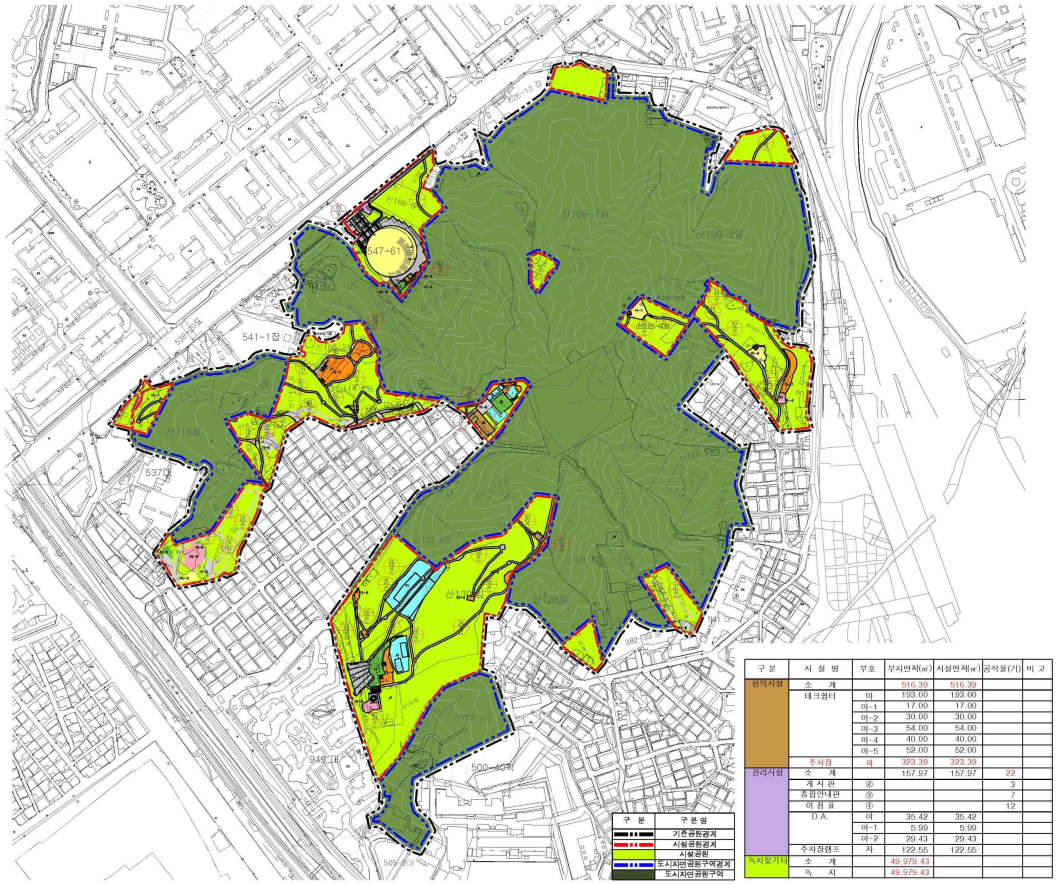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합	계		82,045.4	23,005.97	83	
기반시설	소 계		9,915.06	9,915.06		
	도 로	㉮	6,369.65	6,369.65		
	광 장	가	3,545.41	3,545.41		
		가-1	859.00	859.00	(6)	
		가-2	764.64	764.64		
		가-3	827.35	827.35		
		가-4	311.97	311.97		
		가-5	192.34	192.34		
		가-6	233.46	233.46		
		가-7	97.27	97.27		
		가-8	83.23	83.23		
		가-9	176.15	176.15		
조경시설	소 계		1,252.47	1,252.47	13	
	그늘시렁	①	(233.00)	(233.00)	13	
		①-1	(32.00)	(32.00)	2	
		①-2	(16.00)	(16.00)	1	
		①-4	(57.00)	(5.00)	2	
		①-5	(16.00)	(16.00)	1	
		①-6	(16.00)	(16.00)	1	
		①-7	(32.00)	(32.00)	2	
		①-8	(32.00)	(32.00)	2	
		①-9	(16.00)	(16.00)	1	
		①-10	(16.00)	(16.00)	1	
	연 못	나	552.00	552.00		
	화 계	사	318.80	318.80		
		사-1	59.23	59.23		
		사-2	74.06	74.06		
		사-3	24.84	24.84		
		사-4	19.62	19.62		
		사-5	85.76	85.76		
		사-6	58.40	58.40		
		사-7	5.89	5.89		
	수생비오톱	사	74.57	74.57		
	관디마당	㉯	307.10	307.10		
휴양시설	소 계		2,481.73	2,481.73	17	
	휴 게 소	다	2,481.73	2,481.73		
		다-1	1,250.00	1,250.00	(6)	
		다-3	73.00	73.00	(2)	
		다-4	539.00	539.00		
		다-5	61.00	61.00		
		다-6	59.84	59.84		
		다-7	370.00	370.00		
		다-8	129.89	129.89		
	쉼 의 자	⑤			16	
	야외간이테이블의자	㉱			1	
유희시설	소 계		847.66	847.66	6	
	놀 이 터	라	847.66	847.66		
		라-3	232.00	232.00	(3)	
		라-4	94.00	94.00	(3)	
		라-5	521.66	521.66		
	조합농어대	⑥			2	
	시 이 소	⑦			2	
	튼튼농어대	⑧			2	
운동시설	소 계		3,333.30	3,333.30	12	
	체력단련장	바	723.97	723.97		
		바-1	307.13	307.13	(7)	
		바-3	286.00	286.00	(5)	
		바-4	130.84	130.84		
	철 봉	⑨			6	
	평 행 봉	⑩			2	
	물품입출키기	⑪			4	
	구민체육센터	1	2,609.33	2,609.33		
교양시설	소 계		13,561.39	4,501.39	13	
	유아숲체험원	키	13,000.00	3,940.00	13	
	도 서 관	2	240.05	240.05		
	청원사유센터(1)	3	161.55	161.55		
	청원사유센터(2)	4	159.79	159.79		

구 분	시 설 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편익시설	소 계		516.39	516.39		
	대크쉼터	마	193.00	193.00		
		마-1	17.00	17.00		
		마-2	30.00	30.00		
		마-3	54.00	54.00		
		마-4	40.00	40.00		
		마-5	52.00	52.00		
	주차장	바	323.39	323.39		
관리시설	소 계		157.97	157.97	22	
	게 시 판	②			3	
	종합안내판	③			7	
	이 정 표	④			12	
	D.A.	아	35.42	35.42		
		아-1	5.99	5.99		
		아-2	29.43	29.43		
	주차장램프	자	122.55	122.55		
녹지및기타	소 계		49,979.43			
	녹 지		49,979.43			

◈ 금천구공고 제2025-14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3-88호(2022.08.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된 기아 시흥 서비스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열람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28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 칭 : 기아 시흥 서비스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 : 중로 1-383, B=20(8)m, L=470(150)m
  소로 2-11, B=8~10(6~8)m, L=290(101)m
  ※ ( )는 특별계획구역 내 사항임
라. 시행자의 법인명 및 주소(변경없음)
  1) 법인명 : 기아㈜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1) 착수일 : 2025.02.
  2) 준공예정일 : 2025.11.28.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금천구청 건축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자. 열람서류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28번지 일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기아 시흥 서비스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도로개설 공사

○ 사업규모 : 중로 1-383, B=20(8)m, L=470(150)m
소로 2-11, B=8~10(6~8)m, L=290(101)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기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권리		
1	시흥동	992-45	장	3,331.4㎡	834.9㎡	공장	기아자동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2	시흥동	992-44	장	5,788.8㎡	325.4㎡	공장	기아자동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4	시흥동	996-20	구	17.0㎡	17.0㎡	공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흥동 996-4 에서 분할
5	시흥동	996-3	장	12,839.9㎡	154.3㎡	공장	기아자동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6	시흥동	992-28	장	5,196.7㎡	262.2㎡	공장	기아자동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 동작구공고 제2025-1469호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41호(1997. 2.14.) 및 동작구고시 제1998-30호(1998. 5.25.)로 최초 구역 지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01-4호(2001. 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9호(2002. 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0호(2002. 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0호(2006.12.14.), 동작구고시 제2007-1호(2007. 1. 4.), 동작구고시 제2007-85호(2007.11.29.), 동작구고시 제2008-38호(2008. 8.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2009. 4.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2017. 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3호(2020. 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2020. 6.25.), 동작구고시 제2020-105호(2020. 7. 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27호(2021. 8. 5.), 동작구고시 제2022-29호(2022. 2.10.), 동작구고시 제2022-108호(2022. 7. 7.), 동작구고시 제2022-151호(2022.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7호(2023.10.26.), 동작구고시 제2024-139호(2024.11.21.)로 변경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동 작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장승배기로 70, 4층, ☎ 02-820-1078)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사.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관계도서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5-1593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06.23.)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명칭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대편익동 용도변경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체 면적 및 규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h>비 고</th></tr>
<tr><td>지역, 지구</td><td colspan="3">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정류장</td><td rowspan="2">변경없음</td></tr>
<tr><td>대지면적</td><td colspan="3">87,111.00 ㎡</td></tr>
<tr><td>건축규모</td><td colspan="3">지하 1층, 지상 10층</td><td>총 4개동</td></tr>
<tr><td>주 용 도</td><td colspan="3">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td><td rowspan="11">변경없음</td></tr>
<tr><td>구 분</td><td>기 존</td><td>변경후</td><td>증 감</td></tr>
<tr><td>건축면적</td><td>23,124.01㎡</td><td>23,124.01㎡</td><td>-</td></tr>
<tr><td>연 면 적</td><td>110,634.00㎡</td><td>110,634.00㎡</td><td>-</td></tr>
<tr><td>용 적 률 산정연면적</td><td>90,805.83㎡</td><td>90,805.83㎡</td><td>-</td></tr>
<tr><td>건 폐 율</td><td>26.54%</td><td>26.54%</td><td>-</td></tr>
<tr><td>용 적 율</td><td>104.24%</td><td>104.24%</td><td>-</td></tr>
<tr><td rowspan="2">주차대수</td><td colspan="2">법정(최고):538대</td><td rowspan="2">-</td></tr>
<tr><td>계획 : 646대</td><td>계획 : 646 대</td></tr>
<tr><td rowspan="2">조 경</td><td colspan="2">법정대상 아님</td><td>-</td></tr>
<tr><td>계획:1,745.57㎡</td><td>계획:1,745.57㎡</td><td>-</td></tr>
</table>

– 층별 면적

층 별		층별면적(㎡)	비 고
본관동	지하 1층	12,698.69	변경없음
	지상 1층	10,029.97	변경없음
	지상 2층	7,031.33	변경없음
	지상 3층	10,931.50	변경없음
	지상 4층	5,491.36	변경없음
	지상 5층	9,681.43	변경없음
	지상 6층	5,155.90	변경없음
	지상 7층	8,612.27	변경없음
	지상 8층	8,080.09	변경없음
	지상 9층	7,546.06	변경없음
	지상 10층	1,722.50	변경없음
	소 계	86,981.10	변경없음
부속 상가동	지하 1층	5,523.09	변경없음
	지상 1층	3,924.30	변경없음
	지상 2층	3,534.21	변경없음
	소 계	12,981.60	변경없음
정비동	지상 1층	3,744.00	변경없음
	소 계	3,744.00	변경없음
부대 편익동	지하 1층	1,606.39	변경없음
	지상 1층	1,726.15	변경없음
	지상 2층	1,795.32	변경없음
	지상 3층	1,799.44	변경없음
	소 계	6,927.30	변경없음
	총 계	110,634.00	변경없음

– 시설별 면적

구분	시설용도		기 존	변경후	증감(㎡) (금회-기존)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기 존	변경후
운수시설	주시설	대합실	6,516.67	6,516.67	-	73.78	73.78
		승강장1) (승차대기장) 실내	1,120.00	1,120.00	-		
		승강장1) (승차대기장) 실외	1,235.53	1,235.53	-		
		업무시설	8,916.44	8,916.44	-		
		세차장	912.00	912.00	-		
		박차장2)	31,520.13	31,520.13	-		
		발코니	1,085.44	1,085.44	-		
		전체공유	2,267.46	2,267.46	-		
		소 계	53,573.67	53,573.67	-		
	부대시설	정비고	2,832.00	2,832.00	-	16.62	16.62
		업무시설	975.65	975.65	-		
		주유소	600.30	600.30	-		
		기계실	6,396.58	6,396.58	-		
		폐수처리장	666.12	666.12	-		
		전체공유	599.89	599.89	-		
		소 계	12,070.54	12,070.54	-		
	편익시설	업무시설	1,726.15	1,409.59	316.56	9.59	9.59
		근린생활시설	2,690.10	3,006.66	+ 316.56		
		판매시설	1,410.58	1,410.58	-		
		복도, 홀	521.52	521.52	-		
		전체공유	618.39	618.39	-		
		소 계	6,966.74	6,966.74	-		
	운수시설 소계		72,610.95	72,610.95	-	100.00	100.00
비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2,006.93	2,006.93	-	2.81	2.81
	업무시설		8,609.14	8,609.14	-	12.06	12.06
	판매시설		38,635.65	38,635.65	-	54.13	54.13
	제2종근린생활시설		466.22	466.22	-	0.65	0.65
	종교시설		134.96	134.96	-	0.19	0.19
	복도, 홀		7,274.23	7,274.23	-	10.19	10.19
	발코니		3,386.71	3,386.71	-	4.74	4.74
	운동시설		901.84	901.84	-	1.26	1.26
	전체공유		9,826.20	9,826.20	-	13.77	13.77

구분	시설용도	기 존	변경후	증감(㎡) (금회-기존)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기 존	변경후
	외부계단	137.13	137.13	-	0.19	0.19
	소 계	71,379.01	71,379.01	-	100.00	100.00
합 계 (운수+비운수)		143,989.96	143,989.96	옥외시설 포함	변경없음	
합 계 (건축물)		110,634.00	110,634.00			

※ 승강장, 정류장소, 박차장 실외면적은 시설면적에 산입되나, 건축연면적 산정시 제외.
※ 운수시설 면적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 제8조의 7' 에 따른 별표의 시설기준 이상 확보 함.

라. 변경사항 상세

구 분	해당층	시설용도	면적(㎡)	비 고
부대 편익동	지상1층	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16.56	운수시설내 세부용도 변경
	운수시설내 용도변경 총면적		316.56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대표 박주형[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 완료일 ~ 2025.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반포동	19-4	대	86,725.10	86,725.1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			
반포동	19-17	대	273.90	273.9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			
반포동	19-18	대	112.00	112.0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			
계			87,110.00	87,110.00					

아.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

자.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강남구공고 제2025-1870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에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4)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	증) 4,258.0	4,258.0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관련도서: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련도면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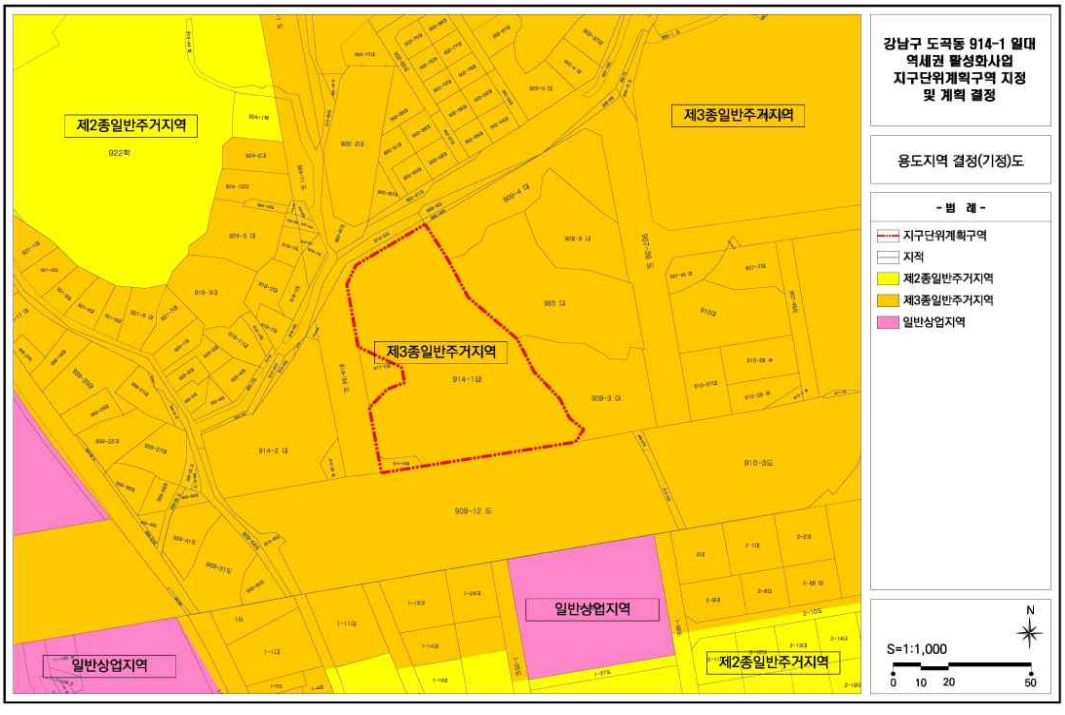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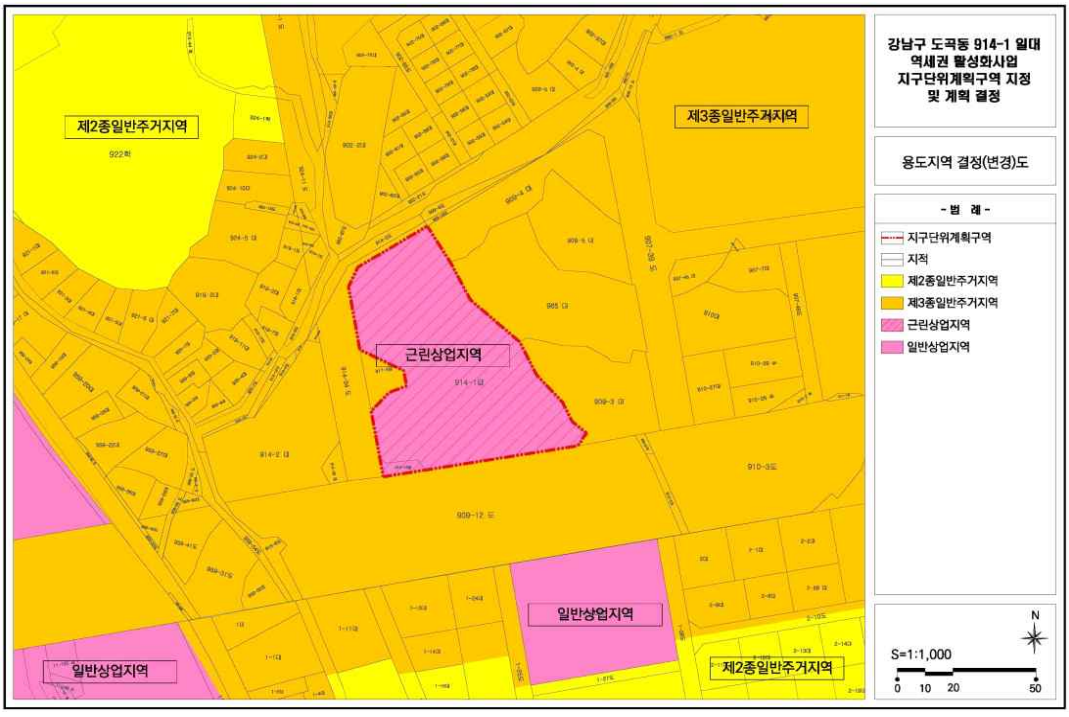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강남구공고 제2025-1881호

대모산근린공원(개포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86호(2023.7.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대모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 2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 원 명: 대모산근린공원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04-1 일대
다. 면　　적: 229,732.70㎡
- 개포지구: 62,813.40㎡
- 일원지구: 149,361.30㎡
- 구룡지구: 17,558.00㎡

라.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별첨
마.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993)
사.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비치
아. 의견제출: 서면 접수

도시계획시설(대모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대모산근린공원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29,732.70	23,038.63	2	218.98	116.88	112	229,732.70	34,315.98	4	278.98	228.88	195	증 11,277.35㎡
공원시설 구역	소 계	229,732.70	23,038.63	2	218.98	116.88	112	229,732.70	34,315.98	4	278.98	228.88	195	증 11,277.35㎡
	개포지구	62,813.40	3,104.25	-	-	-	9	62,813.40	14,381.60	2	60.00	60.00	92	증 11,277.35㎡
	일원지구	149,361.30	15,239.42	1	52.00	52.00	31	149,361.30	15,239.42	1	52.00	52.00	31	변경 없음
	구룡지구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변경 없음
시설율 (법정40%)		23,038.63 / 229,732.70 × 100% = 10.03%						34,315.98 / 229,732.70 x 100 = 14.94%						
건폐율 (법정10%)		218.98 / 229,732.70 x 100 = 0.10%						278.98 / 229,732.70 x 100= 0.12%						

1-1. 대모산근린공원 개포지구 총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2,813.40	3,104.25	-	-	-	9	62,813.40	14,381.60	2	60.00	60.00	92	
기반시설	소계	2,737.75	2,737.75	-	-	-	-	4,987.60	4,987.60	-	-	-	-	
	도로	2,737.75	2,737.75	-	-	-	-	4,812.80	4,812.80	-	-	-	-	증 2,075.05㎡
	광장	-	-	-	-	-	-	174.80	174.80	-	-	-	-	증 174.80㎡
휴양시설		366.50	366.50	-	-	-	9	279.00	279.00	-	-	-	74	감 87.50㎡ (증 65기)
유희시설		-	-	-	-	-	-	698.00	698.00	-	-	-	4	증 698.00㎡ (증 4기)
운동시설		-	-	-	-	-	-	5,969.00	5,969.00	-	-	-	-	증 5,969.00㎡
교양시설		-	-	-	-	-	-	994.00	994.00	-	-	-	-	증 994.00㎡
편익시설		-	-	-	-	-	-	708.00	708.00	2	60.00	60.00	-	증 708.00㎡
관리시설		-	-	-	-	-	-	-	-	-	-	-	10	(증 10기)
그 밖의 시설		-	-	-	-	-	-	746.00	746.00	-	-	-	4	증 746.00㎡ (증 4기)
녹지 및 기타		59,709.15	-	-	-	-	-	48,431.80	-	-	-	-	-	감 11,277.35㎡

1-2. 대모산근린공원 개포지구 시설조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	62,813.40	3,104.25	-	-	-	-	9		-	62,813.40	14,381.60	-	-	60.00	60.00	92	증 11,277.35㎡
기반시설	소계		-	2,737.75	2,737.75	-	-	-	-	-		-	4,987.60	4,987.60	-	-	-	-	-	증 2,249.85㎡
	도로		-	2,737.75	2,737.75	-	-	-	-	-		-	4,812.80	4,812.80	-	-	-	-	-	증 2,075.05㎡
	광장		-	-	-	-	-	-	-	-	가	-	174.80	174.80	-	-	-	-	-	증 174.80㎡
휴양시설	소계	-	-	366.50	366.50	-	-	-	-	9		-	279.00	279.00	-	-	-	-	74	감 87.50㎡ (증 65기)
	휴게소	가	개포동 산104	366.50	366.50	-	-	-	-	-		-	-	-	-	-	-	-	-	감 366.50㎡
	숲속 쉼터		-	-	-	-	-	-	-	-	나	-	279.00	279.00	-	-	-	-	-	증 279.00㎡
			-	-	-	-	-	-	-	-	나-1	개포동 105답	(46.00)	(46.00)	-	-	-	-	-	증 46.00㎡
			-	-	-	-	-	-	-	-	나-2	개포동 104-1전	(68.00)	(68.00)	-	-	-	-	-	증 68.00㎡
			-	-	-	-	-	-	-	-	나-3	개포동 113전	(79.00)	(79.00)	-	-	-	-	-	증 79.00㎡
			-	-	-	-	-	-	-	-	나-4	개포동 113전	(86.00)	(86.00)	-	-	-	-	-	증 86.00㎡
	파고라	①	휴게소	-	-	-	-	-	-	1	①	-	-	-	-	-	-	-	6	(증 5기)
	등의자		-	-	-	-	-	-	-	-	②	-	-	-	-	-	-	-	47	(증 47기)
	평의자	②	휴게소	-	-	-	-	-	-	8	③	-	-	-	-	-	-	-	12	(증 4기)
	앉음벽		-	-	-	-	-	-	-	-	④	개포동 113전	-	-	-	-	-	-	9	(증 9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어린이시설	소계		-	-	-	-	-	-	-	-		-	698.00	698.00	-	-	-	-	4	지0 698.00㎡ (증 471)
	자연놀이터		-	-	-	-	-	-	-	-	다	개포동 110답	698.00	698.00	-	-	-	-	-	지0 698.00㎡
	놀이시설		-	-	-	-	-	-	-	-	⑤	개포동 110답	-	-	-	-	-	-	4	(증 471)
노년이시설	소 계		-	-	-	-	-	-	-	-		-	5,969.00	5,969.00	-	-	-	-	-	지0 5,969.00㎡
	파크골프장		-	-	-	-	-	-	-	-	라	개포동 104-1전	5,969.00	5,969.00	-	-	-	-	-	지0 5,969.00㎡
교육시설	소 계		-	-	-	-	-	-	-	-		-	994.00	994.00	-	-	-	-	-	지0 994.00㎡
	생태학습원		-	-	-	-	-	-	-	-	마	-	994.00	994.00	-	-	-	-	-	지0 994.00㎡
			-	-	-	-	-	-	-	-	마-1	개포동 116-2전	(128.00)	(128.00)	-	-	-	-	-	지0 128.00㎡
			-	-	-	-	-	-	-	-	마-2	개포동 116-2전	(206.00)	(206.00)	-	-	-	-	-	지0 206.00㎡
			-	-	-	-	-	-	-	-	마-3	개포동 116-1전	(660.00)	(660.00)	-	-	-	-	-	지0 660.00㎡
편의시설	소 계		-	-	-	-	-	-	-	-		-	708.00	708.00	-	-	60.00	60.00	-	지0 708.00㎡
	주차장		-	-	-	-	-	-	-	-	바	-	628.00	628.00	-	-	-	-	-	지0 628.00㎡
			-	-	-	-	-	-	-	-	바-1	개포동 산 60임	(550.00)	(550.00)	-	-	-	-	-	지0 550.00㎡
			-	-	-	-	-	-	-	-	바-2	개포동 산 61임	(78.00)	(78.00)	-	-	-	-	-	지0 78.00㎡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편의시설	화장실		-	-	-	-	-	-	-	-	1	개포동 산 61임	37.50	37.50	-	-	28.00	28.00	-	증 37.50㎡
	클럽하우스		-	-	-	-	-	-	-	-	2	개포동 산 61임	42.50	42.50	-	-	32.00	32.00	-	증 42.50㎡
관리시설	소계		-	-	-	-	-	-	-	-		-	-	-	-	-	-	-	10	(증 107기)
	공원형 안내판		-	-	-	-	-	-	-	-	⑦	개포동 산 61임	-	-	-	-	-	-	1	(증 17기)
	종합 안내판		-	-	-	-	-	-	-	-	⑧	개포동 산 61임	-	-	-	-	-	-	1	(증 17기)
	시설 안내판		-	-	-	-	-	-	-	-	⑨	개포동 산 61임	-	-	-	-	-	-	1	(증 17기)
	방향 안내판		-	-	-	-	-	-	-	-	⑩	개포동 산 61임	-	-	-	-	-	-	4	(증 47기)
	이동식 볼라드		-	-	-	-	-	-	-	-	⑪	개포동 산 60임	-	-	-	-	-	-	3	(증 37기)
그 밖의 시설	소계		-	-	-	-	-	-	-	-		-	746.00	746.00	-	-	-	-	4	증 746.00㎡ (증 47기)
	동물놀이터		-	-	-	-	-	-	-	-	사	개포동 109답	746.00	746.00	-	-	-	-	-	증 746.00㎡
	동물놀이 시설		-	-	-	-	-	-	-	-	⑥	개포동 109답	-	-	-	-	-	-	4	(증 47기)
녹지 및 기타	소계	-	-	59,709.15	-	-	-	-	-	-		-	-	-	-	-	-	-	-	녹지율 : 77.25%
	녹지	-	-	59,709.15	-	-	-	-	-	-		-	48,431.80	-	-	-	-	-	-	감 11,277.35㎡

1-3. 대모산근린공원 개포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926.8	2,737.75	-	-	-	
변 경					2,392.2	4,812.80				
당 초	소로	계			-	-				
변 경					447.5	1,503.10				
신 설		3	1	3.5	159.3	559.3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	
신 설		3	2	3.5	165.8	580.10	진입로	광장 가	공원경계	
신 설		3	3	3.0	122.4	363.70	연결로	산책로 1	광장 가	
당 초	산책로	계			926.8	2,737.75				
변 경					1,944.1	3,309.70				
폐 지		-	1	3.0	502.1	1,506.18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폐 지		-	2	3.0	173.5	520.46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1	
폐 지		-	3	3.0	208.7	626.15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 가	
폐 지		-	4	2.0	42.5	84.9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	
신 설		-	1	1.0 - 3.0	144.0	168.8	진입로	공원 경계	소로 3-3	
신 설		-	2	2.0	115.9	232.2	산책로	산책로 1	소로 3-3	
신 설		-	3	2.0	24.7	50.8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산책로	-	4	2.7	13.6	39.3	연결로	산책로 2	생태학습원 마-3	
신 설		-	5	1.5	14.4	21.6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	
신 설		-	6	1.5	75.1	113.2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2	
신 설		-	7	2.0	70.1	147.1	산책로	산책로 8	소로 3-3	
신 설		-	8	1.5	42.0	63.1	연결로	자연놀이터 다	소로 3-3	
신 설		-	9	1.5	33.2	50.6	연결로	동물놀이터 사	광장 가	
신 설		-	10	1.2	53.4	64.1	연결로	산책로 1	숲속쉼터 나-4	
신 설		-	11	1.5	139.3	248.0	진입로	숲속쉼터 나-4	공원 경계	
신 설		-	12	1.8	766.3	1,406.5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14	
신 설		-	13	1.2	29.6	35.5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2	
신 설		-	14	1.5- 5.0	19.9	51.7	연결로	광장 가	산책로 12	
신 설		-	15	1.8	211.1	385.7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14	
신 설		-	16	1.2	107.0	128.7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2	
신 설		-	17	1.2	28.9	34.8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2	
신 설		-	18	1.2	20.7	25.5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13	
신 설		-	19	1.2	14.8	17.8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2	
신 설		-	20	1.2	11.6	13.9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2	
신 설		-	21	1.2	9.1	10.8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13	

2-1. 대모산근린공원 일원지구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49,361.30	15,239.42	1	52.00	52.00	31	149,361.30	15,239.42	1	52.00	52.00	31	
기반시설	소계	8,846.58	8,846.58	-	-	-	-	8,846.58	8,846.58	-	-	-	-	
	도로	8,846.58	8,846.58	-	-	-	-	8,846.58	8,846.58	-	-	-	-	
	광장	-	-	-	-	-	-	-	-	-	-	-	-	
조경시설		3,755.43	3,755.43	-	-	-	26	3,755.43	3,755.43	-	-	-	26	
휴양시설		136.21	136.21	-	-	-	3	136.21	136.21	-	-	-	3	
유희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600.00	600.00	-	-	-	-	600.00	600.00	-	-	-	-	
교양시설		1,250.00	1,250.00	-	-	-	2	1,250.00	1,250.00	-	-	-	2	
편익시설		651.20	651.20	1	52.00	52.00	-	651.20	651.20	1	52.00	52.00	-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134,121.88	-	-	-	-	-	134,121.88	-	-	-	-	-	

2-2. 대모산근린공원 일원지구 시설조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	149,361.30	15,239.42	-	1	52.00	52.00	31	-	-	149,361.30	15,239.42	-	1	52.00	52.00	31	
기반시설	소계	-	-	8,846.58	8,846.58	-	-	-	-	-	-	-	8,846.58	8,846.58	-	-	-	-	-	
	도로	-	-	8,846.58	8,846.58	-	-	-	-	-	-	-	8,846.58	8,846.58	-	-	-	-	-	
조경시설	소계	-	-	3,755.43	3,755.43	-	-	-	-	26	-	-	3,755.43	3,755.43	-	-	-	-	26	
	관상용식수대	가	-	3,755.43	3,755.43	-	-	-	-	-	가	-	3,755.43	3,755.43	-	-	-	-	-	
	관상용식수대	가-1	개포동 산54-1	(2,199.24)	(2,199.24)	-	-	-	-	-	가-1	개포동 산54-1	(2,199.24)	(2,199.24)	-	-	-	-	-	
	관상용식수대	가-2	개포동 246-13	(1,556.19)	(1,556.19)	-	-	-	-	-	가-2	개포동 246-13	(1,556.19)	(1,556.19)	-	-	-	-	-	
	평의자	①	전지역	-	-	-	-	-	-	25	①	전지역	-	-	-	-	-	-	25	
	파고라	②	관상용식수대	-	-	-	-	-	-	1	②	관상용식수대	-	-	-	-	-	-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한양시설	소계	-	-	136.21	136.21	-	-	-	-	3	-	-	136.21	136.21	-	-	-	-	3	
	휴게소	다	-	63.71	63.71	-	-	-	-	-	다	-	63.71	63.71	-	-	-	-	-	
	휴게소	다-1	개포동 246-2	(26.08)	(26.08)	-	-	-	-	-	다-1	개포동 246-2	(26.08)	(26.08)	-	-	-	-	-	
	휴게소	다-2	개포동 산56	(17.26)	(17.26)	-	-	-	-	-	다-2	개포동 산56	(17.26)	(17.26)	-	-	-	-	-	
	휴게소	다-3	개포동 산56	(20.37)	(20.37)	-	-	-	-	-	다-3	개포동 산56	(20.37)	(20.37)	-	-	-	-	-	
	전망 데크	라	개포동 246-3	72.50	72.50	-	-	-	-	-	라	개포동 246-3	72.50	72.50	-	-	-	-	-	
	야외 테이블	③	휴게소	-	-	-	-	-	-	3	③	휴게소	-	-	-	-	-	-	3	
삼성물산	소 계	-	-	1,250.00	1,250.00	-	-	-	-	-	-	-	1,250.00	1,250.00	-	-	-	-	-	
	베드민턴장	마	일원 산63-29	495.00	495.00	-	-	-	-	-	마	일원 산63-29	495.00	495.00	-	-	-	-	-	
	농구장	바	일원 산63-47	315.00	315.00	-	-	-	-	-	바	일원 산63-47	315.00	315.00	-	-	-	-	-	
	체력단련장	사	일원 산63-29외 1필지	440.00	440.00	-	-	-	-	-	사	일원 산63-29외 1필지	440.00	440.00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계	-	-	600.00	600.00	-	-	-	-	-		-	-	600.00	600.00	-	-	-	-	-	
	조경수목원	나	개포동 산56	600.00	600.00	-	-	-	-	-		나	개포동 산56	600.00	600.00	-	-	-	-	-	
편의시설	소계	-	-	651.20	651.20	-	1	52.00	52.00	2		-	-	651.20	651.20	-	1	52.00	52.00	2	
	주차장	아	개포동 산56	550.00	550.00	-	-	-	-	-		아	개포동 산56	550.00	550.00	-	-	-	-	-	
	약수터	자	개포동 산56	20.00	20.00	-	-	-	-	-		자	개포동 산56	20.00	20.00	-	-	-	-	-	
	화장실	차	-	81.20	81.20	-	1	52.00	52.00	2		차	-	81.20	81.20	-	1	52.00	52.00	2	
	화장실	차-1	개포동 산56	(70.00)	(70.00)	-	(1)	(52.00)	(52.00)	(1)		차-1	개포동 산56	(70.00)	(70.00)	-	(1)	(52.00)	(52.00)	(1)	
	화장실	차-2	개포동 246-13	(11.20)	(11.20)	-	-	-	-	(1)		차-2	개포동 246-13	(11.20)	(11.20)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	-	134,121.88	-	-	-	-	-	-		-	-	134,121.88	-	-	-	-	-	-	
	녹지	-	-	134,121.88	-	-	-	-	-	-		-	-	134,121.88	-	-	-	-	-	-	

2-3. 대모산근린공원 일원지구 도로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3,548.57	8,846.58	-	-	-	
변경					3,548.57	8,846.58				
당초	소로	계			631.91	2,595.73	-	-	-	
변경					631.91	2,595.73				
당초		3	1	3.0	102.94	308.9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3	2	3.0~3.5	16.52	54.43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초		3	3	3.5~5.0	512.45	2,232.4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산책로	계			2,916.66	6,250.85	-	-	-	
변경					2,916.66	6,250.85				
당초			1	2.0	283.84	567.2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	2.0	96.55	193.5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당초			3	2.0	192.55	384.76	산책로	산책로 1	소로 3-3	
당초			4	2.0	63.05	126.87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초			5	2.0	47.52	97.2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산책로		6	2.0	132.56	322.39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7	2.0	183.52	375.06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8	1.8	73.90	149.8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9	1.8	55.05	111.2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0	
당 초			10	1.8	414.89	883.01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 초			11	1.5	137.61	219.93	진입로	산책로 12	소로 3-3	
당 초			12	1.2	183.40	225.4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당 초			13	1.2	12.25	14.69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2	
당 초			14	1.5	19.86	31.55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0	
당 초			15	1.2	118.41	143.6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2	
당 초			16	3.0	78.18	227.92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3	
당 초			17	1.8	229.29	444.12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3	
당 초			18	3.0~7.0	98.89	386.18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28	
당 초			19	2.0~3.0	46.41	113.04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2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20	2.8~12.0	43.05	280.48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18	
당 초	산책로		21	2.5~3.0	55.29	152.0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0	
당 초			22	1.0	46.22	61.99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23	2.2~5.5	64.42	183.87	산책로	산책로 22	공원내	
당 초			24	2.0~3.0	17.34	48.54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21	
당 초			25	2.5~4.0	4.93	16.05	산책로	공원내	산책로 21	
당 초			26	2.0~2.3	65.04	145.56	산책로	산책로 20	산책로 28	
당 초			27	1.2~1.8	56.85	76.2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8	
당 초			28	2.2~4.0	95.79	268.44	산책로	산책로 20	소로 3-3	

3-1. 대모산근린공원 구룡지구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기반시설	소계	2,790.14	2,790.14	-	-	-	1	2,790.14	2,790.14	-	-	-	1	
	도로	1,598.23	1,598.23	-	-	-	1	1,598.23	1,598.23	-	-	-	1	
	광장	1,191.91	1,191.91	-	-	-	-	1,191.91	1,191.91	-	-	-	-	
조경시설		377.39	377.39	-	-	-	-	377.39	377.39	-	-	-	-	
휴양시설		313.40	313.40	-	-	-	44	313.40	313.40	-	-	-	44	
유희시설		423.85	423.85	-	-	-	9	423.85	423.85	-	-	-	9	
운동시설		194.19	194.19	-	-	-	8	194.19	194.19	-	-	-	8	
편익시설		66.50	66.50	-	-	-	-	66.50	66.50	-	-	-	-	
관리시설		529.49	529.49	1	166.98	116.88	10	529.49	529.49	1	166.98	116.88	10	
녹지 및 기타		12,863.04	12,863.04	-	-	-	-	12,863.04	12,863.04	-	-	-	-	

3-2. 대모산근린공원 구룡지구 시설조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17,558.00	4,694.96	-	-	166.98	116.88	72		-	17,558.00	4,694.96	-	-	166.98	116.88	72	
기반시설	소계		-	2,790.14	2,790.14	-	-	-	-	1		-	2,790.14	2,790.14	-	-	-	-	1	
	도로		-	1,598.23	1,598.23	-	-	-	-	-		-	1,598.23	1,598.23	-	-	-	-	-	
	광장	가	-	1,191.91	1,191.91	-	-	-	-	-	가	-	1,191.91	1,191.91	-	-	-	-	-	
	광장	가-1	-	(92.70)	(92.70)	-	-	-	-	-	가-1	-	(92.70)	(92.70)	-	-	-	-	-	
	광장	가-2	-	(143.22)	(143.22)	-	-	-	-	-	가-2	-	(143.22)	(143.22)	-	-	-	-	-	
	광장	가-3	-	(69.94)	(69.94)	-	-	-	-	-	가-3	-	(69.94)	(69.94)	-	-	-	-	-	
	광장	가-4	-	(80.69)	(80.69)	-	-	-	-	-	가-4	-	(80.69)	(80.69)	-	-	-	-	-	
	광장	가-5	-	(318.14)	(318.14)	-	-	-	-	-	가-5	-	(318.14)	(318.14)	-	-	-	-	-	
	광장	가-6	-	(92.60)	(92.60)	-	-	-	-	-	가-6	-	(92.60)	(92.60)	-	-	-	-	-	
	광장	가-7	-	(293.59)	(293.59)	-	-	-	-	-	가-7	-	(293.59)	(293.59)	-	-	-	-	-	
	광장	가-8	-	(101.03)	(101.03)	-	-	-	-	-	가-8	-	(101.03)	(101.03)	-	-	-	-	-	
	데크로드	①	-	-	-	-	-	-	-	1	①	-	-	-	-	-	-	-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계	-	-	377.39	-	-	-	-	-	-	-	-	377.39	-	-	-	-	-	-	
	잔디마당	나	-	377.39	-	-	-	-	-	-	나	-	377.39	-	-	-	-	-	-	
휴양시설	소계	-	-	313.40	-	-	-	-	-	44	-	-	313.40	-	-	-	-	-	44	
	휴게마당	다	-	313.40	-	-	-	-	-	-	다	-	313.40	-	-	-	-	-	-	
	휴게마당A	다-1	-	(109.82)	-	-	-	-	-	-	다-1	-	(109.82)	-	-	-	-	-	-	
	휴게마당B	다-2	-	(101.56)	-	-	-	-	-	-	다-2	-	(101.56)	-	-	-	-	-	-	
	휴게마당C	다-3	-	(102.02)	-	-	-	-	-	-	다-3	-	(102.02)	-	-	-	-	-	-	
	휴게데크A	②	-	-	-	-	-	-	-	1	②	-	-	-	-	-	-	-	1	
	휴게데크B	③	-	-	-	-	-	-	-	1	③	-	-	-	-	-	-	-	1	
	전망파고라	④	-	-	-	-	-	-	-	2	④	-	-	-	-	-	-	-	2	
	휴게파고라	⑤	-	-	-	-	-	-	-	1	⑤	-	-	-	-	-	-	-	1	
	야외테이블	⑥	-	-	-	-	-	-	-	6	⑥	-	-	-	-	-	-	-	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평상	⑦	-	-	-	-	-	-	-	4		⑦	-	-	-	-	-	-	-	4		
	선베드	⑧	-	-	-	-	-	-	-	6		⑧	-	-	-	-	-	-	-	6		
	등벤치	⑨	-	-	-	-	-	-	-	4		⑨	-	-	-	-	-	-	-	4		
	사각벤치	⑩	-	-	-	-	-	-	-	13		⑩	-	-	-	-	-	-	-	13		
	앉음벽	⑪	-	-	-	-	-	-	-	6		⑪	-	-	-	-	-	-	-	6		
유희시설	소계	-	-	423.85	423.85	-	-	-	-	9		-	-	423.85	423.85	-	-	-	-	9		
	자연놀이마당	라	-	423.85	423.85	-	-	-	-	-		라	-	423.85	423.85	-	-	-	-	-		
	미끄럼틀 A	⑫	-	-	-	-	-	-	-	1		⑫	-	-	-	-	-	-	-	1		
	미끄럼틀 B	⑬	-	-	-	-	-	-	-	1		⑬	-	-	-	-	-	-	-	1		
	다리 건너기	⑭	-	-	-	-	-	-	-	1		⑭	-	-	-	-	-	-	-	1		
	통나무 건너기	⑮	-	-	-	-	-	-	-	2		⑮	-	-	-	-	-	-	-	2		
	지형 오르기	⑯	-	-	-	-	-	-	-	3		⑯	-	-	-	-	-	-	-	3		
	자연관찰 놀이	⑰	-	-	-	-	-	-	-	1		⑰	-	-	-	-	-	-	-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계	-	-	194.19	194.19	-	-	-	-	8	-	-	194.19	194.19	-	-	-	-	8	
	힘뜰 마당	마	-	194.19	194.19	-	-	-	-	-	마	-	194.19	194.19	-	-	-	-	-	
	힘뜰 마당A	마-1	-	(122.31)	(122.31)	-	-	-	-	-	마-1	-	(122.31)	(122.31)	-	-	-	-	-	
	힘뜰 마당B	마-2	-	(71.88)	(71.88)	-	-	-	-	-	마-2	-	(71.88)	(71.88)	-	-	-	-	-	
	체력단련시설	⑱	-	-	-	-	-	-	-	8	⑱	-	-	-	-	-	-	-	8	
편익시설	소계	-	-	66.50	66.50	-	-	-	-	-	-	-	66.50	66.50	-	-	-	-	-	
	주차장	바	-	66.50	66.50	-	-	-	-	-	바	-	66.50	66.50	-	-	-	-	-	
관리시설	소계	-	-	529.49	529.49	-	-	166.98	116.88	10	-	-	529.49	529.49	-	-	166.98	116.88	10	
	관리사무소	사	-	529.49	529.49	-	-	166.98	116.88	-	사	-	529.49	529.49	-	-	166.98	116.88	-	
	볼라드	⑲	-	-	-	-	-	-	-	4	⑲	-	-	-	-	-	-	-	4	
	종합안내판	⑳	-	-	-	-	-	-	-	1	⑳	-	-	-	-	-	-	-	1	
	시설안내판	㉑	-	-	-	-	-	-	-	1	㉑	-	-	-	-	-	-	-	1	
	방향안내판	㉒	-	-	-	-	-	-	-	4	㉒	-	-	-	-	-	-	-	4	
녹지및기타	소계	-	-	12,863.04	12,863.04	-	-	-	-	-	-	-	12,863.04	12,863.04	-	-	-	-	-	
	녹지	-	-	12,863.04	12,863.04	-	-	-	-	-	-	-	12,863.04	12,863.04	-	-	-	-	-	

3-3. 대모산근린공원 구룡지구 도로조서(변경없음)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432.11	1,598.23	-	-	-	
변 경					432.11	1,598.23				
당 초	소 로	계			132.57	795.42	-	-	-	
변 경					132.57	795.42				
당 초		3	1	6.0	97.47	584.82	진입로	공원경계 (진입부)	공원경계 (등산로)	
당 초		3	2	6.0	35.10	210.60	부진입로	소로3-1	사	
당 초	산책로	계			299.54	802.81	-	-	-	
변 경					299.54	802.81				
당 초			1	2.5	44.40	111.00	부진입로	공원경계 (E/V연결로)	가-1(광장)	
당 초			2	2.5	11.61	29.03	부진입로	가-1(광장)	공원경계 (생태통로)	
당 초			3	2.5	17.97	44.93	산책로	가-1(광장)	가-3(광장)	
당 초			4	2.5	7.27	18.18	산책로	가-3(광장)	가-4(광장)	
당 초			5	2.5	19.39	48.48	산책로	가-4(광장)	가-5(광장)	
당 초			6	2.5	17.32	43.30	산책로	가-5(광장)	가-6(광장)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산책로		7	2.5	18.07	45.18	산책로	가-6(광장)	가-7(광장)	
당 초			8	2.5	14.10	35.25	산책로	가-7(광장)	가-8(광장)	
당 초			9	2.5	32.00	80.00	산책로	가-8(광장)	산책로10	
당 초			10	2.0	48.68	97.36	산책로	가-7(광장)	공원경계 (등산로)	
당 초			11	2.5	13.93	34.83	산책로	가-5(광장)	가-7(광장)	
당 초			12	3.5	7.80	27.30	부진입로	소로3-1	산책로13	
당 초			13	4.0	47.00	188.00	부진입로	소로3-1	사(관리사무소)	

도시계획시설(대모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위 치 도

대모산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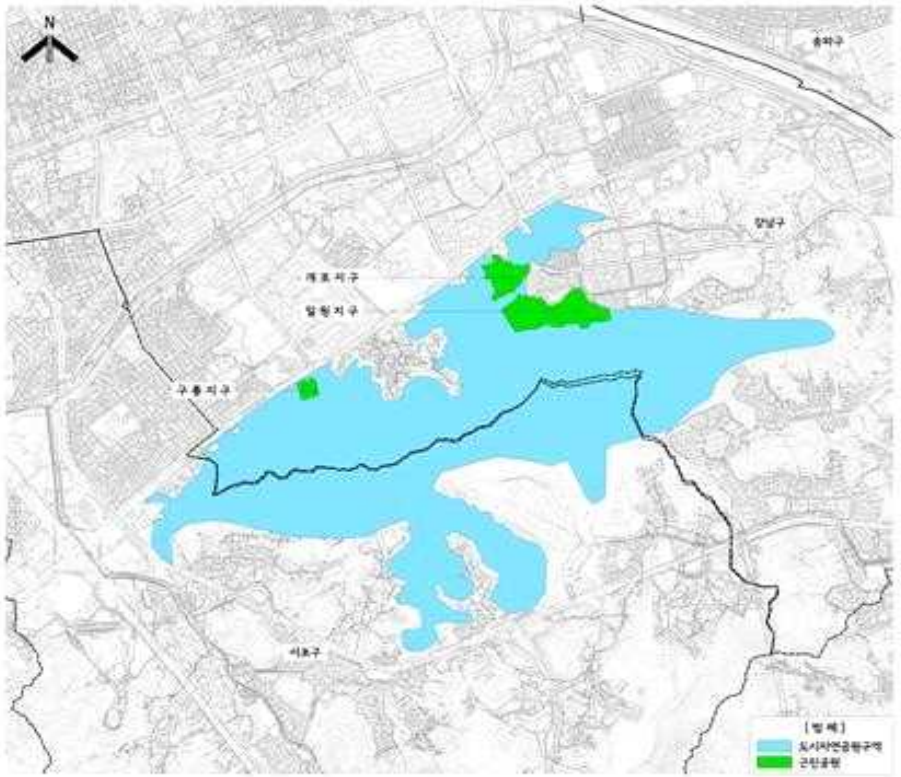

■ 개요

구분	위치	면적(㎡)	비고
01	개포지구	강남구 개포동 산 60	62,813.40
02	일원지구	강남구 일원동 산56	149,361.30
03	구룡지구	강남구 개포동 639-5	17,558.00

대모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기정)

대모산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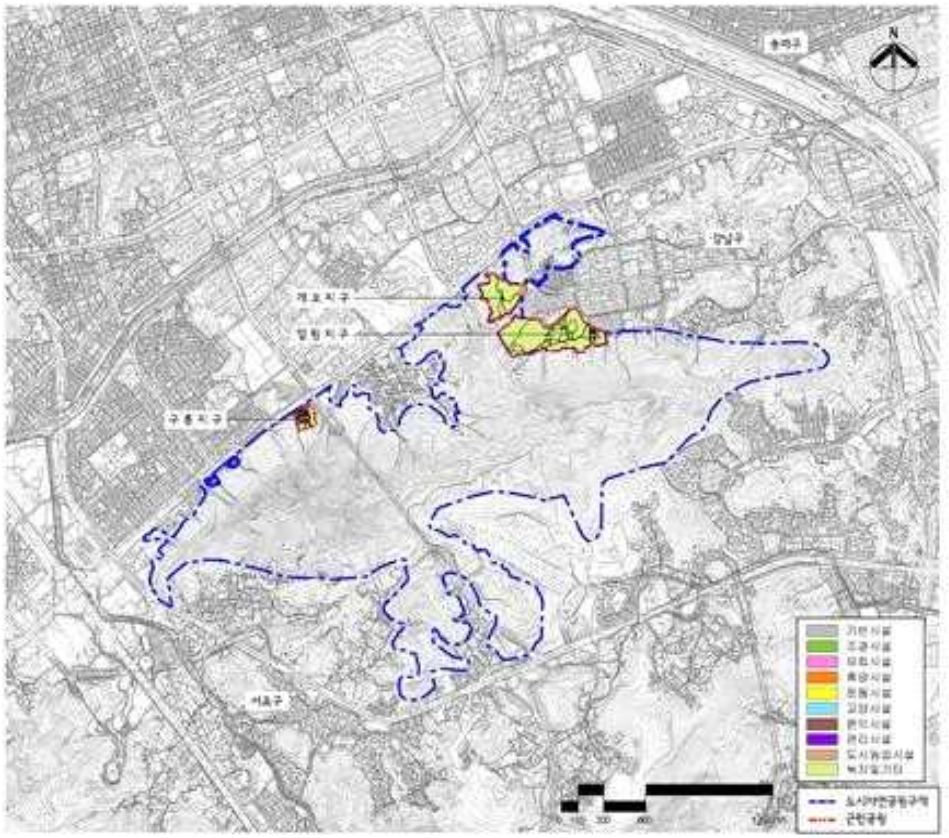

대모산 근린공원

대모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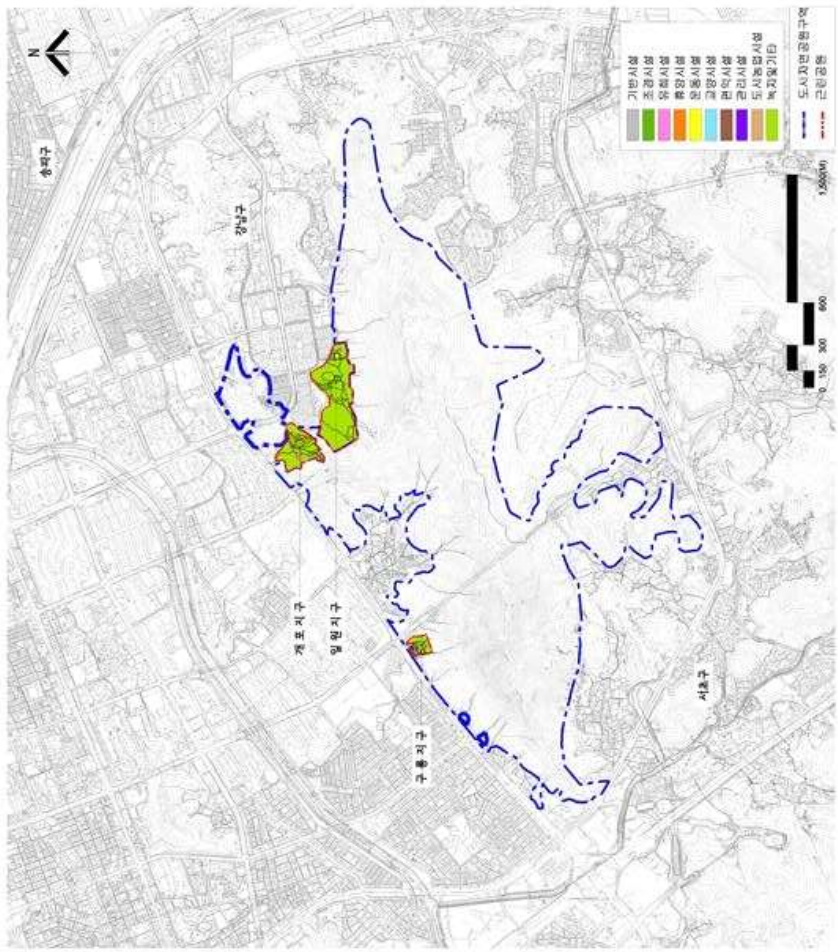

조성계획도(기정)

대모산 근린공원 개포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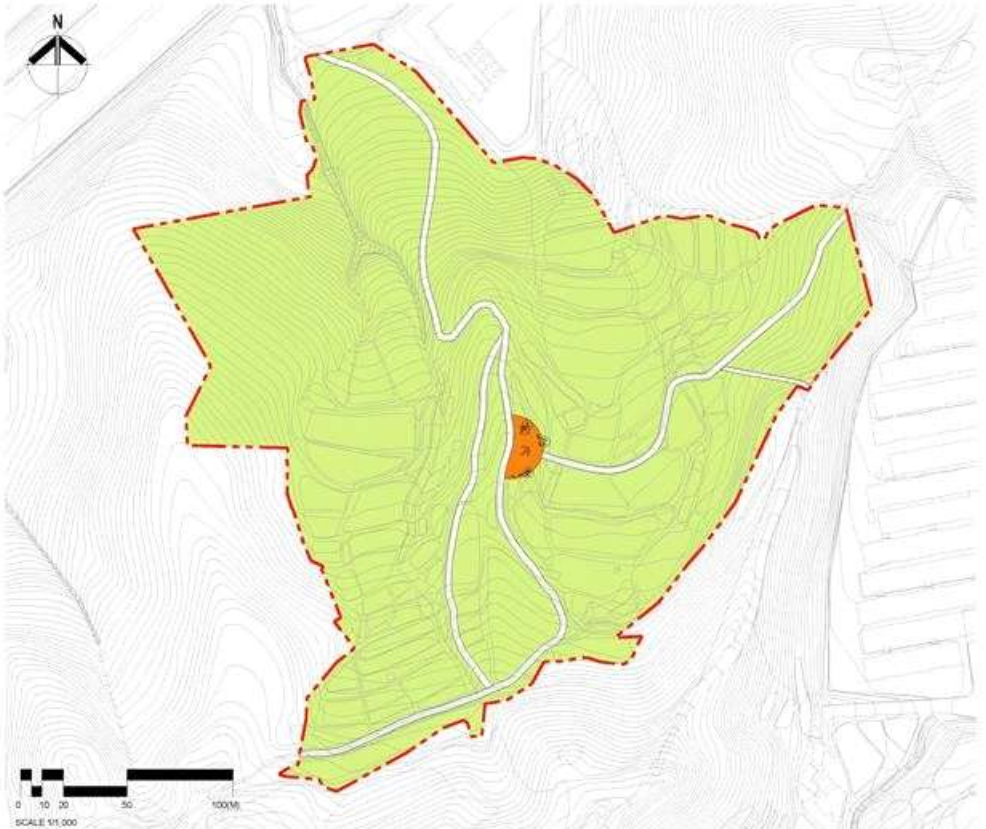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개)	비고
	합계		62,813.40	3,104.25	-	-	-	-	9	
기반시설	소계		2,737.75	2,737.75	-	-	-	-	-	
	도로		2,737.75	2,737.75	-	-	-	-	-	
휴양시설	소계		366.50	366.50	-	-	-	-	9	
	휴게쉼터	가	366.50	366.50	-	-	-	-	1	
	파고라	①			-	-	-	-	1	
	평의자	②			-	-	-	-	8	
녹지 및 경관	소계		59,709.15		-	-	-	-	-	
	녹지		59,709.15		-	-	-	-	-	

조성계획도(변경)

대모산 근린공원 개포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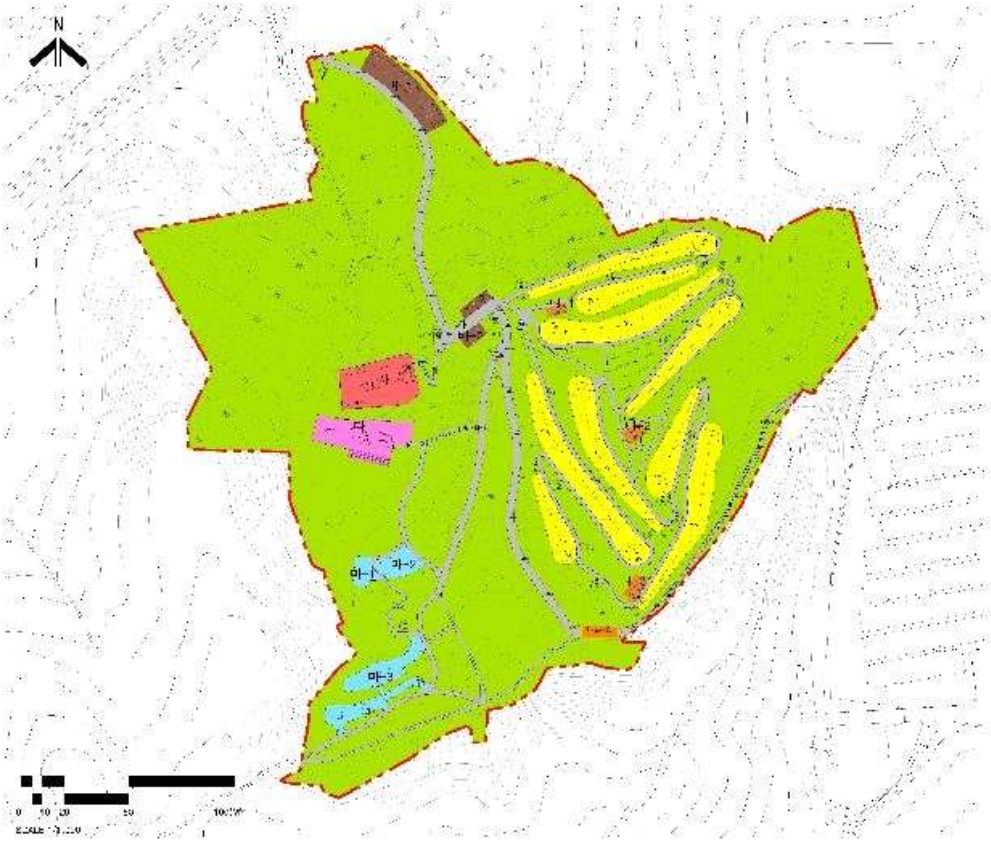

◈ 강남구공고 제2025-1887호

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9호(2016.7.7.)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49-9번지 도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 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49-9번지(면적: 29,816.5㎡)

2) 변경계획 개요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도산 근린공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9-9번지	29,816.5	29,816.5	-	7,670.82	7,524.26	△146.56

3) 주요(변경) 내용: 기념관을 복합건물(기념관,주차장,도서관)로 재건축

나. 공원조성계획 조서(안) 및 도면(안) : 따로붙임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3)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도시계획시설(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도산근린공원 총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9,816.50	7,670.82	1	1,085.50	4,451.46	122	29,816.50	7,524.26	1	1,479.02	8,590.84	91	시설면적 감소 감 146.56㎡
기반시설	소계	4,367.04	4,367.04	-	-	-	-	3,886.88	3,886.88	-	-	-	-	감 480.16㎡
	도로	2,934.27	2,934.27	-	-	-	-	2,983.35	2,983.35	-	-	-	-	증 49.08㎡
	광장	1,432.77	1,432.77	-	-	-	-	903.53	903.53	-	-	-	-	감 529.24㎡
조경시설		169.57	169.57	-	-	-	36	172.32	172.32	-	-	-	5	증 2.75㎡
휴양시설		855.18	855.18	-	-	-	39	183.97	183.97	-	-	-	39	감 671.21㎡
유희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255.22	255.22	-	-	-	9	255.22	255.22	-	-	-	9	
교양시설		1,212.54	1,212.54	1	1,085.50	4,451.46	1	2,060.05	2,060.05	1	1,451.39	8,563.21	1	증 847.51㎡
편익시설		36.7	36.7	-	-	-	4	191.25	191.25	1	27.63	27.63	4	증 154.55㎡
관리시설		774.57	774.57	-	-	-	33	774.57	774.57	-	-	-	33	
녹지 및 기타		22,145.68	-	-	-	-		22,292.24	-	-	-	-	-	증 146.56㎡
시설율(법정 40%)		(7,670.82 / 29,816.50) × 100 = 25.73%						(7,524.26 / 29,816.50) × 100 = 25.24%						
건폐율(법정 20%)		(1,085.5 / 29,816.50) × 100 = 3.64%						(1,479.02 / 29,816.50) × 100 = 4.96%						

2. 도산근린공원 시설조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	-	29,816.50	7,670.82	-	1동	1,085.50	4,451.46	122	-	-	29,816.50	7,524.26	-	1동	1,479.02	8,590.84	91	
기반시설	소계	-	-	4,367.04	4,367.04	-	-	-	-	-	-	-	3,886.88	3,886.88	-	-	-	-	-	감 480.16㎡
	도로	소로	-	2,934.27	2,934.27	-	-	-	-	-	소로	-	2,983.35	2,983.35	-	-	-	-	-	증 49.08㎡
	광장	가	신사649-9	1,432.77	1,432.77	-	-	-	-	-	가	신사649-9	903.53	903.53	-	-	-	-	-	감 529.24㎡
	진입광장	가-1	신사649-9	(684.79)	(684.79)	-	-	-	-	-	-	-	-	-	-	-	-	-	-	폐지
	광장	가-2	신사649-9	(136.03)	(136.03)	-	-	-	-	-	가-2	신사649-9	(136.03)	(136.03)	-	-	-	-	-	
	광장	가-3	신사649-9	(534.98)	(534.98)	-	-	-	-	-	가-3	신사649-9	(534.98)	(534.98)	-	-	-	-	-	
	광장	-	-	-	-	-	-	-	-	-	가-4	신사649-9	(117.97)	(117.97)	-	-	-	-	-	증 117.97㎡
	광장	가-5	신사649-9	(76.97)	(76.97)	-	-	-	-	-	가-5	신사649-9	(114.55)	(114.55)	-	-	-	-	-	증 37.58㎡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소계	-	-	169.57	169.57	-	-	-	-	36	-	-	172.32	172.32	-	-	-	-	5	증 2.75㎡
	파고라	①	신사649-9	157.71	157.71	-	-	-	-	3	①	신사649-9	172.32	172.32	-	-	-	-	3	증 14.61㎡
	평의자	⑨	신사649-9	-	-	-	-	-	-	6	-	-	-	-	-	-	-	-	-	폐지
	조형열주	⑩	신사649-9	-	-	-	-	-	-	10	-	-	-	-	-	-	-	-	-	폐지
	수경시설	⑪	신사649-9	-	-	-	-	-	-	1	-	-	-	-	-	-	-	-	-	폐지
	앉음벽	⑫	신사649-9	11.86	11.86	-	-	-	-	2	⑫	신사649-9	-	-	-	-	-	-	2	감 11.86㎡
	플랜터	⑬	신사649-9	(61.8)	(61.8)	-	-	-	-	12	-	-	-	-	-	-	-	-	-	폐지
	연식의자	⑭	신사649-9	(17.4)	(17.4)	-	-	-	-	1	-	-	-	-	-	-	-	-	-	폐지
	조형플랜터	⑮	신사649-9	(35.93)	(35.93)	-	-	-	-	1	-	-	-	-	-	-	-	-	-	폐지
휴양시설	소계	-	-	855.18	855.18	-	-	-	-	39	-	-	183.97	183.97	-	-	-	-	39	감 671.21㎡
	장의자	⑯	신사649-9	(57.27)	(57.27)	-	-	-	-	39	⑯	신사649-9	(57.27)	(57.27)	-	-	-	-	39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게공간	바-1	신사649-9	127.66	127.66	-	-	-	-	-	바-1	신사649-9	127.66	127.66	-	-	-	-	-	
	휴게공간	바-2	신사649-9	22.21	22.21	-	-	-	-	-	바-2	신사649-9	22.21	22.21	-	-	-	-	-	
	휴게공간	바-3	신사649-9	34.10	34.10	-	-	-	-	-	바-3	신사649-9	34.10	34.10	-	-	-	-	-	
	휴게공간	바-4	신사649-9	57.73	57.73	-	-	-	-	-	-	-	-	-	-	-	-	-	-	폐지
	휴게공간	바-5	신사649-9	180.37	180.37	-	-	-	-	-	-	-	-	-	-	-	-	-	-	폐지
	휴게공간	바-6	신사649-9	433.11	433.11	-	-	-	-	-	-	-	-	-	-	-	-	-	-	폐지
안동시설	소계	-	-	255.22	255.22	-	-	-	-	9	-	-	255.22	255.22	-	-	-	-	9	
	체력단련장	나	신사649-9	255.22	255.22	-	-	-	-	9	나	신사649-9	255.22	255.22	-	-	-	-	9	
교양시설	소계	-	-	1,212.54	1,212.54	-	1동	1,085.50	4,451.46	1	-	-	2,060.05	2,060.05	-	1동	1,451.39	8,563.21	1	즈 847.51㎡
	전시장	1	신사649-9	1,186.16	1,186.16	-	1동	1,085.50	4,451.46	-	1	신사649-9	2,033.67	2,033.67	-	1동	1,451.39	8,563.21	-	즈 847.5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동상		다	신사649-9	26.38	26.38	-	-	-	-	1	다	신사649-9	26.38	26.38	-	-	-	-	1	
편의시설	소계	-	-	36.70	36.70	-	-	-	-	4	-	-	191.25	191.25	-	1동	27.63	27.63	4	집 154.55㎡
	화장실	-	-	-	-	-	-	-	-	-	2	신사649-9	154.55	154.55		1동	27.63	27.63	-	집 154.55㎡
	음수전	③	신사649-9	36.70	36.70	-	-	-	-	3	③	신사649-9	36.70	36.70	-	-	-	-	3	
	시계탑	④	신사649-9	-	-	-	-	-	-	1	④	신사649-9	-	-	-	-	-	-	1	
관리시설	소계		-	774.57	774.57	-	-	-	-	33	-	-	774.57	774.57	-	-	-	-	33	
	묘소	마	신사649-9	757.23	757.23	-	-	-	-	1	마	신사649-9	757.23	757.23	-	-	-	-	1	
	안내판	④	신사649-9	-	-	-	-	-	-	4	④	신사649-9	-	-	-	-	-	-	4	
	가로등	-	신사649-9	-	-	-	-	-	-	20	-	신사649-9	-	-	-	-	-	-	20	
	휴지통	-	신사649-9	-	-	-	-	-	-	1	-	신사649-9	-	-	-	-	-	-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념비	⑤	신사649-9	-	-	-	-	-	-	2	⑤	신사649-9	-	-	-	-	-	-	2	
	석 등	⑥	신사649-9	-	-	-	-	-	-	4	⑥	신사649-9	-	-	-	-	-	-	4	
	계양대	⑧	신사649-9	17.34	17.34	-	-	-	-	1	⑧	신사649-9	17.34	17.34	-	-	-	-	1	
	담장	-	신사649-9	-	-	-	9.77M	-	-	-	-	-	-	-	-	-	-	-	-	폐지
녹지 및 기타	소 계	-	-	22,145.68	-	-	-	-	-	-		-	22,292.24	-	-	-	-	-	-	지이 146.56㎡
	녹지 및 기타	-	신사649-9	22,145.68	-	-	-	-	-	-		신사649-9	22,292.24	-	-	-	-	-	-	지이 146.56㎡

3. 도산근린공원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920.65	2,934.27	-	-	-	
변 경					797.68	2,983.35				
당 초	소 로	계			920.65	2,934.27	-	-	-	
변 경					797.68	2,983.35				
당 초		3	1	6	59.9	373.77	부진입로	광장 가-1	가-2	
변 경		3	1	6	70.64	444.42	부진입로	전시장 1	가-2	
당 초		3	2	6.5	26.59	172.84	산책로	소로 3-1	가-3	
당 초		3	3	3.5	140.51	487.68	산책로	소로 10-3	가-2	
변 경		3	3	3.5	154.19	553.51	산책로	소로 3-10	가-3	
당 초		3	4	3.2	21.5	74.8	산책로	전시장	가-3	
변 경		3	4	3.2	32.55	113.51	산책로	전시장 1	가-3	
당 초		3	6	3.5	62.18	217.62	산책로	소로 3-7	소로 3-7	
변 경		3	6	3.5	58.00	191.74	산책로	소로 3-7	소로 3-7	
당 초		3	7	3.5	167.91	554.14	산책로	가-1	소로 3-1	
변 경		3	7	3.5	90.10	544.00	산책로	전시장	소로3-1	
당 초		3	8	2.5	152.00	380.00	산책로	①	소로 3-3	
당 초		3	9	3	13.06	39.17	산책로	소로 3-7	대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	10	3.5	74.17	226.43	산책로	가-1	전시장	
변 경		3	10	3.8	28.76	131.54	산책로	전시장	가-4	
당 초		3	11	3	24.5	79.44	산책로	소로-10	바-6	
폐 지		3	11	-	-	-	-	-	-	
당 초		3	12	2.35	32.9	77.32	산책로	소로-11	가-5	
폐 지		3	12	-	-	-	-	-	-	
당 초		3	13	3.0	22.7	68.15	산책로	소로-3	대로	
당 초		3	14	3.0	8.5	26.86	산책로	대로	바-6	
폐 지		3	14	-	-	-	-	-	-	
당 초		3	15	1.3	114.23	156.05	산책로	소로-7	①	
변 경		3	15	2.0	87.94	178.69	산책로	대로	가-5	
신 설		3	16	2.0	12.46	24.91	산책로	대로	소로3-15	
신 설		3	17	2.0	12.46	24.80	산책로	소로3-7	소로3-15	
신 설		3	18	3.0	36.23	116.07	산책로	소로3-15	소로3-7	

조성계획도(변경전)

S = 1/400

도산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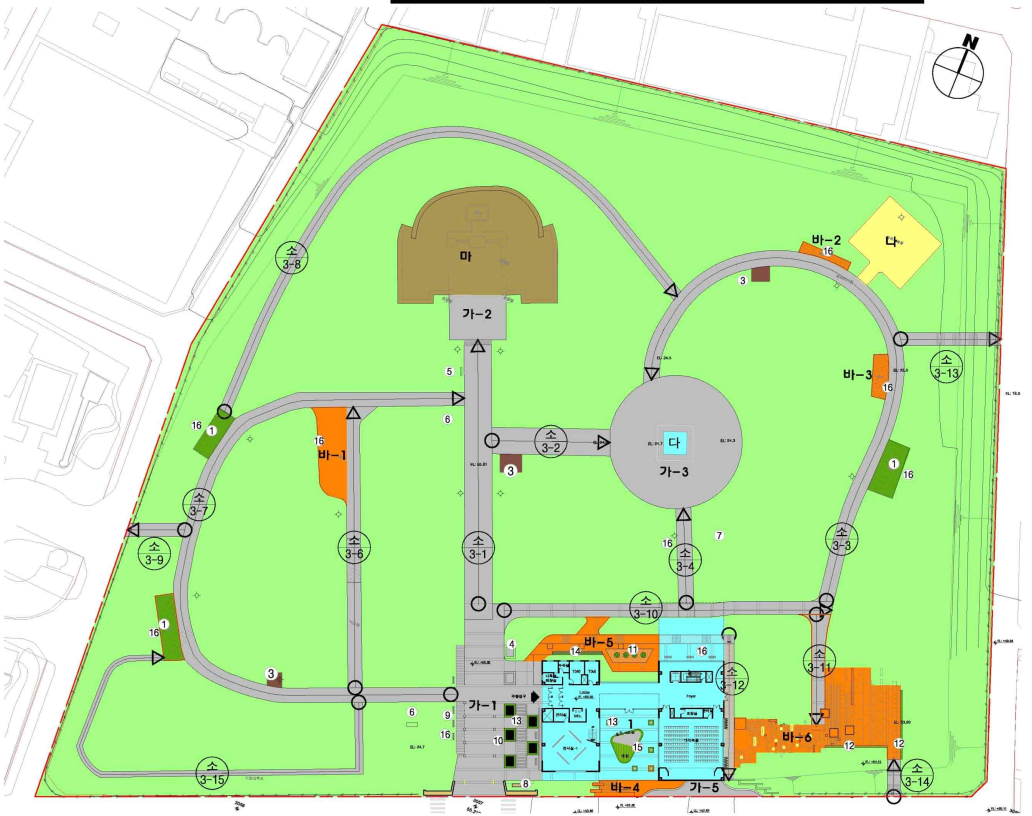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범례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반시설	4,367.04	14.64	
조경시설	169.57	0.57	
휴양시설	855.18	2.88	
운동시설	255.22	0.86	
교양시설	1,212.54	4.06	
편익시설	36.7	0.12	
관리시설	774.57	2.6	
녹지 및 기타	22,145.68	74.27	
계	29,816.50	100.00	

■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29,816.50	시설율 25.73%	
기반시설		소 계	4,367.04		
	가-1	진입광장1	684.79	–	
	가-2	광장1	136.03	–	
	가-3	광장2	534.98	–	
	가-5	광장3	76.97	–	
		도로	2,934.27		
조경시설		소 계	169.57	36개소	
	①	괴고라	157.71	3개소	
	⑩	평의자	–	6개소	
	⑪	조형물주	–	10개소	
	⑫	수경시설	–	1개소	
	⑫	잡물벽	11.86	2개소	
	⑬	플관디	(61.8)	12개소	
	⑭	연식의자	(17.4)	1개소	
	⑮	조형물램터	(35.93)	1개소	
휴양시설		소 계	855.18	39개소	
	⑩	장의자	(57.27)	39개소	
	바-1	휴게공간1	127.66	–	
	바-2	휴게공간2	22.21	–	
	바-3	휴게공간3	34.10	–	
	바-4	휴게공간4	57.73	–	
	바-5	휴게공간5	180.37	–	
	바-6	휴게공간6	433.11	–	
운동시설		소 계	255.22	9개소	
	나	체력단련장	255.22	9개소	
교양시설		소 계	1,212.54	1개소	
	1	전시장	1,186.16	–	
	다	동상	26.38	1개소	
편익시설		소 계	36.70	4개소	
	③	음수전, 수도	36.70	3개소	
	④	시계탑	–	1개소	
관리시설		소 계	774.57	33개소	
	마	원소	757.23	1개소	
	⑨	안내판	–	4개소	
		가로등	–	20개소	
		휴지통	–	1개소	
	⑱	기념비	–	2개소	
	⑦	석등	–	4개소	
	⑯	계양대	17.34	1개소	
		담장	–	9.77M	
녹지 및 기타		소 계	22,145.68	녹지율 74.27%	
		녹지	22,145.68	–	

조성계획도(변경후)

S = 1/400

도산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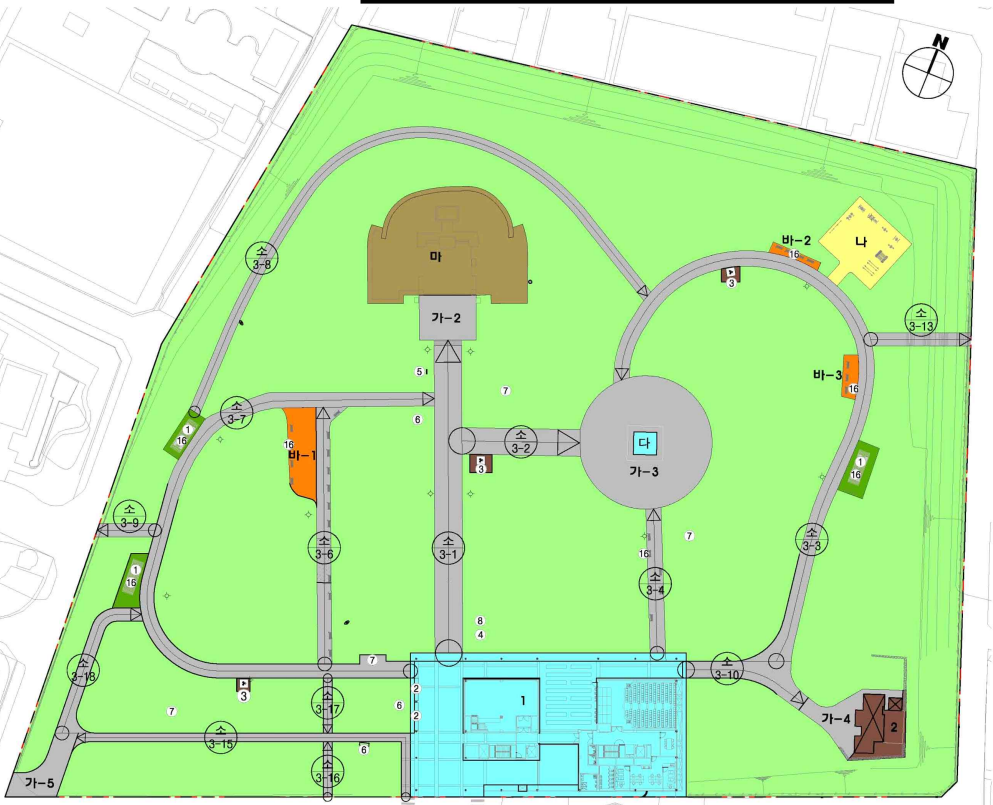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범례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반시설	3,886.88	13.04	
조경시설	172.32	0.58	
휴양시설	183.97	0.62	
문화시설	255.22	0.86	
교양시설	2,060.05	6.91	
편익시설	191.25	0.64	
관리시설	774.57	2.60	
녹지 및 기타	22,292.24	74.76	
계	29,816.50	100.00	

■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29,816.50	시설율 25.24%	
기반시설		소 계	3,886.88		
	가-2	광장1	136.03	–	
	가-3	광장2	534.98	–	
	가-4	광장3	117.97	–	
	가-5	광장4	114.55	–	
		도로	2,983.35	–	
조경시설		소 계	172.32	5개소	
	①	파고라	172.32	3개소	
	②	임등벽	(9.12)	2개소	
휴양시설		소 계	183.97	39개소	
	③	장의자	(57.27)	39개소	
	바-1	휴게공간1	127.66	–	
	바-2	휴게공간2	22.21	–	
	바-3	휴게공간3	34.10	–	
문화시설		소 계	255.22	9개소	
	나	체력단련장	255.22	9개소	
교양시설		소 계	2,060.05	1개소	
	1	전시장	2,033.67		
	다	동상	26.38	1개소	
편익시설		소 계	191.25	4개소	
	2	화장실	154.55		
	⑤	음수전 수도	36.70	3개소	
	④	시계탑		1개소	
관리시설		소 계	774.57	33개소	
	마	묘소	757.23	1개소	
	⑩	안내판	–	4개소	
		가로등	–	20개소	
		휴지통	–	1개소	
	⑥	기념비	–	2개소	
	⑦	석등	–	4개소	
	⑧	계양대	17.34	1개소	
녹지 및 기타		소 계	22,292.24	녹지율 74.76%	
		녹지	22,292.24	–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3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신당동)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4척) 296.94㎡	공사대기	'25. 8. 1. ~ '25. 8. 31.	'25. 8. 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3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 한강버스 (주식회사 드라이브포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의과학로2로, 88	잠실선착장 인근 (기선1척, 부선1척)	353.64㎡	한강버스_육상전원 공급 시스템중 바지선 사용	'25. 8. 1. ~ '25. 8. 31.	'25. 7. 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3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905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가양대교북단(주)씨앤한강랜드수리소 하류100M	1,637.19㎡ (부선3척)	공사대기	'25. 8. 4. ~ '25. 8. 31.	'25. 8. 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3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당산철교 ~ 청담대교	353.64㎡ (기선1척, 부선1척)	2025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1공구 명판 정비 중 바지선 사용	'25. 8. 1. ~ '25. 8. 31.	'25. 8. 1.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34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5. 08. 14. ~ 2025. 08. 27.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5. 08. 14. ~ 2025. 08. 27. (14일) *자진납부시 20%감경

6.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무인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 월일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 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여부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기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188	1	821203-*******	조*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6-28 11:27	50,000	2025-07-08	2025-09-10	1078834400899	2025-07-18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4700	서울특별시 성동구마장로	6114357	운영총괄과
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190	1	810201-*******	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6-28 11:31	50,000	2025-07-08	2025-09-10	1078834400901	2025-07-18	폐문부재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4369	서울특별시 용산구백범로90다길	6114357	운영총괄과
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191	1	710919-*******	곽*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6-28 20:44	50,000	2025-07-08	2025-09-10	1078834400904	2025-07-14	수취인 불명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6145	서울특별시 강남구선릉로	6114357	운영총괄과
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197	1	831028-*******	박*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6-22 18:58	50,000	2025-07-08	2025-09-10	1078834400889	2025-07-18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21125	인천광역시 계양구효서로	6114357	운영총괄과
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02	1	2841111-*******	주*회사* ***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6-28 13:04	50,000	2025-07-08	2025-09-10	1078834400902	2025-07-18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16675	경기도수원시영통구	6114357	운영총괄과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여부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07	0042 05	1	751019-*******	송*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6-29 14:28	50,000	2025-07-08	2025-09-10	1078834 400906	2025-07-18	폐문부재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3483	서울특별시 은평구가좌로7라길	6114357	운영총괄과
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07	0042 08	1	600605-*******	이*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2 22:07	50,000	2025-07-08	2025-09-10	1078834 400908	2025-07-18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12141	경기도남양주시천마산로	6114357	운영총괄과
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07	0042 14	1	890123-*******	심*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6-01 13:32	50,000	2025-07-08	2025-09-10	1078834 400601	2025-07-18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3092	서울특별시 중로구낙산길198	6114357	운영총괄과
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07	0042 20	1	951121-*******	FA*IDDI ******* ***JON BAKHTI YORUGL I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5 14:12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 409031	2025-07-22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8555	서울특별시 금천구독산로82길	6114357	운영총괄과
1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07	0042 21	1	810604-*******	김*원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5 14:12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 409041	2025-07-23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18499	경기도화성시동탄대로1길	6114357	운영총괄과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반송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여부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1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 28	1	681114-*******	안*진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5 14:12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409058	2025-07-22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6122	서울특별시 강남구논현로	6114357	운영총괄과
1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 30	1	680809-*******	류*근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05 14:24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409047	2025-07-22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4738	서울특별시 성동구독서당로	6114357	운영총괄과
1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 43	1	134511-*******	주*회사* *엔시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5 14:18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409068	2025-07-15	수취인불명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28118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6114357	운영총괄과
1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 49	1	800711-*******	김*훈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6 12:46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409043	2025-07-23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18367	경기도화성시병점노을로	6114357	운영총괄과
1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 51	1	850105-*******	강*성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6 12:46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409033	2025-07-22	폐문부재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4354	서울특별시 용산구새창로	6114357	운영총괄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 월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 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여부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기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1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 53	1	850411-*******	정*름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6 12:06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409066	2025-07-22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7011	서울특별시 동작구사당로20라길	6114357	운영총괄과
1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 54	1	970621-*******	OT*NBO ******A MIR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6 12:05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409032	2025-07-22	폐문부재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11663	경기도의정부시가능로86번길	6114357	운영총괄과
1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 61	1	810119-*******	김*림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04 20:05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409042	2025-07-22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13513	경기도성남시분당구	6114357	운영총괄과
1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 63	1	840127-*******	허*혁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5 09:31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409070	2025-07-21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6538	서울특별시 서초구주흥13길	6114357	운영총괄과
2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 65	1	680325-*******	이*백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5 09:30	50,000	2025-07-10	2025-09-10	1078834409062	2025-07-22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5281	서울특별시 강동구상암로79길	6114357	운영총괄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진 통지일	의견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여부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기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2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07	004287	1	701206-*******	김*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5 16:34	50,000	2025-07-11	2025-09-10	10788344114631	2025-07-23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4778	서울특별시 성동구왕십리로67길	6114357	운영총괄과
2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 -07	004289	1	790412-*******	김*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6 13:04	50,000	2025-07-11	2025-09-10	10788344114671	2025-07-23	폐문부재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3469	서울특별시 은평구백련산로	6114357	운영총괄과
2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 -07	004293	1	821015-*******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06 11:40	50,000	2025-07-11	2025-09-10	10788344114651	2025-07-23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6094	서울특별시 강남구봉은사로	6114357	운영총괄과
2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 -07	004294	1	700919-*******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06 16:30	50,000	2025-07-11	2025-09-10	10788344114691	2025-07-23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4612	서울특별시 중구다산로33라길	6114357	운영총괄과
2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5 -07	004297	1	851216-*******	신*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08 16:31	50,000	2025-07-11	2025-09-10	10788344114701	2025-07-23	폐문부재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4337	서울특별시 용산구신흥로22길	6114357	운영총괄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여부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기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2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 -07	0043 37	1	890918- *******	최*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6 -18 06:41	50,000	2025-07 -16	2025-09 -10	1078834 419317	2025-07 -28	기타	제2025- 347호	1	2025- 08-08	2025- 08-14	2025- 08-27	0883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로1 0길	6114357	운영총괄과
2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 -07	0043 40	1	740205- *******	이*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6 -19 16:08	50,000	2025-07 -16	2025-09 -10	1078834 419320	2025-07 -21	이사물품	제2025- 347호	1	2025- 08-08	2025- 08-14	2025- 08-27	27844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	6114357	운영총괄과
2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 -07	0043 43	1	030112- *******	TR****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6 -23 19:39	50,000	2025-07 -16	2025-09 -10	1078834 419323	2025-07 -22	주소불명	제2025- 347호	1	2025- 08-08	2025- 08-14	2025- 08-27	03105	서울특별시 종로구창신5 길길	6114357	운영총괄과
2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 -07	0043 48	1	701201- *******	김*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6 -30 16:39	50,000	2025-07 -16	2025-09 -10	1078834 419328	2025-07 -28	기타	제2025- 347호	1	2025- 08-08	2025- 08-14	2025- 08-27	05287	서울특별시 강동구상일 로	6114357	운영총괄과
3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 -07	0043 49	1	720617- *******	서*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6 -30 16:40	50,000	2025-07 -16	2025-09 -10	1078834 419329	2025-07 -28	기타	제2025- 347호	1	2025- 08-08	2025- 08-14	2025- 08-27	13534	경기도성남시분당구	6114357	운영총괄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여부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3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07	0043 50	1	600220-*******	임*장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6-30 16:41	50,000	2025-07-16	2025-09-10	1078834 419330	2025-07-21	주소불명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13113	경기도성남시수정구	6114357	운영총괄과
3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07	0043 51	1	630815-*******	김*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7-08 14:48	50,000	2025-07-16	2025-09-10	1078834 419331	2025-07-22	수취인불명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8762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53길	6114357	운영총괄과
3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07	0043 52	1	661223-*******	양*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7-02 08:11	50,000	2025-07-16	2025-09-10	1078834 419332	2025-07-25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5221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79길	6114357	운영총괄과
3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07	0043 53	1	941030-*******	배*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7-04 19:01	50,000	2025-07-16	2025-09-10	1078834 419333	2025-07-28	폐문부재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4374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2가길	6114357	운영총괄과
3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07	0043 54	1	510920-*******	최*옥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7-04 10:40	50,000	2025-07-16	2025-09-10	1078834 419334	2025-07-28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18503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12길	6114357	운영총괄과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진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여부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3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07	004358	1	821121-*******	김*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09 00:21	50,000	2025-07-16	2025-09-10	1078834419338	2025-07-28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8765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2길	6114357	운영총괄과
3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07	004362	1	851217-*******	윤*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9 19:15	50,000	2025-07-16	2025-09-10	1078834419342	2025-07-28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7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79길	6114357	운영총괄과
3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07	004377	1	910516-*******	MA*ONOVSH** *****ISTAMUGL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06 14:54	50,000	2025-07-17	2025-09-10	1078834422493	2025-07-29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222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477번길	6114357	운영총괄과
3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07	004379	1	801214-*******	신*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06 14:57	50,000	2025-07-17	2025-09-10	1078834422525	2025-07-30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57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87길	6114357	운영총괄과
4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07	004393	1	820123-*******	이*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06 17:15	50,000	2025-07-17	2025-09-10	1078834422529	2025-07-29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55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6114357	운영총괄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된 해당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여부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기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4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 -07	0044 01	1	001009- *******	HO*G NG**** ANH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 -10 18:56	50,000	2025-07 -17	2025-09 -10	1078834 422492	2025-07 -29	기타	제2025- 347호	1	2025- 08-08	2025- 08-14	2025- 08-27	03788	서울특별시 구연새로13 길	6114357	운영총괄과
4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 -07	0044 04	1	000303- *******	황*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 -10 16:54	50,000	2025-07 -17	2025-09 -10	1078834 422542	2025-07 -30	기타	제2025- 347호	1	2025- 08-08	2025- 08-14	2025- 08-27	05011	서울특별시 광진구아차 산로33길	6114357	운영총괄과
4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 -07	0044 07	1	040411- *******	HA*OEV ILYO*** ******O VICH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 -11 16:44	50,000	2025-07 -17	2025-09 -10	1078834 422491	2025-07 -30	기타	제2025- 347호	1	2025- 08-08	2025- 08-14	2025- 08-27	06002	서울특별시 광진구자 로11길	6114357	운영총괄과
4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 -07	0044 08	1	051127- *******	SO*RJO NOV**O LUONU GL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 -11 16:46	50,000	2025-07 -17	2025-09 -10	1078834 422494	2025-07 -29	기타	제2025- 347호	1	2025- 08-08	2025- 08-14	2025- 08-27	02528	서울특별시 동대구장 한로	6114357	운영총괄과
4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 -07	0044 10	1	871225- *******	정*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6 -22 16:31	50,000	2025-07 -17	2025-09 -10	1078834 422534	2025-07 -23	수취인 불명	제2025- 347호	1	2025- 08-08	2025- 08-14	2025- 08-27	06125	서울특별시 강남구봉은 사로	6114357	운영총괄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된 해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 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여부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기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46	10-28 8706	[사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한 조례위반과태료	2025 -07	0044 13	1	480910- *******	최*석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 -09 13:28	50,000	2025-07 -18	2025-09 -10	1078834 424418	2025-07 -24	주소불명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05396	서울특별시 강동구성내로17길	6114357	운영총괄과
47	10-28 8706	[사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한 조례위반과태료	2025 -07	0044 19	1	791116- *******	윤*노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7 -12 17:16	50,000	2025-07 -18	2025-09 -10	1078834 424414	2025-07 -31	폐문부재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57549	전라남도곡성군죽곡면	6114357	운영총괄과
48	10-28 8706	[사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한 조례위반과태료	2025 -07	0044 28	1	730204- *******	김*영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7 -05 14:05	50,000	2025-07 -18	2025-09 -10	1078834 424407	2025-07 -30	기타	제2025-347호	1	2025-08-08	2025-08-14	2025-08-27	16235	경기도수원시팔달구	6114357	운영총괄과

◈ 마포소방서공고 제2025-5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마 포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현대화이어텍	제 서울(마포) 2025-0002호 (2025.8.11.)	김영기, 양유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1, 별관 1층	02-3142-91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 관리업담당(☎02-6981-78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